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TEL : 042-481-4052, FAX : 042-472-3221
www.forest.go.kr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15.1

산림청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15. 1

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임업인과 국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 구현"

목 차

< 기획조정관실 소관 > ····· 1
1. 중기사업계획 및 '16예산 편성 ····· 3
2. 재정사업 성과관리 ····· 5
3. 국민·임업인이 체감하는 산림행정3.0 추진 ····· 10
4. 산림행정 효율성 향상 ····· 13
5. 산림행정 평가 및 성과관리 ····· 15
6. 산림행정 조직 및 정원관리 ····· 18
7. 법제업무의 전문성 강화 ····· 20
8.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 ····· 22
9. 민원만족도 제고 ····· 24
10. 산림행정의 투명성 및 자체감사의 생산성 제고 ····· 26
11.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및 공직기강 확립 ····· 28
12.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산림행정' 구현 ····· 30
1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35
14. 산림공간정보기반의 산림정책지원체계 마련 ····· 39
15. 산림통계의 신뢰성 및 활용성 증진 ····· 43
16. 정책홍보 ····· 48

< 해외자원협력관실 소관 > ····· 53
1. 해외산림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정립 ····· 55
2. 한국형 REDD+ 사업 모델 확립 ····· 58
3. 중요도에 따른 양자협력국가 차등관리 및 특성화 의제 개발 ··· 62
4. 녹색 ODA 사업 확대로 국제산림협력 강화 ····· 65
5. AFoCO 확대 설립 및 협력사업 내실화 ····· 68
6. 다자간 산림협력 확대 및 글로벌 의제 대응 ····· 71
7. UNCCD 국제논의 대응 및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 77
8. 한·중·일 FTA 등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 82
9. 임산물 수출확대 ····· 86

< 산림자원국 소관 > ····· 91
1. 산림계획제도의 개선과 신규 정책 개발 ····· 93
2. 산림분야 일자리 대책 추진 ····· 95
3.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마련 ····· 97
4. 현장 및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및 관리 강화 ····· 100
5.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 105
6. 산하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경영성과 제고 ····· 107
7. 경제림 활성화를 위한 선도 경영 기반 마련 ····· 109
8. 종묘 생산 ····· 113
9. 조림 ····· 123
10. 숲가꾸기 ····· 148
11. 공공산림가꾸기 ····· 164
12. 남북 산림협력 사업 ····· 171
13. 산림생명자원관리 강화 및 이용 활성화 ····· 175
14.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 179
15. 목재문화 및 이용 활성화 ····· 182
16. 목재생산 기반 구축 및 국산재 공급 확대 ····· 185
17. 친환경 산림바이오매스 수급 기반 안정화 ····· 189
18. 임업기계화 촉진 ····· 194
19. 전문 산림기술자 양성 ····· 198
20.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 201
21.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 204
22. 도시숲 조성·관리 ····· 214
23. 명상숲 조성·관리 ····· 223
24. 전통마을 숲 복원 ····· 227
25. 산림경관 개선사업 추진 ····· 229
26. 가로수 조성·관리 ····· 231
27.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 및 보급 확대 ····· 234

< 산림이용국 소관 > ····· 237
1. 현장 체감형 산지규제 제도개선 추진 ····· 239
2.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 242
3.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에 대한 전문적 관리체계 구축 ····· 245
4. 토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도입 및 관리 강화 ····· 247
5. 국유림경영·관리 정책 강화 ····· 250
6. 산림경영임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 258
7.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등 사후관리 강화 ····· 267
8.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및 사후관리 ····· 271
9. 국가소송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 ····· 274
10. 지방산림청 업무효율성 제고 ····· 276
11. 산림복지 정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정 ····· 278
12.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고객 만족도 제고 ····· 282
13.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강화 ····· 289
14.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활성화 ····· 292
15.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 인프라 확대 ····· 297
16. 6차 산업 활성화 및 산촌역량강화 사업 ····· 300
17.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305
18.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운영 ····· 310
19.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 313
20. 다양한 산림문화 활동을 통한 산림문화융성 ····· 315
21.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 ····· 318
22. 산림조합 경쟁력 강화 ····· 322
23.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 326
24.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 332
25.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 338
26.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 344
27. 국립산악박물관 운영·관리 ····· 351

< 산림복지시설사업단 소관 > ····· 353
1. 산림복지시설사업 조직·예산 확보 추진 ····· 355

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 추진 ····· 358
3. 백두대간수목원 개원을 위한 운영준비 철저 ····· 361
4.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공사 마무리 추진 ····· 364
5.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운영기반 구축 ····· 366
6. 국립중앙수목원 '16년 공사추진을 위한 준비 철저 ····· 368

< 산림보호국 소관 > ····· 373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 375
2.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체계 확립 ····· 380
3. 산림생물자원의 현지 내・외 보전기반 구축 ····· 385
4.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추진 ····· 389
5.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대책 추진 ····· 391
6. 산불예방대책 추진 ····· 395
7. 산불상황관리 및 지상진화 ····· 400
8. 헬기 진화역량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 405
9. 산불방지 기반구축 ····· 409
10. 산사태방지 추진기반 구축 ····· 411
11.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의 현장 확산 ····· 416
12.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 420
13. 산사태발생지의 신속・정확한 조사 및 복구 ····· 426
1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재 발생 최소화 ····· 429
15.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 유지 ····· 434
16.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저지 ····· 437
17. 솔잎혹파리 피해 안정화 ····· 439
18. 돌발・외래・일반 병해충 적기 대응 ····· 441
19. 생활권 수목진료 추진 ····· 443
20. 훼손・단절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 ····· 446
21. 백두대간 보호·관리체계 강화 ····· 449
22.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452

기획조정관실 소관

1. 중기사업계획 및 ’16예산 편성

목 표

◇ 임업인·국민이 숲을 일터, 쉼터, 삶터로 활용토록 뒷받침
◇「산림자원관리-임산업발전-산림서비스증진-생태계보전」 분야의 선순환 정립

가. 편성여건

o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합리한 제도 재설계 등 범정부차원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세출구조조정이 추진될 전망

* 재정지출효율화방안 마련 지시(대통령 지시시항 ’14.10.22)

o 국회 예산심의 강화를 위한「국가재정법」개정에 따라 ’16회계연도 국회 예산제출 시기가 앞당겨 짐(’15예산편성 : 9.22 → ’16예산편성 : 9.12)

나. 기본방향

o 현 정부 3년차로 가시적인 성과와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산림자원육성,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소득 제고, 산림복지서비스, R&D투자,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분야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15～’19 중기사업계획 수립

o 정책여건변화, 중점추진과제 이행 등으로 ’14～’18년 계획 수립 이후 변동이 발생한 사업의 투자계획과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

2) 2016년도 예산편성 추진

o 국정과제, 안전분야 예산편성을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 지속발굴 및 보조사업 내실화 등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o 대규모 시설사업 완료 등에 따른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별 투자 성과, 정책체감도 등을 점검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

* 투자우선순위 및 사업별 재원규모 조정, 실행주체·전달체계 개선, 보조율 조정 등 사업 재설계를 통한 성과 극대화 유도

3) 2015년도 예산집행 및 배정 관리

o 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및 배정 관리를 통해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라. 추진일정

o '15~'19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재정부 제출 : 2015. 1. 31

o '16예산안 편성지침 및 부처별 지출한도 확정 통보 : 2015. 4월중

o 산림청 '16년 예산요구서 기획재정부 제출 : 2015. 6월초

o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2015. 6~9월

o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 2015. 9. 12

o '16년도 자치단체보조금 예산(안) 통지 : 2015. 10. 15

o 국회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2015. 12월까지

2. 재정사업 성과관리

목 표

◇ 재정성과관리 강화로 재정지출의 책임성·투명성·효율성 제고
◇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고 세출구조조정 추진

가. 정책여건

o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과 재정 건전성 제고 필요성 강조

o 재정 건전성의 확보, 지출효율화 등을 위해 평가를 통한 재정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

- 기획재정부에서 부처 책임성 강화 및 전면적 상대평가 방식 도입 추진
- 사업추진방식 개선, 기관패널티 부여 등 평가결과의 예산환류 방식 개선

나. 기본방향

o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여 재정사업 구조조정 추진

-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성과지표 개발, 직원역량 강화로 성과제고

o 집행 사전준비를 '14년 연말까지 이행하여 집행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o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개별적·일시적 대응이 아닌 체계적·항구적 대응 등으로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2015년도 재정사업평가(2014년 사업추진) 부처 상위권 유지

o 재정사업자율평가 : 미흡등급 최소화로 평균 75점 이상을 획득하여 평가대상부처(40개) 중 5위권 이내의 목표달성

- 평가대상(10개 사업) : 목재생산기반조성, 생활림조성관리, 국제산림협력, 국유재산 및 산지관리, 산림생태보전, 산림복지서비스증진(수정평가) 등

o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 평가결과 사업방식변경(보조사업 방식) 최소화로 평가대상부처(40개) 중 5위권 이내의 목표달성

- 평가대상(8개 사업) :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보조사업

o 지역발전사업(광역·제주계정) 평가 : 적극대응으로 A등급 이상 유지

- 평가대상(2개 사업) : 숲길네트워크구축, 임도시설

o 전문가 자문, 전문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평가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활용도 증진

2) 재정사업 목표관리 강화로 성과체감도 향상

o 2014년도 성과보고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자율적 검증절차 강화

- 성과측정 결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도록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자체 1차 평가단(내부) 교차검증을 통해 실적 및 보고서 품질 제고

o 주요국의 산림부문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위목표와의 연계 강화 추진

- 사업별 맞춤형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사업의 효과성 평가가 강화되도록 관리

o 만족도 점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재정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일괄 추진하여 객관성・신뢰성 제고

o 재정사업 성과체감도 향상을 위해 산림정책평가위원 및 외부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강화

o 성과계획 목표체계와 예산 프로그램체계를 일치화하여 2016년도 성과계획서 수립

- 2016회계년도 예산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사업비 등이 일치되도록 하여 예산과 성과의 연계 및 환류 강화

3)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른 우리청 자체평가체계 마련

o (평가체계 개편방향) 부처 책임성 강화 및 전면적 상대평가 방식 도입, 평가결과의 기계적인 예산환류 방식 개선 등

o (우리청 자체평가체계) 그간의 성과결과 점검 위주에서 사업별 등급간 비율 적용 등 자체평가 강화

o 기재부의「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개정안에 맞춰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평가항목별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제시

- 2016년도 평가 대상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기 선정('14년말)
- 부처 책임성 강화 및 전면적인 상대평가 방식 도입에 따른 적극 대응

o 평가대상 사업부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일괄 외부 위탁으로 추진

o 재정사업 모니터링은 사업부서 자체적 실시 및 외부전문기관(위탁)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피드백 강화

- 사업목적 달성,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해 성과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외부 지적사항, 민원,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 또는 개선방안 마련

※ 자율평가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엄격히 하고 성과관리 제고 노력, 성과평가서 작성의 충실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기여자에게 포상 계획

o PI보드를 통한 성과지표 및 집행률 달성도, 모니터링 실적 등 상시적 성과점검 체계를 관리 강화

- 자율평가와 연계하여 2016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시 일정부분 배점 예정

※ PI(Performance Information)보드 : 재정사업(단위사업)의 성과달성도를 상시 모니터링·관리하는 d-Brain상의 상황판

4)「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후속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o「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후속 이행계획 수립

-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방지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사업자 선정방법 및 처벌 강화 등 사업별 지침 개정 등

※ 기획재정(재정성과) : 총괄조정, 정보통계 : 시스템구축, 사업부서 : 지침개정

o 보조금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지속 발굴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추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보조금개혁) 이행을 위한 T/F 구성·운영

※ 기획재정(재정성과) : 총괄조정, 정보통계 : 시행, 사업부서 : 참여

5) 예산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로 집행의 효율성 제고

o 500억원 이상 단위사업 집행현황 매월 공개로 투명성 제고

o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계획 수립·활성화 추진으로 예산낭비 등 방지

- 낙찰차액 사용계획 심의 및 예산절감 사례 발굴
- 시대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제도 재설계 등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 재정집행점검회의 및 예산성과금심의회 통합 운영 추진

> ※ 대통령 지시사항('14.10.22) 이행
>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불합리한 제도 재설계 등 재정지출 효율화방안 마련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시 기재부에서 총괄 보고)

6)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o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사전예방 강화

- 산림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o 예산낭비 사례가 신고되면 담당 사업과에서 현지조사 후 신고센터로 회신

- 조사결과가 미온적이거나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실 주관으로 재점검, 필요시 산림정책평가위원과 함께 현지조사 추진

o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3천만원 한도에서 예산성과금 지급

7) 실집행 점검을 통하여 집행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o 실집행 기준으로 '15년 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점검 강화

- 본청 각 부서·지자체·소속기관별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14년 연말까지 집행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연례적 이월·불용액 최소화

o 월별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행애로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집행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직접 현장점검, 중점관리 사업과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집중 점검

o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및 성과 등에 따라 인센티브(예산증액 및 포상금 지급) 또는 패널티 적용

라. 추진일정

o ’15년도 재정집행계획 수립 : 2014. 12월

o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후속 이행계획 수립 : 2015. 1월

o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 ’14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 시달 : 2015. 1월
- ’14년도 자율평가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2015. 1～12월
- ’14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2015. 2월
- ’15년도 재정사업 만족도 조사 추진 : 2015. 2～12월
- ’15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기여자 포상 : 2015. 12월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운용평가

- ’14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초조사보고서 제출(조세재정연구원) : 2015. 3월

o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광특회계사업 성과관리

- ’14년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서 제출(지역발전위원회) : 2015. 1월

o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심층평가

- R&D 사업군 심층평가 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2015. 1월

o ’14년도 성과보고서 및 ’16년도 성과계획서 제출

- ’14년도 성과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2015. 2월
- ’16년도 성과계획서 제출(기획재정부) : 2015. 6월

o ’15년도 예산집행심의회 및 재정집행 점검회의 운영 : 2015. 매월

※ 대통령 말씀사항

o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점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율은 10대 90으로 생각해야 한다.**(’13.2월 국정과제 토론회)**

o 성과계획서·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바람**(’13.8.28일 수석비서관회의)**

3. 국민·임업인이 체감하는 산림행정3.0 추진

목 표

◇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산림서비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
◇ 산림행정3.0 성과를 내재화하고 국민 속으로 확산

가. 정책여건

o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국민 체감도와 참여도는 낮은 실정

o 산림행정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나. 기본방향

o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니즈기반 산림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o 산림행정3.0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각급 기관·단체의 노력 강화

o 국민·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과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 확산·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1) 내실있는「산림행정3.0 실행계획」수립·추진

o「산림행정3.0 실행계획」에 따른 기관별 자체 실행계획 수립(1월)
-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개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책역량 제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원천정보·데이터 공개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 공공기관(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및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o 국민·임업인 체감도가 높은 핵심과제 선정
- 본청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핵심과제 선정
- 핵심과제의 성과창출을 위해 민간자문단 등 전문가 집중 컨설팅, 과제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해결

2) 산림행정3.0 성과창출 및 확산

o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핵심과제 추진부서 또는 기관에 컨설팅, 예산 등 집중 지원
- 산림행정3.0 업무평가시 우수기관·부서에 인센티브 부여

o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혁신 운동 전개
- 행자부의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표준모델' 보급·적용 및 조직문화 진단
- 국민참여 문화 확산 및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문서·회의·행사 간소화

o 우수사례 창출을 통한 산림행정3.0 성과 확산
- 주간단위 산림행정3.0 우수사례 발굴·공유
- 산림행정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상·하반기)
- 언론기고, 기획보도 등을 통한 산림행정3.0 사례 홍보

o 나라e음 활용 정착 및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
- 영상회의, 협업과제, 기관간 메모보고 등 나라e음을 통한 협업체계 정착
- 민간수요를 반영한 사전정보 공표, 원문정보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3)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변화관리

o 산림행정3.0 이행상황 관리를 위한 점검·진단 강화
- 간부회의 성과 점검, 성과보고회, 정부3.0 책임관 주재 점검회의 등
- 민간자문단, 정부3.0 강사단 등 외부전문가의 진단 활성화

o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산림행정3.0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산림행정3.0 성과창출 특별교육
- 산림행정3.0 정책과정 운영(산림교육원), 온라인·모바일 교육 확대

o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
-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임업인, 산주와의 인식공유 활동 적극 전개
- 산림행정3.0 추진 성과를 알리는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 배부
- 정책이해도 향상을 위한 기획보도(신문·방송), SNS 홍보 활성화

o 산림행정3.0 민간자문단을 활용한 핵심과제 컨설팅
- 주요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될 때까지 책임 자문

o 산림행정3.0 추진에 따른 제약요인 발굴 및 해결
- 제약요인 해결을 위한 T/F 구성·운영 등

라. 추진일정

o 산림행정3.0 동영상·리플렛·포스터 제작 배부 : 2015. 1월

o 산림행정3.0 자체 실행계획 수립 및 핵심과제 선정 : 2015. 1월

o 산림행정3.0 우수사례 발굴·제출 : 수시(주간단위 사례 수집)

o 산림행정3.0 이행상황 점검 : 수시

o 산림행정3.0 우수사례 경진대회 : 상반기(6월), 하반기(10월)

o 산림행정3.0 정책과정(산림교육원) : 연중(4회)

o 산림행정3.0 성과보고대회 : 2015. 11월

4. 산림행정 효율성 향상

목 표

◇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창의성 증진
◇ 현장과의 소통 및 산림정책의 현장 대응력 강화

가. 정책여건

o 정부3.0 시대를 맞아 국민·현장·문제해결 중심으로 산림행정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o 불필요한 관행,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절차 등으로 산림행정의 효율성·창의성 등은 여전히 낮은 실정

나. 기본방향

o 효율성·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획기적으로 개선

o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산림정책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산림행정 효율성·창의성 증진

o 불필요한 관행·불합리한 업무절차를 발굴하여 개선
- 불필요한 행사·회의 등을 조사·분석하여 획기적으로 감축
- 불필요한 일 버리기, 정기 및 수시보고 폐지 등 업무량 감축 방안 마련
- 비공식적인 절차,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 등 발굴·개선

o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 활성화
- 내부 제안 활성화를 위해 e-푸른샘 게시판에 상시 제안방 운영 및 채택 제안의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제 시행
-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과제 등의 공모제안 확대 실시(3회→5회) 및 채택제안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o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업무의 창의성 증진
- 우수 연구모임 포상 및 수범사례 발표회를 통하여 성과 전파 및 공유

2) 온라인 정책토론 및 정책실명제 운영 내실화

o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내실화
- 시기별로 국민이 관심 있는 과제, 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토론과제 확대 선정
- 토론과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토론결과 및 정책반영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o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산림행정의 투명성 제고
-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들에 대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3) 현장과의 소통 및 산림행정 정책네트워크 강화

o「산림청정책자문위원」,「산림정책평가위원」,「산림행정연구회」등 전문가 그룹과의 워크숍, 토론회, 현장 탐방 등 활성화

o「시・도 산림부서장 협의회」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자체와 소통 및 협력 강화

o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현안 점검회의」운영
- 현안점검회의 상정 안건을 월별 수요조사를 통해 내실화 도모

라. 추진일정

o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 2015. 2월

o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추진 계획 수립 : 2015. 4월

o 산림청 온라인 정책토론 운영계획 수립 : 2015. 4월

o 산림청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 2015. 5월

o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분기별 1회

o 자체 제안 심사위원회 운영 : 반기별 1회

o 시・도 산림부서장 협의회 개최 : 상·하반기 1회

5. 산림행정 평가 및 성과관리

목 표

◇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산림행정의 성과 제고
◇ 평가 결과와 인센티브가 연계되는 객관적인 보상체계 정착

가. 정책여건

o 정부업무평가가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역점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지원에 중점

o 산림분야 평가체계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되 자율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o 국정기조를 반영한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분야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핵심과제 목표 달성

o 자체 평가 결과가 정부업무 평가와 직결될 수 있게 평가체계를 개선·보완하고 평가의 공정성 강화

o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를 활용하여 현안과제의 성과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정기조와 정책여건을 반영한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이행

o 국정과제,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 핵심과제의 주요 지표 및 내용, 대통령 지시사항 등 반영

o 성과지표를 정부업무평가 방향에 맞춰 결과지표 위주로 전환
- 결과지표 비중 : ('14) 64% → ('15) 80%

o 성과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점검결과(반기)를 주요정책 자체평가에 반영

2) 내실 있는 평가제도 운용 및 체계적 성과 관리 추진

<특정평가>

o ’15년 정부업무평가 방향과 ’1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및 우수부처 성과관리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성과 관리 방향 설정

o 과제선정 후 매월 차장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추진일정 및 주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관리하는 등 정부업무평가에 철저히 대비

o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관심과 성과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 부서에 가·감점 부여

<주요정책 자체평가>

o ’15년 정부업무평가 방향 및 ’14년 자체평가 결과 분석, 직원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자체평가 계획 수립

o「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사업부서별 주요정책)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추진에 반영
- 자체평가 절차 : 전문위원평가 → 설명회를 통한 소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공개 → 부서 이의 신청 → 평가총괄부서 검증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본청・소속기관 평가>

o 국정과제, 규제개혁 등 특정평가과제의 목표달성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본청·소속기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에 반영

o 본청·소속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적 성과보상 실시
- 평가결과는 5급 이하 성과급 및 4급 이상 성과연봉 책정 시 반영
- 우수 부서·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 주관)>

o 지자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의 성과제고 위주로 지표 개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재해 방지 등

o 특·광역시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 등을 행자부와 협의하여 개선

o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수기관 차등 선발
- 우수 광역지자체는 시와 도로 구분·평정하여 선정(시 4, 도 5)
- 우수 기초지자체는 행정자치부 실적자료를 근거로 전체 평가대상 시·군·구 중 성적 우수기관 선정(시단위 5, 도단위 10)
-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 및 해외연수 기회 부여

3)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 활성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구성(4월)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14.7.9)에 따라 내부위원(본청 국장) 위촉 및 위원 연임 제한(1회) 규정 적용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정기회의(1월, 5월) 및 현장토론회(8~9월) 개최

o 평가위원의 산림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한 소위별 현장설명회 개최(8~10월 사업부서별 연 1회) 및 산림정책 자료 제공(사업부서별 연 2회 이상)

라. 추진일정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구성 : 2015. 4월

o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 : 2015. 5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개최(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확정 등) : 2015. 5월

o 본청・소속기관 평가계획 수립 : 2015. 6월

o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 2015. 7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현장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 2015. 8~10월

o 특정평가 추진실적 제출(국무조정실) : 2015. 11월, 12월

o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공개 및 포상 : 2015. 11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개최(주요정책 자체평가) : 2016. 1월

o 본청・소속기관 평가 결과 포상 : 2016. 1월

6. 산림행정 조직 및 정원관리

목 표

◇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

◇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 인력 배치

가. 정책여건

o 산림복지, 산림재해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인력 운영 방침상 신규 조직 및 인력 확대는 어려운 상황

o 정부의 통합정원 감축, 인력 효율화 등의 과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

나. 기본방향

o 법령 제·개정, 시설 도입 등의 수요는 기구 및 정원을 신규 확보하여 충당

o 쇠퇴 기능, 유사 중복 업무 등은 발굴하여 국정과제 등의 분야에 재배치

다. 세부추진계획

1) 2015년 소요정원의 조기 직제 반영

o 행자부·기재부 협의 완료된 정원(13명) 및 직급 상향 인력(5명)을 1/4분기 중 직제 개편하여 배치

o 증　　원 : 13명(5급 2, 6급 6, 7급 3, 연구관 2)

- (본청) 임업금융보험 2, 개인정보보호 2, (산항) 항공기조종사 5, (과학원) 바이오에너지 및 사막화 연구 2, (휴양림) 아세안단지 등 2

o 직급상향 : (본청) 5급 4 → 4·5급 4, (지방청) 서부지방청장(4급 → 3·4급)

2) 법령 제·개정, 신규 시설 도입 등에 따른 기구·인력 확보

o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인력 확보 방안 마련

o 백두대간수목원('16. 하반기), 산림약용자원연구소('16. 상반기) 등의 개원에 맞춰 소요정원 확보 대책 강구

o 한시조직('17.1.27. 만료)인 산림복지시설사업단의 재편 방안 마련
  - 백두대간수목원('16. 하반기 개원), 치유단지('16. 상반기 개원), 중앙수목원('21년 개원), 새만금수목원('18년 사업착수)

3)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 강구

o 조직 진단을 통해 유사기능 일원화, 소규모 분산 조직의 규모화, 공통인력 슬림화 등 합리화 방안 수립

o 인력 효율화, 통합정원 감축 등을 연계하여 종합계획 수립

4)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 내실화

o 그동안 운영성과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향 모색

o 조직 발전과 하위직 사기진작이 조화되는 세부운영계획 마련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별도 수립

5) 무기계약직 정원 관리 강화

o 무기계약직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도출

o 부서·기관별 특성, 담당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원 배정기준 마련

라. 추진일정

o 2016년 소요정원 요구 및 중기('15~'19년) 인력운영 계획 마련 : 2015. 4월말

o 무기계약직 실태분석 및 합리화 방안 수립 : 2015. 1~3월

o 2015년 자체 조직진단 실시 : 2015. 1~4월말

o 2015년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2015. 5월말

o 2015년 소요정원 반영 등을 위한 직제 개정 : 2015. 1분기

o 2015년 통합정원 증원 등 수시 직제 개정 : 2015. 3분기

o 조직 관련 연구 용역 : 2015. 3월~12월

o 소속 정부위원회 운영 관리 : 연중

7. 법제업무의 전문성 강화

목 표

◇ 법제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차질 없는 입법 추진

가. 정책여건

o 최근 산림관련 규제관리 강화로 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o 의원입법 증가로 법률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부서 간 이견 조정 필요성 증대

※ 의원발의 법률안 수 : ('13) 34개 → ('14) 45개

나. 기본방향

o 법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법안의 적기 처리 및 관련 문제발생의 사전 예방 도모

o 내실 있는 법령정비협의회 운영을 통해 의원입법에 적극적으로 대처

o 국가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2015년도 「정부입법계획」 조기 추진 및 하위법령 제때 마련

o 정책여건 변화, 규제완화 및 법제처 정비권고의견을 반영한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법안의 조기 처리

- 정부입법(4건) :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20대 국회의원 선거('16.4)를 고려하여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계획 구성

o 제·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때 마련

2) 법제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o 법제업무 기본지식 강화를 위한 법령 입안 매뉴얼 제작·배포
  - 법률용어, 법령안 작성요령, 법제실무,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 등
  - 입안부터 법령안 공포까지 각 단계별 유의사항 및 작성절차 포함

o 법제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

3) 법령정비협의회의 내실화를 통한 의원입법 지원 강화

o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법령정비협의회의 필수 개최를 통해 법률안 사전 검토 및 부서 간 이견 조정

o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법리적 문제, 산림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법률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4) 산림관계 법령의 내용분석을 통한 입법 미비사항 보완

o 산림관계 법률의 제·개정 및 분법에 따른 법체계상 모순사항과 미비사항 분석·보완

o 행정규칙 제·개정 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의 내용 검토 강화 및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부패유발 요인의 사전 제거

5)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 내실화

o 의견조회 요청된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및 적극적 의견제시로 우리 청 의견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법령의견조회/공문생산 : ('12) 2,999/467건 ⇒ ('13) 4,813/571건 ⇒ ('14.12.10) 2,984/630건

o 타 부처 법령안의 제·개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

6) 국가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

o 집중심리제 및 전자소송제도 정착으로 변론기일 단축에 따른 준비서면에 대한 검토지원 및 행정심판 지원(각 지방청별 공익법무관 배치)

라. 추진일정

o 2015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 작성제출 : 2014. 11월

o 산림관계 법령집 및 훈령·예규집 제작 : 2015. 9월

o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 연중

o 행정규칙 부패영향 평가 실시 : 연중

8. 산림분야 규제개선 추진

목 표
◇ 규제개혁시스템 개혁 및 규제개혁 국민체감도 향상

가. 정책여건

o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존규제 감축, 핵심규제 개선 집중, 네거티브·일몰제 적용 확대 등 “규제시스템 개혁” 추진

o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

o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전면 도입

나. 기본방향

o 산림분야 규제의 3대 핵심분야인 산지이용, 목재산업 및 임업활성화, 신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규제시스템 개혁” 지속 추진

o 규제애로 발굴·개선·홍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규제개혁 모멘텀 마련

o ‘산림청 민・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규제비용 총량제(Cost-In, Cost-Out)’의 성공적 정착으로 규제비용 증가 억제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분야 규제의 3대 핵심분야인 산지이용, 목재산업 및 임업 활성화,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규제시스템 개혁 지속 추진

o **(산지이용)** 산지규제 중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합리적 이용을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 도모

o **(목재산업 및 임업)** 목재산업 및 임업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o **(신산업 육성)** 산림휴양, 치유, 복지, 교육 등의 산림분야 신산업이 성공적으로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

o **(규제시스템 개혁)** 기존규제 감축(’17년까지 20%), 시급성·파급효과를 감안 핵심규제 발굴·개선, 네거티브 확대 및 일몰설정 등 규제시스템 정착

2)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 발굴·검토·추진 과정별 역할 분담으로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체계 마련

o 민원사항, 건의사항, 공모과제 등을 분석하여 과제 발굴 (법무감사실)

o 발굴된 과제 검증 및 확정 (규제개혁 TF팀, 민·관규제개혁위원회)

o 발굴 과제 추진(사업부서) 및 추진상황 지속 점검 (신호등 부여-법무감사실)

3) 그간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피드백 및 홍보 실시

o 산림청 민·관규제개혁위원회, 산림분야 규제개선 민·관협업체, 민원보호 담당관, 현장특임관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 수렴

o 그간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성과 분석 및 역작용에 대한 AS 추진

o 규제개혁과제은행 운영 및 뱅킹 관리(과제별 코드화) 지속 실시

o 일반국민, 임업인, 산업계 등으로 구분, 수요자 중심의 (언론)타킷형 홍보 실시

* 현장밀착형 입소문 홍보, 쌍방향 미디어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한 실시간 홍보, 유관기관·단체 등과 매체협업 홍보 실시

4) 신설·강화 규제 발생 최소화 및 규제개혁 민·관 파트십 강화

o 2015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 성공적 정착으로 규제비용총량 유지 또는 감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규제비용평가팀과 협업을 통해 규제비용 분석

o 산림청 민·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회 개최횟수 확대(분기별 1회), 인터넷 등 활용한 소통 강화

라. 추진일정

o '15년도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시달 : 2015. 1월

o 규제개혁 홍보(본청, 지방청) : 규제개혁과제 발굴, 법령 입법예고 및 제·개정시

o 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각 지방청) : 분기별 1회

o 산림교육원 규제개혁과정 교육 추진 : 2015. 5월, 9월

o '15년도 규제개혁 만족도 및 성과 조사 용역 추진 : 2015. 10~11월

9. 민원만족도 제고

목 표

◇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국민 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개선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가. 정책여건

o 정부3.0 핵심가치(개방·공유·소통·협력)에 기반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중심 민원행정 추진

o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행정, 법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행정 등으로 인해 다양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o 공장, 주택 등의 산지개발 수요와 관련하여 수용이 어려운 국민 요구 증대

나. 기본방향

o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

o 국민편의를 위해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o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o 민원1회 상담창구, 민원후견인 게시, 민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활성화

o 사회적 취약계층 및 신세대의 이용편의를 위해 민원대표번호(1588-3249)의 문자발송기능을 홈페이지에 구축

o 산지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 및 불만사항에 대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충분한 상담을 해 주는 민원보호담당관(2명)을 운영

- 운영부서 : 법무감사담당관실(1명), 산지관리과(1명)

2) 적극적 민원 대응을 위해 민원공무원의 전문적 역량 강화

o 민원공무원 워크숍, 산림치유 프로그램, 민원교육과정 등 민원공무원 대상 교육훈련을 강화

o 모든 민원공무원은 민원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에 관해 알기 쉽게 만든 민원사무편람을 적극 활용

3)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분석 및 환류

o 매월 접수·처리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율, 민원답변 충실도,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수립·시행

o 매주 처리된 민원에 대한 불만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민원만족도 부진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교육(집합교육, 영상회의) 실시

o 매일 민원처리기간 및 불만민원 현황을 담당자에게 알리는 '미처리 민원현황 사전알림서비스' 실시

o 매월 민원만족도에 응답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된 민원인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

4) 산림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추진

o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전화친절도를 향상하고 산림청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

- 조사 횟수 : 연 2회(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o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하고 주도하는 고객만족(CS) 실천리더 선발·운영

- 부서(기관)별 1명씩 CS 실천리더를 선발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우수 CS 실천리더 경진대회 개최(하반기)

5) 직원 및 신규자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 강화

o 고객만족 서비스 기관별 맞춤형 순회교육 실시(2~3월)

o 산림교육원 신임실무자과정에 '민원만족도 제고방안' 교과 편성(2시간)

o 산림교육원에 '고충민원 및 갈등관리 전문교육' 개설·운영(연 2회, 총 6일)

6) 갈등관리 업무강화로 갈등예방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

o 잠재적 갈등과제에 대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반기별)

o 갈등영향분석 활용 제고를 위해 '갈등영향분석 가이드라인' 작성

라. 추진일정

o 국민신문고 민원처리현황 분석 : 매월

o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주간 분석 : 매주

o 고객만족(CS) 서비스 교육 : 2015. 2~3월

o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시달 : 2015. 3월

o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 2회(상·하반기)

o 산림행정서비스 전화친절도 조사 : 2015. 5월·10월

o 우수 CS 실천리더 경진대회 개최 : 2015. 11월

10. 산림행정의 투명성 및 자체감사 생산성 제고

목 표

◇ 산림정책 ·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및 투명성 확보
◇ 자체감사 운영 내실화 및 생산적 제도개선 추진

가. 정책여건

o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감사 및 제도개선 추진
o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o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창출

나. 기본방향

o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적극 추진
o 감사처분 이행실태와 반복지적 사례를 점검하여 사후관리 강화
o 행정 면책제도 적극 운영 및 우수기관·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

다. 세부추진계획

1) 자체감사 내실화 및 생산적 제도개선 추진

o 자체감사의 효율적 수행(19회, 46기관)
- 종합감사(7회) : 북부지방산림청(8), 동부지방산림청(7), 중부지방산림청(5), 국립수목원(1), 산림교육원(1),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본부(9)
  * 동부지방산림청은 감사원 특정감사 예정
- 재무감사(2회)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4)
- 특정감사(3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1),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1), 산지구분업무(경기, 강원, 전남, 경남, 세종)
- 복무감사(4회) : 설 명절, 하계휴가, 추석 명절, 연말연시
- 합동감사(3회) :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 참여(충북, 전북, 경남)

o 현장과 맞지 않는 산림정책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
- 일선현장의 추진·적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산림정책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 현장의 공무원들이 느껴왔던 실질적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o 감사처분 이행실태 점검 및 반복지적 사례 엄단
- 감사처분 미 이행 및 소극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엄벌 조치
- 반복지적 사례는 재발방지를 위해 가중 처벌

o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활동 강화
- 재정적・행정적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

o 감사반복 지적사례 권역별 순회 교육
- 공직윤리 위반사례, 관행적 부조리, 잘못된 답습 사례 및 반복 지적사항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교육 실시로 재발 방지

o 정부합동감사 참여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적정 이행 여부 점검
- 공·사유림의 산림정책·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 발굴 개선
- 산지전용, 조림, 숲가꾸기 및 산지전용 등의 보조사업 이행실태 감사

2) 전문성 강화 및 감사기법 습득

o 감사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기법 습득 및 분야별 전문가 감사 참여
- 감사담당자의 감사관련 직무교육 의무 이수(40시간/년)
- 국립산림과학원 등 연구 분야 감사에 전문가 교차 참여로 효율성 제고

o 우리청과 소속 단체와의 민·관 감사협의회 운영
- 구성 : 산림청 감사업무담당,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조합감사위원회, 한국임업진흥원 감사담당, 녹색사업단 감사역
- 감사성과, 감사사례, 감사경험 등을 공유하여 보다 생산성 있는 감사 추진

o 산림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감사관(2명) 운영 및 활용 강화
- 산림분야 비리·불만사항 제보 및 자체 감사 활동에 참여
- 수감기관 대상 청렴 및 공직윤리 특강 등

3) 행정 면책제도 적극 운영 및 우수·모범 공무원(기관) 발굴·포상

o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적극행정 면책 처리

o 예산절감, 창의적 업무수행 등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및 기관(부서)

라. 추진일정

o 2015년 자체감사 계획 등 수립 : 2015. 1분기
o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반복 지적사례 권역별 순회 교육 : 2015. 상반기
o 민·관 감사협의회 운영 : 2015. 상·하반기
o 자체감사 결과 우수·모범공무원 발굴·포상 : 연중

11.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및 공직기강 확립

목 표

◇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으로 기관청렴도 제고
◇ 공직기강확립으로 신뢰받는 산림행정 구현

가. 정책여건

o 국정 기조에 따른 반부패·기강해이 등 공직기강 확립 강화
o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 노력

나. 기본방향

o 청렴교육 및 청렴도 평가로 청렴문화 정착
o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공직감찰팀 운영
o 취약분야 부패요인 및 불합리한 관행·제도 발굴 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으로 기관청렴도 제고

o 반부패 청렴평가 실시 및 환류 기능 강화
- 고위공직자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하반기)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실시(하반기)
-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자율적 관행·제도 개선 추진
- 민원분야 청렴도 조사를 위한 Clean-call 설문지 발송 및 모니터링(연중)
-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온라인 자가 측정 및 분석

o 부정부패 사전예방 및 청렴생활 정착을 위한 '신고/고충상담'방 운영
-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청탁등록센터' 운영
- 금품 향응제공, 상사의 부당한 지시 등 음성적 비리에 대한 제보 및 고충 상담을 위한 무기명 '고충·비리 상담·신고방'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력 향상 등을 위한 '행동강령 상담센터' 운영

o 청렴교육 및 홍보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지속적 실시
: 5시간 의무 이수, 신규·승진자 및 고위직 진입 시 2시간 추가 이수
- 산림교육원 청렴교육 내실화(청렴교육과정 운영 및 부패취약분야 직무교육에 청렴 과목 배정)

o 내부 인트라넷(e-푸른샘)에 '청렴 팝업창'을 게시하여 청렴 생활 정착
- e-푸른샘 로그인 시 관행적 공직비리 근절과 청렴,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등에 관한 문구 게시

o 청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청렴산림공무원상 포상
- 청렴생활, 반부패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청렴공무원 발굴·시상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산림행정 구현

o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잘못된 관행·제도 발굴 개선
- 부패척결 5대 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감사활동 강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잘못된 관행·제도 발굴 개선 추진

o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연중, 취약시기 직무감찰 실시
- 공직감찰팀 상시 운영으로 공직비리 사전 예방
- 총선 전·후, 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금품・향응수수 등 개인 비위공직자 발본색원 및 엄정 처벌
-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 칸막이, 이기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차원에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및 문제인물에 대한 집중 감찰을 전개하고 언론보도, 외부기관 통보사항, 민원내용 등 모니터링 강화

o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 공직자 비위 적발사항에 대하여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엄정 처벌
- 개인 비리자에 대하여 패널티 부여(성과상여금 하향 등)
- 개인비리 발생기관은 소속기관 업무평가에 반영
- 외부 비위통보자에 대한 비위사건 처리기준 이행실태 모니터링

라. 추진일정

o 2015년 부패방지・공직기강확립 계획 등 수립 : 2015. 1분기
o 내부인트라넷 '청렴 팝업창' 운영 : 연중
o 공직감찰팀 운영 및 취약분야·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 연중
o 산림청 공무원행동강령 자가 측정 : 2015. 상・하반기
o 고위공직자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2015. 하반기
o 소속·산하기관 반부패 청렴시책 평가 실시 : 2015. 하반기
o 청렴산림공무원 발굴·포상 : 2015. 하반기

12.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산림행정’ 구현

목 표

◇ 일 잘하는 유능한 산림청 구현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 산림행정3.0 비전 달성을 선도하는 산림ICT서비스 구축
◇ 산림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민간 홍보강화 및 지원기반 마련

가. 정책여건

o “초연결 창조한국” 차기 국가정보화 비전 확정에 따라 업무환경이 급속도로 변화
-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 국가사회 전반으로의 정보화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 패러다임 및 트렌드 변화
- 폭증하는 데이터의 관리개선방안 마련 및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화 추진

o 공공데이터 개방 3년차로서 산림공공데이터 민간이용 활성화 및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필요

o 완성된 국유림산림통합체계를 지속적인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관리 필요

나. 기본방향

o 수요자와 고객 중심의 맞춤형 대국민포털서비스 구현

o 국가산림통합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o ICT 기반의 국유림경영업무 선진화

o 모바일 기반의 창조적 현장업무 확산

o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민간 이용활성화 촉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제2차 정보화기본계획(’15～’19) 확정 · 시행(1월)

o 국가산림 정보화 통합체계를 완성하여 POST2020 대응

o (전략) ①국민중심의 산림서비스, ②국가산림 정보화 사유림 확대
③예측기반 산림행정 체계 달성

2) 국가산림경영계획 통합 관리체계 구축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소득업무프로세스 온라인 지원
- 보호협약, 소득사업, 임산물현지조사 온라인 서식 지원
- 양여신청의 신청 및 승인 프로세스 구현
- 임산물 현지조사 지원을 위한 조사자료 내려받기, 수행 및 조사결과의 자동 입력 기능 구축

o 국유림경영DB 현행화 및 임·소반도 정비사업 추진
- 64개 경영계획구에 대한 국유림경영 DB 현행화
- 임·소반도 현행화를 통한 임·소반 이력관리 및 국유림경영 의사결정 지원

o 국유재산 관리면적 변동 실시간 분석을 위한 국유재산관리시스템 연계 추진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국유림경영현황 및 국유재산 관리면적의 실시간 변동 조회 기능 구축
- 국유재산관리시스템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상호 데이터 연계

3) 산림토목 업무 정보화를 통한 산림기반시설 통합관리기반 마련

o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정보, 정기점검 및 보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임도의 시설설치계획, 유지관리, 현황통계 및 이력관리 기능 구현
- 국·사유림 임도 이력정보 및 임도망도에 대한 DB 현행화 추진
- 외주인력, 자산(관용차량) 등 산림기반 업무의 통합관리 확대기반 마련

o 산림토목(임도) 분야의 실시설계, 시공감리 등 용역사업관리 확대 구축
- 계획, 설계, 사업실행, 준공, 보수관리 등 임도 용역사업 관리체계 구축
- 공간정보 기반의 용역결과 산출물 이력관리 기능 구현
- 외부 용역업체 사용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권한 및 인증체계 구축

4) 지자체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사유림 산림업무 확대 방안 마련

o 지자체 산림업무(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지원 정보화 추진방안 마련
- 새올, 사유림경영정보 등 업무 및 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 지자체, 용역수행업체별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방안 검증

o 국유림・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통합 관리체계 마련
- 사유림의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이력관리 체계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 관리
- 사유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의 지원, 경영현황 정보 제공
- 사유림경영 실적 연계를 통한 이력관리 체계 마련

5) 실무중심의 국유재산 업무 정보화 지원체계 수립 추진

o 지방청(관리소) 국유재산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정보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재산 취득·처분, 대부·사용허가, 무단점유지, 산지전용, 사유림매수, 민원 소송 업무를 포괄하는 정보화 추진을 위한 ISP/BPR 추진

o 국유재산 관련 업무간 효율적인 연계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 국유림경영정보, 산림자원통합, 산지전용, dBrain, 온나라 등 정보시스템 간의 체계적인 업무 처리 및 정보 연계 방안 수립

o 국유재산 업무 관련 대장 및 기존 데이터 정비 및 현행화 방안 마련
- 국유재산 변동사항 : 국유림관리소별 700건/년(전체 약 2만건/년)
- 기존 dBrain, 국유재산관리시스템 등내 등록, 운영 중인 데이터 현행화

6) 미래형 정보환경으로 기반 마련

o 휴양림정보시스템 등 클라우드 전환(계속) 추진 및 운영
- 자연휴양림정보시스템의 DB 클라우드 전환 추진
- 2014년 전환된 대표포털에 대해 순간접속자가 급증하는 성수기(7~8월)에는 자원을 할당받아 서비스

o 모바일 산림행정지식 체계 마련
- 모바일 온-나라, e-사람, 모바일 서비스 (3월)
- 공지사항, 경조사, 직원찾기, 전자메일 기능 모바일 시스템 구축

※ 서비스 기종 : 갤럭시 S4·S5, 베가아이언 등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o 스마트야장과 정보시스템간의 정보 연계 및 현장처리 기능 고도화
- 스마트야장과 정보시스템간의 상호 정보 연계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스마트야장 정보조회 기능 강화(경영업무(3종)), 자원업무(5종), 토목업무(1종))
- 국유림관리소(2개소) 대상 WiFi 기반 정보 연계 시범 사업
- 노후 모바일장비 교체 및 활용을 위한 확대 보급 (10월)

7) 산림청대표포털 편이성 강화 및 웹접근성 유지

o 산림행정 3.0 구현 지원을 위한 대표포털 개편 및 운영

o 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등)도 손쉽게 대표포털을 이용하도록 웹 접근성 강화 추진

8)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고가치·고수요 산림공공데이터 개방

o 산림재해위치정보, 곤충도감 등 8개 DB를 단계적으로 개방
- 기업과 개발자의 활용이 용이한 오픈API 방식으로 개방하여 제공
- 농식품부 데이터포털 등 내외부와 연계하여 개방창구의 접근성 강화

o 산림공공데이터의 대용량화 및 유관DB와 연계·융합으로 민간 활용도 제고
- 산정보, 등산로, 숲길, 숲이야기 등 관련정보 통합하여 제공
- 지자체 보유 등산로정보를 수집, 재정비하여 등산로 개방 확대
- 국립관리공단 등과 연계·융합을 위한 DB표준화
- 구축DB 품질진단 및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개발

※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주요재원 확보

o 개방DB 민간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 강화
- 민간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홈페이지(data.forest.go.kr) 개선
- 개방 설명회, 기업간담회,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통해 홍보 강화
- 민간의 타부처 창업지원 프로그램 활용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창업진흥원 등) 협력 체계 강화
- 스마트 국토 엑스포 등을 참여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이용활성화 유도

o 신규사업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공데이터 개방계획을 반영

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o 산림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체계 강화
- 유지보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수준관리(SLM, Service Layer Management) 적용
- 유지보수 지원범위 모바일서비스, 소속기관 스마트 기기까지 확대 운영

o 2차 소속기관 네트워크 집선화 및 고속화(2M→4M)로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 집선화(17개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차 소속기관
- 고속화(10개소) :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차 소속기관

10) 정보화용역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o 정보화사업의 계획·사업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추진
- 정보화사업의 계획수립, 사업관리, 검수까지 참여하여 성과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현업 정보화사업담당자의 업무부담 최소화 추진

o 정보화사업 성과품(정보시스템, 관련 산출물 등)을 EA시스템 등록 철저

o 제·개정된 정보화 관련 법제도 및 GEAP(안전행정부), 공개SW저장소(지식경제부) 등 중앙행정부처용 공통시스템 서비스 대응 체계 마련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통컴포넌트 자산화 체계 수립

o 국가산림정보센터(가칭) 설립 기반의 산림 정보화 추진 체계 수립

라. 추진일정

o 제2차 산림정보화 기본계획(2015~2019) 확정 시행 : 2014. 1월

o 2014년도 정보화시행계획 및 성과시행계획 마련 : 2015. 4월

o 2015년 정보화예산 확보 : 2015 1~8월
- 중기사업계획 마련 : 2015. 1월
- 정보화예산 : 2015. 3~8월

o 모바일전자정부(온-나라, e-사람) 서비스 추진: 2015. 3월

o 노후 전산장비 교체 : 2014. 5월

o 소속기관 네트워크 집선화 추진 : 2015. 5월~8월

o 개방설명회(기업간담회,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2015. 9월

o 15개 DB에 대한 단계적인 개방 추진 : ~ 2015. 11월

o 정보화 용역사업 주요 추진 일정
- 국가산림정보화 고도화 구축 사업
  · 행정자치부 사전협의 : 2015. 1월
  · 사업계획 보고 및 발주 : 2015. 1월
  · 사업관리(착수, 워크숍, 중간보고, 완료보고) : 2015. 4~12월
  · 최종검수 및 인수 : 2015. 12월
- 정보화 운영·유지보수
  · 2015년 통합운영·유지보수 계획 및 발주 : 2014. 12월
  · 2015년 통합운영·유지보수 실행 : 2015. 1~12월
-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자연휴양림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2014. 3~12월
  · 대표포털시스템 클라우드 자원할당 : 2015. 7~8월
- 대표포털 개편 및 운영
  · 신규 대표포털 시스템 오픈 : 2015. 1월
  · 웹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 획득 추진 : 2015. 5월
  · 신규 콘텐츠 추가 및 내용 정비 : 2015. 1~12월

1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목 표
◇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침해사고 예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소속기관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조직 강화

가. 정책여건

o 3.20 및 6.25 사이버 테러 발생과 IT인프라 확대 등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보안 관리체계 내실화 필요

o 지속적인 사이버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과 모바일 장비의 사용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협 증가

o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불감증으로 인한 정보유출 가능성 존재

나. 기본방향

o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o 위협 요인에 대한 취약요소 제거 및 예방적 차원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 추진

- (개인정보) 계단위 조직 신설 및 관리체계 세분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소속기관별 관리조직 강화
- (정보보호) 모의훈련, 인프라 강화, 예방 중심의 지도 활동을 통한 예방 대응력 강화

o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정부 3.0 기반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성

o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전문인력 채용(5급1, 7급1)을 통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체계화된 업무 추진

o 소속기관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관(CPO) 지정・운영

- 소속기관 조직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부서장급 책임관(CPO)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내부관리체계 강화

2)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예방관리 및 지도감독 강화

o 정보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소속기관 맞춤형 취약분야 개선

- 소속·산하기관 대상 정보보안 취약성 개선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등의 정보보호 지도활동 실시
- 최신 도청기기를 통한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대도청 측정 시행
- 개인정보취급자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을 통한 지도활동 강화
- 개인PC의 개인정보파일 대청소를 통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 강화

o 침해사고 및 정보유출 대비 모의훈련 및 IT재난 예방을 위한 점검

-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대비 모의훈련 및 모의해킹메일 훈련 실시
- IT 재난대비 사이버분야 안전대책 사전 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

o 소속기관 정보보안책임자 · CPO 정보보안 의식강화 워크숍 추진

o 전직원 및 담당자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관련 업무능력 향상

- 상·하반기 2회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소속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속기관 순회교육 및 워크숍 실시

o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 및 매뉴얼 개정 등 업무체계 정비

- 최근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환경 변화 등을 검토하여 자체 내규 제·개정 추진
- 사이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 자체 실무매뉴얼 제·개정

3) 사이버위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프라 강화

o 소속기관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

- 비인가 무선네트워크(에그, 무선AP 등)를 통한 정보유출을 상시 차단하고 업무망 해킹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차별로 전 소속기관 확대 구축

o 자료유출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본청의 업무PC↔인터넷PC 간 자료 전송 시 사전(사후) 승인시스템 도입을 통한 자료유출 방지체계 구축

o 지능형지속위협(APT)공격 차단 솔루션 도입

- 지능적·지속적으로 유포되는 악성코드에 의해 사용자PC가 감염되기 전 의심 악성코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정보유출 방지 및 보안 강화 시스템 구축

4) 보안취약점 진단사업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위탁

o 대민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사업

- 설정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을 보안취약점 점검을 통해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실시
-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및 정보보안 실태평가, 개인정보보호 · 대민서비스 수준진단 대응 강화

5)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실시

o 우리 청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예방활동 등을 진단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행정자치부 주관)

- 우리 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3개 분야, 11개 지표, 23개 진단 항목에 대한 이행 실시

o 국가 정보보안 정책 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우리 청이 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토록 지원(국가정보원 주관)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전직원의 보안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정보보안 수준 제고 및 국가 사이버안전 확보
- 6개 분야, 28개 지표, 115개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 추진 강화

o 전자정부 대민서비스의 정보보안 수준제고를 위해 기관에서 필요한 보안관리 항목의 점검여부 및 개선결과 평가(행정자치부 주관)

- 웹 취약점점검 등 행정자치부(통합센터 등) 지원사업 및 우리청 자체 점검 등을 통한 사이버위협 취약점 제거로 침해사고 예방 강화

6)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강화

o 정보화용역사업 책임자 정보보안 의식 제고 및 용역사업 보안관리 강화

- 정보화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단계별 보안성 검토사항 중점 점검 실시
  - ·(전) 사업참여자 전원 보안각서 징구
  - ·(중) 사업장 점검 및 참여자 대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후) 중요 정보 노출금지 등 대표자 명의 각서 징구 등
- 정보화용역사업 책임자의 정보보안 전문 교육을 통한 책임의식 제고
- 외부용역사업장의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보안대책 이행 등 상시 점검

라. 추진일정

- o 소속기관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관(CPO) 지정·운영(3월)
- o 소속·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등 지도활동(4월)
- o 각 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4월)
- o 개인PC의 개인정보파일 대청소 실시(5월)
- o 최신 도청기기에 대한 대도청 측정 실시(5월, 국가정보원)
- o IT 재난대비 사이버안전 분야 예방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5월)
-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및 조직 강화(6월)
- o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실시(6월~7월, 행정자치부)
- o 소속기관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6월)
- o 정보화용역사업 책임자 정보보안 강화 교육(6월)
- o 자료 유출예방을 위한 망간자료전송시스템 고도화(6월)
- o 개인정보 유출 모의훈련 및 모의해킹메일훈련 실시(7월)
- o 대민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사업(7월)
- o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위탁(7월)
- o 상·하반기 전직원·개인정보보호 교육(5월, 8월)
- o 소속기관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순회 교육(6월~7월)
- o 정보보안 내규 및 매뉴얼 개정(7월~9월)
- o 국가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실시(8월~9월, 행정자치부)
- o 지능형지속위협(APT)공격 차단 솔루션 도입(9월)
- o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워크숍(11월)
- o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안 수준 진단(12월, 행정자치부)
- o 정보화용역사업장 정보보안 이행점검 실시(상시)
- o 정보화용역사업 참여자 대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상시)

14. 산림공간정보기반의 산림정책지원체계 마련

목 표

◇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산림공간정보의 공유·활용체계를 통한 과학적인 산림행정 지원

가. 정책여건

o 제5차 산림기본계획('13～'17)에 따라 효율적인 산림행정지원을 위해 산림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서비스 마련 필요

o 공간정보에 대한 표준화 및 유관기관간 연계활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3.0 추진으로 산림공간정보의 개방·공유에 대한 수요가 확대

나. 기본방향

o 국가 산림공간정보체계 추진 계획('13.5월)에 맞춰 산림공간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

- 분산·운영되고 있는 각종 산림공간정보를 통합하여 산림행정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의사결정 분석 서비스를 마련

o 산림정책 지원에 필요한 산림주제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정부3.0에 따라 산림공간정보 유통서비스를 통한 산림공간정보의 개방·공유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상도 현행화 등 산림공간정보 확대·통합 구축

o 벌채·조림 등 산림변화에 따른 산림분포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도 현행화 사업 추진

- 매년 산림의 인위적 변화(조림, 전용)와 전국을 매 5년 주기로 자연적 생장을 반영하는 임상도 현행화 사업을 통해 산림통계 및 산림경영활동을 지원
- 대상지역 및 예산 : 충남·전북 등 / 40억 원

※ ('15) 127만㏊ → ('16～'19) 508만㏊(사업완료)

o 대축척 산림토양정보 연차별 구축을 통하여 단기임산물 재배적지 등 사유림 경영컨설팅 기반 마련

- 대상지역 및 예산 : 전남, 경남 / 31억 원

※ ('08～'14) 236만ha → ('15) 46만ha → ('16～'18) 306만ha(사업완료)

o 산림사업 업무 지원을 위한 산림공간정보 확대 구축

- 산림재해 및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국유 임·소반도 현행화 추진
- 백두대간정맥(22,724건), 산림유전자원(44,320건) 정보 DB 구축
- 도시림 식생정보 등을 DB로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 마련

2) 산림주제도 및 영상정보 관리서비스 구축

o 연차별 임상도 정보관리 등을 위한 산림주제도 관리체계 마련

- 각 부서에서 활용하는 임상도의 활용이력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 연차별 임상도 제작시기 및 대상지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o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거 산림항공사진의 정사영상을 구축하고 산림공간정보 통합 관리체계로 개편(1차～4차, 약 10만 매) 추진

- 제2차 전국산림자원조사(1978~1980) 기간에 촬영한 항공사진의 정사영상 구축
- 과거 산림항공 흑백사진(3차, 1986～1992)에 대한 정보서비스 구축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항공검색시스템의 장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산림공간정보 통합 영상서비스로 개편 추진

o 북한 위성영상서비스 및 해외 조림 등에 대한 산림모니터링 지속 추진

- '14년 북한 위성영상서비스가 구축 완료됨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산림관련 위성영상을 지속적으로 수급하여 해외조림 등 현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추진

※ 인도네시아, 아랄해 조림사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3) 산림재해 지자체 공동 활용서비스 마련

o 시군구 지자체 산림공무원을 대상으로 산림재해·생태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산림공간정보 기반의 정보체계 구축 추진

- 소나무재선충이력정보, 과거산불발생위치, 산사태피해정보 등 지자체별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과거 흑백 산림항공영상(4차), 백두대간 자원정보 및 국립생태원에서 수급한 전국자연환경조사 정보 등 다양한 생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

o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지자체 운영을 위한 정보체계 구성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운영을 위한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14년 12월 대형산불위험지도, 산사태발생이력정보 및 산림병해충 관리시스템 등을 신규 구축

4) 산림공간정보의 신속한 운영지원 및 교류 강화

o 산림GIS · GPS 활용 장비 확충
- 소속기관의 활용기반 마련(18대, 223백만 원)
· GIS용 PC(8대), GPS 장비(8대), 칼라플로터(2대) 등

o 산림 GIS 및 GPS 시스템 장비유지 관리
- 산림GIS 시스템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한 최적의 기능 유지
· 시스템 운영 및 활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 맞춤형 GPS장비 유지보수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교체, 수리, 교육 등)을 통한 장비 성능 최적화
· 현지순회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Help Desk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

o '2015년 산림 IT 컨퍼런스' 개최
- 소속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최신 산림 IT 기술 전파 및 수요 창출
※ FGIS, 모바일 등 IT기술의 산림분야 활용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신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산림분야 정보화 수준향상 및 발전방향 모색

o 공간정보 관련 정책 · 기술 교류 강화
-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 교류 강화
·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주요정책 심의 등
-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GIS/RS자료 확보 및 현업 활용 지원
- 국가공간정보세미나 참가, 부처별 신기술 확보 등 GIS 기술교류 확대
· 스마트국토엑스포(국토교통부), 영상정보연례회의 · 워크숍(항공우주연구원) 등
-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지구관측그룹(GEO) 활동 등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산림분야 서비스 개선안 마련

o 산림공간정보 운용 활성화를 위한 산림공간정보 교육 추진
- 산림교육원 전문과정(5일, 1회 35명)과 소속기관별 방문 활용교육을 실시하여 공간정보 활용 지원

o '2015년 스마트국토엑스포' 행사 참가 및 산림공간정보관 운영
-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스마트국토엑스포'에 산림공간정보 운영 사례 등 전략적 홍보 추진

라. 추진일정

o 산림주제도 및 영상정보 관리서비스 구축 : 2014. 1~12월

o 산림재해 지자체 공동 활용서비스 마련 : 2014. 1~12월

o 소속기관 GIS, GPS 장비 확충 : 2015. 1~3월

o 2015년 산림 IT 컨퍼런스 개최 : 2015. 11월

o 2015년 스마트국토엑스포 대회 참가(전시부스 운영) : 2015. 11월

o 임상도 현행화 사업 추진 : 2015. 1~11월

o 산림입지토양도 확대제작사업 추진 : 2015. 1~11월

o 산림항공사진 DB구축사업 추진 : 2015. 1~11월

o 2015년 GPS장비유지보수 추진(순회 유지보수 및 교육) : 분기별

o 산림GIS교육 실시(정규 1회, 자체-수시)

o 산림GIS 홍보 및 타 부처, 기관 간 기술교류 추진 : 수시

o 산림GIS 자료 확보·유통 및 갱신 : 수시

o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관련부서 배포 : 수시

15. 산림통계의 신뢰성 및 활용성 증진

목 표

◇ 통계생산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체계 개편으로 통계의 신뢰성 및 활용성 증진

가. 정책여건

o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수요 증가로 통계생산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조

o 임산물 피해액 산정, 임가소득 지원 등 산림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필요

o 최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의 농림수산통계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

o 고객 위주의 맞춤형 이용 및 활용의 편리성 강조

나. 기본방향

o 정책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임업통계의 개발 및 발전

o 임산물생산조사의 조사체계 개편에 의한 통계조사 및 생산

o 임산물의 대외개방 협상을 위한 임업통계의 신뢰성 증진

o 수용자 중심의 산림·임업통계 서비스 매체 개발

o 측정・검증・보고가 가능한 온실가스 통계자료 지속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물생산조사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o 주요 5개 임산물(밤, 호두, 대추, 떫은 감, 표고버섯)은 표본조사, 133개 품목은 도급조사, 12개 품목은 행정조사 추진

- 표본오차가 적고 신뢰수준이 높은 조사기법을 도입한 통계조사 지속 추진

◦ 표본조사 : 표본임가를 전문 통계조사 기관이 전화조사하여 통계산출
◦ 도급조사 : 산림청은 예산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통계조사원을 채용하여 조사
◦ 행정조사 : 종림, 양묘 등 행정자료로 집계되는 통계를 활용하여 생산액 산출

o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 지침서 개정 및 기초자료 제공 확대

- 도급조사 단가 상승, 조사표 및 조사항목 변경 등을 반영한 조사지침서 개정
- 조경수, 산양삼 등 확보 가능한 생산자리스트를 확보하여 지자체로 제공

o 임산물별 “단가” 기준 재정립으로 객관적인 임산물 가치산정의 기반 마련

- 조사 대상 임가가 “단가”를 응답하지 않거나 비교적 저평가된 금액으로 응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산물별 단가 기준 선정 방안 마련
- ’15년 상반기 → 연구용역을 통하여 단가 기준 선정(안)을 확정하고, ’15년 하반기 → 2014년 임산물생산액 산정에 반영

o “임업”생산액 산정(안)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 “임업”의 기준을 고려하여 임산물생산조사에서 임업생산조사로 발전방안 도출

2)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지속 추진

o 사유림경영정보(조림, 숲가꾸기, 벌채, 전용, 산불) DB 구축 확산

- ’14년 전남, 경북지역 DB구축이 완료되고 ’15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제주지역으로 확산 구축
- 안전행정부의 새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산림경영활동 정보 DB를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으로 연계 관리

o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패트롤 운영 추진

-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산림경영활동 정보 DB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 각 1개단 총 33명을 배치・운영(보조금 630백만원)

o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활용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기교육(권역별 1회)

3) 2015년 산림기본통계 산출 및 제7차 국가산림자원자원조사 준비 철저

o 2015년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2016년 산출 예정인 「2015년 산림기본통계」 준비 철저

- 통계 산출방법 및 공표 항목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2015 산림기본통계(안) 확정
- 2015 산림기본통계(안)에 따라 산림기본통계 행정조사와 국가산림자원조사 조사항목 및 분석 사항 수정・반영

o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11～'15) 완료와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16～'20) 준비를 위한 T/F팀 운영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조사데이터 공유 및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구성
- 국가산림자원조사 제1차 모니터링 조사 완료 결과 공유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모니터링 조사 착수 준비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o 2014년 완료된 산림자원 통계수요 조사에 따른 산림자원통계 추가 산출

- 경제림단지별, 기능별, 수종별, 영급별 산림면적, 축적 등

4)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통계 개발

o 임산물소득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 개발

- 고사리 등 주요임산물의 생산비, 소득, 생산량 등을 산출하기 위한 임산물 소득조사 본 조사 착수('14년 시범조사)

o 산림자원, 목재생산 등 산림자원정책 지원에 필요한 통계 발굴 추진

o 산림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통계자료 분석·제공

-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심층 분석집 발간

o 탄소흡수원법, 목재이용법 등 새로운 법률제정에 따라 요구되는 통계 발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통계의 발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통계의 발굴

5) 임업통계조사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o 임업통계조사의 통합 위탁 및 발주

-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통계감리 및 임산물생산 표본조사를 통합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 및 발주

o 이월 방지를 위해 임업통계조사의 조사업무와 분석업무를 분리 계약

- 임업통계조사 예산의 이월 방지를 위해 임업통계조사·분석업무 분리 추진
- '15년 1월～12월 현장실사는 2015년 임업통계조사 위탁 계약
- '15년 조사된 통계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은 '16년 1월 수의계약

6) 산림 및 임업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o 통계청 2014 임가경제조사 및 임산물생산비조사 정기품질진단 개선과제 후속조치 추진

o 산림청 승인통계 10종 정기 및 자체품질진단 지속 추진

※ 2013년부터 자체품질진단 평가제도 도입 시행(통계청)

o 산림기본통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지속 강화

- 산림전용, 조림 등 산림변화정보 등의 행정자료 모니터링 추진

o 산림・임업통계 생산을 위해 실무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 임업통계담당자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순회교육 강화
- 도급조사 조사원 교육 확대(권역별 순회교육)

7) 수요자 중심의 산림・임업통계 대국민 서비스 확대

o 시의성과 정확성을 갖춘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 산림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계정보 제공
-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시스템 등에서 서비스되는 산림・임업통계를 지체 없이 현행화
- 간추린 임업통계, 임업통계연보, 기타 조사 결과보고서를 학계,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공 범위를 확대

o 다양한 정보제공 매체 확산 지속 개발하여 통계정보의 이용성·편리성 제고

- 정보이용자의 정보 활용 특성을 분석하여 간행물, 전자책, 모바일 등 제공 매체 개발

o 고객 위주의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산림통계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마련

-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위해 각종 통계 통합·연계 방안을 마련

라. 추진일정

o 임업통계조사 한국임업진흥원 위탁 및 통합 발주 : 2014. 11. 7

o 2015년 임업통계조사(표본조사 포함) 추진 : 2015. 1～12월

o 2014년 임업통계 분석업무 계약 추진 : 2015. 1월

o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사업 추진 : 2015. 1～12월

o 2014년 임업통계담당자 및 도급조사원 교육실시 : 2015. 1～3월

o 2015년 국가산림자원조사 사업추진(현장조사 등) : 2015. 1～12월

o 2014년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보고 : 2015. 2월

o 2014년 임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표 : 2015. 4월

o 2014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공표 : 2015. 5월

o 2014년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공표 : 2015. 9월

o 2015년 간추린 임업통계 발간 : 2015. 9월

o 2015년 임업통계연보(제45호) 발간 : 2015. 9월

o 2014년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공표 : 2015. 10월

o 2015년 임업통계담당자 워크숍 실시 : 2015. 12월

o 임업통계조사 표본 임가 간담회 : 2015. 2～12월

o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 현장교육 및 설명회 : 2015. 2～12월

16. 정책홍보

목 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언론홍보 활동으로 효과 극대화
◇ 전략적 기획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선호도 제고
◇ 온·오프라인 매체 간 융합으로 홍보효과 거양

가. 홍보여건

o 정권 3년차 주요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창출 및 확산이 필요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분야 부정적 이슈 발생이 우려

o 케이블 TV 등 뉴미디어가 강세를 보이고, 스마트폰 등으로 국민의 정보 입수 통로가 다양화됨에 따른 정책홍보의 어려움이 예상

o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정책에 대한 고객의 반응속도도 빨라짐에 따라 홍보도 충분한 사전준비와 오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

나. 추진방향

o (언론분야) 산림정책의 시기별 추진계획 및 성과를 적기에 홍보하여 정책 이해도 증진과 기관 이미지를 제고

- 오피니언리더, 세대별·계층별 타깃 홍보는 유력 신문·잡지에 기획보도
- 녹색자금은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주요산림정책을 중점 홍보

※ TV 공익광고, 다큐멘터리, 교양프로 제작지원, 전문지발간 등

o (온라인분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도입 및 산림분야 콘텐츠 확산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추진

- 트위터, 위키트리는 뉴스정보제공,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는 오락정보 제공
- Cross Media 통합 홍보 전개로 지속적인 민관협업체계를 구축

o (홍보콘텐츠) 주요정책에 대한 인포그래픽, 기관지제공으로 일반국민들의 정책 이해도 및 신뢰성 증대

- 기관소개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식 홍보 콘텐츠 제작(팸플릿, 리플릿 등)
- 월간지 '매거진 숲' 발간으로 정책 정보제공과 산림문화 대중화를 선도

다. 세부추진계획

1) 언론보도의 집중화

가) (방송미디어) 매체접촉도가 높은 지상파 방송을 활용한 공익광고, 정책별 맞춤형 캠페인으로 국민 인지도·선호도 극대화

o 공익광고, 기획 다큐멘터리, 교양 프로그램 등 패키지 형태로 집중 편성
- 접촉도와 신뢰도가 높은 지상파 TV(KBS, MBC, SBS)를 중점 추진
※ 접촉도 : TV 46.3%, 스마트폰 37.3%, PC/노트북 12.9%(방송통신위원회)

o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산림정책을 기획캠페인 주제로 선정하고, 식목일, 산의 날 등 주요 정책일정에 맞춰 편성(일정심의 '14.12월)
- 경제림 조성, 목재이용 활성화 등 임업 선진국 사례를 공익광고로 제작

나) (신문・잡지) 산림정책의 시기별 추진계획 및 성과를 적기에 홍보하여 정책 이해도 증진과 기관 이미지를 제고

o 규제개혁, 경제림육성, 산림복지 등 대국민 인식 저변확대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기획보도를 중점 추진
- 기획 주제는 현안이슈에 대한 정책과제를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o 한-중 FTA 등에 따른 국산임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외신홍보 적극 활용
-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센터)와 협업으로 주요 임산물 품목 소개 및 미국, 유럽 등 주요수출시장 홍보 추진
※ 한국의 임산물(YTN-TV)공익광고 시리즈로 국내 임산물 시장 활성화

2) 온라인 홍보의 다변화

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도입 및 '팟 캐스트' 등 Multi-Use 콘텐츠 사업 운영

o 카카오스토리채널 등 신규로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 접점 확대
- 「산림청 카카오스토리채널」 런칭(3월) 후 연말까지 카카오 친구 2만명 달성

o 2대 소셜채널(트위터, 위키트리)은 뉴스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채널은 오락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가미
※ 스마트폰 4,006만명, 초고속 인터넷 1,910만명 가입(미래창조과학부)

o 테마별 생활형 정책 소식 등을 '팟 캐스트' 및 자체 UCC로 구성, 일상생활 속 산림과 함께 하는 대중적 산림문화 창달 유도에 역점
※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멀티미디어보고서'로 운영

나) PCRM 정책고객 운영 활성화 및 블로그 기자단 전문성 강화

o 정책고객 고객 마일리지 운영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온라인 이벤트 확대(연 2회 이상)

o 상시 활동 전문필진 그룹수를 10명이상으로 확대하고 종전 일반기자단은 검증된 파워블로거(10명)로 재편, 콘텐츠 내실을 강화

다) 산림분야 콘텐츠 확산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 추진

o 구글,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콘텐츠 제휴를 통해 정책정보 제공 활성화
- 주요 정책홍보 과제에 따른 온라인 홍보매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현안정책 홍보효과를 극대화 (연 2회 이상)

o 민관 협업에 기초한 Cross Media 통합 홍보 전개로 네티즌들의 자발적 캠페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관련 화제성 이슈를 창출

3) 홍보 콘텐츠의 다양화

가) 기관소개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식 홍보 콘텐츠 제작

o 기관 이미지에 어울리는 홍보용 동영상 및 브로슈어 업데이트(국·영문)
- 팸플릿, 리플릿, 기념품 등 특색 있고 실용적인 홍보물 제작·보급

o 언론매체 방문, 팝업스토어, 전시회 등의 이벤트 홍보수단으로 활용

나) '인포테인먼트'형 콘텐츠 제작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 및 수용성 증대

o 부서별 중요 현안정책에 대해 이해가 용이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인포그래픽스 콘텐츠를 개발

o 온라인상에서는 SNS 연계 수시이벤트와 모바일 광고 콘텐츠로, 오프라인에서는 신문과 포스터 등 지면 광고 콘텐츠로 활용

다) 월간지 '매거진 숲' 정착으로 대중적 인기 잡지 위상 정립(월 1만부)

o 주요 산림정책을 월별 기획형 테마스페셜로 구성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적 산림문화 잡지로 정립되도록 내용과 형식을 업그레이드

o 제작된 콘텐츠는 전국 1200여개 농협과 일반국민 신청자(5000명), 정책 고객에게 배포하고 e-book, 모바일 App 등으로 온라인상 게시

라) 부처간 매체 협력을 강화하여 산림정책 홍보를 극대화

o 문체부 및 농림부 등 타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현안 이슈, 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홍보

o 정부지원 웹카툰 제작, 타부처 보유매체 협업홍보 등 부처협업 산림정책 홍보 콘텐츠를 확산

※ 우리청 보유매체 : 영상매체 3개(본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교육원 등)
문자전광판 3개(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4) 홍보역량 강화 등

가)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동향분석 및 부정적 이슈확산 방지를 위한 언론 모니터링 강화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

o 홍보상황실, 페이스북 담당자 그룹 등을 활용해 언론 및 여론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 모색

o 부정적 이슈에 대해 취재현황은 즉시 동향보고 체계를 수립하고, 해당 매체 설명 및 해명자료 배포 필요성 등 공동 대응

나) 홍보매체 협업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협의회」 운영 활성화

o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홍보 실무협의회 정례화
- 상·하반기 정기 협의회 개최 및 홍보과제에 따라 그룹별 수시 개최
※ 소속기관(11개), 산하단체(녹색사업단, 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o 홍보 트렌드 등 정보 공유 및 공통 홍보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기관별 보유매체를 통해 적극 확산

다) 정책홍보 마인드 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

o 홍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응용 학습 위주의 Case-Study, 체험 실습 등의 프로그램 교육 추진
-문체부(국민소통실), 농식품부 주관 등 외부 전문가 교육 적극 참여

라) 뉴스채널 동영상 제공 및 무인촬영항공기 운용

o 지상파 방송사, 종편 및 케이블 등 방송 뉴스채널에 정책브리핑 및 주요 행사, 산림사업광경 등의 영상자료 제공 확대

o 산불 발생 시 현장에서 산림헬기 진화작업 등을 촬영한 영상파일과 보도자료를 뉴스채널에 제공하여 우리청 역할 부각 및 대국민 인식 제고

o 주요 산림사업 광경, 각종 행사 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중 영상을 제작하여 광고 및 홍보자료로 활용

라. 추진일정

o 녹색자금 기획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 '14. 12월

o 정례 기자브리핑 및 간담회 : 매월(이슈발생 시 수시)

o 신문·방송·온라인 등 언론보도 스크랩 및 대응 : 매일

o 상·하반기 산림청 정책홍보협의회 : 6월, 12월(정기) 및 수시

o 온·오프라인 기관홍보물 제작 및 배부 : 반기별

o 새로운 SNS 채널 도입 및 콘텐츠 개발 : 3월, 연중

o 주요 포털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 (네이버, 구글 등) : 연중

o 블로그 기자단 확대 재편 : 1월(연중 운영)

o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전광판 광고' 표출과제 신청 : 매월

o 산림종합 전문지 월간 매거진숲 발간 : 매월

해외자원협력관실 소관

1. 해외산림투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정립

목 표

◇ **해외산림자원개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o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2015-2024) 수립

◇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정비**

o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반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정비

가. 정책여건

o 산림바이오에너지용 등 신규 수요증가로 목재수요가 증가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따라 발전용 목재펠릿 수요급증

  * 목재수요량(천㎥) : ('13) 28,251 → ('20) 33,800 → ('50) 40,000

o 국산재 공급능력의 한계와 제품수입형 목재공급 구조 심화 전망

- 국산재 생산량(자급률) : ('13) 490만㎥(17%) → ('20) 740(22%) → ('50) 1,200(30%)

  * 전체 목재수입량 대비 제품수입량 비중 : ('13) 69% → ('20) 83 → ('50) 88

o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녹색사업단, 산림조합중앙회 등),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추진 주체별 역할 정립 필요

o 목재자원 수급을 위해 개발자원의 반입 확대가 필요하나, 투자 대상국의 원목 수출 금지, 높은 반입비용 등으로 반입 저조

나. 기본방향

o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및 반입촉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o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와 효과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정비

다. 세부추진계획

1) 해외산림자원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및 지원체계 정비

o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2015-2024) 수립

- 정책목표, 추진 주체별 역할 정립, 융자 등 투자지원 체계 개선 등

o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

-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 사업의 범위와 방법, 사업 위탁기관의 확대, 지원사업 세부내용 등 법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

o 해외산림 개발자원의 반입촉진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품목별 목재 국내수요를 반영하여 조림목 가공, 반입,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해외산림투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검토

- 목재펠릿 가공도입 등 해외산림자원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 해외 목재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o 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임산물가공시설 및 해외조림지 매수 융자한도 상향 : ('14) 20억원 → ('15) 28억원

- 목재바이오매스 원료의 해외 확보를 위한 단벌기 조림(SRC) 지원 추가

  * 바이오매스조림(SRC) 융자한도 : 사업비의 70%이내, 7년거치 3년상환

- 바이오조림(팜유나무) 융자지원 기준 강화

  * 지원율 하향 ('14) 융자한도 70% 이내 → ('15) 60% 이내, 바이오에너지용 등

- 융자지원 신청액 기준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기준조림단비 개선

  * 국가별, 조림수종별(유칼립투스, 아카시아, 고무나무, 팜유나무) 단비 고도화

2)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강화

o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조림 시범사업 모델개발을 통한 기업 지원

- 조림지 모니터링 결과, 관심 기업 연수 등 시범사업 성과를 민간과 공유

  * 스마랑 바이오매스 양묘장(훈련센터)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인니 정부측과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 협력확대

  * 국내외 목재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정책을 반영하고 민간기업 투자확대 지원

o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지원과 산림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녹색사업단, 한-인도네시아 산림센터의 역할 강화

- 녹색사업단은 정책자금융자, 사전환경조사사업 등 민간투자지원 역할 강화

- 한-인니 산림센터는 양국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사업 추진 및 정보공유, 컨설팅 등 민간투자기업 지원 강화

  * 바이오매스 시범조림사업, REDD+ 시범사업, 모델숲 및 양묘센터 운영 등

o 투자 촉진 및 유망국가 발굴을 위한 해외산림투자 환경조사 및 컨설팅 강화

- 투자유망국가 발굴을 위한 정책환경조사 및 지역별 투자설명회 개최

  *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산림투자환경조사(녹색사업단) 및 설명회

- 해외산림투자정보서비스(ofiis.or.kr) 홈페이지 활용성 제고 등

o 해외산림자원개발협의회 활동 활성화를 통한 정책건의 기능 강화

- 투자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공유 및 공동 발전방안 모색

  * 협회설립 근거마련에 따른 협의회의의 확대 발전방안 및 운영방안 검토

3) 해외산림인턴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운영관리 내실화

o 해외산림인턴을 기업체인턴과 국제협력인턴으로 구분하여 추진

- 국제기구 및 협력사업 파견 확대로 국제산림협력전문가 양성 강화

  * ('14) 해외산림인턴 40명 → ('15) 기업체 인턴 30명 내외, 국제협력인턴 10명 내외

o 다른 분야 해외인턴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정부해외인턴사업 기준 적용

- 중복지급 논란 방지를 위해 급여 및 주거비를 체재비로 통합하여 지역별 차등지원, 파견준비비(비자, 교육, 항공료 등) 실비지원액 확대

  * 기업체 인턴 체재비 국고 지원율 하향 ('14) 80% → ('15) 70%

- 사업 내실화 및 운영기관 독립성 보장을 위해 녹색사업단 자율운영 강화

  * 산림청은 운영계획 수립・시달, 녹색사업단에서 세부시행계획, 모집, 선발

o 해외산림인턴 참여자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운영관리 개선

- 인턴수요기업 모집・선정 후 인턴참여자 선발로 인턴참여 선택권 보장

  * 인턴기업-인턴참여자가 자율매칭 배정으로 해외산림인턴 만족도 제고

- 해외인턴 채용 실적 우수기업에 선발시 성적우수자 우선 배정

라. 추진일정

o 해외산림인턴 발대식 및 사전교육 : 2015. 1월

o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 보고 : 2015. 1월, 7월

o 해외산림투자 융자사업 및 사전환경조사 지원계획 공고 : 2015. 2월

o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 개최 : 2015. 4월, 8월

o 해외산림자원개발워크숍 : 2015. 12월

2. 한국형 REDD+ 사업 모델 확립

목 표

◇ 핵심 4대 협력국가와 공동 시범사업 추진 성과 제고에 주력
◇ 국가 기후변화 대응과 상호이익에 기반한 산림자원 확보

가. 정책여건

o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에 따라 해외 산림탄소배출권의 국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Post-2020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계획 확정

o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기로 확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 국외 산지전용 억제 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가능한 탄소배출권 확보 지원체계 구축

o REDD+를 통한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 지분 확보 및 민간기업의 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REDD+ 사업이행 기반 구축 필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훼손된 산림복구의 성공 노하우를 REDD+ 잠재력이 큰 동남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

나. 기본방향

o REDD+ 사업으로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 구축

o REDD+ 사업 확대를 통해 REDD+ 협력사업 이행 성공 잠재력 확대

o 국내 기업의 해외 탄소배출권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능력 증진, 사업전문가 양성 등 투자환경 사전 정비

o 개도국 산림사업 이행 능력 증진 및 지역 전문 인재 양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인도네시아 시범사업은 탄소배출권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등록, 산림경영계획구의 경영계획 수립 추진

o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 논의 활성화 및 현장 수행 능력 강화

- 산림조사, 배출기준선(REL), 사업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PDD) 작성(용역 결과)
- 생산되는 산림탄소 분배를 위한 사례조사 준비 및 인니측과 협상
- 인니측 TBS 산림경영계획구의 경영계획(장기, 단기, 비즈니스) 수립

o 사업대상지 산림전용・훼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역민 생계개선 사업 실시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역 NGOs 및 현지투자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산림경영계획구(FMU) 운영으로 보호사업 실시, 국유림 관리모델 전파
- 「REDD+ 사업단」 주도의 4차년도 현장사업 진행(깜빠르, 14천ha)

  * 산림감시단 운영, 대체소득원 개발, 거주지 안정화사업, 황폐지복구조림 등

2)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로 REDD+ 시범사업 확산

o 사업추진체계 정비

- 정형화, 표준화, 모델화

o 캄보디아 제안 사업대상지의 '15년 시범사업 추진

- '14.12.10 시범사업 MOU 체결, '15년 산림자원조사 실시위한 사업단 구성

o 미얀마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워크플랜 작성(미얀마 측 현장 이행)

- 산림자원조사 마무리 및 대상지에 대한 사회경제조사 실시

o 제3차 REDD+ 고위급 회의를 개최로 인적네트워크 강화

- 인니・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산림당국의 정책결정자 초청 고위급회의

o 국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 REDD+ 협력 채널을 이용하여 사업 지원

- 고위급회의(1회), 국제심포지엄(1회), 포럼(1회) AFoCO 및 CIFOR의 국제심포지엄 참석 정례화
- 유관기관(과학원, 진흥원, 녹사단 등)과 정기적인 관계관회의를 실시하여 사업의 진행상황 공유 및 사업경험 확산

3) REDD+ 관련 민간기업 등 투자 촉진 및 전문인력 육성 추진

o REDD+ 포럼을 활용한 관련 정책정보 공유 및 투자 확대 방안 논의

- 제4차 REDD+ 포럼(상반기), 기업참여촉진 세미나(하반기)

o 산림교육원, 대학과 연계하여 REDD+ 전문인력 양성

- '15.2월 인재육성을 위한 심포지움 실시 및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o REDD+ 능력배양 교육훈련 실시(5월, 11월/연2회, 산림교육원)

- REDD+ 주요협력국 사업관계자 초청 연수로 우호적 사업환경 조성

4)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및 배출권 거래 방안 강구

o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장거래가 가능한 해외 탄소배출권의 확보 전략 이행

- 탄소잠재량 및 대개도국 이행능력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 선점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o REDD+ 사업효과 및 사업 추진절차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 리플릿 제작, 기술서 발간,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라. 추진일정

o 해외산림사업 전문가 및 인재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2015. 2월

o REDD+ 포럼 개최 : 2015. 5월

o REDD+ 능력배양 교육 훈련 : 2015. 5월, 11월

o 국제 REDD+ 심포지엄 개최 : 2015. 8월

o REDD+ 고위급회의 개최 : 2015. 8월

<인도네시아>

o 인도네시아 깜빠르 REDD+ 사업 이행 : 2015년 연중

o 깜빠르 REDD+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 : 2015. 6월

o 인도네시아 깜빠르 REDD+ 사업 PDD 작성 : 2015.12

<캄보디아>

o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간 협의 : 2015. 1월

o 캄보디아 시범사업 사업단 발족 2015. 1월

o 캄보디아 시범사업 워크플랜 작성 2015. 2월

o 캄보디아 시범사업 산림자원 조사 2015. 6월

<미얀마>

o 미얀마 대상지 확정 2015. 1월

o 미얀마 사회경제조사 2015. 6월

<라오스>

o 라오스 대상 후보지 선정 2015. 1월

o 라오스 대상지 선정 타당성 조사 2015. 6월

3. 중요도에 따른 양자협력국가 맞춤형관리 및 특성화 의제 개발

목 표

◇ 맞춤형 양자산림협력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 우리나라 강점분야 산림협력 모델 발굴로 체계적 리더십 발휘

가. 정책여건

o 최근 개발도상국의 산림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는 '산림경관복원 메카니즘(FLRM)'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발족으로 산림황폐화 비중이 높은 협력국가들로부터 양자협력 요청 증가

o 우리나라의 산림분야 강점을 상대국에 전파하고 약점을 산림협력을 통해 보완하는 형태의 산림협력의 내실화가 요구되며, 양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상생 발전하는 맞춤형 산림협력 모델 구축 필요

나. 기본방향

o 중요도에 따른 양자협력국가 구분·관리 및 맞춤형 양자협력 추진

o 주요 국가별 목표 및 중점협력 분야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o 산림복원, 산림복지 등 우리나라 강점분야 산림협력 모델 구축

o 합의의제 및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협력성과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정기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및 구체적 협력사업 논의(총 14개국)

o 국가별 특성화 의제 발굴로 내실 있는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국가별 맞춤형 의제 개발로 실질적인 협력 추진
- 양국 간 합의사항 및 추진사업은 정기 모니터링 강화

※ (한국개최) 인도네시아 등 9개국, (상대국 방문) 중국 등 5개국

※ 중남미 및 오세아니아는 2015년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산불총회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상대국과 협의 추진

< 2015년도 정기 산림협력위원회 계획 >

한국 개최(9회)	
동북아	· 제2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
동남아	· 제22차 한-인도네시아/제8차 산림포럼 · 제2차 한-필리핀
중남미	· 제1차 한-아르헨티나 · 제2차 한-브라질 · 제2차 한-칠레
유럽	· 제2차 한-오스트리아
오세아니아	· 제8차 한-뉴질랜드 · 제8차 한-호주

상대국 방문(5회)	
동북아	· 제10차 한-중국
동남아	· 제8차 한-베트남
아프리카	· 제2차 한-베냉 · 제1차 한-에티오피아
중남미	· 제2차 한-에콰도르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산림복원 협력모델 개발

o 산림복원 협력 요청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맞춤형 시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우리나라 강점분야 산림복원 협력모델로 구축

- 필리핀 국가녹화프로그램 지원(양묘장 지원 및 시범림 조성) 현지조사

※ '15년 KOICA ODA 사업으로 선정 및 '17년도 사업으로 개시되도록 추진

- 베트남 우호의 숲/녹색산촌 복원 사업 형성조사 지원('16년 사업개시)
- 에콰도르 산림황폐지 복구지원을 위한 현황분석 및 타당성 조사

※ '15년 KOICA 부처제안사업으로 추진 및 '17년도 사업개시 목표

3) 녹색한류 신 모델로서 우리나라 산림복지 모델 개발

o 산림복지 분야 MOU 체결 및 협력모델 구축으로 한국형 산림복지 서비스 정책선도 계기로 활용

- 한·중 산림복지 분야 협력 MOU 조인식('15년 4월, 한국)
- 한·도미니카공화국 산림협력 MOU 조인식('15년 5월, 도미니카공화국)

o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분야 협력 프로젝트 개발 추진

- 한·인도네시아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시범사업(롬복일원) 기본설계 착수 및 인적자원 능력배양 훈련 실시
-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환경 분석/타당성 조사 및 PD 개발 지원
- 한·중국 휴양분야 협력 실무협의회 구성 및 정기적 교류

4) 지속가능 산림경영을 위한 양국 간 교류 활성화 촉진

o 한-캐나다 산림협력 Work Plan의 차질 없는 이행

- 대형 목조건축, 산불방지, 산림인증제 분야 인적교류/워크숍/공동연구

o 양국간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 및 인적자원 능력배양 연수 지원

- 국유림관리 기관 자매결연 및 워크숍(일본), 산림병해충 워크숍(러시아) 등

5) 해외홍보 및 관련기관과 협업 행정으로 산림협력 성과 제고

o 영문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개선을 통해 해외홍보 확대

o 가칭「양자협력발전협의회」구성,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산하기관,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분기 1회 교류)

라. 추진일정

o 제2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 회의(한국) : 2015. 1월
o 필리핀 국가녹화프로그램 지원 프로젝트 현지조사(필리핀) : 2015. 2월
o 제1차 한-에티오피아 산림협력위원회(에티오피아) : 2015. 3월
o 제2차 한-베냉 산림협력위원회(베냉) : 2015. 3월
o 에티오피아 산림복원 프로젝트 발굴 현지조사(에티오피아) : 2015. 3월
o 제10차 한-중국 산림협력위원회(중국) : 2015. 4월
o 한-중국 산림복지 분야 협력 MOU 체결(한국) : 2015. 4월
o 제2차 한-에콰도르 산림협력위원회(에콰도르) : 2015. 5월
o 에콰도르 산림복원 프로젝트 발굴 현지조사(에콰도르) : 2015. 5월
o 한-도미니카공화국 산림협력 MOU 체결(도미니카공화국) : 2015. 5월
o 제2차 한-필리핀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5. 6월
o 제22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5. 7월
o 제8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한국) : 2015. 7월
o 제8차 한-베트남 산림협력위원회(베트남) : 2015. 9월
o 제1차 한-아르헨티나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5. 10월
o 제2차 한-칠레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5. 10월
o 제8차 한-호주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5. 10월
o 제8차 한-뉴질랜드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5. 10월
o 제2차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한국) : 2015. 11월

4. 녹색 ODA 사업 확대로 국제산림협력 강화

목 표

◇ 산림협력 ODA 신규 사업 발굴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산림자원 보유국과 협력사업 증진으로 목재자원 확보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o Rio+20 총회시 그린 ODA의 확대를 천명, GCF 유치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ODA 기여 확대 요구(UN 권고사항 : GNI의 0.7%)

o 양자 산림협력 확대를 통한 산림외교 다변화 및 협력 강화 기반 조성

o 산림경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막화 및 황폐산림 비중이 높은 국가와의 산림녹화 및 산림환경 복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증가

o DAC 상위 10개국의 산림 분야 ODA 비중은 평균 1.7%('07～'11, OECD)로 우리나라도 산림분야 ODA가 증가할 전망

- 우리나라 산림분야 ODA는 국가 전체 ODA의 0.47% 차지(DAC내 비중은 0.9%로 15위)

나. 기본방향

o 기존 ODA 협력은 강화하고 사업 대상 및 사업 형태 다변화, 부처간 연계 사업 발굴 등으로 산림분야 ODA 확대를 추진

- 몽골그린벨트 사업은 '12년 수립한 후반기(2012～2016)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표(3,000ha) 달성 추진

- 2016년 사업완료를 대비하여 몽골정부에 기존 조림지에 대한 관리이관 확대 추진

o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사업은 AFoCO 협력사업으로, 아프리카・남미 지역은 창원이니셔티브의 건조지녹화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o 산림 ODA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양성 추진

- 산림청 ODA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사업추진의 일관성·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분야 ODA 개선방안 마련 및 신규 사업 발굴·확대

o 녹화경험 전수를 희망하는 개도국 수요 증대 및 예산증가에 따라 효과적 개발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개선방안 마련

- 사업발굴 및 추진절차, 유관기관 연계 협력, 사후관리 및 평가·환류 체계 등

o 사업 체제 다변화 및 부처간 연계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 확대

- 산림경관복원, DLDD, SDG 설정 등 국제 의제를 기반으로 한 관련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과 협력방안 구축
- 양자 협력, 창원이니셔티브 등 기존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신규사업 공동 발굴, 협력사업 확대 등에 KOICA와 연계사업 발굴 추진
- 기존 국제기구 및 국내 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o 산림 ODA를 아시아는 중앙아시아 및 중동까지 확장하여 추진하고, 창원이니셔티브의 건조지녹화파트너십을 신규로 확대

- AFoCO 회원국 확대 협상 및 추진사업 성과 등과 연계하여 신규 협력관계 구축 및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 추진

2) 황사방지 국제협력 대응사업 지속 추진으로 황사 및 사막화 방지에 기여

o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 후반기 사업계획('12년 10월)에 기반하여 몽골그린벨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목표(2016년까지 3,000ha) 달성

- 사막화방지 조림(100ha), 싹사울복원 조림(300ha)
- 양묘사업(2개소), 연수생초청, 공동연구사업(6과제) 등

o 그 동안의 사업추진 실적을 종합한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 10년' 기념백서 발간 추진

o 중국 민간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사업성과 제고

- 대상지 : 중국 쿠부치사막
- 수행기관 : 녹색사업단(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주요내용 : 사막화방지 조림, 조림기술지도 등

3) 산림 ODA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양성 추진

o 산림청 ODA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사업추진 및 관리의 일관성·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

- 녹색사업단으로 하여금 산림 ODA사업을 전담 시행(사업자 선정, 사업지 관리 등)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

4) 개발도상국과 산림협력 강화 및 산림협력 지원체계 정비

o 개발도상국과의 인적교류 확대 및 현장 적용가능 지식 위주의 교육 실시

o 민간부문의 사막화방지 활동 참여 촉진 지원

- 민・관 정보교류를 통한 민간 사막화방지 활동의 사업 효과 제고

- 사업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녹색사업단을 통해 관리

라. 추진일정

o 한-몽골 그린벨트 사업단 2015년 운영계획 수립 : 2014. 12월

o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 사업계획 수립 : 2014. 12월

o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 : 2015. 3월

o KOICA 미얀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 현지 조림 사업 준비사항 점검 : 2015. 4월

o 민간 사막화방지 조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5. 1~2월

o 중국 황사방지 협력사업 현지 점검 : 2015. 5월

o 사막화방지의 날(6.17) 기념 조림 행사(몽골) : 2015. 6월

- UNCCD 사무국 및 국회, 방송사, 학계와 연계추진

o KOICA 미얀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 현장 점검 (2차) : 2015. 9월

o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 현장 점검 : 2015. 8월

o 제8차 한-몽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 2015. 12월

5. AFoCO 확대 설립 및 협력사업 내실화

목 표

◇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AFoCO를 확대 설립 추진

o 아세안에서 아시아로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상 추진

◇ AFoCo를 활용한 지역 및 국가별 협력사업 내실화

o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AFoCO 협력사업 추진 절차 마련

가. 정책여건

o AFoCO 확대설립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정비

- 아시아 15개국이 참여하는 AFoCO 확대설립 협상회의 개최('14)

* 참여국 : 한국, 아세안 10개국, 몽골, 카자흐스탄, 부탄, 동티모르 등 15개국

- 주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대사 초청 산림정책 설명회 개최('14.5)

* 아세안 10개국, 외교부, 산림청, AFoCo 사무국 등 30명 참석

* 중앙아(5국 중 3국 참석)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사 등

o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한 AFoCO 지지 기반 확보('14.12)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정상들의 기조 연설, 아세안 10개국 산림부처 장·차관 등과의 산림장관선언 채택 등

o 정상임석하 양국 산림장관 간 '한-카자흐스탄 MOU' 체결 등 중앙아시아 협력확대 기반 마련('14.6)

* 아스타나 우호의 숲 조성, 아랄해 산림생태복원, 산림전문관 파견 근거 마련

나. 기본방향

o 산림분야 국제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 정비

o 아세안 국가와의 지속적 협력사업 추진과 더불어 제3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연계 협력 사업도 발굴 추진

o AFoCo 협정 회원국을 범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여 아시아 지역 산림분야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AFoCO를 설립

o 연내 기구설립 협정 서명을 목표로 AFoCO 설립 협상을 추진

- 아세안 이외에 아시아 4개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설립 협상을 타결

  * 동티모르(아세안 후보국), 카자흐스탄(중앙아), 몽골(동북아), 부탄(서남아) 등

o AFoCO 협정문 협의 및 외교장관 서명을 위한 외교채널과 공조체계 유지

  * 협정문 타결(3월)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6월) → 외교장관 서명(9월) → 국회 비준 동의(12월) → 발효('16년 상반기)

2) AFoCo를 활용한 협력 사업을 내실화

o 아세안 능력배양 장기 협력 Landmark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

- 교육훈련센터 건립(미얀마), 산림복원사업(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o 한·아세안 특별산림장관회의('14.12)에서 제안된 산림재해 공동대응 신규 협력사업 준비

- 사업 기본 설계 및 AFoCo 이사회 승인 추진

o 메콩유역, 아세안 능력배양사업 등 지역 단위 협력사업 추진

3) 협력사업 범위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o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 MOU 후속조치 이행

- 2017년 아스타나 엑스포와 연계한 '아스타나 우호의 숲'을 조성

  * 고려인 동산 조성, 현지 향토수종 식재, 최소한의 전통 조형물 배치 등

- 아랄해 산림생태복원 장기협력사업 기본 계획 마련

o 한-중앙아 5개국 산림협력 MOU('13.10) 후속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

- 중앙아시아 5개국 초청 단기연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사업(국립수목원) 추진

4) 산림청-AFoCo간 협력 체계 정비

o 현재 추진중인 AFoCo 협력사업 점검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국제기구 특성을 반영한 회원국 협력사업 추진 모델 개발

  * 사업개발, 타당성 검토, 계약체결, 사업이행, 모니터링, 성과확산 등 패키지 모델 도출

o 회원국·주요 공여국(산림청), 국제기구(AFoCo사무국)간의 역할 정립

- 사무국 본부협정 등 AFoCO 기구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 추진

5) AFoCo 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기반 정비

o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자발적 재원확보 방안 강구

- 국제금융기구의 참여,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모델 마련

* ADB(아시아개발은행), MI(메콩연구소), HOB(보루네오협력센터) 등 타 국제기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굴

o 산림관련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AFoCo 외연을 확대

- 관련 국제기구 및 NGO : UNCCD, FAO, CIFOR, ITTO, UNFF, IUFRO, IUCN 등

o AFoCO를 산림분야에서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 준비

라. 추진일정

o AFoCO 확대설립 협정문 협의 및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 이행

- AFoCO 협정문 타결 : 2015. 상반기
-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 2015년. 6월
- 외교장관 서명→ 국회비준 동의 : 2015. 12월

o AFoCO 회원국 확대를 위한 여건 정비

- 주한 초대 회원국 대사 초청 설명회 : 2015. 5월
- 능력배양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 2015. 2~11월

o 중앙아시아 협력사업 추진

- 아스타나 우호의 숲 조성 설계 등 착수 : 2015. 상반기
- 중앙아시아 5개국 연수 : 2015. 10월
- 산림생물다양성 협력사업 워크숍 : 9월

6. 다자간 산림협력 확대 및 글로벌 의제 대응

목 표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협약 등 다자 회의 적극 대응
◇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 및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추진
◇ 세계산불총회(IWFC) 개최 및 세계산림총회(WFC) 유치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생물다양성 손실, 사막화 확산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 국제적인 노력을 지속 추진

o 제22차 FAO 산림위원회('14.6월, 로마)에서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이 창립되었으며, FAO와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 협력 약정을 체결함

o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4.10월, 평창)에서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를 제안하였으며 당사국들의 지지를 받아 결정문에 반영됨

o 한편,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3, 바르샤바)에서 REDD+(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가 패키지(활동, 재정)로 합의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REDD+ 활동이 촉진될 전망

o 또한, 모든 국가들에게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2015년 초까지 제출토록 촉구함에 따라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이 본격화 예상

o 아울러, 유엔산림포럼에서는 비구속적 산림협정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후에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의 전환을 논의할 계획

나. 기본방향

o UN 환경협약 및 국제기구 등 다자간 산림분야 협상 회의 적극 대응

o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FLRM) 및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추진

o 세계산불총회(IWFC) 성공 개최 및 2021년 세계산림총회(WFC) 유치

다. 세부추진계획

1)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산림포럼 등 산림분야 다자회의 대응

o REED+ 협상 동향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패키지로 합의된 REDD+ 활동방법론 및 재정방법론 심층 분석을 실시
-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 GCF 유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REDD+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 추진

o Post-2020 신기후 체제에서의 산림분야 협상 대응 준비

- 산림분야 감축잠재력을 조기 분석하여 협상 시나리오별 옵션 검토
- 현재(CP2) 적용되고 있는 방법론 별 우리나라에 대한 장단점 분석
- 국립산림과학원의 Post-2020 대응 탄소계정체계 고도화 연구역량 강화

< 산림관련 기후 분야 국제 논의 흐름 >

▪ Post-2020 신기후체제

-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이 나는 2020년 이후, 선진국·개도국 모두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로의 전환 예정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INDCs)

- 제21차 당사국총회(2015, 파리) 이전까지 제출할 국가들의 탄소 감축량, 이행수단 및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현재 감축목표 외 포함될 내용 (기후변화 적응, 기술이전, 능력배양 등) 및 수준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

o 국제산림협정(IAF[1)]) 제정 등에 관한 UNFF 논의 적극 참여

- 임시 전문가회의('15.1월, 뉴욕), 제11차 유엔산림포럼('15.5월, 뉴욕)
- 비구속적 산림협정의 효과성 평가 및 국제산림협정 제정,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및 Post-2015 개발의제 등 논의 예정
- 구속력 있는 산림협정의 제정에 관한 국가 의견을 정립 회의에 참여
  * 산림정책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등 관련부서의 의견 수렴

o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회의 참여 및 기여 확대 추진

- ITTO 사무국장 선출 시 국익을 고려하여 후보지지, 영향력 확대
- 연 4만불에 불과한 사업부담금의 확대를 통한 입지 강화

1) International Arrangement on Forests :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산림협정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지속가능한산림경영(SFM) 기준의 적용을 엄격히 하려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 느슨한 적용을 주장하는 중국, 인니 등 개도국간의 의견 대립으로 비구속적산림협정(NLBI) 채택('08. 제7차 UNFF)되었으며 2015년 제11차 UNFF 시 재 논의 예정임

2)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추진

o FAO와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FLRM) 협력사업 추진

- FAO와 협력약정 체결('14.6월, 로마), 세부추진계획(PD) 작성('14.10월)
-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 초기 이행 단계에 따른 사업 지원
  * 시범 사업지 선정,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사업 추진경과 및 예산 사용내역 등 사업 평가 수행('15.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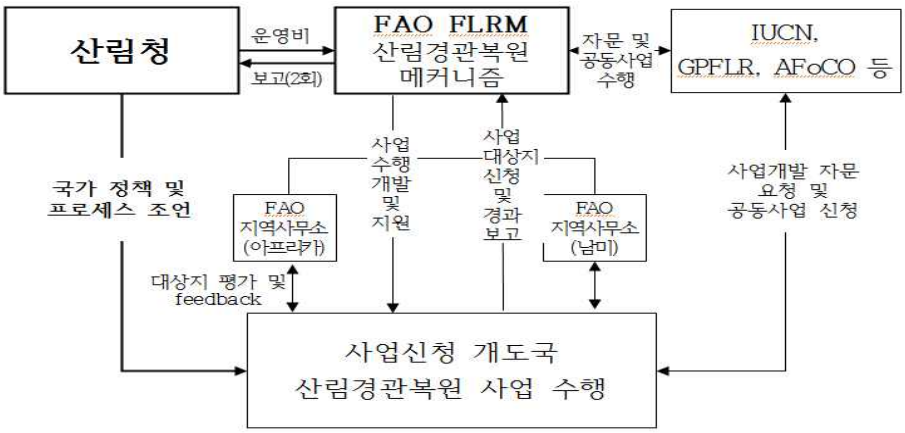

o CBD와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본격 추진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4.10월, 평창)에서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를 제안, 당사국들의 지지를 받아 결정문에 반영됨
- CBD 사무국과 이니셔티브 이행 양해각서 체결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 관련 다자협력기구의 참여 방안,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이니셔티브 이행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인력 파견 추진
  * COP12 결정문, 총리 발언문, PD 등을 바탕으로 기재부와 예산 협의
  * FERI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CBD 사무국에 사업담당자 파견 추진
- UNFF, WFC 등 주요 산림관련 다자 회의에서 이니셔티브 홍보
  * 제11차 유엔산림포럼('15.5월, 뉴욕), 제14차 세계산림총회('15.9월, 더반)
- 양자산림협력 회의 시 당사국에 이니셔티브를 홍보하고 참여 독려
  * 선진국의 전문지식 및 재정 지원, 개도국의 사업 참여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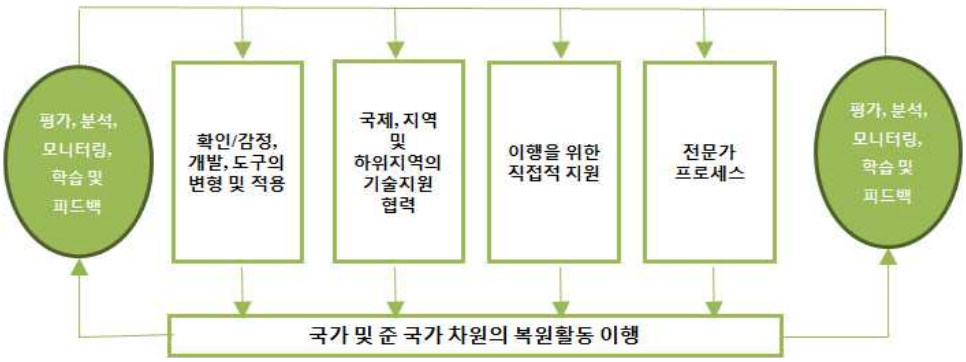

o 협력사업 간 협력, 관련 기구 간 협력방안 모색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FAO 산림경관복원 메커니즘, CBD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UNCCD 건조지녹화사업 등 우리청 추진 협력사업 간 협력 모색

  * 각 기구별 특화된 성격 및 장점을 파악하여 공조 촉진 방안 모색

- ITTO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모색

3) 세계산불총회 개최 및 세계산림총회 유치

o 제6차 세계산불총회('15.10월, 평창) 성공 개최

- 세계산불총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및 총회 준비기획단 구성

  * 국제행사 개최 전문 업체로 행사 개최 업무 대행, 부족한 인력 보완

-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산림항공본부 및 국민안전처와 산불진화 시연, 운영상의 안전 문제 등과 관련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한-아시아 산불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총회 성과물로 아시아지역 국가의 정기적 산불예방 및 진화 훈련 프로그램 추진 예정

- 관련 국제회의, 각종 광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총회 및 성과물 홍보

<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5. 10. 12 ~ 16(5일간), 평창 알펜시아
- 참석인원 : 약 2,000명 예상
- 예산규모 : 총20억원(산림청 20억원) * '15년 15억원
- 주제 : 산불의 과거와 미래
- 프로그램 : 전체회의, 병행회의, 산불전시회, 현장답사, 산불진화시연 및 경연대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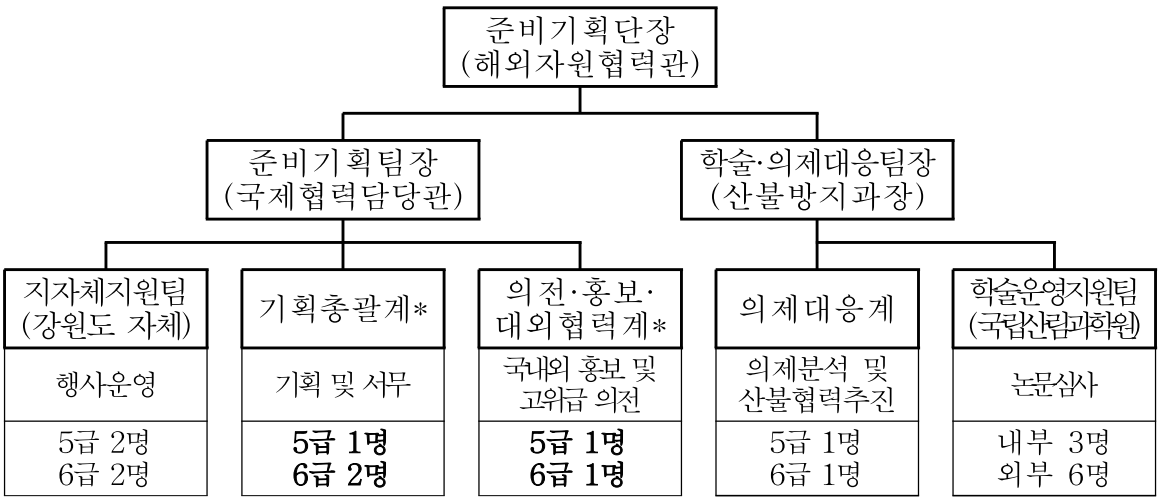

o 제15차 세계산림총회('21, 미정) 유치 추진

- 산림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 유치를 통해 국내 산림정책 관심 환기 및 전반적인 국제협력 검토의 전기 마련
- 유치의사 표명을 위한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내절차 진행 및 제14차 세계산림총회('15.9월, 더반)에서 유치의사 표명

< 세계산림총회 유치 절차 >

① 국제행사개최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산림청→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과)

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타당성조사 및 기재부의 조사보고서 심사

③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조정 및 최종 승인 결과 발송
 * 위원회 승인 전에 유치의사 표명 또는 홍보활동 불가

④ 제14차 총회(2015.9,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유치의사 표명

⑤ 제23차 FAO COFO(2016.7 예정)에서 제안서 제출 및 유치 의사국의 프리젠테이션 후, FAO Council에의 권고안 작성·제출

4) 국제협상 대응역량 강화 및 국내이행 준비 지원

o 국제협상 전문가들의 안정적인 협상 참가 및 대응 지원

- 전문가들의 협상 참가 및 국내 이행 지원을 위해 연구사업에 반영
- 외부 전문가의 협상 참가 및 전문 능력 활용을 위해 정책연구 지원

o 협약별・국제기구별 전문가 pool 구성・운영

- 본청, 과학원, 수목원, 국립품종관리센터 및 외부 전문가 지정
- 주요 회의별 의제검토 및 국내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회의에서 합의한 지침 등에 대해 산하기관에서 국내 적용 연구를 추진토록 하여 시책 건의토록 유도
 *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 프로세스 등에서 합의된 지침 등은 국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음.
- 산림분야 주요 이슈 추진 동향, 협상 결과 등을 뉴스레터로 발간

o 고용휴직, 해외 파견자들을 통한 현지 동향 정보 입수

o 관련 부서의 동향 파악 및 국내 이행 준비를 위해 회의 참가 확대

라. 추진일정

o 세계산불총회 개최 계획 수립 : 2015. 1월

o 세계산불총회 개최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2015. 1월

o 산림경관복원 협력사업 세부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업무협의 : 2015. 1월

o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 : 2015. 1월

o 3대 환경 협약 및 국제기구 이슈별 전문가 Pool 구성 : 2015. 1월

o 2013년 FAO 임산물 생산 및 수출입 통계자료 제출 : 2015. 1월

o 고용휴직・해외파견자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 2015. 1월, 운영지원과

o 제2차 UNFF 정부간 임시 전문가그룹 회의 참가 : 2015. 1월, 미국(뉴욕)

o Fire Asia 2015 참가 : 2015. 2월, 중국(홍콩)

o 본 챌린지 고위급회의 참가 : 2015. 3월, 독일

o 제11차 유엔산림포럼 참가 및 부대행사 개최 : 2015. 5월, 미국(뉴욕)

o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참가 : 2015. 6월, 독일(본)

o 고용휴직・해외파견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 2015. 7월, 운영지원과

o 제19차 생물다양성협약 부속기구회의 참가 및 부대행사 개최 : 미정

o 제3차 APEC 산림장관회의 참가 : 미정

o 제12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부대행사 개최 : 2015. 9월, 터키

o 제14차 세계산림총회 참가 및 부대행사 개최 : 2015. 9월, 남아공(더반)

o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 : 2015. 10월, 한국(평창)

o 제51차 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 참가 : 2015. 11월, 말레이시아

o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 2015. 12월, 프랑스(파리)

7. UNCCD 국제논의 대응 및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목 표

◇ UNCCD 목표 설정 등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가뭄(DLDD) 논의 참여 및 창원이니셔티브 지속 이행으로 UNCCD내 우리나라 역할 강화

가. 정책여건

o 전 지구차원에서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가뭄(DLDD[2)]) 문제의 해결이 빈곤 감소를 위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림은 DLDD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성이 증대

o Rio+20 정상회의('12.6)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토지황폐화 중립세계 -a land degradation neutral world (LDNW)'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자는 문안을 결과문서(The Future We Want)에 반영

※ LDNW는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해 COP10에서 언급하였으며, 결과문서 반영을 위하여 COP10 의장국이 한국이 주도적 역할

o UNCCD COP11('13.9, 나미비아)에서는 Rio+20 정상회의('12.6) 결과문서 후속조치를 위하여 IWG(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을 결성하여 LDN(Land Degradation Neutrality)에 대한 과학적 기반 제공, 달성 수단 및 자문 역할을 하도록 결정문 채택

o COP11에서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도구로서 창원이니셔티브 포함,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고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창원이니셔티브의 성실한 이행 기반 강화가 필요

※ "Invites Parties to consider the role that new initiatives could play as tools for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Strategy, including, inter alia, the Changwon Initiative …."

o UNCCD COP12('15.9 잠정, 터어키) 개최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COP11 의장단에 선출되어 지속적으로 DLDD 관련 논의

2) DLDD :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나. 기본방향

o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COP11 의장단으로서 결정사항 이행 및 사막화 방지 국제 논의 적극 대응

o UNCCD COP12에 대비하여 협약의 목표 설정 및 국제사회에서 DLDD 논의, DLDD 인식 제고 및 UNCCD 인지도 상승에 기여

- POST-2015 후 SDG 설정 논의에 DLDD 관련 의견 제시 및 DLDD 및 LDNW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

o UNCCD 및 UNEP 등 국제기구와 실질적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하여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하여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 운영, UNCCD 과학 기반 구축 및 생명의 토지상 등 지원

-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국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o 동북아 DLDD 네트워크 및 동북아 소지역 행동계획 등을 이행하여 아시아의 사막화 방지 허브 역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DLDD 저감을 위한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UNCCD 목표 설정 논의 등 주요 회의 참가 및 주최

o 차기 총회에 대비하여 COP11 의장단 회의 등 UNCCD 주요 회의 참가 및 의제 대응

- 의장단회의, 제3차과학대회('15.3월), 협약검토위원회(CRIC) 등

o Rio+20 후속조치를 위하여 COP11에서 결정된 정부간 작업반(IWG) 회의의 LDN 연구 및 목표설정 논의에 기여

- IWG 회의 개최 및 창원이니셔티브가 지지하는 UNCCD 목표 설정 논의를 지지하여 창원이니셔티브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차기 전략계획 수립 과정에 연계

o ELD 및 Global Soil Week 등 토지경제성평가, 토지황폐화 및 LDNW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

o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협상에 사막화, 토지황폐화 의견 제시 및 참가

2)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 운영

o 건조지 토지황폐화 지역의 식생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황폐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증진 기반 마련
- 한국의 산림녹화 기술 및 친환경 녹색성장 경험 등을 공유하고 주민 인식제고 및 능력배양 사업을 병행 추진

o 실질적 지원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시범사업 지원대상국 수는 축소

- 현재 매년 2~3개국 시범대상국 선정은 지양하고, 사업별 지원규모를 50만불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국도 매년 1~2국으로 선정

※ 시범사업 대상국(국별 10만불): 가나, 모로코, 튀니지('12년), 베넹, 이디오피아, 에콰도르, 페루('13년), 중앙아시아 3개국(키르기즈, 타즈키스탄 등)

o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추진체계 정립

- 운영위원회 가이드라인 준수 및 사업서 제안 양식 개선 및 활용
- 운영위원회에서 신규사업 논의, 사업 세부 실행계획 검토, 사업평가 수행 및 사업 확대여부 검토 등

※ 산림청, UNCCD, UNEP로 운영위원회 구성(UNCCD 제10차 총회 기간 중 3자 MOU 체결 및 '12. 5월 GDP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o 사업추진의 책임성 확보 및 성과 홍보

- 사업 추진시 개도국 책임성 확보와 실적 홍보를 위하여 사업결과를 UNCCD 홈페이지에 게재 추진
- UNCCD 또는 UNEP 등 사업수행기관과의 성과보고서 발간 추진

3) UNCCD 협약이행 강화를 위한 과학기반 구축 및 생명의 토지상 운영

o 토지황폐화 경제성 평가(Economics of Land Degradation) 국제 공동연구 지원

- ELD 국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아시아 허브 구축, 보고서 발간 등

o Rio+20 후속조치 정부간 작업반, Land for Life Award 운영 등 지원

4) 동북아 DLDD 네트워크 및 황사방지 프로그램 운영

o 동북아 DLDD 네트워크 운영 및 소지역 행동 계획(SRAP)을 주관

- 한·중·몽 3자 간 DLDD 네트워크 포럼 및 운영위원회 개최
- SRAP 이행 평가, 시범사업 개발 및 이행, SRAP 조정 작업 수행
- NEASPEC 등 지역협의체 및 ADB 등 재정기구와 공동협력 추진

※ NEASPEC(동북아환경협력계획, Noorth 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 Cooperation), ADB(아시아개발은행, Asia Development Bank)

o 동북아 DLDD 방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중국-몽골 국경지역 황사 발생 방지 프로젝트 지원

※ 중국 또는 몽골 건조지지역에 3개국이 공동 참여하는 DLDD 저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쿠부치포럼 등 동북아 지역 DLDD 관련 주요 회의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5) UNCCD 인식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강화

o UN 총회 결정문에 DLDD 이슈를 UNCCD 협약 내로 이끌어오는 노력을 강화

6) UNCCD 및 UNEP 사무국에 인력파견 추진

o UNCCD 사무국(독일 본)에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관리를 위한 연락관 파견 추진

o UNEP 사무국(케냐 나이로비)에 건조지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자 파견 추진

라. 추진일정

o UNCCD 사무국 직원 파견 : 2014. 12월 ~ 2015. 1월

o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5. 1월

o 제3차 건조지녹화파트너십 인셉션 워크숍 : 2015. 1월(중앙아시아)

o ELD 사례연구 후속 논의를 위한 회의 : 2015. 2월(태국 방콕)

o 건조지녹화파트너십 운영위원회 참가 : 2015. 2월(독일 본)

o 창원이니셔티브 이행 재정 검토회의 : 2015. 2월(독일 본)

o UNEP에 건조지녹화파트너십 사업 관리자 파견 추진 : 2015. 2월

o UNCCD COP11 의장단 회의 : 2015. 2월(독일 본 예정)

※ 건조지녹화파트너십 운영위원회와 연계

o UNCCD 협약검토위원회 : 2015. 3월(잠정)

※ 미개최시 COP12와 back-to-back으로 개최

o Rio+20 후속조치 정부간 작업반(IWG) 회의 참가 : 2015. 3월(잠정)

o 제2차 건조지녹화파트너십 현지 점검 : 2015. 8월(에콰도르, 페루)

o UNCCD 협약검토위원회 : 2015. 9월

o UNCCD COP12 총회개최 : 2015. 9월(잠정, 터어키)

o 건조지녹화파트너십 운영위원회 참가 : 2015. 9월

o 제4차 DLDD-NEAN 포럼 및 운영위원회 개최 : 2014. 10월(한국)

o Global Soil Week 참가 : 2015. 11월

8. 한·중·일 FTA 등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목 표

◇ FTA 준비 단계부터 협상까지 철저한 대응으로 임산업 보호, 수출 및 투자여건 개선

가. 정책여건

o 2015년 1월 현재, 미국, EU 등 53개국과 15건의 FTA를 타결하였고, 한·중·일 FTA 협상이 진행되는 등 시장개방 가속화

* 발효(11) : 칠레, 싱가포르, EFTA[3],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 타결(5) :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 협상중(4) : 한·중·일, RCEP,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추가자유화
* 협상개시 준비중(7건) : TPP, Mercosur[4], 이스라엘, 중미 5개국[5], 태국,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o 한중일 FTA에서 중국에 대하여는 한중 FTA와 같은 수준으로 타결하고, 일본에 대하여는 수출확대를 위해 높은 수준의 타결이 유리(농경연 '11)

o RCEP[6], 한중일 FTA 등 다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TPP[7]협상에도 가입할 것으로 예상

나. 기본방향

o FTA 대상국별 교역규모, 피해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생산자 및 품목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협상안 준비

o 청장이 참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 통상추진위원회, 국장이 참여하는 통상실무위원회 등 고위급 협상채널을 활용하여 임업분야 이익 반영

o 한·중FTA 추진에 따른 국내대책(대경장 의결사항)에 임산물 분야(수출, 단기임산물, 목재류) 반영 추진

o 관세협상 외에 상대국 수출제한조치 해제요구, 불법벌채목 규제 등 협력분야, 임업서비스, 원산지 등 분야에 임업분야 이익 반영 추진

o 타결·발효된 FTA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

---

3) 유럽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 남미공동시장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 파나마·코스타리카·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6)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주도) + 6(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7) Trans 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미국 주도로 12개국 참여(뉴질랜드, 싱가폴, 칠레, 부르나이,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내 파급효과가 큰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 대응

o 6차례 협상('12.11～'14.12월)에서 3국의 양허수준 조율 중

- 초민감품목 : 품목 수 기준 X%, 수입액 기준 X% 범위
  * 보호방법 :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계절관세 등
- 민감품목 : 11～20년 기간 중 관세 감축
- 일반품목 : 10년 이내 관세 감축
- 즉시철폐 : 발효와 동시에 관세철폐

o 우선 처리하여야 할 사항

- 전 품목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의 3가지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품목군별 처리방안 검토
  * 용역결과, 품목과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된 처리 방안을 마련
- 한·중·일 FTA 체결 대비,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여건과 국내 생산실태 조사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o 협상에서 주력할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인하에 취약한 임산물 민감성이 품목별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농림축산식품분야 협력 내에 산림분야 협력 강화, 수출제한 금지, 불법벌채 목재 유통금지에 관한 대응 등 임업분야 협력 사항 반영

o 품목과와 공동으로 협상동향 설명회, 통상 간담회 등을 통해 협상동향을 전파하고 임업인의 의견을 수렴

2) 협상중인 FTA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대응

o 한·중·일, 인도네시아, RCEP 등 협상 진행 중인 FTA에서 국가별 민감성 반영을 위한 협상 추진

- 전문기관 연구결과, 품목과 의견 등을 반영한 민감 우선순위 확정
- 밤,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양허제외, 장기철폐 등 민감성 반영
- 합판, 섬유판 등 가공 목재산업 보호를 위한 민감성 반영

o 수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 수출 유망품목의 협상 대상국 관세 조기철폐 요구와 수출규제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

o 해외조림 등 임산업 해외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안정성 확보방안 모색

o 원목, 목재칩 등 원자재 수급의 원활화

o 협상중인 FTA에 대한 국가별 대응자료 마련(~'15까지)

3) 한·중·일 FTA 타결을 대비한 국내대책 마련

o 한·중·일 FTA대비 관련부처 협의를 통한 임산물 국내대책 마련

-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추진위원회 등 고위급 회의에 청·차장의 참석 정례화로 임산물 민감성 부각 및 국내임업 육성 지지기반을 마련

- 관련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비 및 지원기반시설 연계 방안을 마련

o 한·중·일 FTA대비 국내대책에 임산물 피해 대책 마련

-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피해 대책 예산을 반영

- 밤, 건조표고, 반건시 등 주요임산물 중국과 일본시장 진출대책 등 포함

-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사업 확대를 위해 R&D 연구사업 진행('14년 7억 반영)

o 임산물 식품안전성 관리 강화

- 중국내 식품안전성 우려 증가에 대응한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산물 수출이력 관리 품목 확대

  * ('13) 1품목(밤) → ('17까지) 5품목(밤, 표고, 감 등)

4) WTO/DDA 등 다자간 통상협상 대응

o WTO, GSTP, APTA 협상 등 다자 임산물 협상 대응

- WTO 가입신청 국가 및 GSTP[8], APTA[9] 협상관련 품목별 경쟁력 파악

o DDA협상 동향 및 임산물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별 입장파악과 영향분석 등 대비

- 농업협상과 NAMA[10] 협상별 민감품목 선정, 영향분석 등 대응

- 일부 분야에 대한 조기타결 움직임 등 파악으로 임업계 영향 최소화

---

8)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개도국간 특혜관세)
9) Asia=-Pacific Trade Agreement(우리나라,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가 회원국)
10) Non-Agriculture Market Access(비농산물 시장접근)

5) TPP 협상 대비

o 정부의 TPP 관심표명('13.11.29)에 따른 임산물 분야 협상대책 수립

- 전문기관 용역 결과(농경연, '14)를 통한 세부협상 대응방안 수립

o 대부분의 임산물이 관세인하 대상으로 포함될 것에 대비

- TPP 협상의 특성상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인하 대상이 되고 있어 임산물도 대부분 관세인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부분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게 대두

라. 추진일정

o 임산물 통상협상 기본계획 마련 : 2015. 1~2월

- 한·중·일 FTA, RCEP 등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대응대책 중심

o 통상협상 간담회를 통한 임업계 의견수렴

- FTA/DDA협상 간담회, 대책회의 : 사안발생시 수시

o 통상협상 관련 회의 참가

- 임산물 통상협상 참가 : 연중

-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추진위원회, 통상실무위원회 등 : 연중

- 한·중 FTA 대비 관계부처별 국내대책 회의 : 연중(사안발생시 수시)

9. 임산물 수출확대

목 표

◇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조직 역량강화 및 전략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확대

o 임산물 수출 확대 : ('14) 450백만$ → ('15) 500백만$(증 11%)

가. 정책여건

o 한·중FTA 등 주요 FTA 타결·발효로 시장개방 가속화

o 세계 경제 침체 및 엔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 각국의 수입통관 강화

o 목재 등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국가별 자원 확보 경쟁 심화

o 한류열풍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중국, 아세안 시장 확대 가능

나. 기본방향

o 고품질 임산물의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및 전략 수출상품 육성

o 수출협의회와 수출선도조직을 중심으로 핵심수출 전문조직 육성

o 수출국 다변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o 수출장애요인 해소 및 수출확대에 유리한 여건 조성

o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고품질 임산물의 안정적 수출기반 구축 및 전략 수출상품 육성

o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출용 공동장비(급속예냉, 자동선별장비 등) 지원

- '15년까지 3개소, 총사업비 20억원(국고 10, 지방비 4, 자부담 6)

* '13년 충남 부여(표고버섯), '14년 충남 청양(밤), '15년 경북 청도(감)

o 중국 등 FTA에 대응한 임산물 고부가 수출전략상품 개발 R&D('14~'16, 6억원)
- 주요 품목별(밤, 표고버섯, 감, 산양삼) 수출전략 상품 개발
-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유통법 개발 및 해외마케팅 방안 연구

o 수출상품의 고품질과 균질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비 지원(120백만원)
-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가공품 생산장비 우선 지원

2) 수출협의회 기능 강화 등 임산물 핵심수출조직 적극 육성

o 주요 품목별 수출협의회(5개)의 기능을 강화하여 핵심 수출조직으로 육성
-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시 수출협의회를 우선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출협의회의 기능 및 조직을 강화
- 수출협의회별 자율기능 강화로 품목별 품질기준 운용, 수출 질서 유지, 정보교류, 정책건의, 해외마케팅 효율화 방안 등 수출확대방안 협의
-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식품 박람회 및 홍보행사 공동 참가 지원
  * 수출협의회(5개) : 밤, 감, 표고버섯, 목제품, 합판보드

o 수출선도조직을 운영하여 전문 수출경영체로 육성
- 수출선도조직(2개)을 신규로 선정하여 운영 활성화('15~)
- 참여농가 확대, 생산자·수출업체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품질개선, 임가관리, 마케팅, 사업관리비, 장비지원 등(369백만원)

o 수출전문 인력 육성으로 수출역량 배양
- 수출협의회별 수출컨설팅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조직력 강화
- 수출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임산물 생산자, 수출업체 대상 교육
- 개별 교육 지원으로 수요자 맞춤형 실무습득 기회 부여
- 임산물 수출 확대 전략 워크숍을 실시하여 수출역량 강화 및 생산자와 수출업체 만남의 장 마련

3) 수출국 다변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o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시장조사단, 마켓테스트, 수출상품화 지원
- 중국 등 신규시장 개척과 관련된 주요 국제박람회에서 임산물 홍보관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청정임산물의 인지도 확대
- 시장조사단 파견으로 수출품목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지원

- 신시장 개척 위험요인 감소를 위하여 마켓테스트를 통한 시장진출 지원
- 잠재력이 있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개발에서 해외시장 정착 시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수출상품화 사업 추진

o 주력 품목의 수출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바이어 초청, 판촉전 등 지원
-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신규 거래선 발굴 및 수출확대 지원
- 해외 판촉행사의 효과성 강화를 위하여 종합판촉전 우선 지원 및 급성장하는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위한 판촉 지원

o 수출성과로 연계될 수 있는 해외홍보 및 시장정보조사 추진
- K-food Fair 등 농식품 홍보행사에 공동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 거양
- 임산물 수출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시장정보를 분석, 제공(매월)

4) 수출장애요인 해소와 수출확대에 유리한 여건 조성

o 물류비 경감을 통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물류비 지원(1,869백만원)
- 수출가격에 따라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로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장려
- 수출여건과 국내 생산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물류비 지원

o 수입국의 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응하여 현지검역비, 수출이력비 지원(500백만원)
- 잔류농약 검사 및 생산이력제 등 임산물 수출 안전성 확보 지속 노력

o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어용 카탈로그, 포장재 개발 지원(35백만원)

o 수출보험 및 해외인증비 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업체 경영안정 유지 및 비관세 장벽 해소 추진(150백만원)
- 수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변동보험료 및 단기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임산물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하여 품질 경쟁력 강화 및 비관세 장벽 해소

o 목제품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및 탄력관세 운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 목제품 수출용 원자재 구입비 융자 지원(이차보전, 20억원)
※ 수출원자재 융자지원 금리인하반영 : ('14년) 4% →('15년) 3%
- 합판보드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 지원을 위한 탄력관세 운영

5)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강화

o 지방자치단체 수출·유통 담당부서와 협조채널을 구축하여 협력사업 확대
- 지역별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임산물 수출 예산 지원
- 지자체와 연계하여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및 해외시장개척 추진

o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조합, 생산자간 상시적인 공조시스템 운영
- 산림조합의 수출참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콜센타 운영 등

o 한국식품연구원, 농진청 등 전문가(12명)로 구성된 감수출개척팀 운영
- 매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 및 과제 발굴

o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통상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 농식품부와 K-food Fair등 해외 홍보행사 및 해외박람회 공동 참여 확대로 임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효과 극대화
- 수입국 검역 조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정책 협조
- 수출국에서의 통관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해 산업자원통상부와 협조

o 품목별 주산지로 찾아가는 수출확대 간담회 운영 등 개최
- 수출현장간담회, 부진 품목에 대한 수출확대회의 등 개최
- 수출애로사항 의견수렴과 개선 추진

라. 추진일정

o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 세부 추진계획(지침) 시달 : 2015. 2월
- 해외시장개척 등 세부사업별 신청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수시
- 판매촉진비 : 매월
- 수출선도조직 선정 : 2015. 1월
- 시장조사단 파견 : 2015. 상반기
- 기계장비 지원 : 2015. 하반기
- 임산물 해외 수출홍보 : 2015. 하반기

o 임산물 수출확대 전략 워크숍 : 2015. 12월

o 수출확대 현장 간담회 : 수시

o 임산물 수출유공자 표창 : 2015. 12월

산 림 자 원 국　소 관

1. 산림계획제도의 개선과 신규 정책 개발

목 표

◇ 산림계획제도 개선을 통한 산림정책의 효율성 제고
◇ 산림부문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가. 정책여건

o 산림부문의 법정계획 증가에 따른 계획간 연계 및 정합성 확보방안 필요
o 창조경제 이행과 산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산림정책 개발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림기본계획의 역할조정 등 산림계획제도 운영전반 개선
o 해외 산림정책의 조사·분석을 통한 산림분야 신규 정책 발굴 및 개발
o 산림기본법 개정안('13.10 국회제출)에 따른 시행령 개정
o 타분야 정책 어젠다 중 산림분야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대응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계획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o 산림기본계획을 산림분야 전략계획으로 기본계획의 역할조정 방안 마련
- 계획성격 변경을 위한 요건, 절차 등에 관한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일본, 미국 등 해외 및 타 분야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진계획 수립 (제6차 산림기본계획부터 적용)

o 산림기본계획 연차 실적 평가 및 세부업무별 계획 평가 제도 도입 추진
- 주요 사업별로 기본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사업별 부진 요인 등을 분석하여 피드백
- 기본계획 성격 변경과 연계하여 산림관련 계획간 정합성 확보 방안 마련

2) 산림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o 산림계획제도 변경 등 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산림기본법 개정안 마련
- 산림계획평가제도, 산림정책위원회 설치 등 관련 신설

o 국회에 계류 중인 산림기본법 개정안('13.10 제출)의 처리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국회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AFoCO 등 국제기구 지원 관련 규정 반영

3)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신규 산림정책 개발

o 산림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예측 조사 및 각 부문별 신규 전략사업 발굴
- 제6차 산림기본계획('18~'27) 수립을 위한 장기예측 등 연구용역 추진
- 신규 전략사업 발굴 및 주요 사업별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방향 재정립

o 해외 산림정책 및 타분야 우수사례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 실정에서 이행 가능한 신규 정책 발굴·개발
- 자원정책, 산림산업, 산림복지, 산림관리 등 다양한 산림정책의 해외 동향 자료 수집 및 분석
- 우수사례 및 정책동향은 별도 책자로 발간하여 공유 확산 추진

4) 타 부처 정책 어젠다에 대한 대응 강화

o (농식품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 산림·임업과 관련이 큰 정책 어젠다의 논의 및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산림부문의 대응 정책 개발

o (기타) 녹색성장 이행, 지속가능발전 등 정책 어젠다 중 산림분야 과제에 대한 입장반영 강화

o 본청 내 소관부서의 협력을 통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어젠다를 청 전체로 확산하고 관련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라. 추진일정

o 산림기본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제출 : 2015. 10월
o 해외 산림정책 우수사례 및 동향 분석 보고 : 분기별 1회
o 산림기본계획상 주요사업 모니터링 : 2015. 5~9월
o 산림정책위원회, 산림계획평가제도 관련 세부지침 마련 : 2015. 11월

2. 산림분야 일자리 대책 추진

목 표

◇ 청년・귀산촌 희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 아이디어 발굴 및 보육을 통한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 확대
o '15년 산림일자리 2천개 신규 창출 및 263천개 목표 달성 추진

가. 정책여건

o 고용없는 저성장으로 인한 청・장년 실업문제 심각성 부각
o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산림부문의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부각
o 산림휴양・치유・탄소배출권거래 등 산림부문의 저변 확대

나. 기본방향

o 산림분야 장기・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일자리정책 추진기반 강화
o 산림 특성화고 운영 내실화 및 청년층 진로탐색 및 취업 지원
o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발굴·육성을 통한 고용 및 창업 활성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일자리의 지속적 확대 및 일자리정책 추진 기반 강화

o 사회적수요에 부합하는 장·단기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 신규 장기 전문일자리 발굴 및 산림복지 등 유망분야 일자리 확대
- 농・산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공공일자리 균형 창출

o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13~'17년) 중간점검 및 목표 재설정
- 산림일자리 범위·집계방법 개선 및 일자리 관련 정책 동향 분석·반영
- 산림과학원 통해 산림일자리 모니터링 및 통계 기반 구축 연구 추진

o 산림일자리 창출 지원기관인「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설립 추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상반기)

2) 산림분야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진로탐색・취업 지원

o (고등학생)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및 산학연계 강화
- 청주농고 산림환경자원학과 신규 지정에 따른 교육기반 조성계획 수립(2월)
  * 교육과정 편성,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시설 및 실습장비 확보, 교원의 특성화 역량 강화 등

- 산림특성화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4월)
- 산림특성화고 운영성과 중간평가(상반기) 및 육성·지원계획 수립(하반기)
- 산림특성화고-산업체 협력 확대하여 교과과정 개편* 및 취업연계

  * 캐드(임도, 사방, 조경, 측량), 목공, 특용임산재배, 농산물유통·관리 도입 등

o (대학생) 산림관련 전공 대학생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인턴제도 및 박람회 실시
- 녹색장학사업과 연계한 인턴장학금 지원으로 산림청년 인턴제 운영

  * 약 100명의 학생에게 50만원/1개월 ~ 150만원/3개월 지원(총 90백만원 예정)
- 산림분야 취업·창업 대상별* 맞춤형 정보제공 일자리박람회 개최

  * 산림특성화고생, 산림관련 전공 대학생, 귀산촌 희망자 대상 개최(3회)

3)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델 발굴 및 홍보 지원

o (발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발굴 및 성공모델 보급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아이디어공모전 개최(상반기) 및 선정팀 대상 체계적 보육·컨설팅 지원(하반기)
- 산림교육·복지 전문자격 보유자 대상 산림복지분야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기존 연 2회(반기별) 개최되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와 연계 추진

o (육성) 지속가능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홍보 강화·인식 제고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통합워크숍 통한 모니터링 실시(반기별)
- 산림(임업진흥원) 및 일반경영(중간지원기관)분야 컨설팅 지원
- 산림박람회 등과 연계한 산림형 사회적경제 홍보 전시회 개최(2회)
-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안내책자 제작, 인터넷 배너광고 등 홍보 다각화
- 지자체·산림 유관기관 대상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안내* 및 제품구매 권장

  * 산림분야 사업설명회와 연계하여 지자체 산림공무원 대상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안내

라. 추진일정

o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 : 연중
o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 반기별 1회
o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5. 5월, 10월
o 맞춤형 산림고용박람회 개최 : 2015. 6월, 9월
o 산림인턴제도 실시 : 2015. 6~8월

3.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마련

목 표
◇ 법적·제도적 기반정비를 통한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등으로 산림분야 적응 역량 강화

가. 정책여건

o 신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하여 산림부문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역량 강화 필요

o UN은 산림분야를 탄소감축 대안으로 평가('14,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o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 수단인 산림탄소상쇄제도 도입 및 운영

나. 기본방향

o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탄소흡수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o 제도 홍보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을 통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활성화

o 산림탄소흡수량 발생에 대비한 시범 인증 추진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o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실태조사 방법론 개발 등 적응역량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o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15~'19)의 실행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국내외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세부추진 계획의 세부실행사항 포함

2) 탄소흡수원법 개정('15년)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

o 산림탄소관리사 자격·학력 요건 등 신규 반영 사항 및 규제 개선

- 산림탄소관리사 자격·학력 요건, 교육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 규정
- 목제품 이용실태 조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관련 규제 폐지
- 산림탄소상쇄 참여유형 조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추진

3)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홍보 추진

o 산림탄소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산주 등 맞춤형 설명회 및 1:1 컨설팅 추진

- (기업) 산림 미소유 기업은 국·공유림 매칭 서비스 제공

- (산주) 산림조합, 산림경영인협회 등을 통한 참여 유도(1호 사업 등록 추진)
- (지자체) 도시숲, 학교숲 등 식생복구 유형에 대한 참여 유도

*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확대 추진(누적) : ('14) 약 30건 → ('15) 70건

o 산림탄소상쇄제도 관련 정보를 종합한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운영

- (포털사이트) 기후변화, 탄소상쇄제도, 산림탄소 관련 통계 등 정보제공
- (산림탄소등록부) 사업계획서 접수 → 등록 → 모니터링 → 검증 → 인증 → 거래 등의 업무를 원스톱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
- (인벤토리) 산림·습지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관리

o 산림탄소상쇄제도 및 기후변화 관련 기획 보도 등 홍보 추진

-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 기업 등에 대한 홍보로 예비사업자의 참여 유도 ·식목일 등 산림에 대한 관심 고조 시기를 중심으로 홍보 강화
-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산림탄소 시책교육 운영

o 환경부와 협업하여 산림부문 상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 배출권거래제 관련 산림부문 방법론(신규/재조림, 바이오매스에너지) 개발 지원

4) 산림탄소흡수량 발생에 대비한 시범 인증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o (검증기관) 산림탄소흡수량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관* 신규 지정·운영

- 검증기관 지정·운영 지침 등을 바탕으로 산림탄소센터에서 지정·운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검증기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운영

o (시범인증) 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산림탄소상쇄 등록 사업 대상의 산림탄소흡수량 시범인증 추진(4건)

- 산림탄소흡수량 시범인증을 통해 사업자의 인증 준비 및 역량 강화

o (거래 활성화 방안) 산림탄소센터에서 산림탄소흡수량을 선구매하고 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등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 산림탄소흡수량 거래자금의 운영 목적, 거래 수수료, 재판매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운영지침 마련

o (해외사례 벤치마킹) 산림탄소거래 및 해외시장 연계에 대비한 국제적인 자발적 산림탄소시장 벤치마킹

- VCS(Verified Carbon Standard) 등 자발적 산림탄소시장 운영관련 기관 협의, 해외 탄소상쇄 운영표준과의 Gap 분석 추진 등

o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정비 및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원회 운영

-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13.3.29～'15.3.28, 9명)의 재구성 추진
  · 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국제협약 분야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정부부처 조정 추진
- 주요 정책 심의·의결을 위해 분기별 위원회 운영
  · 안건(안) : 탄소흡수원 증진 시행계획, 하위법령(안), 탄소흡수량 심의 등

5)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적응 역량 강화

o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1～'15) 이행 결과 평가 및 산림분야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16～'20) 수립

- 제1차 적응대책의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제2차 적응대책 수립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등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 '14년 연차별 세부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 및 '15년 연차별 계획 이행
  · 국립산림과학원, 본청 관련부서와 함께 산림/생태계 분야, 국토/연안 분야, 국제협력 분야 등 15개 과제* 추진 중

* 한반도 생태계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취약성 평가, 생태축 복원, 도시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등

o 산림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고시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14.5.20)에 따른 산림분야 실태조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방법론 개발 추진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및 방법론 개발 추진

라. 추진일정

o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운영 : 연중
o 산림탄소등록부 시스템 운영 : 연중
o 산림탄소상쇄제도 홍보 추진 : 2015. 4월
o '16년도 탄소흡수원 증진 시행계획 수립 : 2015. 11월
o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개최 : 분기별 1회
o 기후변화와 산림탄소 과정 시책교육 추진 : 상·하반기 각 1회
o 탄소흡수원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후 6개월내

4. 현장 및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및 관리 강화

목 표
◇ R&D 성과 활용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체계 개편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연구 및 현장애로 기술 중점 개발 ◇ R&D 과제관리 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집행 효율성 제고

가. 정책여건

o 국가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수요 증가 및 유사·중복업무 조정에 따른 농진청·환경부·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R&D 유사·중복 대응 필요성 증가

o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를 위해 종자, 유전체 등 부처 간 지속적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추세

o 성과평가 효율화를 위해 연구성과 평가시 논문·특허 등 양적지표 위주에서 질적지표 위주로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R&D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o 임업인 등 수요자 중심의 연구 추진으로 현장애로 문제 해결형 R&D 중점 추진

o 기관간 연구과제의 유사·중복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업연구 강화

o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 중복 문제에 대한 해결·해소 및 효율화 추진

o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신설에 따른 업무기능 이관 및 조직개편 등 재정립
- 신축 건물의 차질없는 준공, 이관업무 기능 및 소요인력 개편(25명) 등 추진

o 산림청 소관 R&D과제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관리기관 대행체계 구축

o 양적 성과에 기반한 평가에서 기술계약 등 질적 성과중심의 평가로 전환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및 선정 프로세스 개선

o 임업기술연구개발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구조 선진화

- 연구사업단 과제는 임업현장문제 해결형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기획연구과제 및 자유공모과제는 통합·운영

※ 문제해결형 연구사업단과제 : 연간 1개 사업단, 7→5년 이내로 조정, 연 4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20억원 이내)로 변경

※ 창의연구과제(인력양성) : 연 1～2개 대학, 3년 이내, 연 2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6억원 이내)

※ 자유공모과제는 아이디어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획연구과제와 통합 추진

- 지자체 지방임업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정액배분 방식에서 과제평가를 통해 현안 또는 지역특화 연구로 전환 및 차등배분

o 현장과제 발굴을 위한「과제기획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R&D 강화

- 통상의 환경에서 착안하기 어려운 혁신적 연구 아이템 발굴 및 연구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의 사업화 연계 추진

※ (현행) 제한된 전문가 과제 기획 → (개선) 다양한 참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기획

- 산림청, 소속연구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과제기획단을 구성하여 미래 산림 유망기술 및 현장애로 과제 발굴

- 발굴된 연구과제는 목록화하여 본청, 과학원 등의 신규 과제로 추진

- 연구개발계획서(RFP) 예비검토제를 도입하여 기획단계부터 연구성과 활용계획 반영 등 성과 완성도 제고

※ 과제기획단에서 본청, 과학원, 수목원 연구과제 계획서 심사

o 과제 사전기획 완성도 제고를 위한「연구개발계획서(RFP) 사전검토제」시행

- 필요성・시급성, 사업목표 설정 및 기술로드맵, 중점 성과지표, 성과창출 및 성과활용・확산 등 기획 세밀 검토 및 전문적 조사・분석

※ 응용・개발연구는 기술완성도 목표 상향조정, 기술이전・사업화에 중점

※ 본청 산림정책과 및 담당부서, 소속연구기관 기획과장 등 전문가로 구성・운영

o 연구성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계속과제「R&D 컨설팅 평가제도」도입・운영

- 중간평가・최종평가 및 추진과정에서 해당부서 참여 및 수시 협력 강화

2) 부처 및 소속 R&D 기관의 협업 및 융합연구과제 발굴・지원

o 감, 버섯 등 농촌진흥청과의 유사 연구분야에 대한 협업 연구 확대

-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등이 향후 유망한 유전자원 분야를 집중 발굴하여 사업의 공동 기획, 산업적 연계가 필요한 분야 연계 추진

※ (협업 품목) 감, 버섯 등 (다부처 사업) Golden Seed 프로젝트, 다부처유전체 사업 등

※ 소속 연구기관 협업연구 : Know-how, 인프라 등을 연계·융합하여 정책적 기술수요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추진(목질자원 활용 친환경 축산기술 개발 등)

o 산림복지, 산림재해방지 등 타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과제 발굴

※ 산림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대비 및 경계피난 기술 개발('15~'17) 등

3) R&D 성과평가를 양적 지표 중심에서 질적 지표로 전환

o 성과목표를 구체화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화를 위해 선(先) 성과목표 설정 및 후(後) 목표달성도 중심으로 평가 추진

- 연구개발 계획서·협약서에 사업목표 명확화 및 성과지표 구체화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Outcome 위주의 성과목표 추가

◇ 성과목표·지표 : 논문, 특허 위주 → 현장적용 실용화 지표로 변경

* 문제 정의 → 기술수준 → Input → Output ⇒ Outcome
(무엇을 얻고자) (현재 수준) (투입) (산출) (단기+중기+장기)

※ 성과목표·지표를 논문, 특허 위주에서 현장적용 실용화 지표로 확대

o 논문·특허 수 등 정량적 지표 도달 기준을 마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등 연구개발 성격 및 규모와 목표에 따라 평가방식과 지표를 차별화

- 논문·특허 등 대표적 성과유형은 공통된 질적 성과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기준 적용

- 양적 성과는 사업 초기단계 또는 순수 기초과학 지원 사업에서 최소한의 성과기준 만족 여부의 판별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

o 연구개발사업 수명주기 및 연구단계를 고려한 성과평가 실시

- 초기단계는 과학적 성과, 완료단계는 산업화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는 과학적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사업 추진 단계는 기술이전 실적 등을 포함하는 양이 아닌 질 중심 전환

o 연구과제 종료 이후 추적평가를 강화하여 연구 성과의 활용도 제고

-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제단위에서는 데이터 축적을 위한 추적조사만 실시하고, 추적평가는 내용 등에 관한 방향 검토·추진

o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성과지표」를 개발 및 적용

- 사업유형 분류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를 위해 사업별 평가유형 특성화·세분화
- 평가는 연구개발 성과를 5대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대표성을 갖는 성과지표 분류를 3단계로 나누어 분류하고 개발·적용

※ 성과지표 분류 : <1>대분류(성과분야) - <2> 중분류(성과유형) - <3>소분류(성과지표)

4) 산림분야 R&D 과제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을 통한 관리강화

o R&D 과제 관리·활용평가 등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 추진

- 산림자원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2/4분기부터 전문기관 지정·운영

※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평가) 업무는 종전과 같이 산림청에서 수행

- 전문기관에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상시점검 체계 구축
- 임업인 기술 상담·지도와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 실용화 연계 운영

o 산림과학원, 수목원, 산림품종관리센터 등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 소속기관 산림유전자원 연구기능 조정 및 산림품종관리센터 R&D기관 지정 추진
- 농촌진흥청 등 타 부처의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연구에 적극 대응

5)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기능 및 조직개편, 대형공사 차질없이 추진

o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미션·기능 설정 및 소요인력 확보 노력

- 약초·약용수목 등의 연구 총괄을 위한 업무 및 기능 조정 추진
- 소요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자부·기재부 등과 적극 협의

o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대형 시설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

※ 산림과학원 : 약용자원연구소(3년차 준공, 101억원), 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2년차 109억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특수임산연구동(2년차 10억원), 생산기술연구소 온도 및 CO2 구배온실 시설(3억원) 등

※ 국립수목원 : 난대온실 보강공사(9억원), 산림생물연구동 신축 설계비 3억원(총사업비 76억원) 등

6) 연구윤리 준수 강화를 위해「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

o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등에 따른 제재 기준 표준화 및 구체화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등에 관한 사업참여 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등을 표준화 하는 등 제재사유별 상세한 기준 제시

※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해 연구개발 관련 규정상의 기준을 사례 형태로 제시

※ ‘연구비 용도외 사용 금액’에 따른 제재 기준 외 ‘연구비 용도외 사용 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제시

o 연구개발규정 Q&A, 구체적인 위반 사례 등을 수록한 안내책작 제작・배포

o 무분별한 해외출장 억제를 위한「해외출장 적합성 심사제도」운영

- 성과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인정하고, 단순 학술회의 발표・참석 등의 경우 불인정

라. 추진일정

o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R&D 사업설명회 개최 : 2015. 1~2월 및 11월

o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공모 등 협약 추진 : 2015. 1월~ 3월

- 특허선행조사 및 과제 공모・접수(’14.12월) → 선정・평가・협약(’15.2월)

o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5년 시행계획 작성 : 2014. 12월

o「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15. 1~2월

※ 한국임업진흥원 과제관리 전문기관 지정 관련 후속조치, 연구개발비 부당 집행 사유별 상세기준, 해외출장계획 적합성 심사제도 도입 등

o 산림과학연구개발사업 연구수요 조사 및 통보 : 2015. 3월

o 현장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기획단」 구성・운영 : 2015. 3월~10월

o 부처간・부처내 국가과학기술연구 협업 및 공동과제 발굴 : 2015. 1월~3월

o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연차평가 및 종결과제 최종평가 : 2015. 2월

o 산림정책연구용역 과제선정 및 착수 : 2015. 1월~2월

o 한국임업진흥원 과제 관리 이관 및 운영실태 점검 : 2015. 상반기

o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집행실태 현장조사 : 2015. 6월~10월

o 산림과학기술정보시스템(FTIS) 시스템 개편 : 2015. 상반기

o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유형별「표준성과지표」개발 : 2015. 상반기

o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정산 및 조치 : 2015. 6월~11월

o 2016년도「연구개발기획서(RFP) 사전검토제」도입・시행 : 2015. 9~12월

5.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목 표
◇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한국형 산림인증제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가. 정책여건

o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분야별 현장단위에서의 실행으로 효과적인 연계 미흡

o 국제사회에서는 불법 벌채 근절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에서 나온 임산물 및 그 가공품임을 증명하라는 요청 증가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틀 안에서 산림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을 위해 민간주도로 산림인증제 운영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모니터링 및 평가의 환류를 통하여 산림정책 분야별 개선·발전

o 민간주도의 산림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산림청-산과원 T/F 팀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진
- MP의 SFM 7개 기준과 54개 지표별 담당 부서 지정
- 지표별 사용할 통계 확인 및 추가 통계 확보방안 협의

o 산림과학원 현안과제 연구를 통해 모니터링 체계 및 방법론 개발
- 지표별 용어 정의, 사용 통계, 모니터링 내용, 추가 통계 확보방안 등

o 모니터링 체계 구축 후 '16부터 일반과제 연구를 통해 모니터링 및 평가
- 국립수목원, 품종센터, 한국임업진흥원 등은 협동기관으로 참여

2) 산림지속성지수 보완

o 산림정책 평가 및 방향 제시를 위한 산림지속성 지수 지표 보완
- 3개 영역 19개 지표의 대표성 여부 검토 및 추가 지표 발굴 추진

o 산림지속성 지수 가중치, 산출방식 등 운용체계 개선
- 범주별· 지표별 가중치, 산출방식, 적용범위 검토 및 개선 추진

3) SFM 지표 모니터링 및 산림지속성지수 결과의 정책 환류

o 모니터링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지표별 진전상황을 시계열로 평가
- 5년 주기 SFM 국가보고서는 국가산림자원조사 주기에 맞춰 작성 검토

o 국제적인 추진상황과 비교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분야는 관련 정책 개선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틀에서 각종 산림정책들의 연계 및 추진 독려

o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표들의 산림지속성지수의 지표화 추진

4) 민간주도의 산림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

o 산림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o 민간 주도의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출범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임업진흥원 내부 위원회 형태로 조직하고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참여 보장

o 산림경영인증표준 등 한국산림인증제 표준 및 규칙 마련
- 2014년 관련 용역결과를 활용하고 한국산림인증위원회에서 심의·확정

o 산림인증 역량을 갖춘 인증기관 공모 지정 및 인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o 국유림을 대상으로 시범 인증을 추진하고 사유림 참여기반 마련

라. 추진일정

o 민간 주도의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출범 : 2015. 1월

o 산림청-산과원 SFM 모니터링 특별작업반 구성 : 2015. 2월

o SFM 기준과 지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현안연구 : 2015. 4~12월

o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산림인증제 지원근거 마련 : 2015. 상반기

o 국유림 2개소에 대한 산림경영 시범 인증 : 2015. 하반기

6. 산하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경영성과 제고

목 표

◇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
◇ 사업 범위, 조직 정비를 통한 공공기관 역량 강화

가. 정책여건

o 방만경영 개선, 경영 정상화 등 공공기관 경영개선의 지속적 추진 및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 강화

o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산업의 저변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업인 지원 강화 및 사업수행방식 개선 등 한국임업진흥원의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 제고 필요

o 체험교육 나눔숲 조성 등 녹색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녹색사업단의 역량강화 요구

나. 기본방향

o 공공기관별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과 경영계획 수립을 통한 책임 경영 추진

o 한국임업진흥원의 조직・인력・사업수행방식 개선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o 녹색사업단의 조직·인적 역량 지속 쇄신 및 체험교육 나눔숲 조성 확대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 구축 및 경영성과 제고

o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비하고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감독
- 경영성과 및 환경분석을 통해 장기비전, 중장기 경영목표와 경영계획 수립
-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경영성과 제고

o 이사회의 기능 강화 및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상황 지속점검
- 이사회 횟수, 안건 제출 시기, 시기별 제출안건, 서민 심의안건 등 체계화
-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 적시(정기, 수시) 공개 및 경영실태 지속 점검

o 산림분야 공공기관간 협력 확대 및 타분야 공공기관의 우수 경영사례 벤치마킹

2) 한국임업진흥원의 조직·인력현황 분석 및 사업수행방식 개선

o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조직·인력·사업수행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 실시
- 2013 결산 국회 예결위 지적에 대응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 마련

o 컨설팅을 기반으로 조직인력 재분, 사업수행방식 개선하여 조직 효율성 제고
- 조직자원을 핵심사업 위주로 재배분하고 위탁사업의 직접수행비율 제고
- 산림조합중앙회, 녹색사업단 등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도 고려
※ 산림청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사회를 통해 확정

3) 녹색사업단의 조직 운영 혁신 지속 추진

o 녹색사업단의 수익구조 개선방안 지속 강구
-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녹색사업단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규정
- 녹색사업단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익사업모델 개발

o 녹색자금 지원체계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 지속 추진
- 공모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 개선
- 녹색자금 지원사업 관리매뉴얼, 녹색자금관리지침 등을 지속 갱신

o 녹색사업단 직원의 업무처리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체험교육 나눔숲 조성 확대

o 개소별(대전, 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인허가 행정절차 조기 이행
- 사업규모, 시설 기준, 프로그램 기준, 인력운영 기준 등 마련
- 관련 지자체와의 MOU 체결, 휴양림 지정, 환경영향평가 등

o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개소별 기본·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 추진

라. 추진일정

o 임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컨설팅 용역 완료 : 2015. 2월

o 녹색사업단 경영실적평가(진흥원은 기재부에서 실시) : 2015. 3월~6월

o 체험교육 나눔숲(대전, 춘천) 기본계획 수립 : 2015. 상반기

o 임업진흥원 조직·인력 재분 및 사업수행방식 개선안 마련 : 2015. 상반기

o 산림자원법 개정(녹색사업단 업무범위 정립) : 2015. 상반기

o 체험교육 나눔숲(대전, 춘천)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 2015. 하반기

7. 경제림 활성화를 위한 선도 경영 기반 마련

목 표

◇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내실화로 중장기 경영기반 마련

o 국유림 5개소, 사유림 8개소(1년차 5개소, 2년차 3개소)

◇ 경제림 육성단지 재편을 통해「경제림 경영관리체제」확립

o 국유림 : 105개단지(580천ha), 사유림 : 345개단지(2,339천ha)

◇ 단지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영주체·담당자 역량강화

o '선도경영관리자 과정' 개설(년2회), 현장토론회 개최(단지별 1회)

가. 정책여건

o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투자집중을 통해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확산시키기 위해 시작한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사업초기 시행착오와 제도적 기반 미흡으로 운영정착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기반마련이 필요

o '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제림 육성단지는 산림경영의 규모화·집약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시업제한지 비율이 높아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정비가 필요

o 산림사업의 투자효과 제고와 산림경영·관리기술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의 개편을 위한 전문경영인 양성과 경영기법 개발 필요

나. 기본방향

o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저비용·고효율 경영강화

o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정착을 통한 내실화 및 체계화

o 실효성 있는 경제림 육성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 재설계

o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영 효율화 기반마련

o 성과평가·분석 및 환류를 통한 경영 효율화

- '14년 운영성과의 분석·평가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1월, 7월)

- 경영 효율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실행(2월까지 계획 확정·제출)
  * '14년 성과분석 결과 반영 및 저비용·고효율 경영강화

o 저비용·고효율 산림작업 기술 개발을 위한 현장관리 및 협업강화
- '차세대 산림시업기술 개발 연구사업단'과 연계사업 추진(모니터링 등)
-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작업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산림생산기술연구소 '14 연구 성과 활용

2)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정착을 통한 내실화 및 체계화

o 단지 실행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정착 유도
- (기존 단지) 추진체계 확립과 안정적 사업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 「선도 산림경영단지 추진지원반」 운영강화(월 1회 현장 방문)
- (신규 단지) 신속한 기본·경영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강화
  * 단지 확대에 따라 컨설팅 단 확대(분야별, 지역별 전문가 풀 확보)
  * 1차 년도 사업지 순회컨설팅(산림청 주관, 2월), 2차년도 사업지는 지자체 자율추진(연중)

o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침제정) 예산편성·집행 및 정산, 기본계획수립 지침 수립시달(1월)
  * 통합사업 설계기준(전문관 인건비 지급), 단지운영기본계획 작성 절차 등
- (경영주체) 전문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주체 요건 확대(9월, 신규공모)
  * 기존 대리경영주체 외에「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추가

◈ 대리경영주체(「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임업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
- 산림경영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영리, 비영리)

3) 실효성 있는 경제림 육성을 위한 단지 재설계

o (국유림)「국유림 경제림육성단지 일제정비계획('14년말 확정)」에 따라 기존 경제림단지 구역조정(58만ha → 약 50만ha)
- 시업제한지, 준보전산지 등을 제외하고 목재생산림 등은 신규 편입
- 경제림육성단지 내 사업집중 비율이 70%까지 유지되도록 단지 경영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사업집중률 평가지표 반영)

o (사유림)「경제림육성단지 운영실태조사」실시 및 단지 재편
- 시업제한지 제외, 신규편입 등 적정 규모로 단지 재설계
- 실효성 있는 경제림육성단지 운영방안 마련(기존의 사업예산 운용 체계 개편을 포함)

4)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o 선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별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
- 사업추진 관리를 위한 월간 추진실적 관리(매월 실적 제출)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상・하반기 각 1회))
  * '14년도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평가(2월)

o 경영주체 및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 선도경영 활성화를 위해 '선도경영관리자 과정' 개설(년 2회)
  * 임업기계훈련원(2주, 20명/회), 단지경영기관 및 예정기관 담당자

o 기술공유 및 사업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토론회 실시
- 국・사, 단지 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기술공유 및 사업품질 강화
  * (국유림) 지방청 주관 현장토론회 개최 : 단지별 1회 이상(사유림 참석)
  * (사유림) 시도 주관 현장토론회 : 단지별 1회 이상(국유림 참석)

라. 추진일정

o 국유림 경제림단지 구역조정 : 2014. 12월
o 국유림 경제림육성단지 경영계획 수립 : 2015. 1월~6월
o 선도 산림경영단지 전문가 풀(지역별, 분야별) 구성 : 2015. 1월
o 선도 산림경영단지「예산편성 및 기본계획작성 지침」시달 : 2015. 1월
o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지 순회컨설팅 : 2015. 2월
※ 1차년도 사업지(산림청 주관, 2월), 2차년도 사업지(지자체 주관, 연중)
o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추진실적 제출(월간) : 익월 5일까지
o 선도 산림경영단지 추진현황점검(매월) : 결과 익월 5일까지
※ 현장 추진지원반(산림청, 시도, 산림조합중앙회 합동)
o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장토론회 : 2015. 2~11월
o 사유림 경제림육성단지 운영실태조사(용역) : 3월~11월
o 2015년 상・하반기 성과보고회 : 2015. 1월, 7월
o 2016 선도 산림경영단지 공모 : 2015. 9월~10월

참고 2015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추진 일정표(사유림)

업무구분	추진주체	추진일정(월별)													
		2015												201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산주 동의서 작성 (가동의서→경영계약서)	경영주체														
MOU 체결	시행기관/경영주체														
위탁계약	시행기관/경영주체														
산주 협의체 구성	경영주체														
사업비지급	시행기관														
기본계획 수립	시행기관														
산림경영계획 수립	경영주체														
실시설계	경영주체														
사업실행	경영주체														
감리실행	시행기관														
사업완료 및 정산	경영주체→시행주체														
회계검사 (외부전문기관)	시행기관														
사업결과 설명회	경영주체→산주														
평가 및 환류	산림청														
차기 사업계획 신청 (산림경영계획물량)	경영주체→시행기관														
차기 사업계획 승인	시행기관→경영주체														

1차년도 2차년도

8. 종묘 생산

목 표

◇ 종자공급원 정비 및 양묘시설 현대화를 통해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종자·묘목의 안정적인 공급

o 사업량 : 종자 55톤 및 묘목 48백만본 생산, 시설현대화 5개소

가. 정책여건

o 유전형질이 우수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채종원이 부족하여 채종원산 종자공급은 37%에 불과하며 대부분 유전형질 개량 효과가 떨어지는 채종임분에서 생산·공급(62%)하고 있는 실정

o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의존형 산업인 묘목 생산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양묘시설 피해가 증가(연평균 12억원 피해 발생)

o 우리나라 산림은 불균형적인 영급구조와 수종이 분포하므로 본격적인 목재생산 및 경제림으로의 갱신을 추진할 제2의 조림시대가 도래할 전망

나. 기본방향

o 종자공급원의 효과적인 조성·관리를 통해 우수종자 생산성을 확대하고 종자의 생산·유통·비축 등의 국가관리체계를 강화

o 조림정책에 부합하는 묘목생산 및 양묘시설 현대화 등 우량묘목생산 기반 구축

o 양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업 기준·공정을 개선하고 불량묘목 유통 방지

다. 세부추진계획

1) 종자 생산 확대 및 종자공급원 정비

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공급원의 정비 및 확대

【 채종림(임분) 정비 】

o 지역별 채종림(임분)에 대한 일제 조사·정비

- 조사자
  - ▪ 지방청 : 관내 국유림 채종림·채종임분·우량임분(기지정, 신규)
  - ▪ 지자체 : 관내 공·사유림 채종림·채종임분·우량임분(기지정, 신규)

  ※ 품종센터 :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기술자문 요청시 협조
- 조사방법
  - ▪ 기 지정 채종림 등에 대한 일제조사 후 ①폐기 ②존치 ③한시적 존치 ④개량 ⑤전환 등으로 분류[11)]
  - ▪ 종자공급원 기준에 부합하는 임분을 선정하여 채종림으로 신규 지정
- 유의사항
  - ▪ 종자공급원의 종자채취 실적 및 채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괄정비
  - ▪ 낙엽송·편백 등 주요 조림수종은 지정 확대, 상수리·백합 등은 축소
  - ▪ 채종원산으로 수급 가능한 잣나무·삼나무는 지정 지양
  - ▪ 채종림(임분)은 가급적 국・공유림을 중심으로 지정

  ※ 채종림(임분) 확보가 어려운 희귀 수종은 단목형태 또는 소수의 우량 입목에 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채종목으로 지정
- 신규지정·해제 및 고시를 5월까지 완료하고 6월말까지 일제정비 결과 보고
  - ▪ 신규 지정시 반드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사전 협의

<종자공급원 정비 계획>

절 차	시 기	내 용
현황파악	1월	위치, 지정상황, 채취실적, 신규대상 등 자료조사
현장조사	2~4월	접근성, 채종여건, 수고·수형, 목적달성 여부 등 조사
대상선정	3~4월	지정해제, 신규지정 정비 대상선정 * 형식적 채종림 전면 해지
후속조치	4~5월	신규지정 협의(품종센터) 및 지정·해제 고시 등
결과보고	6월말	종자공급원에 대한 일제정비 결과 제출

11) ① (폐기)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임분, 접근 및 채취가 어려운 임분, ② (존치) 희귀·보존 수종, 종자채취가 원활한 임분, ③ (한시적 존치) 종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임분, ④ (개량) 채종림 임분개량 사업을 통해 종자채취가 가능한 임분, ⑤ (전환) 채종임분 ↔ 채종림, 우량임분 → 채종임분·채종림 전환가능 임분

o 채종림의 종자생산성 및 채종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
- 채종림을 단순 지정·관리에서 임분개량을 통한 생산으로 정책 전환
- '15. 11월말까지 시범사업 추진, 환경개선 공정개발 및 예산확보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지방청·도별 1개소(1~3ha/개소)를 선정·실행, 숲가꾸기 사업비 활용
  ▪ 종자공급원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임분개량(밀도·수형조절) 사업 실행
- 대상지 선정, 적정 규모, 시기별 작업방법 등은「채종림 조성·관리 매뉴얼」작성·보급(1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채종원 조성 확대 】

o '채종원 관리 실태조사('12)' 등을 참고하여 채종원의 기능 재 구분, 신규조성·갱신·폐기 등을 통한 효율적 관리
- 위탁 채종원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 및 수종갱신 등 적극적인 관리

o 조림 수요가 증가하는 편백과 형질 개량된 전진세대(1.5,2세대) 채종원 확대
- 채종원 확대(14ha) : ('14) 762.2ha → ('15) 776.2ha

구 분	수 종	면 적	본 수	지 역
계		14.0	3,445	
2세대	소나무·해송	3.0	605	춘 천
1.5세대	소나무	5.0	1,840	강 릉
1세대	편 백	6.0	1,000	고 창

o 중장기 채종원 확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국유림 관리전환
- 입지별 조성 방향 및 연차별 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 마련(500ha)
- 지방산림청은 채종원 조성지 조사 및 부지 관리전환에 적극 협조
  ※ 2030년까지 채종원 2,500ha를 조성하여 산림용 종자 90%이상 공급

나) 산림용 우수종자 생산·비축 및 전문화

o 산림용 종자는 반드시 검증된 종자공급원에서 채취하여 우수종자를 공급
- 철저한 종자결실 예찰을 통해 종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종자생산 : ('14) 45백만본 → ('15) 55백만본
  ▪ 주요 조림수종인 낙엽송·편백 등을 집중 생산
  ▪ 향토수종과 시범조림을 위한 수종 등은 선별적 채취
  ▪ 잣나무·삼나무는 채종원에서 전량 생산
  ▪ 종자공급원 외에서 채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지도 점검 강화

o 종자결실주기 등 기후영향에 대응하고 대북지원 종자 확보를 위한 비축 증대

- 종자비축 : ('14) 22톤 → ('15) 35톤

※ 싸리류 등 북한황폐산림복구용 종자는 채종임분 등에서 최대한 확보

- 종자저장시설 운영 활성화

▪ 종자결실(풍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종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종자수급을 위하여 종자 위탁 저장 등 GeneBank 운영 활성화 도모

※ GeneBank : 면적 1,808㎡(2층), 단기수급 종자저장(51톤), 장기보존 종자저장(15만점) 등

▪ 저온저장고 시설을 통한 채취종자의 저장·보관으로 활력 유지(10동)

o 종자 채취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 채종원내에서 실행하는 각종 산림사업 및 종자채취에 전문 기능인 영림단을 육성·활용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부족 해소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영림단 등록현황 제출(5월)

- 종자채취 작업 시 버켓크레인, 휴대용 등목사다리(남부청 자체개발) 등 장비 사용을 확대하여 효율성 제고

- 종자채취 및 채종림(임분) 개량 기술보급 등을 위한 현장 워크숍 개최(2회)

o 종묘생산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 주요 수종별 종자채취 표준 작업공정 및 임목종자표준품질표 마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생산기술연구소)

※ '산림 종묘정책 연구회'를 통한 공동연구 추진

다) 산림용 종자 검증 및 유통·관리 강화

o 국가지정 산림용 묘목 생산 사업은 검증된 종자 이외의 사용은 제한

-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

※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는 '경제수 조림' 등으로 한정 예정('14년 감사결과)

o 산지증명제도 운영

- 산지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는 종자 검사 및 사용 근절

- 불량종자의 차단 및 산지확인을 위하여 원산지 식별기술 지속 개발

※ 원산지 식별 가능수종 :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 잣나무

o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른 상록활엽수 종자품질기준 정립

- 상록활엽수(구실잣밤, 녹, 종·참가시, 황칠) 종자품질기준 반영

2) 묘목생산 확대 및 양묘시설 현대화 추진

가) 묘목생산 확대 및 생산기반 확충

o 「묘목생산 확대 방안('14)」, 「종묘생산 중앙심의」에 따라 지역별 묘목을 생산하되 낙엽송·편백은 생산 확대, 백합·상수리는 축소

- 묘목생산 : ('14) 46백만본 → ('15) 48백만본

구 분	소나무	**편 백**	백 합	**낙엽송**	상수리
'14	12,141	**8,594**	5,600	**2,956**	3,394
'15	11,898	**11,043**	4,116	**8,043**	2,376

o 경제림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위주로 묘목생산

강원·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백합나무는 수요 및 적정 대상지에만 식재하도록 생산량을 축소

o 형질이 우수한 묘목 생산·보급을 위한 클론임업의 활성화

- 클론묘목 생산(백합·포플러) : ('14) 28만본 → ('15) 32만본
- 낙엽송·소나무·테다 등 조직배양에 의한 클론묘목 생산기술을 개발(유전자원부, 품종센터)하고 기술 이전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

  ※ 국립산림과학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클론생산) → 국·민유양묘장(묘목으로 육성) → 산지조림용으로 공급

- 클론임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기술교육 정례화(5월)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자체(산·환·연) 조직배양 담당자 기술교육

  ※ '14년도 '조직배양을 통한 클론묘목 생산 기술교육' 실시('14.4.28~5.2)

나) 양묘시설 현대화 및 국유양묘장 확대

【 양묘시설 현대화 】

o '15년 신규사업으로 양묘시설현대화 추진(26억)

- 사업량 : 5개소(국유 1<20억>, 민유 4<6억>)
- 시설온실, 야외 생육시설, 자주식 관수기, 종자파종·포장 자동화 및 생육환경 조절시스템 등을 시설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 민유양묘장은 '용문 양묘시설 현대화 기본계획('14.11)'을 참고하여 각 양묘장 실정에 맞도록 설계·시공

구 분	개 소	대 상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5**		**2,600**	
국유림	1	용문	2,000	
민유림	4	광주·청원·영주·진주	600	국고기준

※ 현장간담회 개최, 기술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시범시설이 되도록 추진
※ 양묘시설 현대화를 완료한 대행생산자에게 묘목생산 우선 지정

o 간이온실·저온저장고 등 시설확충을 통한 우량묘목 생산기반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양묘장 재해, 농촌 노동력 감소 및 산지 활착률 제고를 위한 시설양묘 확대(간이온실 14동, 관정 8공, 저온저장고 10동)
  ※ 용기묘 생산 ('13) 35% → ('14) 45% → ('15) 50%
- 양묘장 토양조사 실시(국립산림과학원) 및 토양개량사업 확대(12ha)
- 양묘장 재해예방 시설, 시설양묘 등 묘목생산기반조성 지원을 강화
  ▪ 시설양묘기반 : 간이온실(14동), 관정(8공), 저온저장고(5동)
  ▪ 클론생산기반 : 클론재배시설(2동)

【 국유양묘장 확대 및 시설 개선 】

o 산지 적응성 및 활착률 제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묘목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림 조성을 위한 중·대묘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산간양묘장 조성
- 산간양묘장 : 1개소(중부청<공주. 금흥. 산20-1외 1>)

<공주 산간양묘장 조성 개요>
- 추진목적 : 조림용 묘목자급률 제고, 선진 양묘기술의 개발·보급
- 사업시행 : 중부지방산림청
- 장　　소 : 충남 공주시 금흥동 산20-1, 산20-13
- 기　　간 : 2015년～2016년
- 사업면적 : 약 4ha 내외
- 주요내용 : 토공, 생육시설 및 사무실 등 설치
  * 유리온실, 간이온실, 야외생육시설, 파종시설, 저장시설 등 설치
- 묘목생산 계획(2018년 성묘, 2019년 춘기 수급가능 수량)
  * 낙엽송 170ha(510천본), 편백 80ha(165천본), 소나무 50ha(75천본)
- 주요기계장비 : 굴삭기, 트랙터, 운반차, 지게차, 관리기, 컨베이어 등

o 국유양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보완사업 추진

- 홍천 양묘장 배수시설(50백만원) 및 서벽 산간양묘장 석축(90백만원) 보완사업

※ 홍천 양묘장 배수시설 보완사업 추진시 산림과학원 토양조사 결과('14) 참조

- 연곡 양묘장 관리사 시설(30백만원) 및 대관령 양묘장 펜스시설(90백만원)

- 국유양묘장별 단동 또는 연동형 비닐하우스 시설은 부대사업비 활용

o 직영 전환된 민간위탁 양묘장의 시업체계 정비 및 기반조성

- 조림사업 확대에 따른 시업량 확대 및 시범양묘·재배시험 등 기술배양

- 토양개량·배수시설 정비 및 시설 현대화(온실 등)를 통한 기반구축

※ 직영화 양묘장(20.2ha) : 춘천양묘장(5.9), 삼성양묘장(8.0), 남원양묘장(6.3)

o 국유양묘장별 역할구분으로 기능화 및 특성화 유도

- 중심양묘장(6)과 부속양묘장(5)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중심양묘장은 지역적 대표 수종 양묘로 특성화 및 민유양묘장 선도 경영

- 산간, 직영화 등 부속양묘장은 큰나무 중심의 산지적응, 시험양묘 추진

※ 역할구분 : 중심양묘장(소묘, 용기묘 중심), 부속양묘장(중·대묘 중심)

< 5개 권역별 양묘장 특성화 >

중심 양묘장(6)	운영 방향
용문(북부)	다기능 복합 양묘장 (소나무·잣나무·낙엽송)
정선·평창 (동부)	침엽수 및 동해안 산불복구, 백두대간 복원용 묘목생산 (금강소나무·낙엽송)
춘양(남부)	금강송 종묘생산 기지 (금강소나무·참나무류)
삼성(중부)	바이오순환림 중심 양묘 (백합나무·참나무류)
보성(서부)	난대림복원, 소득과 연계된 난대수종 양묘 (백합·편백, 후박·가시나무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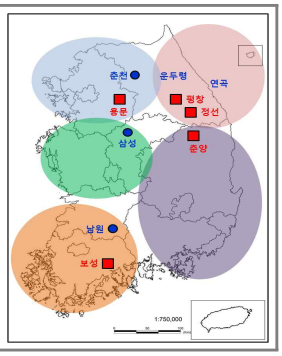

※ 양묘장 위치에 따라 목적수종 생산에 제한이 있는 묘목은 기관별 협의 운영

3) 묘목 유통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가)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강화

o 조림용 묘목검사 강화 및 묘목생산자 실명제 정착

- 묘목검사는 경력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철저히 이행

  ▪ 병해충 진단, 도장묘목 판단 등 필요시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행

  ▪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출하금지 및 소독·폐기 등 조치 실행

  ▪ 포장 시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등 건조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종자공급원·생산자·묘목검사자 실명제 실시(조림지관리대장에 명기)
- 양묘시업 포지에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번호가 표시된 표찰 설치

  ※ 종자(산지증명)→양묘장(산지표시)→묘목수급(산지,생산·검사자)→조림(산지,생산자)
-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유통시 품질표시 철저
  -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및 제10호의2서식 준수

구분	표시방법	예시
종자	**수종명-수량-종자산지-종자공급원-발아율-효율** 생산자-생산년도-품질검사기관	낙엽송-5-춘천-1-90-80 홍길동-201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묘목	**수종명(묘령)-수량-간장-근원경-종자산지-종자공급원** 생산지-생산자-생산년도-품질검사자	낙엽송(1-1)-100-20~25-10-춘천-1 홍천-홍길동-2014-이도령

- 지자체에서는 민간양묘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수시 확인을 통한 시업기준 준수여부, 시업상황 등 생산실태 점검
  - 묘목생산 대행자의 의무 이행(지정량 등) 및 자격·기술조건 검증 철저

o 연약한 묘목(도장묘·세장묘·비경화묘) 생산 및 품질 표시 불량 근절
- 묘목수급 및 조림시 양묘·조림 담당자 합동 점검을 통해 연약한 묘목 납품 및 품질 미표시 강력 단속후 행정조치 이행 ※ 점검실적 제출(5월말)

o 묘목의 품질향상을 위한「품질인증제도」도입 검토
- 묘목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산림용 묘목품질인증제' 단계적 도입

  ※ 묘목의 외형적 규격 뿐 만 아니라 병해충 등 내적 형질 품질검사

<산림용 묘목 품질 인증 제도 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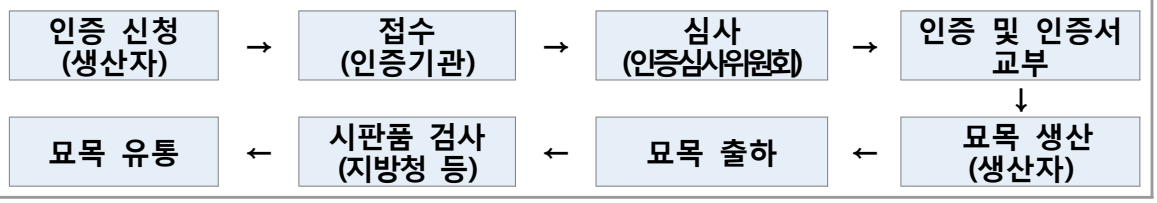

나) 양묘기술 지침서 개발·보급 및 묘목 생산원가 분석

o 수종별·지역별 양묘기술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 개발·보급
- 묘포토양 관리·관수·시설물 관리 및 시업 등 전반적인 양묘기술 기초 조사
  - 문헌조사, 연구자료 조사·분석 및 전문가, 생산자 생산기술 분석·수집, 농업 등 유사업의 생산기술 비교 분석 등

- 수종별 노지 및 시설양묘 등 기술 지침서 개발(표준화)
  - ▪ 양묘장 관리 일반매뉴얼, 노지·시설양묘 기술, 시설현대화 설비 매뉴얼 등

o 합리적인 묘목가격 산정을 위한 생산원가 조사·분석
- 현재 고시되고 있는 조림용 묘목가격의 적정 생산원가 분석
  - ▪ 묘목가격 산정(기초 단비 등) 적정성, 적용 생산원가의 합리성 및 시중 거래가격과의 비교 등을 통한 적정 생산원가 조사·분석

다) 양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 추진

o 합리적인 종묘생산을 위한 종묘사업실시요령 개정
- 상록활엽수에 대한 묘목생산 사업 기준·공정 및 묘목 규격 마련
  - ▪ 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용역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록활엽수(황칠, 후박, 녹나무, 가시)의 사업 기준 및 공정 반영
  - ⇒ 가격 현실성과 기존 지자체 고시가 비교 등을 통해 난대수종 묘목가격의 중앙 고시 추진
- 농약류 등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신규 연구자료 반영
  - ▪ 시판제한 및 상품명 농약류 개정, 국제표준 단위로 단위 개정
  - ※ 다찌가렌 액제→하이멕사졸 액제, 엔도설판 분제→에토프로포스 입제, cc/㎡→㎖/㎡

o 묘목 저장 시험·연구 추진
- 주요 조림수종 묘목에 대한 저온저장 체계 구축
  - ▪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산기술연구소)과 각 양묘사업소 공동 연구 추진
  - ▪ 대상 수종 : 소나무, 낙엽송, 편백, 잣나무, 상수리나무, 자작나무 등
  - ▪ 수종 및 묘목 종류별 저장기간에 따른 생육상황 조사
  - ※ 저장 방법(묘목 포장, 온·습도 유지 등)은 산림생산기술연구소에서 기준 제시
- 백합 규격묘 생산을 위한 적정 생립·이식 및 생산 본수 구명(유전자원부)
  - ※ 백합나무 파종량 변화에 따른 유묘 생산본수의 구명도 병행 연구

o 주요 수종에 대한 임목육종 집중연구 추진(산림유전자원부)
- 낙엽송에 대한 육종·유전자원 기술개발, 삽목·조직배양 실용화 추진

라. 추진일정

o 2014년산 종묘가격결정 자문위원회 및 결정 : 2014. 12. 30.

o 2015년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 2015. 1. 1.

o 2015년 산간양묘장 조성(공주) : 2015. 1. 1.

o 2015년 파종용 종자 확보상황 파악・보고 : 2015. 1. 10.

o 종자공급원(채종림 등) 일제정비 : 2015. 2. 1. ~ 6. 31.

o 2015년 양묘시업 상황 파악・보고 : 2015. 5. 31.

o 종묘사업실시요령 개정 : 2015. 6. 30.

o 채종원 국유림 관리전환 및 기본계획 수립 : 2015. 7. 30.

o 2015년 종자결실 예찰 조사・보고 : 2015. 8. 20.

o 2016년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 2015. 8. 30.

o '16～'18 종묘생산 중앙심의회 : 2015. 9. 10.

o 2015년 묘목생산 실태 조사・보고 : 2015. 10. 15.

o 2015년 제43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 개최 : 2015. 10월

o 신규 채종원 조성 : 2015. 10. 31.

o 산간양묘장 조성(1년차) 완료 : 2015. 11. 30.

o 양묘기술 지침서 개발 : 2015. 12. 20.

o 2015년 종자채취 결과 파악・보고 : 2016. 1. 10.

9. 조 림

목 표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

o 사업량 : 21,885ha, 52,330천본

가. 정책여건

o 국내 목재수요의 해외 의존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목재자원 공급을 위해 경제림육성이 시급

o 산주들이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은 장기수 조림을 기피하고, 시장 가치가 높은 특용자원의 식재를 선호

o 생태적 산림관리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등의 벌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

o 등산, 캠핑 등 산림을 휴양, 치유 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수요가 증가

나. 기본방향

o 지역·기후를 고려한 경제성 높은 대표 수종으로 조림

- 경영목적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 수종을 확대
- 경영비용 절감과 지속가능한 목재공급을 위해 규모화 조림
-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은 경제수종으로 갱신

o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큰나무 및 지역특화림 지속 추진

-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조림
-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브랜드화 도모

o 조림사업의 현장 정합성 제고 및 이력관리 강화

- 조림사업 공정 및 품셈을 현실화하여 사업의 현장 정합성 제고
- 사유림경영정보 시스템과 새올 시스템을 연계하여 벌채 단계부터 조림 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2015년 조림계획 : 21,885ha, 1,002억원>

구 분	사 업 내 용	'15년 조림계획 (국고보조금)
① 경제림조성	▪ 국고 보조율 : 70%(지방비 20%, 자부담 10%)	▪ 15,610ha, 521억원 · 국유림: 2,150ha, 70억원 · 민유림: 13,460ha, 451억원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조림 및 단기소득 조림 -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 유휴토지조림 ▪ 3,000본/ha, 479만원/ha	▪ 15,610ha, 521억원 · 국유림: 2,150ha, 70억원 · 민유림:13,460ha, 451억원
② 큰나무조림	▪ 국고 보조율 : 50%(지방비 50%)	▪ 4,920ha, 290억원 · 국유림: 920ha, 85억원 · 민유림: 4,000ha, 205억원
가. 큰나무공익조림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 경관조성을 위한 수종 식재(수고 1.5m 내외) ▪ 350본/ha, 1,167만원/ha	▪ 2,120ha, 131억원 · 국유림: 120ha, 14억원 · 민유림: 2,000ha, 117억원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 산사태, 산불, 병해충 및 태풍 등의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사전 예방을 위한 조림 ▪ 1,500본/ha, 887만원/ha	▪ 2,800ha, 160억원 · 국유림: 800ha, 71억원 · 민유림: 2,000ha, 88억원
③ 지역특화조림	▪ 국고 보조율 : 70%(지방비 30%)	▪ 1,355ha, 149억원 · 국유림: 380ha, 35억원 · 민유림: 975ha, 114억원
가. 금강·안면소나무육성	▪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 대경재 생산을 위한 금강·안면소나무림 보전 및 후계림 육성 ▪ 천연하종, 인공식재, 숲가꾸기 등 350만원/ha	▪ 500ha, 16억원 · 국유림: 300ha, 11억원 · 민유림: 200ha, 5억원
나. 섬지역산림가꾸기	▪ 강한 해풍, 척박한 토양 등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지역 산림 조성 ▪ 객토, 유기질비료, 물주기, 자생수종의 식재 및 보육 등 2,012만원/ha	▪ 150ha, 22억원 · 국유림: 20ha, 4억원 · 민유림: 130ha, 18억원
다. 운두령특수 활엽수림 조성	▪ 운두령 특수활엽수 시범단지 조성, 산림관리 등 3,334만원/ha	▪ 30ha, 10억원 · 국유림: 30ha, 10억원
라. 석포모델숲조성	▪ 경기도 용인지역 대면적 기부산림을 국유림경영 모델숲으로 조성 및 관리 ▪ 벌채지 조림, 산림공원 등 시설 3,334만원/ha	▪ 30ha, 10억원 · 국유림: 30ha, 10억원
마. 지역특화림 조성	▪ 동계올림픽 경관림 등 각 산림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조림지로 육성 : 2,012만원/ha ▪ 동계올림픽 경관림(150ha), 창조모델숲(60ha), 칠갑산 특화림(30ha), 덕숭산 특화림(50ha), 용담호 다목적 수변림(30ha), 변산경관 특화림(50ha), 용궐산 미르숲(30ha), 내장산 단풍 특화림(20ha), 대나무 특화림(45ha), 보은산 테마숲(50ha), 정남진권 푸른숲(75ha), 송이소나무 특화조림(20ha), 5대명산 가꾸기(35ha)	▪ 645ha, 91억원 · 민유림: 645ha, 91억원

* 설계감리비 28억원(국유림 5억원 민유림 23억원), 사업운영비 14억원

다. 세부추진계획

1) 경제림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5,610	2,150	13,460
사업비	52,089	6,976	45,113

※ 국고 보조율 : 70%

o 경제림육성단지(450개, 292만ha)를 중심으로 경영목적에 맞게 조림방법과 식재본수를 다양화하여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경제림조성의 종류>

① 목재생산조림

·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산림을 조성하는 조림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백합나무 등 지역별 중점 조림수종을 단순화하여 대면적·집단화 조성

※ 조림지 여건을 고려하여 소묘, 중묘, 대묘, 움싹, 파종, 천연하종, 복층림 조성 등 적절한 조림방법을 적용

② 바이오순환림조성

· 목재펠릿, 펄프재, 표고자목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는 산림을 조성

· 백합나무, 참나무류,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속성수 식재 또는 움싹갱신으로 조성

※ 최종적으로 대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밀식 조림하여 간벌재를 바이오매스로 활용

③ 특용자원조림

·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의 대단지 조림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화 기반조성

·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종 및 옻나무, 두릅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자원 수종을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식재

※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거나, 현금보조방식으로 산주가 직접 구매하여 식재하는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실행

④ 유휴토지조림

·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실수·특용수·조경수·용재수종 등을 식재

· 조림수종은 유실수, 산지과수, 특·약용수 위주로 추진하되,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조림

가) 목재생산조림

(1) 조림수종

o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수종의 집중 조림으로 생산성 증진

- 목재수요 증가, 온난화 영향 및 산주 선호도 등 경영목적과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전략 수종을 규모화하여 조림

┌ 확대 : 낙엽송, 편백나무
├ 축소 : 소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잣나무
└ 현수준 유지 : 삼나무, 가시나무류

o 목재생산 등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은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을 고려하여 대면적·집단화 추진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강원·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편 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편 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큰나무공익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경관수종, 유실수·특용수는 지역특성 및 산주 수요를 반영하여 조림(붙임 조림권장 수종 참조)

o 리기다소나무림, 불량활엽수림 수종갱신 지속적 추진

-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벌채시기에 도달한 녹화수종,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

o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식생기후대 북상에 따른 조림수종의 변경은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조정

- 장기적으로 제주도에서 생육하고 있는 상록활엽수종 등 난대 수종을 온대 중부지방까지 확대

- 온대 중·남부 지역 잣나무·리기다소나무림 등의 수확지에 기후변화대응 시범조림을 추진하여 점진적 변화를 유도
- 편백 등 기후대 적응 범위가 넓은 수종을 확대하되, 조림수종의 조정은 산림기후대 북상 추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

o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난대·아열대 수종 지역 적응성 검정 및 육성연구
- 분포지 확대가 예상되는 난·아열대 수종 조림적기 규명 및 증식법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국립산림과학원, '13~'16)

(2) 묘목

o 묘목의 종류 및 식재본수는 현지 입지여건과 산림경영 목적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
- 소묘, 중묘, 대묘, 움싹, 파종, 천연하종, 복층림조성 등 조림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조림방법을 적용

※ 목재생산 목적의 대묘조림은 경제림조성에 포함하여 추진

- 목재생산조림 시 임야하단부, 주거지·경작지 주변에 특용·유실수종을 병행 식재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 지원(조림면적의 10%)
-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수종별 특성과 입지여건에 따라 조정 식재
  · 일반 노지묘, 침엽수 용기묘(2-0), 활엽수 용기묘(1-0) 3,000본/ha 식재
  · 비옥지에 낙엽송을 조림하는 경우 2,000본/ha 식재
  · 대경재 생산을 위해 백합나무를 조림하는 경우 1,100본/ha 식재
  · 백합나무로 바이오순환림 조성시는 2,000본/ha 이상 식재
  · 소나무, 잣나무, 편백 등 대묘는 1,500본/ha 식재

<주요 수종의 묘목규격>

수종별	소묘	중묘	대묘	비고
소나무	1-1	2-0(용)	1-1-2, 2-2(용)	
낙엽송	-	1-1, 2-0(용)	-	
잣나무	2-1	2-2	2-2-3	
편백	-	1-1, 1-1-1, 2-0(용)	1-1-2, 2-2(용)	
삼나무	-	1-1	-	
리기테다소나무	1-0	-	-	
백합나무	1-0, 1-1	-	-	식재후 대절
가시나무류	2-0(용)	-	-	

※ 조림용 묘목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묘목을 수급(종묘 생산지증명 등)

o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이고 사후관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종묘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하는 규격 묘목으로서 묘령 및 규격이 큰 중·대묘 조림을 확대

- 조림 후 타 식생과의 경쟁에 대응하고, 농·산촌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증가에 대처
- 경제림 조성을 위한 소나무, 낙엽송, 편백 등 중점 조림수종의 묘목 크기를 상향 조정하되, 속성수, 활엽수 조림은 중·대묘 조림 지양
- 중·대묘 식재본수는 묘목 규격 상향에 따라 적정비율로 하향 조정

※ 소묘(3,000본/ha)와 대묘(1,500본/ha)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비옥도와 생장속도를 감안하여 설계에 의하여 적정 본수 산출

o 용기묘 조림은 우량 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침엽수 용재수종 중심으로 확대

- 용기묘 생산 효율성, 현지 적응성이 높은 수종 중심으로 확대
-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를 위주로 용기묘 조림 추진

※ 단벌기 경영 목적의 산림은 용기묘 조림 대상에서 제외(상수리나무 등)
예) 표고자목 생산, 목재칩 생산을 위한 바이오순환림조성 등

(3) 사업관리

o 벌채 시 전목·전간재 집재를 활성화하여 임목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림예정지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 원목반출 후 조재산물의 임내정리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하고, 부산물 수집으로 바이오매스 원료공급 및 식재공간을 최대한 확보

o 천연하종갱신, 맹아갱신 등 저비용·고효율 조림 추진

- 개벌·인공조림 위주의 갱신에서 인공조림과 병행한 맹아·천연하종 갱신 및 복층림 조성 등 저비용 조림 실현(철저한 현장확인으로 적지에 실행)

o 조림목의 절단 방지 및 효율적인 풀베기 작업을 위해 조림목 표시봉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나무 등 환경친화적인 천연소재 사용

o 허가(신고)에 의한 벌채지 및 훼손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의무조림 및 조림명령 철저 이행

나) 바이오순환림 조성

(1) 조성계획

o 목재펠릿, 펄프재, 보드·섬유판, 표고자목 등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속성수 식재 또는 움싹갱신을 활용하여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에 따라 '20년까지 10만ha 조성
- 소·중경재 단벌기 순환림 또는 대경재 생산림의 간벌재를 바이오매스로 활용

※ 실행요령은 붙임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요령',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자원육성과-940호, 2009.2.26.) 및 '바이오순환림조성 실행계획'(산림자원과-3673호, 2009.12.18.) 참조

o 조성대상지는 가급적 토지생산성이 높고, 임도 등 기계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선정

- 맹아갱신, 백합나무 등 속성수 조림지는 바이오순환림으로 우선 조성

o 펠릿공장, 탄소순환마을 등 수요처와 국·사유림을 연계하여 대면적 단지화 조성을 중점 추진

- 기관별 바이오순환림 시범단지 운영 및 연차별 조성계획을 준수하여 추진
  · 대면적 시범단지(개소당 50ha 이상) 및 국·사유림 연계 시범단지 조성

(2) 조림수종

o 조림수종은 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식재본수는 대상지별 입지여건과 묘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식재수종 :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포플러류, 백합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자작나무는 온대북부 지역에 식재)
- 식재본수

  ┌ 백합나무, 포플러류 : 2,000본/ha 이상
  └ 기타수종 : 3,000본/ha 이상

※ 백합나무 2천본구 식재간격은 2×2.5m 또는 5×1m 등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하고, 대절 후 2개 이상 움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풀베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 시 정리

※ 백합나무는 한건풍·동해 우려가 없는 적지에 한정하고 조림면적 축소

- 바이오순환림조성 시 임야하단부, 주거지·경작지 주변에 특용·유실수종을 병행 식재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 지원(조림면적의 10%)

o 척박지, 능선부 및 산정부 등 백합나무 식재가 부적합한 대상지는 임지 여건을 고려하여 침엽수 용재수종을 대상교호 또는 군상혼효로 식재하되, 간벌재를 바이오매스, 산업용재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ha당 3,000~5,000본까지 밀식

※ 대상·혼효 식재한 용재수종은 바이오순환림 단지면적에 포함

(3) 사업관리

o 불량림 벌채, 비료주기 등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셈적용 등 원가계산에 차질 없도록 반영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공정산출 및 설계 참고사항

· 불량림의 벌채가 수반되는 경우는「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의하여 벌채공정 반영

· 임산물운반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 요령으로 공정 반영

· 조림목의 빠른 생육을 위하여 반드시 전면적 비료주기 작업 실행

· 기타 식재공정 등은 일반 조림사업에 준하여 설계

o 조림비용의 절감과 조림지 사후관리 어려움을 감안하여 움싹, 천연치수 등 자연복원력을 이용한 저비용·고효율 조림 추진

- 자연복원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움싹, 천연치수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 식재(300본~1,000본/ha)

- 보완식재하는 묘목은 움싹, 천연치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속성수로 식재

※ 바이오순환림 관리대장은「조림사업 설계·감리시행지침」의 '조림지관리 대장'으로 통합관리

다) 특용자원조림

o 약용, 식용, 공업용 등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특용수종을 단지화 조림하여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림자원 조성

- 특용자원 단지 조성계획, 특용수종 조림 적합지, 산업화 연계 효과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유망 특용자원(예시)

* 옻나무(옻칠공예, 식약재), 닥나무(한지산업), 대나무(죽공예), 헛개나무(식약재), 박달나무(운동기구), 황칠나무(전통도료), 산수유(식약재), 동백나무(유지), 참죽나무(가구재, 식약재) 등

*** 산림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 허가 · 신고대상 수종은 제외**

<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 효과적인 산업화 성공을 위해 대면적 단지화 대상지 우선 선정 ▪ 단순하게 수실을 채취하여 소비하는 수종보다는 원료, 가공품으로 2, 3차 산업화 유발 효과가 큰 특용자원 발굴 ▪ 식재방법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통상의 조림방법으로 실행 (작업로, 관리시설 등은 별도 사업자 사업비 투입 및 개별적으로 인허가) ▪ 대상 수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산림의 조성이 아닌 **재배-경작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관목류, 만경류 등은 제외** ▪ 지역별 고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유망 특용자원의 개발

o '15년 사업계획 : 2,000ha(국비 6,703백만원)

- 민유림 1,600ha(5,363백만원), 국유림 400ha(1,340백만원)

  * 경제림조성 단가적용(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o 특용자원 조림 사업비는 단가(4,788천원/ha당)에 구애받지 말고 경제림조성 전체 통합 예산을 활용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한 사업비를 반영 집행

- 특용자원 조림 사업단가 : 4,788천원/ha당(특용자원 묘목구입비 포함)
- 식재본수는 비옥도, 묘목의 크기 등 토양 및 수종별 특성에 따라 조정

  유실수(감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등) : 400~800본/ha
  특·약용수종(옻나무, 두릅나무 등) : 1,500본/ha

o 보조방법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발주하거나, 현금보조방식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묘목을 직접 구매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

- 산주희망, 지자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비 또는 민간보조로 편성

o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수를 조림하는 산주에게 특용자원조림을 우선 지원

- 기 조성된 운재로·작업로의 유지 보수와 비료주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 반영

라) 유휴토지조림

o '15년 사업계획 : 민유림 1,000ha(국비 3,351백만원)

  * 경제림조성 단가적용(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o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실수·특용수·조경수·용재수종 등을 식재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 '유휴토지조림 5개년 계획' 참조(산림자원팀-1731호, 2006.11.27.)

o 조림수종은 유실수, 특·약용수 위주로 추진하되,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조림

※ 밤나무는 과잉 생산을 감안, 지원대상 수종에서 가급적 제외

o 유휴토지 조림 후 5년간은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시킬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산림사업 보조금의 반환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조치

o 기후변화 대응 신규 산림조성에 대한 산림사업 실적으로 별도 관리되므로 반드시 계획량 이상으로 추진

- 한계농지 이외에도 식생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한지, 도심지 자투리 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하천변에도 조림 가능

2) 큰나무조림

가) 큰나무공익조림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2,120	120	2,000
사업비	13,067	1,400	11,667

※ 국고 보조율 : 50%

o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되, 가급적 지자체별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효과 제고
- 경관수종(수고 1.5m 내외)은 350본/ha 기준으로 식재하되, 조림목의 크기에 따라 식재본수를 가감하여 실행
- 경관조성, 산불예방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목류, 조경수 식재 가능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2,800	800	2,000
사업비	15,959	7,093	8,866

※ 국고 보조율 : 50%

o 산사태, 산불, 병해충 및 태풍 피해지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예방으로 산림경관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

- 산사태 피해지는 우선 복구를 지원하고, 주택가, 농경지 주변 산사태 우려지는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
- 산불 및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피해지는 자연복구와 병행하여 인공복구 추진
- 경작지, 주거지 주변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방풍림 조성

o 식재수종은 대묘(1,500본/ha) 이상 큰나무를 식재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소묘 또는 관목류 식재 병행

- 피해목 벌채, 비료주기 및 대묘식재 등 기본 공정에 반영

o 태풍으로 인하여 부러지거나 쓰러진 입목 피해지는 2차적인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목을 제거하고 집단피해지는 재조림 추진

- 단목(單木), 소규모 분산 피해지는 숲가꾸기 산물처리 방법에 따라 조재 후 임내정리 또는 매각 처분
- 피해목 제거 후 재조림이 필요한 집단 피해지는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 후 조림계획에 반영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제4항에 따라 처리

3) 지역특화조림

가) 금강소나무육성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390	300	90
사업비	1,270	1,050	220

※ 국고 보조율 : 70%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금강소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목재가치가 높고 역사적·문화적으로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종임

o 병해충, 산불 등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후계림 육성이 시급함

※ 숲에 낙엽이 쌓여 씨앗발아가 어렵고, 낙엽활엽수와의 경쟁에서 쇠퇴

<분포현황>

o 금강소나무는 강원, 경북의 백두대간에 주로 분포(373천ha)

- 강원(강릉, 삼척 등) : 226천ha(국유림 28%, 민유림 72%)
- 경북(봉화, 울진, 영양 등) : 147천ha(국유림 25%, 민유림 75%)

※ 금강소나무(*P. densiflora for. erecta*)는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한 품종으로 곧고 통직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음

<사업개요>

o 우리나라 대표수종인 강원·경북지역 금강소나무림의 보전·관리 및 후계림 육성으로 문화재용 특수재 및 고급대경재 생산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로 우량임분 육성
- 천연하종, 파종조림, 식재조림 및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로 후계림 조성

<추진요령>

o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우량형질로 육성

- 솎아베기 : 동령림은 생육밀도 조절, 다층림은 상층의 송지채취 또는 산불 피해를 입은 대경목 위주로 실시
- 천연림 보육 : 미래목 위주의 금강소나무 육성

o 임지의 여건에 따라 모수작업, 모두베기를 통하여 적정 임분 관리

- 남향 또는 남동향 사면의 노령목 주벌 수확지는 모수작업을 적용
- 벌기에 도달한 임분 또는 과거 송지채취·산화피해를 받은 노령목 분포 지역은 모두베기 실시
- 단순림, 혼효림, 단목림 등 임분의 형태에 따라 전문가 현장토론 등을 거쳐 적정 작업종을 결정하여 시행

o 후계림 조성은 일조량, 토질, 경사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천연하종 및 파종조림으로 갱신하고, 식재조림을 병행 실시

- 천연하종 및 파종은 일조량이 많아 종자 발아율이 높은 남동, 남서 사면에 실시
- 어린묘, 대묘, 용기묘조림은 모든 곳에 조림이 가능하나 북향의 경우 생육이 다소 저조하므로 신중히 식재

o 금강소나무 생육분포도 작성 및 DB화하여 각종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이력 기록관리 및 사후관리 철저

- 후계림 보전을 위한 인공갱신 시험시업지에 대한 생육상황 조사
- 문화재용 특수재 목재생산림 지역 등 사후관리 철저

o 대관령, 소광리 등 지명도가 높은 지역은 금강소나무 시범 전시림으로 조성하고 숲 체험 교육장으로 이용

나) 안면소나무육성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10	-	110
사업비	270	-	270

※ 국고 보조율 : 70%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안면소나무는 고려시대부터 궁궐재 등으로 공급된 목재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우수경영산림으로 선정

o 병해충, 산불 등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후계림 육성이 시급함

※ 안면소나무 보전·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08년, 충청남도)

<분포현황>

o 충남 안면읍・고남면 일원에 4,802ha 분포(공유림 3,550ha)

-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안면소나무림은 약 2,770ha

※ 수령 80～120년(직경 30㎝ 이상)의 성숙림은 381ha(141천본) 분포

<사업개요>

o 형질이 뛰어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안면소나무림의 보전・관리 및 후계림 육성으로 문화재용 고급대경재 생산 및 관광 자원화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로 우량임분 육성
- 천연하종, 파종조림, 식재조림 및 비료주기 사후관리로 후계림 조성

<추진요령>

o 밀도조절 등 숲가꾸기 및 후계림 조성을 통해 문화재용 고급대경재를 생산하는 우량림으로 육성

-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동령림은 밀도조절을 실시하고, 성림지는 솎아베기 후 안면소나무 복층림으로 조성
- 천연하종, 파종 및 인공식재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안면소나무림 확대

o 강산성 토양은 질소질 비료와 석회를 시비하고, 솎아베기로 토양내 공기 유통 및 수분흡수 촉진하여 안면소나무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교정

o 안면소나무림에 생육하는 리기다소나무는 벌채하여 안면소나무 후계림으로 조성하고, 부실초지 등 유휴지는 복구조림 실시

다) 섬지역산림가꾸기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50	20	130
사업비	2,233	402	1,831

※ 국고 보조율 : 70%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강한 해풍과 척박한 토양 등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 지역 산림의 녹화 및 식생복원으로 산림경관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o 자생수종의 식재 및 보육,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섬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림 및 숲가꾸기 적용이 필요

<추진방향>

o 자생수종 중심의 조림·숲가꾸기 추진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o 섬지역 고유의 산림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o 주거지역, 관광지 및 뱃길 가시권 지역의 산림을 우선 추진

<사업개요>

o 자생수종 중심으로 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림 방법을 적용하고, 신속한 녹화를 위한 특수공정 적용

- 난대지역은 동백나무, 후박나무, 돈나무 등 난대 자생수종으로서 교목류, 관목류를 식재하여 섬 지역 고유의 산림생태계로 복원
- 큰나무조림을 확대하여 활착률을 높이고 객토, 유기질비료, 수목 운반시 수분접착 마대 활용 등 신속한 산림녹화를 위한 특수공정 개발·적용

- 식재수목의 규격 및 식재본수는 현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단비표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기준이며, 실제 사업실행은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o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건강한 산림가꾸기 추진

- 치수보육, 움싹조절 등 숲가꾸기를 병행 실시하고, 자생수종으로서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육작업
- 산림경관을 해치는 덩굴류와 생태계교란종은 제거

※ 사업 제외대상

· 일반 산림지역에서 실행하는 조림 및 숲가꾸기 적용이 가능한 지역

·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어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

· **국립공원**으로서 조림 및 숲가꾸기가 불가능한 지역

· 수목식재 등 산림조성 대상지가 없고 관목류·초본류 식재만 가능한 지역

라) 운두령특수활엽수림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30	30	-
사업비	1,000	1,000	-

※ 국고 보조율 : 100%

o '06년 FSC 인증을 취득한 운두령 지역 특수활엽수 조림지에 산림경영과 목재생산 기술개발·연구를 위한 시범단지 조성(북부지방청)

-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원 국유림 170ha
- 조림수종 : 자작나무, 물박달나무, 들메나무, 피나무, 굴참나무, 산벚나무, 가래나무, 물푸레나무 등('77～'88년 조림)

o 기존 조림지와 연계한 조림확대 및 숲가꾸기로 활엽수 조림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 및 방문자 기술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 활엽수 특수용재 생산을 위한 연차별 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활엽수림에 대한 체계적인 무육·관리 기술 정립
- 지황 및 임황인자 DB구축과 하층식생 천이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목생장량 변화 측정 및 희귀·유용식물 등 실태조사 추진
- 임업종사자, 학술분야 등 관계자의 조림지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정책홍보 안내시설 등 편의 시설물 설치

마) 석포모델숲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30	30	-
사업비	1,000	1,000	-

※ 국고 보조율 : 100%

o 용인·안성일대 대면적 기부산림을 산림기술 교육·문화·체험 공간 등 모델숲으로 조성하여 산림정책 및 대국민 산림교육·홍보장소로 활용

- 소 재 지 : 용인시 이동면 묵리 산59번지 외 46필지
- 면 적 : 662ha (용인시 관내 600ha, 안성시 관내 62ha)

o 벌채지의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생태계 건강성 증진사업, 간선임도 등 산림경영기반구축 사업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림보호 시설

바) 지역특화림 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645	-	645
사업비	9,088	-	9,088

※ 국고 보조율 : 70%

o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을 최적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 모델 제시 및 산업자원으로 육성

- 동계올림픽 경관림 등 각 산림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 조림지로 육성

<사업대상지>

지역별	사업내용	사업량(ha)	사업기간	사업비	국고(70%)
강원(평창)	동계올림픽 경관림	150	'14~'16	3,018	2,113
강원(춘천)	창조모델숲	60	'15~'16	1,207	845
충남(청양)	칠갑산 특화림	30	'14~'18	604	423
충남(예산)	덕숭산 특화림	50	'15~'17	1,006	704
전북(진안)	용담호 다목적수변림	30	'14~'15	604	423
전북(부안)	변산경관 특화림	50	'15~'17	1,006	704
전북(순창)	용궐산 미르숲조성	30	'15~'17	604	423
전북(정읍)	내장산 단풍 특화림	20	'15~'17	402	282
전남(담양)	대나무 특화림	45	'13~'17	906	633
전남(강진)	보은산 테마숲 조성	50	'14~'15	1,006	704
전남(장흥)	정남진권 푸른숲조성	75	'15~'18	1,509	1,059
경북(봉화)	송이소나무 특화조림	20	'14~'18	403	282
대전	5대 명산 가꾸기	35	'14~'18	704	493
계	**13개소**	**645**		**12,979**	**9,088**

4) 설계·감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비	2,846	500	2,346

※ 국고 보조율 : 70%

o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및 공무원이 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시행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경제림육성단지관리계획 등 기관별로 수립한 조림계획은 기본설계로 활용 가능

o 실시설계는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당해년도 사업 실행전에 실시하거나 전년도에 실시

o 이윤율, 간접노무비 등 원가계산 요율 기준은「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적용

- 간접노무비는 조경업종으로 적용하고, 일반관리비는 전문공사로 간주

o 조림사업 실행자(시공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없음

o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의 적용비율을 종전 전문공사에서 조경업종으로 적용

o 산림경영정보 DB 구축과 조림통계의 전산화를 위해「조림지관리도」및「조림지관리대장」을 전자파일로 관리

-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시 작업지시도, 필지별 사업내역서를 전자파일로 제출받아 지자체·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 세부적인 시행방법은「조림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참조

5) 비료주기

o 산불피해지 등 지력회복이 필요한 산림과 척박지 등 재해우려지에 우선 실시하고, 바이오순환림, 경제수조림지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실행

- 경제림조성, 산림재해방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에 포함된 비료주기 공정 활용하여 조림사업과 병행하거나 분리하여 별도 사업으로 실행

< '15년 비료주기 관련 총사업량 >

(단위:ha, 천kg)

구 분	계		경제림조성 (30kg/ha)		산림재해 방지조림 (90kg/ha)		금강·안면 소나무육성 (360kg/ha)		섬지역 산림가꾸기 (700kg/ha)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계	19,060	1,005	15,610	468	2,800	252	500	180	150	105
민유림	15,790	747	13,460	404	2,000	180	200	72	130	91
국유림	3,270	258	2,150	64	800	72	300	108	20	14

주) 해당 사업에 기본공정으로 포함된 비료주기임

o 조림목의 뿌리가 활착된 5~6월경(식재 1개월 이후)에 실시하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름, 가을철에도 시비

- 초기생장 동안 많은 양분이 요구되는 낙엽송이나 활엽수류는 조림 후 3년간 집중적으로 시비
- 비료주기는 실행시기에 따라 식재작업과 동시 발주하거나 분리하여 개별 사업으로 추진(전년도 조림지 등)
- 이듬해 시비할 경우에는 봄철 나무심기가 집중되기 전에 우선 실행하여 조림사업 노동력 분산

※ 시비 작업요령은「산림과 임업기술(II)」 산림조성편(229쪽), 붙임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요령', 조림설계지침 참조

6) 조림지가꾸기

o 조림지 사후관리의 사업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풀베기 및 덩굴 제거를 통합사업으로 실행

- 덩굴류가 없는 조림지는 기존대로 풀베기만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덩굴류 제거사업을 별도 시행

<풀베기 작업요령>

o 작업시기는 5~7월에 실시하고, 연 2회 실시할 경우 8월에 추가 실시

-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하며, 특히 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수종보다 우선 실시
- 비료를 준 조림지는 식재당년과 이듬해에는 연 2회의 풀베기 실시
- 한해·풍해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9월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

o 조림 당년도를 포함하여 3~5년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 1.5배 또는 60~80㎝ 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

- 잣나무, 소나무류는 5~8회, 낙엽송, 참나무류는 5회를 기준으로 풀베기 대상물의 생장상황에 따라 가감

o 작업방법은 예초기, 낫 등을 이용하여 현지여건에 알맞게 적용하되, 조림목의 식별이 어려운 조림지는 조림목 보호를 위해 인력으로 둘레베기 실시 후 예취기 사용

-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림지 여건에 따라 작업 횟수, 공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실시

o 풀베기 기간이 끝나면 어린나무가꾸기를 조속히 실행하여 공백기간 동안 조림목이 천연치수, 움싹에 의해 피압되지 않도록 조림지 관리 철저

<덩굴제거 작업요령>

o 조림지 및 도로변에서 산림에 피해를 주는 칡, 가시박 등 덩굴류 제거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

-「덩굴류 제거 5개년 계획」에 따라 조림지 및 도로변 덩굴류 집중 제거

- '09~'10년에 기실행한 '덩굴류 집중제거 사업'과 연계하여 재발생한 덩굴류는 봄철 조림사업이 완료되는 5월부터 집중 제거

- 조림지는 가급적 숲가꾸기 기능인력을 투입하고, 도로변 등 성림지 덩굴 제거는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최대한 활용

※ '덩굴류 제거 5개년 계획' 참조(자원육성과-1270호, 2008.12.5.)

<덩굴제거 우선순위>

① 조림지

② 고속도로변 > 국도·지방도변 > 마을도로, 농로 등

※ 도로에서 조망되는 가시지역은 모두 제거대상에 해당함

③ 그밖에 일반 산림지역

※ 산주,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피해가 신고된 산림은 우선 제거

o 덩굴류 제거시에는 맹독성 약제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썩는 비닐랩밀봉, 기계 및 인력굴취 등 친환경적인 제거 방법을 확대

-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작업횟수를 연간 2~3회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사업효과 제고

- 입목이나, 야생동식물, 경작지, 수자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인력에 의한 제거

o 약제처리 시에는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산림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 약제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 디캄바액제는 증발에 의한 약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온(30℃ 이상)에서 작업 중지
- 약제처리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o 조림 후 5년이 경과된 조림지로 조림목이 피압되어 생육에 지장이 있는 조림지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여 조림 성공률 제고

7) 조림사업의 기계화 추진

o 농·산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임업여건 변화에 따라 기계화 도입으로 사업성과 제고

- 식재구덩이 파기 등 조림사업의 기계화 작업을 확대로 작업의 효율성 제고

o 조림용 동력식혈기를 도입하여 작업의 편리성과 조림목 활착률 제고

- 동력식혈기 사용시 곡괭이 등에 의한 인력작업에 비해 식재구덩이를 충분히 팔 수 있어 뿌리 활착에 도움
- 용기묘 식재시에는 가급적 'OK 식재기'를 활용하고, 식재기 사용이 어려운 석력지 등은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한 식혈방법 적용

8) 밀원수 조림

o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기피 및 생리적 쇠퇴 현상 등으로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

- '60~'70년대 국토녹화기에 아까시나무를 연료림으로 조성하였으나, 이후 경제발전으로 연료재를 활용하지 않아 대부분 소규모로 분포
-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의 거부감으로 조림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채밀 수종이 아까시나무에 편중

o 지역특색 및 조림사업 여건에 따라 밀원수종을 다양화하여 조림 추진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꿀의 채밀량이 많은 백합나무를 지속적으로 조림하고, 경관조림 및 가로수종에 적합한 이팝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종 조림
- 유휴토지에 특용수종 조림시 헛개나무, 마가목, 층층나무, 음나무 등 조림 지원

<주요 밀원 수종>

개화기	교목류	소교목류	관 목
3월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회양목, 매실나무	진달래
4월	왕벚나무, 산벚나무, 마가목		산딸기, 복분자딸기
5월	아까시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오동나무, 백합나무, 옻나무	때죽나무	족제비싸리, 찔레나무, 말발도리, 쥐똥나무
6월	밤나무, 헛개나무, 감나무, 참죽나무, 피나무, 황벽나무, 산딸나무		싸리나무류
7월	황칠나무	모감주나무, 좀목형	싸리나무류
8월	음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릅나무	
9월		붉나무, 산초나무	
10월		차나무	

o 국 · 공유림을 중심으로 밀원수종 산림의 조림 확대 및 관리 강화

- 국유림은 바이오순환림과 연계하여 아까시나무림 단지 조성
  ※ '15년 북부지방산림청 2ha, 동부지방산림청 6ha 조성
- 공유림은 지자체에서 시범단지 조성(도별 1~2개소)
- 사유림은 밀원수종 조림 희망지역에 조림사업비 우선 지원

<지자체별 밀원수단지 조성계획>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합계	228ha	6	6	27	106	75	8
지자체	13개 시·군	남양주시(3) 가평군(3)	강릉시(3) 양구군(3)	영동군(27)	공주시(100) 논산시(3) 보령시(3)	곡성군(50) 구례군(23) 강진군(2)	안동시(3) 영양군(5)
수종		헛개나무 피나무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 옻나무 등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6955(2011.11.21.)호

o 숲가꾸기 작업시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 밀원식물 존치

※ 3ha 이상 밀원산림 분포 : 3,741개소, 29,278ha('10년)

9) 미래 대비 수종의 시범조림 추진

o 고유수종인 활엽수의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해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를 다양한 식재밀도 방법으로 시범조림 및 모니터링 추진

- 물푸레나무 10ha(북부 5, 동부 5), 졸참나무 10ha(중부 6, 충남 4), 느티나무 10ha(남부 5, 서부 2, 경남 3)

※ 식재밀도 : 3천본, 5천본, 7천본, 10천본

- 국유림은 묘목 수급계획에 따라 국유양묘장에서 수급하고, 민유림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실행

<묘목 수급계획>

구 분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북부청	31.3천본 / 자체 수급	-	-
동부청	31.3천본 / 자체 수급	-	-
남부청	-	-	31.3천본 / 자체 수급
중부청	-	* 묘목수급 추후 결정	-
서부청	-	-	12.5천본 / 남부청 수급

- 지방산림청·지자체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사전 협의하여 시범조림 대상지를 제공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은 조림 대상지 현장 확인 후 조림 설계 실시
- 지방산림청·지자체는 조림 설계도서에 따라 조림을 실시하고, 조림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시업내용을 사진 및 문서로 상세히 기록 · 관리
- 국립산림과학원은 시범조림지에 대하여 적응시험 및 모니터링 연구 등 시범조림지 관리 지도 및 연구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o '14년 시범조림한 루브라참나무는 생육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국립산림과학원)

- '14년 시범조림 19.7ha(북부 4, 동부 3, 남부 4, 중부 45, 서부 4, 과학원 0.5)
- 국립산림과학원은 적응시험 및 모니터링 연구 등 시범조림지 관리 지도하고, 지방산림청은 시범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o 국유림 중심으로 전통 국악기 재료인 오동나무 확대 조림

- '15년 오동나무 신규 조림 10ha : 북부 2, 동부 2, 남부 2, 중부 2, 서부 2
- 오동나무 묘목은 국유양묘장에서 자체 수급하여 조림

10) 제70회 식목일 기념행사 추진

o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추진

- 세계적인 이슈인 지구온난화, 황사 등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나무심기로 상징화

o 기관별 식목일 기념행사는 국가기념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4월 5일 식목일 당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산불예방 등 기관실정에 따라 조정

- 어린이, 지역주민, 기업 등 많은 국민들이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무심기 체험행사 및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전개

<국민참여 식목일 행사 대상지>

① 2015년 조림지

-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재해복구지, 지역특화숲 등 조림사업 예정지

② 생활권 주변지역

- 공원, 도시녹지대, 기관청사 주변, 마을 또는 아파트단지내 공한지, 주요 도로 및 철도 조망권내 산림

③ 지역축제, 국제행사 개최지

- 지역별 대표적 축제장소 주변, 국제행사 장소 등 기념조림 및 기념식수

11) 조림용 묘목의 조사 및 검사

o 조림용 묘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종묘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규격 측정 등 묘목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급

- 조사·검사 결과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고 소독 ·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

- 검사한 묘목을 포장할 때에는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이끼류 등 묘목의 건조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물수세미는 곤포당 4㎏ 이상의 짚을 1개월 이상 물에 담근 후 사용

- 묘목의 포장 외부에 묘목의 규격, 생산지, 생산자 등의 품질표시를 명확히 하여 출하

o 묘목의 품질표시 위반, 출하금지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종묘생산업자에 대하여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엄정히 집행

- 국유양묘장, 민간양묘장 및 종묘생산업자의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방산림청, 시 · 도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묘목의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양묘사업 공정 준수 여부 등 묘목 생산체계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추진

12)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

o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위해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의 금액 확정 등 정산 및 잔액 반환 철저

- 정산 확정 후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별도 고지에 따라 납부기한 내 조속히 납부
- 잔액 보조금의 반납 지연 시에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당년도 보조금 교부를 보류하는 등 불이익 강화가 불가피

o 산림소유자의 부담금이 있는 경제림(유휴토지조림 포함)조성 보조사업은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보조율을 반드시 준수하여 정산

-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을 산주 또는 조림의무자(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포함)로부터 징수하여 사업 실행
- 자부담금 10%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보조사업으로 실행

※ 경제림 조성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o 산림소유자가 직접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은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영수증 등을 확인 및 정산

13) 조림 사업장 현장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o 조림사업 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 · 감독 강화

- 감리 및 사업담당 공무원은 현장 대리인 선임계, 작업원 운영계획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의 현장 투입 여부를 수시 점검
- 감리 용역의 과업으로 하도급 사례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사항 추가
- 사업담당 공무원은 준공 처리 전에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문서 보관

※ 사업시행자의 작업원 운영계획서상의 작업원 명단(자격 등)과 현장 근로 작업원의 일치 여부를 수시 확인

o 자격미달 또는 자격 중복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 사업방지 및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과의 등록인력 중복 여부 점검
- 설계·감리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지에 대해 수시 점검
- 사업계약시 담당 공무원은 계약업체의 기능인영림단 구성요건을 반드시 확인

o 조림사업 실행지의 필지별, 계약 건별 사업실행 이력 관리 철저

- 사업완료 즉시 필지별 사업내역서, 조림지 관리대장 작성 등 DB 관리
- 조림목에 대한 종자공급원·생산자·묘목검사자에 대한 이력을 조림지관리대장에 명기하여 관리
- "조림사업실적 통계"에 의한 세부 인자별 조림실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적 관리(재원별, 소유별, 대상지별, 실행주체별 등)
- 활착률조사 표준지는 GPS 좌표를 기록하고 가능한 도면화하는 등 사후 현장 검증 등에 대응자료 구축
- 사유림은 사유림정보시스템과 새올시스템을 연계하여 벌채 단계부터 조림 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o 조림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진 등 자료관리 철저

- 조림 사업지의 세부사업 공종별로 전·중·후 대비 사진기록 관리 및 실적 보고 시 현장 사진중심의 보고체계 강화
- 민원 발생 우려지 등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상자료로 기록 관리

o 각종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조림지 활착률 조사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조사에 이용된 표준지에 대한 좌표기록 유지 등 사후 검증에 대비

o 「산림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대상지 조사, 실시설계, 현지점검, 준공검사 등의 사업이력 처리 활성화(지방산림청)

라. 추진일정

o '15년 조림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 : 2014. 12월

o 지역별 조림계획수립 및 조림예정지정리 : 2014. 12월~2015. 2월

o 봄철 나무심기 및 제70회 식목일 행사추진 : 2015. 3월~4월

o 조림지 활착상황조사 : : 2015. 6월~9월

o 가을철 나무심기 추진 : 2015. 9월~11월

o '16년 조림설계 및 조림예정지정리 : 2015. 11월~12월

10. 숲가꾸기

목 표

◇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

o 현장과 기술 중심의 숲가꾸기로 산림기능 최적 발휘

o 설계·감리제도 및 모니터링 확대하여 품질관리 강화

- 숲가꾸기 : 222천ha (국유림 42천ha, 민유림 180천ha)

* 예산 : 206,339백만원 (국유림 65,333백만원, 민유림 141,006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산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확대되고,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는 기술적인 산림관리가 요구

o 제1,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기간중 큰나무가꾸기 위주의 숲가꾸기 사업에 집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

o 산림경영 및 사업 품질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로 숲가꾸기 분야도 투자효율성 및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과 제도개선이 요구

o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도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

나. 기본방향

o 현장 중심의 숲가꾸기 사업구조 내실화 및 기술적인 숲가꾸기 추진

- 큰나무가꾸기는 경제림 위주로 시행하고,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

o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조림 성공률 제고

- 풀베기 설계·감리제도 및 조림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도입

o 외부 모니터링 확대 및 시스템에 의한 사업부실 방지 도모

- 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현장모니터링 및 평가 확대

- 사업이력 및 작업원 관리시스템 입력 의무화로 부실시행 방지

o 숲가꾸기 실무교육 확대 및 사업품셈 현실화 등 현장 역량 강화

o 사업 안전관리를 최우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숲 관리 강화

o 도로변 덩굴제거 및 대나무가꾸기 등 지역여건에 맞는 숲가꾸기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정책 분야

1) 제3단계「숲가꾸기 5개년 계획(2014~2018)」2차년도 추진

o 현장 수요 및 사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큰나무가꾸기 물량은 축소하되,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 내실화 추진

o 설계·감리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관리를 강화

o 산림공간정보서비스 및 전국 산림기능구분도, 국·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 등 숲가꾸기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지 검토

◈ 총 사업량 : ('14) 246천ha → ('15) 222천ha (△24ha, △10%) * 큰나무가꾸기 : ('14) 156천ha → ('15) 127천ha (△29천ha, △19%) * 조림지·어린나무가꾸기 : ('14) 90천ha → ('15) 95천ha (5천ha, 6%)

2)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화 되는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

가) 경제림가꾸기로 집약화하여 사업효율성 및 생산성 증진

o 경제림 육성단지 및 인공림 위주의 숲가꾸기 사업을 집중하여 추진

-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여건이 우수하고 목재생산 기능이 높은 지역 및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생산성 증진
- 선도 산림경영단지 및 대리경영지 등 경영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경제림 숲가꾸기를 집약화하고 임도, 작업로 등 기반시설을 통합하여 추진
- 숲의 상태와 목표 수확별 시업기준에 맞춰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목재공급기지로 육성

  * 숲가꾸기 사업량(큰나무 기준)의 70%를 경제림 육성단지 및 인공림에 집중

o 활엽수 사업지는 대상지를 엄격히 선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억제

- 대상지의 경영목표 및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억제하여 재정 투입의 효율성 제고

  * 활엽수 천연림보육사업 축소하고, 활엽수 천연림개량사업은 폐지

- 형질 우량목 본수, 임지 생산력 및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고, 현장 토론회 등을 거쳐 사업 대상지를 신중히 선정

  * 천연림 보육 : 미래목 기준(150본 이상), 지위·소밀도 중 이상, 집약적 경영이 가능한 임지

나) 공익림은 숲의 기능별 수요에 필요한 특성화된 숲가꾸기

o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립공원, 도심 생활권, 야생동물 관리, 대나무 숲, 사찰림, 학술림 등 숲의 기능과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숲가꾸기 실시

o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매뉴얼('13.3)」을 참고하여 기능별 숲 관리사업 실행

- 수원함양보호구역내 숲가꾸기 계획 수립시 잣나무림 우선 선정 실시

  * 숲가꾸기시 잣나무림 수원함양량(최대1.6배) 및 수질정화기능(2배) 향상

o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및 희귀 야생식물 등 생명자원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목적을 우선하여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지 선정 및 방법에 유의

다) 전국 단위의 「산림기능구분도」 활용

o 지역별 사업 계획 및 산주별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 적극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산림관리 방향과 연속성을 확보

- 산림기능구분은 법적 제한목적이 아닌, 산림을 경영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산림경영· 관리 의사결정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o 산림공간정보서비스(http//fgis.forest.go.kr)를 통한 산림기능구분 정보제공

- 필지별 검색 : 기능구분(주, 부기능), 기능평가(기능별 잠재력 고, 중, 저)

  * 숲가꾸기 사업설계시 산림의 기능구분 및 관리목표 설정에 활용

라) 대나무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o 생육 환경에 적절한 임분관리를 통해 대나무 숲의 건강성을 증진·보전

  *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15.9.17~10.31)를 계기로 대나무 자원 보전·관리를 도모

o 대나무숲의 조성 및 관리요령(붙임참조)을 참조하여 기관별 자체설계를 통하여 관리하며,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시범사업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 및 전남도(담양군)은 남부산림연구소 시범사업에 협조요청

- 대나무숲 일제조사를 통한 관리현황 등 파악 추진(남부산림연구소 주관)

o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관리요령 및 대나무 숲 관련 품셈을 반영 추진

3) 조림지 사후관리 강화

가) 풀베기 사업 설계·감리 제도 신규 적용

o 풀베기 사업에 설계·감리제도를 신규도입하여 사후관리 사업 품질 제고

o 설계용역을 통해 조림목 고사상황 등을 고려한 사업대상지 조사, 작업공법 및 사업비를 산출하고, 감리를 통해 사업지도 및 조림목 피해 조사 실행

o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두고 숲가꾸기 설계·감리 지침에 품셈 및 시행요령 등을 반영

나) 풀베기 시행과정에서의 조림지 피해 배상기준 도입

o 감리시 조림목의 초두부 훼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일정기준 이상 훼손될 경우 시공자에 손해배상 조치하고 세부기준 및 적용근거를 지침에 반영

o 풀베기 사업 계약시 손해배상 기준을 공지하고 계약에 포함하여 시행

◈ **조림목 피해 배상기준안**
- 피해율 5% 미만 : 감리보고서 상에 피해의 정도외 원인 기록
- 피해율 10~20% : 정해진 비율로 사업비에서 공제
- 피해율 20% 초과 : 사업비 공제 및 산림사업 참여 제한
  * 피해율 조사 : 소반단위, 필지단위로 실시(사업면적의 2%이상 표준지 조사)

* 풀베기 설계·감리 및 손해 배상기준(안)에 대한 확정내용을 '15.1월중 별도 시행예정

다) 풀베기 사업 공정 개선 및 적기 시행

o 적기에 사업을 실행하여 조림목 피해방지 및 사업의 효과 극대화 도모

- 풀베기는 조림 당년도를 포함하여 3~5년간 추진하되,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 연 2회 실시하고, 적기에 실행하여 사업효과 제고
  * 풀베기 사업시기를 경과하여 조림목 피해 및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유의

o 풀베기 품셈을 세분화하고 현장여건에 맞도록 공정을 개선

라) 어린나무가꾸기 공정 개선 및 적기 시행

o 풀베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입목의 생육상태를 확인하여 어린나무가꾸기 실행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현장여건에 따라 풀베기사업 완료 후부터 조기 착수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 (기존) 조림 후 5~10년 → (변경) 풀베기사업 단계 경과 후부터 시행 가능

o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현장조사 및 시범사업을 통해 유형별 관리요령 및 공정을 세분화 하고 관련지침 및 품셈에 반영 계획

* 산림생산기술연구소 현장조사 및 시범사업 협조(대상 지방청 및 지자체 별도 통보)

o 조림목이 없거나 생육이 불량하고 천연발생목의 형질이 불량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사업지에서 제외하고 재조림 검토

o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비중을 확대하여 관심 제고

4) 설계・감리제도 기능 강화

o 설계서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용역 품셈에 설계서 검토품을 반영하고, 기관별 숲가꾸기 기술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자체 검토 강화

o 감리 기능강화를 위해 표준지 조사 규모를 확대 적용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 감리 표준지를 현행 0.25%에서 0.5%까지 확대할수 있도록 품셈을 추가

o 감리 예비 준공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을 강화

- 숲가꾸기 사업 예비 준공검사를 위한 사업지 확인 시 GPS트랙좌표를 측정한 후 도면으로 출력하여 제출토록 과업지시

o 부실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결과를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o 선목사업 분리발주를 기관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품질 등 효과 비교

- 선목을 솎아베기와 별도로 발주하거나 설계에 포함하여 발주(별도 계획통보)

5) 산림사업 이력관리 강화

o 숲가꾸기 사업 이력관리 실시요령(훈령제정 '14.6월)에 따라 관리 의무화

o 산림사업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각종 평가와 연계

* (국유림)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사유림) 사유림 경영정보 시스템

o 숲가꾸기 실행 결과 등 사업 이력을 산주에게 의무적으로 통보(우편, 메일 등)하여 산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산림사업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

o 시・군 단위에서 조림 이후의 이력관리 업무를 숲가꾸기 담당자로 일원화하여 지정하고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연계성 강화 및 혼선 방지

o 산림사업장 책임실명제를 적용하여 사업 담당자는 물론,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및 관리 강화

6) 시기별 현장 지도점검 및 외부 전문기관 모니터링 확대

가) 현장 위주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

o 주요 사업종별로 감사 수준의 일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 적발 및 시정·개선 조치

- 사업지 누락, 불법 하도급, 무자격자 투입 등 부실사례 집중 감시

o 숲가꾸기 사업장 품질평가를 통해 기관별 경쟁의식 고취 및 품질향상 유도

- 평가 대상지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현장 평가 실시
- 우수기관 포상 및 부실한 기관은 공개하여 기관의 경각심 부여

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모니터링 확대

o 민간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분야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 추진하여 현장의 기술 수준 향상 및 개선과제 도출

- 중앙단위 모니터링 대상 확대 : ('14) 60개소 → ('15) 300개소
- 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 사전심사 기준 마련

o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담당공무원, 산림기술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숲가꾸기 발전방안을 토론

다) 시스템에 부실방지 방안 도입 및 점검 강화

o 동일 사업지내 중복실행 차단을 위해 대상지 선정단계에서 '사유림 경영정보시스템 '을 통한 5년 이내 이력조회를 사전 실시('14년말 시스템 완비)

- 시스템 내 '숲가꾸기 대상필지 사업이력 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다수 필지에 대한 이력을 일괄조회(조회 대상필지 엑셀로 업로드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솎아베기 사업 반복 실행을 엄격히 제한

o 사업계약시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시스템' 입력을 의무화로 작업원 이중투입 및 무자격자 차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개정)

- 감독 공무원이 사업착수 시 작업원 명부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타지역에 등록된 작업원 명부와 비교하여 허위중복 투입여부 확인

* '산림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내「숲가꾸기 작업원 관리시스템」메뉴 입력

7) 대상지 선정 및 계약단계에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확보

가) 사업대상지 선정의 객관성 확보

o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객관적 우선순위와 명확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

- 지역·기관별로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 프로세스 마련 및 적용

o 사업대상지를 전년도에 미리 선정될 수 있도록 산주동의 절차를 조기에 시행하고 기본설계 용역을 확대하여 사업적합성 사전 파악

나) 산림사업 공고제도를 명확히 이행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소지 차단

o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지자체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산주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동의절차를 반드시 이행

- 기본적으로 사업에 동의한 경우에만 사업 실행

  * 사업 동의 요청시 내용증명우편 또는 등기우편방법 권장

- 공고의 대상은 주소 불명, 우편물 반송 등 명확한 '소재 불분명'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무응답' 은 공고 대상에서 제외

  * 동의서가 반송된 경우 바로 공고하지 말고 여러 경로로 주소파악을 위해 노력한 후 공고하여야 함

o 숲가꾸기 설계, 시공 시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잘못된 오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사업 실행 전 반드시 산주·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수막·안내판 게시

다)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사례 방지

o 수의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내로 숲가꾸기 사업을 분할하여 발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사례 금지

라) 벌채 신고·허가 등 법적요건에 대한 검토 병행

o 숲가꾸기 사업 및 숲관리 특색사업 실행시 벌채 허가·신고 사항 등 법령상 규정 사항에 대하여 사업 결재시 병행하여 조치

- 민원 발생 등에 따른 사전 인·허가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논란 방지

8) 안전관리 강화 및 재해 예방 철저

가) 숲가꾸기 안전사고 예방

o 작업 실행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및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구급약품 비치, 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통신장비 등

o 특히, 하절기 벌쏘임에 대한 쇼크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풀베기 사업 시행시에 안전교육을 강화 및 안전장구 비치를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가 확인

나) 숲가꾸기 산물 처리로 재해요인 사전 제거

o 산불·수해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의 산물을 반드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 부식이 촉진되도록 단목 처리

- 계곡부의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도로·임도·농경지,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사면거리 30m 내외 지역

-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지역 내 숲가꾸기 산물은 전량 수집

9) 주요 도로변 및 조림지 덩굴류 제거사업 집중 등 산림의 가치 제고

o 주요 도로변 및 조림지에 대한 덩굴류 분포현황을 기관별로 일제조사

-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변, 조림지, 공공시설 주변 등 기타 내역별로 일제조사

o 노선별, 거점별로 덩굴제거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 제고

- 덩굴류제거와 공익림가꾸기 등 세부사업과 통합 실행가능

- 한국도로공사, 지방국도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 추진으로 성과 제고

o 관리요청을 받은 타부처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적극적인 산림사업 추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국유림관리과 협조 요청

실무 분야

1) 숲가꾸기 설계·감리

가) 기본 사항

o 50ha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개소는 반드시 설계·감리 실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등에 따라 현지여건에 맞게 시행
- 부실 설계·감리 근절·방지를 위한 자체적으로 사전교육 등 강화
  *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강화, 감리원의 역할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의 품질향상 도모

o 소규모(50ha 미만) 산주 직접 사업지는 지자체에서 위탁 설계·감리업체 지정

- 위탁 설계·감리업체의 완료 보고서 수리 후 보조금 지급

· 숲가꾸기 사업의 조기발주 및 연중 사업실행을 위해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계를 통해 전년도에 50% 이상 사업면적 확보 및 설계 완료

o 현장과 부합하는 숲가꾸기 설계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

- 정확한 현지조사 및 산림 여건을 반영하여 소반을 세분화하고, 소반에 필요한 사업종을 적용하여 숲가꾸기 설계도·서 작성
- 특히, 전 구역을 천연림 개량과 같은 단일 사업종으로 설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천연림 갱신 등 다양한 작업종 반영
- 숲가꾸기 기계화작업로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공정은 추가 반영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참조

o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부수적(附隨的)인 산림사업이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산림사업 통합 설계 시행

-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일부 면적이 포함되는 송이산 가꾸기, 단기소득 임산물 식재, 피해목 제거 등 포괄적인 숲가꾸기 사업 범위에서 실행
- 단, 숲가꾸기를 수반하는 경우 유사한 작업은 숲가꾸기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물과 단기소득 묘목대 등은 집행 불가

나) 품셈 적용 기준

o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는 산주 실행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미반영

o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림조합·산조중앙회 등은 부가가치세를 미반영

>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되,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시에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방지(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대급 지급시 정산처리)

o 산림조합·산조중앙회는 이윤과 수수료를 중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윤과 수수료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o 숲가꾸기 품셈 적용시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 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함

o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시행자가 보험에 가입한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처리하며, 관계법령에서 매년 고시하는 내용을 확인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12. 9. 22)**
>
> ・산재보험료 : 2천만원 미만 사업인 경우도 가입(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0.7～1.3%(사용자 부담금, 국토해양부 고시)
> * 1개월 미만의 일일 고용사업인 경우에도 보험료 반영(고용보호법 제2조 6호)
> ・국민연금보험(국토해양부 고시)
> * 단 1개월 이상 사업인 경우만 적용
> ・국민건강보험(국토해양부 고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용노동부 고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사용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지출하고,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는 업체에 지출시 반드시 세금고지서를 첨부하고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처리

-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o 숲가꾸기 설계도・서에 의거 실행되지 않은 공정과 실행할 필요성이 없는 공정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감액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산처리

다) 선목사업 분리발주 및 사업 시행자 자격확인 철저

o 설계용역 의뢰 단계에서부터 설계·감리용역의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사업 발주

o 선목과 솎아베기를 분리발주 할 수 있으며, 선목은 반드시 선목 자격이 있는 자가 사업 실행

o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아닌 산주 실행사업은 미래목 선정, 작업자의 자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미래목 선정자 실명 기록 유지)

o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감리 및 사업담당 공무원은 작업원 운영계획서(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16호 서식)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시 점검
- 감리 용역시 계약사항에 하도급 사례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추가
- 사업담당 공무원은 준공 처리 전에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문서 보관
- 현장 지도 점검 시 하도급 사례에 대한 작업자들의 신고 강화를 위해 부당한 하도급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숲가꾸기 작업원 기준 미달 시 사업을 중지시키고, 시공업체에 시정명령 조치

  * 사업시행자의 작업원 운영계획서상의 작업원 명단(자격 등)과 현장 근로 작업원의 일치 여부를 수시 확인

o 자격미달 또는 자격 중복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한 사업, 위법 및 지침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과의 등록인력 중복 여부 점검
- 설계·감리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지 수시 점검
- 사업계약시 담당자는 계약업체의 기능인영림단 구성요건을 반드시 확인

·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http://fec.foa.go.kr/legal/)' 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현장대리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숲가꾸기 작업원관리 메뉴에서 계약시 작업원명부를 입력하여 작업원 이중등록 확인

o 현장 점검 실행 시 부실사례를 발견할 경우, 一罰百戒 차원에서 시공업체 및 감리자 등 산림기술자에 대해 의법 조치

라) GPS를 이용한 표준지 보존·관리

o 숲가꾸기 사업의 표준지는 반드시 GPS좌표를 기록하고 도면화

- 표준지는 지형도상에서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 배치하도록 하며 임도변, 도로변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만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

> · 표준지 설치 목적은 사업비 산출근거, 작업단·영림단에게 작업방법의 현장 설명에 활용, 사업 전·후의 대조구 역할 등으로 사업면적에 포함됨.
> · 표준지 조사는 '수평 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함.

o 표준지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 대비, 사후 점검이 용이하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보존

- 도로변, 주요 시설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에 반영하고, 사업 실행 사유를 설계도서에 기록

2) 숲가꾸기 예산 집행

가) 예산 집행 및 관리

o 숲가꾸기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매월 집행률 및 실집행률을 파악하고 있으니,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현지 집행 추진

- 시·도(시·군·구)의 예산 편성시 세부사업명을 '정책숲가꾸기(보조)', '공공산림가꾸기(보조)'로 통일하여 향후 예산집행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치

o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선금규정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으로 노임체불 등을 방지하고, 업체의 부담 경감

- 계약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
- 선금은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 요령 >**
> · 근거 법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 · 근거 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12. 9. 22)**
>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제33조부터 제39조)'
> ※ 계약예규에서 선금의 사용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노임인 숲가꾸기 사업에 선금 지급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o 숲가꾸기 사업은 소액 수의계약 규모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적용

- 감사원 및 안전행정부 감사시 숲가꾸기 사업은 계약관련 법령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해당하여 5천만원 이하로 적용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집중을 위한 숲가꾸기 예산 배정시기 조정

o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집중 및 기능인력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자체의 숲가꾸기 예산은 2분기 이후로 배정

-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등 필수예산을 제외하고, 솎아베기 사업 등의 예산은 2분기에 배정

* 대상지역 (9개 기관) : 부산,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남부청, 서부청

3) 직무역량 강화 및 기술 지도 등

가)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o 숲가꾸기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력 향상

- 숲가꾸기 담당자 현장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상반기)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훈련원에 위탁하여 5일 집합교육으로 실행

나) 산림기술자 직무 교육

o 도 주관으로 해당 시·군에 소재한 설계·감리 및 시공업체 소속 산림기술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상반기)

다) 일정규모 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정례화

o 50ha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지방청 주관으로 분기별 일제점검 추진

o 부실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동일사례 재발 방지

o 지방청·지자체는 학계, 전문가 등으로 숲가꾸기 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

< 숲가꾸기 기술 위원회 >

o 목적과 구성

- 목 적 : 숲가꾸기 사업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정부사업에서 거버넌스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제고
- 구 성 : 공무원, 학계, NGO, 산주(공·사유림), 전문가 등
- 역 할 : 숲가꾸기 사업의 모니터링, 기술지도, 제도개선 의견제시, 홍보 등

o 시·군,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지 자체 평가를 실시

- 시기 및 횟수 : 상·하반기 각 1회

o 도, 지방청별 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

라)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활성화

o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현장 토론회 추진

- 도·지방청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상의 산림 기능별 토론
  * 숲에 대한 경영목표, 작업방법, 작업강도 등 토론
  * 임업기계장비의 활용, 산물수집 확대 방안 등 숲가꾸기 기술 공유
  * 산림청에서는 자체 현장토론회시 지자체와·지방청 요구에 따라 지원

o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사업 추진 및 장기 모니터링 추진

4) 숲가꾸기 사업 평가 및 홍보

가) 숲가꾸기 사업 평가

o 기관평가

- 민유림 : 수시 현장 점검 및 지자체 합동평가(안전행정부 주관)에 의함
- 국유림 : 소속기관 평가 계획에 의함

o 숲가꾸기 우수 사업장 선정

- 설계~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우수 사업장 선정
- 숲가꾸기 우수 사업장 선정을 통해 품질향상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 우수기관 포상 및 사업 담당자의 해외 선진지 연수 기회 제공

나) 숲가꾸기 사업 홍보 강화

o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 주요 사업지별 '숲가꾸기사업 발대식' 개최를 통해 숲가꾸기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

- 지역 언론매체, 반상회보,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o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변의 숲가꾸기 홍보 입간판 정비

- 노후화된 홍보 입간판 도색 또는 철거, 입간판 주변 풀베기 등 수시 정비

o 숲가꾸기 사업 효과 등 홍보를 강화하여 산주의 자발적 신청 참여 유도

- TV 공익광고, 리플렛, 포스터 제작,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 동원

o 숲가꾸기 사업이 수해 등 재해를 유발하거나 밀원수종·꿀벌을 감소시킨다는 등 잘못된 언론보도 사전 대응

- 숲가꾸기 사업의 재해예방 효과 등 순기능에 대해 홍보 강화

o 숲가꾸기 추진 과정상의 사진 등 자료관리 철저

- 주요 사업지의 세부사업 추진 공종별로 전·중·후 대비 사진 기록관리
- 민원 발생 우려지 등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상자료로 기록관리

다) 숲가꾸기 기간 행사 추진

o 숲가꾸기 기간(11.1~11.30) 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확대 실시

- 숲가꾸기 1일 체험 시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의 참여 확대
-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병행하고 홍보 강화

o 산림청 및 산하기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숲가꾸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숲가꾸기 장소 제공 및 장비대여, 기술지도

라) 사랑의 땔감나누기

o 사랑의 땔감 나누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물의 일부를 지역내 취약계층(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공공시설(양로원, 마을회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
-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연중 실시하되, 동절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집중지원
- 2015년 지원 목표량 : 10천 세대에 50,000㎥ 지원(1세대 당 평균 5㎥ 지원)

5) 녹색댐 조성사업

o 기본설계에 따라 가급적 댐 유역별 사업량 전체를 묶어서 일괄 실시설계 및 사업 실행

* 산림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녹색댐 조성사업' 공동 추진 협약 체결('07.11.20)

* 기본계획 수립(산림청) → 기본설계(한국수자원공사) → 연간 사업 계획 수립(산림청) → 실시설계, 숲가꾸기, 감리(국유림관리소, 시·군)

o 세부적인 사업요령은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참조하여 실행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표준 매뉴얼의 수원함양림 작업 기준

o 녹색댐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는 기존의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

o 실시설계서 검토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

o 녹색댐 추진 실적자료 관리 철저

- 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05~'11년, 26개댐)한 댐 유역의 지자체별(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실적자료 정리 및 이력 관리 철저

* 기본계획에 의한 댐별, 연도별, 개소별 현지 숲가꾸기 추진실적('06~'15년) 관리

라. 추진일정

o 2015년도 숲가꾸기 발대식 : 2015. 1월

o 2015년도 숲가꾸기 사업 시책 설명회 : 2015. 1월

o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 2015. 상반기

o 숲가꾸기 기간행사 계획 보고 : 2015. 10월 15일

o 숲가꾸기 우수 사업장 선정 : 2015. 11월

o 지역별 숲가꾸기 현장 토론회 : 2015. 수시

o 2014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 : 2015. 3월

o 사랑의 땔감나누기 추진 : 2015. 10 ~ 2016. 4월

*** 매월 5일 기준으로 숲가꾸기 추진실적(월보) 제출**

11. 공공산림가꾸기

목 표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

o 고용인원 : 2,550명(국유림 135, 공・사유림 2,415)

* 예산 : 21,947백만원(국유림 3,137, 공・사유림 18,810)

가. 정책여건

o 인력 의존도가 높은 숲가꾸기를 통해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 농산촌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o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인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산물수집의 확대와 임업 기능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

o 산림재해의 예방・복구, 도로변 경관림 조성,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수원함양림 육성 등 공공성이 높은 산림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

나. 기본방향

o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자, 장기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약 2천 5백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의욕 고취

o 저소득계층 및 청년실업자 등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집중적인 산림기술교육을 통해 산림분야 직업인으로 양성

o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내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

o 전국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 및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산림 현장 민원의 조기 처리에 '숲가꾸기패트롤' 인력 확대 투입

o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조사 및 체계적인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DB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공통사항

1)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개요

o 3개 분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o 운영 인원 : 2,550명

- 지방청 : 135명(숲가꾸기 패트롤 135명)
- 지자체 : 2,415명(수집단 2,215명, 자원조사단 200명, 숲가꾸기패트롤)

  * 지자체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인원(도별 5명, 8개도 40명)은 지자체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인원 내에서 별도로 선발

o 운영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o 사업 추진 : 연중 실행(고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되, 가능한 조기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2) 주요 사업 내용

o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및 정책 숲가꾸기 실행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산물 활용 촉진

o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 조사 업무와 산림사업 DB구축 등의 관리 등

o **(숲가꾸기패트롤)** 산림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장 민원 처리

3) 모집 공고 및 신청 자격

o 신청 및 선발 기관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시・군・구 '공동모집・선발 위원회'구성을 통해 통합 모집(접수)・선발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사업실행부서 주관으로 별도 모집(접수)・선발
- (숲가꾸기패트롤)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등 사업실행부서 주관으로 별도 모집(접수)・선발

  * 신청서 접수현황을 대장으로 작성 관리하며, 우편접수 허용

o 참여자 모집공고

- 전년도말 또는 연초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지 등에 사업내용을 공고한 후 공개채용 실시

  * 세부사항은「201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따름

o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②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고교·대학 재학생 등은 신청자격을 제한(세부사항은 「201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참조)

o 결원 보충 및 추가모집

-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선발 시 작성된 대기자 명단을 활용하여 수시 고용하거나 또는 추가모집 가능

4) 사업 참여자 선정

o 사업 참여자 선정주체

-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 지방자치단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o 취약계층 및 장년층 참여 고용 기준의 세부사항은「201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따름

o 참여자 정보 및 근로내역 실적을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

  *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Ⅵ장 참조

5) 임금 및 교육 훈련

o 인부임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 일반인부-45,000원/1일, 기술인부-50,000원/1일(일반인부임+기술수당)

- 숲가꾸기패트롤 : 60,000원/1일

o 교육 훈련

- 근로자 기술교육은 2주의 교육기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의 경우는 신규 3주, 보수 1주의 교육을 추진

- 모집 공고문에 기술교육 참여가 의무사항임을 명시하는 등 참여자 전원 교육 이수 추진
  * 공공산림가꾸기 기술교육 추진계획 참고
- 사업 참여자에게 직업상담·채용박람회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6) 안전 관리

o 안전 관리
-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의무화 하고, 비상연락체계 유지
-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 착수 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 개인별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작업현장에 구급약품을 반드시 비치
- 안전 사고자 발생시 신속한 병원후송을 위해 사업장내 들것 등을 비치
-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초 건강진단 실시
- 감독공무원은 사업 착수 전 또는 수시로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기록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적 교육시간 이수 등 준수(세부사항은 「201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참조)

o 안전 장구 구입
- 사업 시행기관별로 작업자별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구입하여 지급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통신장비 및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업여건상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개인보호구 등
- 벌 등 독충 피해예방을 위해 방충복 등을 지급하여 안전사고 적극 대처

7) 대행 제도

o 행정력 절감을 위한 대행제도 시행
- 근로자 선발, 예산 집행을 제외한 현장 기술지도 업무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산림조합계통 조직)하도록 하고 대행 수수료(인부임의 7%이내)를 지급

8) 사업 점검단 운영

o 지자체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장 점검 정례화(상·하반기 각 1회 이상)

o 인건비 지급 적정성, 안전사고예방 노력도, 사업추진 실적 등 중점 점검

세부 사업별 기준

1)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o 선발 기관 및 대상

- 시・군・구 '공동모집・선발 위원회' 구성을 통해 통합 모집(접수)・선발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과 업무보조요원으로 구분하여 선발
  * 지방자치단체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고용 배정인원 내에서 숲가꾸기패트롤 단원 선발

o 자격 및 선발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②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취약계층 및 장년층 참여 고용 기준의 세부사항은「201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따름
- 2년 연속 반복참여자 및 중앙・자치단체 매칭사업간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선발 제외(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모집인원 부족 등 예외 허용. 관련지침 참조)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o 주요 사업내용

-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관리 사업(덩굴류 제거 등)
-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사업
- 숲가꾸기 이후 산물 발생대상지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
- 산불, 풍수해, 병해충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 기타 사업추진 요령은 「2015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름

2)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o 선발 기관

- 시・군 산림사업 부서에서 「201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모집(접수)・선발

o 자격 및 선발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②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등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 사업시행 기관별 별도의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발

o 주요 사업내용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산림병해충 등 산림피해 조사
- 산림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 등 산림정보 구축・관리
-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사유림경영정보 DB 시스템(새올연계) 업무 적극 수행

3) 숲가꾸기패트롤

o 선발 기관

- (민유림) 시・군・구 산림사업 부서에서 「201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모집(접수)・선발
  * 지자체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인원(도별 5명, 8개도 40명)은 지자체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인원 내에서 별도 선발하여 운영
- (국유림) 지방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201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후 모집(접수)・선발

o 자격 및 선발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②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술 교육을 이수한 자
- 기계톱 등 임업장비 활용이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
-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자 등
- 사업기관별 1개단에 5명 내외의 단원으로 선발
-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 전용차량 운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

o 주요 사업내용

- 주요 도로변 등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주거지,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 현장 활동 기록유지 및 기타 사업기관이 지시한 제반 산림업무

라. 추진일정

o 근로자 신청·접수, 선발 : 2014. 12월 ~ 2015. 2월까지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시·군·구 '공동모집·선발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함

o 근로자 기술교육 : 2015. 3 ~ 7월

o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물수집 등 추진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매월)

o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 : 2015. 5월, 10월

o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매월)

o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성과 보고 : 2015. 12월까지

공공산림가꾸기 세부 적용 기준은『201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및 『201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공공산림가꾸기(산림청)』에 의한다.

12. 남북 산림협력 사업

목 표

◇ 내실있는 준비를 통한 그린데탕트 추진 기반 구축
◇ 민·관 협력체계와 국제기구를 통한 초기 산림협력사업 추진

가. 정책여건

o 남북산림협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실질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 VIP께서 '복합농촌단지 조성'('14.3.28, 드레스덴 선언)과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산림 공동 관리사업'('14.8.15, 광복절 경축사)을 제안

o 북한은 산림황폐화가 지속되면서 황폐 문제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산림 복구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을 수립하고 1단계로 168만ha 조림 추진

나. 기본방향

o 초기 민간단체·국제기구 주도의 소규모 시범사업을 추진

- 국제기구를 통한 산림협력사업 지속 추진 및 신규사업 적극 발굴
-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

o 본격적인 남북협력사업 재개에 대비하여 내부 지원 역량을 강화

- 안정적인 북한 산림 복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국내 기반 마련
- 북한의 황폐지 조림을 위한 대북용 종자·묘목 준비 및 지원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초기 안정적인 북한 지원을 위한 종자·묘목 생산 확대

o 지속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북용 종자 5톤 채취 및 저장

- 지방청은 낙엽송, 잣, 아까시, 싸리 등 대북용 종자를 일반 산림용 종자와 병행 채취하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이송
- 국립품종관리센터는 채취된 종자를 장기 저장하고 활력도 검사 실시

o 대북지원용 묘목 생산 및 양묘장 추가 조성

- 기 조성된 대관령 산간양묘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방수종 외에도 밤나무, 블랙초코베리 등 북한이 선호하는 유실수 양묘 확대
- 북한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후대가 비슷한 지역에 대북지원용 묘목 생산 기지(양묘장) 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 조사 및 설계 추진

2) 국제기구를 통한 산림협력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o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FAO를 통해 개도국 및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진행

- 북한 대상 A/R CDM 및 REDD+ 워크숍 개최·교육 훈련 사업 실시
- 여건 개선에 따라 A/R CDM, REDD+사업을 위한 양묘장 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 산림청-FAO 협력사업 : 아시아지역 개도국(북한 포함)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A/R CDM, REDD+ 능력배양 사업('09～'16)

o 기존 대북사업 또는 국제회의 경험이 있는 FAO, IUFRO, AFoC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전문가 초청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산림조사 등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3) 정부 ·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사업역량 강화

o 통일부, 농식품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산림분야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산림복구와 식량·에너지난 문제 해결 병행 추진

- 부처 합동 '그린데탕트협의회' 및 통일준비위원회 관련 협의회
- 농림축산식품부의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및 추진단과 '남북 농림축산협력 TF팀' 등

o 남북산림협력 지원기반 마련 및 이행을 위한 '북한 산림복구 사업단' 및 '민·관 실무협의회' 운영

- (사업단) 각 반별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내용 구체화 등

※ 5개 반 : 정책연구(정보통계팀), 양묘, 조림, 사방, 산림보호

- (협의회) 대북지원사례 공유·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북지원사업 발굴

※ 겨레의숲, 아시아녹화기구, 평화의숲, 동북아산림포럼 등 민간단체 참여

o 지자체 및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북사업에 대한 자문·기술 전수

- 양묘·조림·병해충 등 대북사업 이행사례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남북산림협력 사업별·절차별 가이드라인 개발·제공

- 양묘장 조성, 사방, 병해충방제 등의 실질적 전문가 기술자문 및 지원

o 대북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북한 산림 및 임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상 능력 강화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산림복구 실무역량 향상과정 운영 계획>
- 일시 및 장소 : '15. 5월 중 3일간, 산림교육원
- 대상 : 공무원, 녹색사업단 등 산하기관과 대북사업 민간단체 담당자 등
- 내용 : 북한의 현황과 양묘, 조림, 사업 합의 등에 대한 주제로 실시

4) 남북산림협력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세부추진방안 마련

o 조기 추진가능성, 사업의 중요성, 파급성 등을 감안하여 종자 교류, 병해충 방제, 탄소배출권 사업, 임농복합경영 등 중점 과제 선정

- 통일준비위원회 산림분야 주요 연구사업, 그린데탕트 추진계획, 복합농촌단지 조성방안 등과 연계

o 각 사업별로 사업 규모 및 대상지, 단계적 추진방안, 소요 인력·예산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 마련

※ (3단계) 여건 조성 단계, 신뢰 초기 단계, 신뢰 확대 및 심화 단계

5)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기초 DB 구축

o 위성영상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북한 산림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북한의 산림면적, 산림황폐지 유형별 면적, 복구방법 및 소요비용 등 분석

※ '08년 북한 전지역 산림현황 조사, '13년 5개 지역 황폐화 추이 분석

o 북한 산림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와 국제기구 및 국제 NGO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 획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 관련 자료는 '북한 산림복구 사업단' 내 정보통계팀에서 축적·관리

6) 남북관계 개선 시 초기 산림사업 우선 추진

o 북한 황폐산림 복구 기반 구축 지원 및 소규모 시범사업 추진

- '14.11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 등을 통해 저장된 종자를 북한에 지원하고, 북한의 자생 희귀수종 종자를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등에 저장·관리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수목원, 아시아녹화기구, 평화의숲

- 북한이 긴급히 요청하는 지역과 주요 보호지역 집중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공동 실태조사와 방제 약제·장비를 지원

- 기 지원 양묘장에 대한 기반시설 점검·복구, 자재 지원, 기술 지도와 종자 관리 시설·자체 발전 시설을 연계한 시·군 단위 양묘장 조성

- 복합농촌단지 대상지 인근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복구기반 조성 및 조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병행

※ 우량종자 확보 및 묘목 생산 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경사지 안정화, 임농복합경영, 연료난 및 식량난 해소 연계 조림사업 등

o 북한이 수용가능한 지역을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산림복구시범사업 추진

- 황폐화 원인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식량·연료 문제를 감안한 패키지형 사업 실시

- A/R CDM, REDD+ 사업 등 탄소배출권 사업과 연계 추진

라. 추진일정

o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 대상지 수요 조사 : 2015. 1월

o 북한 산림복구 대비 종자·양묘 계획 수립 : 2015. 2월

o 대북지원용 양묘장 대상지 현장 조사 및 선정, 설계 추진 : 2015. 2~4월

o '북한 산림복구 실무역량 향상과정' 운영 : 2015. 5월

o 북한 산림복구용 종자 채취·저장 : 2015. 11월

o FAO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배양 운영 : 연중

o 북한 산림복구 사업단 및 민·관 실무협의회 운영 : 연중

o 지자체 및 민간단체 대북사업에 대한 자문·기술 전수 : 연중

o 남북관계 개선 시 대북 산림협력사업 지원 : 연중

13. 산림생명자원관리 강화 및 이용 활성화

목 표

◇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생명자원 주권 강화
◇ 바이오 산업 소재 발굴과 산림유용자원 이용 기반 마련
o 산림생명자원 조사·수집 : ('14) 103만점 → ('15) 105만점
o 직무육성 신품종 보급 : ('14) 12품종 → ('15) 20품종

가. 정책여건

o 생명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부각
- 정부는 2020년 세계 7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각 부처별로 생명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o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12)로 국내 생물자원의 주권확립과 생명산업계 원료수입의 국내 자원 대체가 요구됨
- 국내 생명산업계 원료의 약 70%를 해외에서 수입

o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존·이용 기반을 마련할 필요

나. 추진방향

o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물주권 확립
- 산림생명자원의 조사 및 수집 내실화
- 산림생명자원 관리·보존을 위한 관리기관 확대
- 산림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나고야의정서 대응팀 구성

o 산림분야 신품종개발 육성과 생명산업 소재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
- 민간육종가 지원 및 국유신품종 보급 확대
- 산림유용자원의 종자공급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 마련

o 산림생명자원 소재의 자원화를 통해 향토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잔디/이끼류 등 시장 적용성 있는 자원 발굴
- 야생화 등 지역특색 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 활성화
- 한지산업, 죽공예 등과 연계한 산업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분야 후속조치

가)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o 식물・미생물・곤충자원을 총 2만 여점 수집・보존

- 표본: 2,000점, 종자: 2,000점, 영양체: 200균주, DNA: 16,000점

o 수집・보존 내실화를 위해 국립산림과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등 3개 책임기관별 효율적인 수집・보존 체계 마련

o 산림생명자원 DNA Profile 작성 및 기초 육종형질에 대한 특성 평가

- DNA Profile 작성: 4수종, 육종형질특성평가: 90점×15항목

나)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 및 관리기관 확대 지정 운영

o 산림생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연구소, 대학, 지자체, 공・사립 수목원 등을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확대 지정: ('14)28 →('15)33

- 관리기관별 수집・보존 자원에 대한 현황 분석

o 산림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표준운영매뉴얼 마련

- 관리기관별 자원별 분류 코드 단일화 등

다) 나고야의정서 대응팀 구성・운영 및 교육・훈련과정 개발

o 학·연·산·관 전문가 나고야의정서 대응팀 구성・운영

- 나고야의정서 영향평가 분석 및 대응(준수) 매뉴얼 마련

o 나고야의정서 대응 능력 배양 프로그램 개발

- ABS의 이해, 산림분야 대응 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2) 산림 신품종개발 및 유용자원 보급 기반 마련

가) 민간 신품종 육성지원 및 국가 신품종 보급 확대

o 육종가 권리강화 및 지원책 마련

- 육종가 지원을 위한 유인책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o 대학, 법인, 임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실시(연 53회)

o 국유 신품종 보급 및 신품종 유통질서 확립

-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 개발한 국유신품종(연 2회)

※ ('14) 12품종 →('15) 20품종

o 신품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 조사 실시

- 종자업 등록, 신품종 실시, 품종의 생산·판매 신고 등에 대한 조사 및 계도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품종센터 합동 조사

o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13~2017)에 따른 산림분야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행

- 고부가·고품질 산림종자 개발 및 공급 등 산림분야 시행계획 추진

나) 산림유용자원의 안정적 공급 방안 마련

o 대규모 산림유용자원 공급 후보지 선정 기준 마련

- 수종갱신이 필요한 노령화된 밤나무단지가 우선 대상

o 산림유용자원의 채종원, 육묘단지 조성 방안 마련

- 미 활용되는 대규모의 간척지등을 최대한 활용

3) 자생식물의 자원화 방안 마련

o 도시녹화, 훼손지복구 등 잔디 및 이끼의 활용 방안

- (잔디) 신품종 개발을 위한 전국에 분포하는 국산 잔디의 유전자 수집 및 기 개발된 신품종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이끼) 생산자에 대한 종자업 등록 등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 및 시장잠재력 있는 이끼 종을 체계적으로 수집

o 야생화를 활용한 도농교류 등 산촌의 관광자원화

- 산촌마을(319개 리)을 대상 신약, 기능성 소재 테스트베드(Test bed)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o 한지산업 및 죽공예 등과 연계한 닥나무, 대나무 산업화

-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닥나무 조성 방안 마련

- 대나무 용도 개발 등 산업화 방안 마련

라. 추진일정

o 산림생명자원 분양 등 : 연중

o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증명서 교부 : 연중

o 산림분야 신품종 유통조사 실시 : 상반기, 하반기

o 산림유용자원 보급기반 부지 확보 등 : 2015. 5월

o 나고야 의정서 산림분야 전문가 대응팀 구성 : 2015. 5~9월

o 나고야 의정서 대응(준수) 매뉴얼 및 교육과정 개발 : 2015. 10월

o 민간 신품종 육성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현장교육 : 연중

o 직무육성품종 처분 : 상반기, 하반기

o 2016년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수립 : 2015. 12월

o 산림분야 종자산업 육성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행 보고 : 2015. 12월

14.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목 표

◇ 노후화된 목재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유통시설의 확충
◇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 및 목재이용 촉진

가. 정책여건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3.5.24)으로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됨

o 웰빙, 로하스(LOHAS) 부각과 목조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 등으로 목재의 소비는 증가하고 관련 산업 시장은 확대될 전망

o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목질계의 신재생에너지원 수요증가와 세계적인 목재자원보호 정책으로 산업용 원자재의 부족난이 가중

나. 기본방향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정사무 및 제도 정착

o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종합계획('15~'19년)」 연차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지속적인 목재순환의 토대를 마련

o 노후화된 목재이용·가공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시스템의 합리화로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o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 마련 및 목재시장의 품질관리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목재이용 종합계획 시행 및 목재법의 합리적 개정

o 5년 단위 「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종합계획」의 연차 세부과제 시행
- 제재·건조·방부시설의 현대화 개선,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 마련 등
- 시도단위 지역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목재산업 육성기반 마련

o 산업체의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목재법 개정 추진
- 지역간벌재의 일원화 정립, 해외 목재제품 품질검사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o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고시사무 및 신규제도의 기반구축을 완료

- 목재제품 전 품목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마련(15개 목재제품)

  * '15년 고시 계획 : 목재플라스틱복합재·배향성스트랜드보드·난연목재 품질기준 등

- 목재분야의 인증·인정사무 운영기준 등 고시 및 제도 시범 운영

  * 목재제품 명인의 인정, 전통목재제품의 인증,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등

- 목재교육프로그램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사무 통합운영 방안 마련

2) 목재 생산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하고 지역 유통시설을 확충

o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림육성단지 등 목재생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가공·제재시설을 현대화 개선

- 노후화된 건조시설, 제재·가공시설, 방부시설 등의 현대화 개선으로 지역별 목재자원의 종합처리 역량 지원을 강화(시설현대화 30개소)

- 목공창업지원에 기반한 목재전문산업화단지 3년차 조성(전남 장흥)

o 목재집하장 등 유통시설의 고부가가치 목재제품 생산 지원 및 경영 개선 추진

- 목재집하장별 지역 간벌재 중심의 특화수종 집하 및 용도의 차별화

- 우수 집하장 중심의 통폐합 등 수익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방안 마련

- 목재유통센터의 목재제품 생산력 향상을 위한 현대화 시설 보완(790백만원)

o 소규모 영세 산업체의 자금 지원으로 생산·유통의 안정화 유도

- 가공시설 자금 및 원자재 구입자금 등 5개 분야 융자(201억원)

3) 국산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지원

o 국내산 소나무(길이 2.1m)를 활용한 합판생산 시범사업 지원

- 안정적 원료공급을 위한 원목생산단체 협력 및 적정 재장(2.1m) 생산을 유도

o 국산재 전용 제재기, 단판 가공, 내외장재 및 파레트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

- 지역 간벌재를 활용한 제품생산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국산목재의 활용을 촉진

o 생산자·유통자 및 구매자 간의 국산목재 직거래 장터 "우드옥션" 고도화

- 국산재를 직거래할 수 있는 웹기반 유통 시스템 구축(산조중앙회)

o 목구조기술자 양성으로 한옥 등 목조건축분야에 국산목재의 수요를 확대

- 목구조기술자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2개 기관, 48백만원)

o 국산재 활용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 등 정책자료 수집 및 홍보물 발간

- 일본의 지역 간벌재 활용, 목조건축 부재 개발 등 국산재 활용 자료 수집

- 국산 목재제품 및 목조건축물의 우수성 홍보,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물 보급

4) 목재제품 관리체계 강화로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o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 목재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12→15개)

- 국내 유통 목재제품의 품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 지정제도 운영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유도
- 국외에 목재제품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수입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

o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등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품질단속을 강화

- 지방청·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집중단속 실시(분기별)
-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 중심의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50명)
- 지자체 및 지방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활동을 지원(136백만원)

o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을 확대하고 우수 산업체 지원을 강화

- 목재제품 품질인증 확대 : ('14) 80건 → ('15) 100건
- 품질인증 범위 확대 : ('14) 국내 생산제품 → ('15) 국내·외 생산제품
- 우수 목재제품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 : ('14) 16백만원 → ('15) 32백만원

o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신규제도 도입 및 목재생산업 관리체계 정비

- 목재제품의 신기술 지정, 위해제품의 안전성평가 제도 시범 운영
- 「범부처 국가표준체계 개편」에 따른 목재분야 KS표준 이관 및 운영체계 마련
- 목재생산업 등록 전산관리시스템의 재정비 및 창업교육 지원(3개 훈련원 등)

라. 추진일정

o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종합계획 시행 : 연중

o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 : 2015. 2월

o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등 민간 국고보조금 교부 : 2015. 2월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2015. 6월

o 목재집하장 및 유통센터 등 국고보조 사업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 2015. 6월

o 목재생산업 등록을 위한 창업교육 지원 : 2015. 4월, 7월

o 목재제품 품질표시 등 시장 품질단속 : 2015. 5월, 10월

o 산업기능요원 필요인원 및 신규업체 지정 : 2015. 7월

o 목재제품 규격·품질 기준 고시(3품목) : 2015. 11월

o 인증·인정 제도, 목재제품 신기술지정, 안정성평가 등 신규제도 추진 : 연중

15. 목재문화 및 이용 활성화

목 표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저장고로서의 목재이용 증진
◇ 목재문화 체험 기회 다양화 및 목재이용 캠페인 확대

가. 정책여건

o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수확된 목재제품(HWP)이 탄소계정에 포함됨으로써 목재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13.5.24)으로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친환경 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목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목조주택, 교육적 효과 등 목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o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목재문화진흥회 설립('14.3월)

나. 기본방향

o 일반인이 참여하는 목재이용 캠페인을 통하여 목재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목재체험 공간 확대

o 목재가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운영·확대

o 목재이용 증진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선도하고, 국산목재 활성화 사업을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목재문화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목재이용 확대

o 생활 속에서 목재이용 확대를 위한 국민인식 제고
- 목재 사용에 따른 주거환경과 건강, 건축재료, 효능 등 목재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
- I LOVE WOOD 캠페인 행사 참여를 통해 목재의 긍정적 인식 형성

o 목재문화진흥회 중심으로 목재문화를 선도하고 목재이용 촉진
- 출생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나무누리 국민 캠페인' 추진
- 목혼식, 우드캠핑, 나무누리 축제, 목재나눔행사 등 체험중심의 행사 운영
- 목재산업박람회, 목조건축대전 등 산업체 지원행사 강화

o 목재문화지수 개발 시범사업(2년차) 추진 및 지자체 참여 유도
- 1년차 사업 분석 등 개선을 통해 2년차 목재문화지수 시범사업 고도화

2) 다양한 목재체험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o 목공체험 공간 확대를 위한 지자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지원(지자체 주관)
- 신규조성 대상지는 사업설명 및 자문위원 심의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도시형·산촌형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고, 목재체험 공간을 일정기준 이상 의무화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 '15년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41개소(운영 7개소, 조성 중 34개소)

o 목재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일반시민들이 쉽게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목재문화진흥회 주관)
- 민간단체, 대학교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 선정(20개소)
- 목재체험교실, 목공지도자양성 교실, 초·중등 교사 목공체험 등 추진
  * 목재체험교실 사업자는 전년도 운영실적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추진

o 경진대회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 공유(산림청 주관)
- 시설 확대 위주에서 이용객 중심의 맞춤형 목재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목재문화 시설의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운영의 효율성 증진
- 목공예·목재 체험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3) 목재가공 전문인력 양성과 저변확대를 위한 목재관련 자격제도 활성화

o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목구조기술자격 강화
- 목구조 기술자의 전문성 향상과 고용의 질 개선, 고용 안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운영(2개소)

o 목공기술 습득이 취미에서 소득까지 이어지는 산업으로 양성
-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전문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전문교육기관을 지정
- 창업 지원 및 안정적인 일자리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o 간벌 소경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장소에 적용하기 위한 “국산목재 활용 촉진 사업” 추진

- 5개소(경기·강원·전북·전남), 총사업비 1,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o 공공분야에서 목재소비를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

- 산림토목(임도·사방), 공공 시설물, 공원·조경 사업 등 국산목재 사용 장려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국산 목재 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전파)

*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01.12월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13.5월부터)

라. 추진일정

o 목재문화체험장 신규 조성 자문회의 : 2015. 2~3월

o '15년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추진 : 2015. 3월~12월

o 목재이용 캠페인(4년차) 사업수행자 선정 : 2015. 2~4월

o 목재문화지수 개발 시범사업 추진 : 2015. 2~12월

o “I LOVE WOOD” 캠페인 추진 : 2015. 5월~12월

o 2015년 나무누리 축제 개최 : 2015. 8월

o 목혼식 페스티벌 개최 : 2015. 10월

o 목재산업박람회 추진계획 점검 및 행사개최 : 2015. 6~12월

o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추진성과 분석·평가 : 2015. 12월

o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보고 : 2015. 12월

o 나무은행 운영 결과 보고 : 2015. 7월, 12월

16. 목재생산 기반 구축 및 국산재 공급 확대

목 표

◇ 국산목재 생산량 확대 및 목재 이용률 제고

o 목재생산 균형지수[12] : ('14) 0.55 → ('15) 0.60

o 목재 이용률(공급량/벌채량) 제고 : ('14) 54% → ('15) 55%

가. 정책여건

o 목재자원 보유국의 자원보호 정책에 따른 수출 규제로 원목 수입 여건이 악화

o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시행에 따른 목질계 에너지 수요 급증 및 국민들의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 증가로 목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o 「목재법」 제정으로 목재이용 활성화 및 목재산업 육성 기반 마련

나. 기본방향

o 국산목재 공급 관리로 안정적인 목재 수급 및 산업 원자재 부족난 해소

o 시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수요 예측과 공급으로 안정적 수급 도모

o 목재생산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목재생산 확대 및 벌채사업 품질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통한 산림자원 가치 제고

o 국산재 고부가가치 시장 개발로 산주 소득 증대에 기여

- 침엽수는 제재용 및 합판용, 참나무류는 표고자목용 등 고부가가치 용도로 공급 추진

o 불량림 수종갱신 활성화를 통한 산림자원 가치 제고 및 안정적인 산업원료 공급

-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바탕으로 생장이 불량한 임지를 경제림으로 갱신 유도
- 발생 임목은 수요가 많은 펄프·보드용, 바이오매스용 등 원료재로 공급

o 목재파쇄기 지원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자원으로 활용

-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발생지에 대해서는 훈증·소각을 지양하고, 파쇄 처리하여 인근 목재펠릿 제조시설, 열병합 발전소 등에 원료로 공급

12) 연간 개벌(수확벌채+수종갱신) 면적 / 연간 적정 개벌 면적(목재생산림 면적 2,160,967ha / 평균벌기령 50년)

o 벌채지 목재 수집량 증대를 통한 목재자원 활용도 제고
- 숲가꾸기, 피해목 벌채지 수집률 제고를 위해 전목·전간 생산 시스템 확대 적용
- 산지개발지 발생 임목은 폐기물 처리를 지양하고 최대한 자원으로 활용
-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지원을 통해 산주 소득 확보

2) 시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수요 예측으로 안정적인 수급 도모

o 2014년 목재 이용량, 국내외 경제전망 등을 고려한 '2015년 목재수급계획' 수립
- 기관별·용도별 목재수급계획 및 하절기 산업용재 공급계획 수립 등

o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유도 및 정보제공을 위한 '원목 시장가격 동향 조사'
- 분기별로 지역별·수종별 원목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

o 목재산업의 체계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목재이용 실태조사' 추진
- 12개 업종별 원목 수급 현황, 제품 생산량 및 판매량 등 조사

o 국제 목재산업 동향 파악을 위한 '해외 목재산업 정보수집사업' 추진
- 매월 주요 목재산업국(10개국)의 수출입 동향 및 임업정책 동향 등 조사

3) 목재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벌채사업 품질 제고

o 임목수확 설계·감리 활성화를 통한 계획적인 벌채사업 추진
- 3년간(2012~2014년)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설계·감리비, 기계화 작업로 설치 단비를 현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
- 국유림은 대면적 벌채지 설계·감리를 통해 벌채사업 담당자의 업무경감 도모
- 사유림은 산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필요 시 설계를 제외하고, 기계화 작업로 설치 및 감리만 적용

o 친환경 벌채기준 정비를 통한 벌채사업 품질 제고
- 벌채 가능 최대 면적을 현행 50ha에서 하향 조정 검토
- 인공림과 천연림에 대한 차별화된 선정기준 마련

o 임목의 정확한 자산가치 평가 및 적용을 위한 수간재적표 정비
- 소나무, 낙엽송 등 주요 수종에 대한 지방별 수간재적표를 시범 적용
- 기존 재적표와 차이가 큰 삼나무 수간재적표를 갱신·활용

o 국산 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 확대를 위한「원목 규격」개정
- 관행적인 조재방식을 지양하고 운반비용 절감을 통한 매각가격 상승 및 목재산업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원목 조재를 유도
* 원목 품등 중 원료재급의 재장을 '1.8m 이상'에서 '2.1m 이상'으로 변경

o 벌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실시
- 벌채 관련 홍보 동영상 및 브로슈어 제작, 홈페이지 및 언론 등에 벌채 필요성 홍보 등
- 벌채지 모니터링 실시로 벌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식시킬 과학적 근거 마련

o 지방청 및 지자체 벌채담당 공무원 대상 정기교육 실시(산림교육원)
- 벌채 관련 법령, 반복민원 처리 매뉴얼, 벌채지 지도·관리 등

4) 국유림 목재생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o 국유림관리소 목재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입목처분 위탁시행 추진
- 입목처분 대상지 조사 및 자재조사 등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현장설명회, 현장확인 등 업무는 벌채 담당자가 처리
- 지방청별 입목처분 위탁시행 수요를 받아 산림청에서 일괄 계약 체결
* 공정성 및 기술력을 갖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센터에 위탁 추진

o 우드그랩 품셈 반영을 통한 집재비용 현실화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경사도, 임목밀도 등에 따라 우드그랩 허용 차등 적용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우드그랩 품셈 반영
- 우드그랩 집재에 대해서는 하향된 품셈을 적용하여 예산 절감 도모
* 벌도 후 임도변 집적비용 : (HAM-200) 41,601원/㎥ → (우드그랩) 31,885원/㎥

o 원활한 원료재급 원목 매각을 위한 중량단위 매각 시범 추진
- 벌채 대상지가 집약적인 국유림관리소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3개소)
- 이동식 계근대를 활용하여 반출 시 중량 측정 및 사후 정산

o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국가 목재자원 활용도 제고
- 소량으로 분산된 대경재 및 특수용재를 수집·저장하여 고가로 매각
- 매각이 어려운 저장센터 보유목을 활용한 목구조물 시설 시범사업 추진
* 수요 조사를 통해 목구조물 희망 지방산림청에 시설비 1억 5천만원 지원

5) 수목굴취 활성화를 통한 산주소득 및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o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경미한 사항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굴취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정 적용
- 1,000㎡이내 대나무, 임도·방화선의 지장목, 농경지·주택지 피해목 등
- 수목굴취지역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관리 철저

o 나무은행 활성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녹지조성 기여
-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 개선계획(국정협업 과제)"에 따라 조경 가치가 있는 수목은 우선 선발하여 나무은행 포지로 이식(전국 36개소 운영)
- 나무은행 우수사례 및 미담사례 적극 발굴을 통한 나무은행제도 확산

라. 추진일정

o「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개정 : 2014. 12월

o 임목수확 설계·감리 사업 지침 개정 : 2015. 1월

o 2015년 목재수급 계획 수립 : 2015. 2월

o 목재이용실태조사 및 원목 시장가격 조사 위탁사업 발주 : 2015. 2월

o 벌채 담당 공무원 정기 교육 : 2015. 2월

o 입목처분 위탁시행 사업 발주 : 2015. 3월

o 2015년 해외 주요 목재산업국 목재산업 동향 정보 제공 : 2015. 3~12월

o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저장목 활용사업 추진 : 2015. 4~12월

o 입목벌채허가(신고) 실적 및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

o「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친환경 벌채기준) 개정 : 2015. 5월

o「원목 규격」고시 개정 : 2015. 6월

o 2015년 긴급벌채 지원사업 추진 : 2015. 8~12월

17. 친환경 산림바이오매스 수급 기반 안정화

목 표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국내 생산량 확대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소비시장 안정화 및 품질 향상

가. 정책여건

o RPS 제도 도입('12년) 이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요 급증에 대비 국내 생산역량 확대 및 안정적인 원료 공급 필요

o 2035년까지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11% 보급을 골자로 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14.1)하여 추진 중

나. 기본방향

o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목재펠릿 공급체계 마련

o 주택용·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의 지속적 보급으로 국산펠릿 수요기반 확대

o 전국적 유통망 구축 및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

o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바이오매스 생산

다. 세부추진계획

1) 제조시설 효율개선 등을 통한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 확대

o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추진

- 생산비 절감 및 가동시간 향상을 통한 가동율 62% 달성
  * 제조시설 가동율 : ('13) 53% → ('14 계획) 60% → ('15 목표) 62%
- 생산규모 확대, 자동화 시설,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생산량 확대
- '15년 사업계획 : 3개소, 500백만원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2억원, 자부담 3억원)

o 목재펠릿 비축제도 활성화

- 산림조합, 제조업체, 소비자가 하절기(6~9월)에 비축하여 동절기 소비 급증에 대비

* 목재펠릿 비축 계획량 : ('14) 19천톤 → ('15) 22천톤

- 소비자 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위한 제조업체·지역산림조합과의 간담회 마련

2) 목재펠릿 보일러의 지속적 보급을 통한 수요기반 안정화

o 주택용 및 주민편의·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구 분	주 택 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
보급 대상	- 농산어촌(읍·면)거주자 - 읍·면이외의 지역으로 취약계층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보일러 용량	20,000㎉/hr 내외 * 산림청에 등록된 제조업체 제품만 가능	20,000㎉/hr 내외 * 산림청에 등록된 제조업체 제품만 가능
보급량/ 예산	2,000대 / 2,400백만원	100대 / 200백만원
기 준 단 가	4,000천원	4,000천원
지원율(%) (국고/지방비/자부담)	30/40/30	50/50/-

- (지원대상) 기 설치된 보일러를 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 시 지원

*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금지,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경우는 지원 금지, 단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① 기존에 설치했던 보일러의 고장으로 폐기 처분하고 재설치 하는 경우, ② 한 마을에서 5가구 이상 집단으로 신청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 신청 순

* 기타 사항은「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참조

o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체계 개선 및 민간시장 활성화 유도

-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시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개정

* 대기업 참여 배제 및 중소기업 우선 지원, 임업관련 업체 지원 시 우선순위 부여

- 산업용 보일러 보급기준의 국고지원 기준 하향 조정

* 지원기준 : 국비 30%, 자부담 70%

- 민간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자력 설치 유도
  * 기술수준 및 품질 정착 시(제조업체의 기술개발 비용 회수 시까지 한시적 지원)까지 보급
- '15년 사업계획 : 10대, 18억원(국고지원 한도액 2억원)
- 기준단가

구 분	기준단가	
스팀보일러	스팀 2톤까지	톤당 1.5억원
	스팀 2톤초과	톤당 1억원 추가
열풍기	㎉/h당 125원	
온수보일러	㎉/h당 200원	

-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시 국고지원율에 대한 금액 환수

3) 목재펠릿 전국적 유통망 구축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

o 동절기 목재펠릿 수급대응팀 구성·운영하여 펠릿 수급 동향 모니터링

o 판매대리점 확대 및 지역산림조합의 유통 참여 증진
- 업체별 지정 판매대리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매 접근성 향상
- 판매대리점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동절기)을 실시하여 시장 참여 유도

o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사업 추진
- 지역산림조합에 유통시설비(운반장비, 보관창고)를 지원하여 전문대리점으로 활용
- '15년 사업계획 : 10개소, 200백만원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o 국내 생산·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에 대한 주기적 품질검사 및 유통 단속 강화
-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규격·품질표시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시·도·지방청별 연 2회 이상)
  * 유통단속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o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 도입 추진
- 3톤/hr 이하의 소형 보일러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보일러 제조업체의 부담 완화 및 품질향상 도모 (*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필요)
- 3톤/hr 이상의 보일러에 대하여는 기존 준공검사 기준 적용

o 목재펠릿 사후관리 모니터링 운영

- 국고보조 목재펠릿 보일러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o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중간 평가 및 기술 심포지엄 개최

5)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조성 및 생산

o '15년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조성

- '15 사업계획 : 기반조성 70ha, 조림 70ha, 채수포 및 묘목생산시설 4ha

  * 채수포 및 묘목생산시설 위탁 관리 : 서부지방청

- 사 업 비 : 1,726백만원(기반조성 880백만원, 조성 및 관리 846백만원)

- 단　　가 : 기반조성 11.5백만원/ha, 식재 9백만원/ha

o 새만금 목재에너지림 조성 성과분석을 토대로 중간평가 및 세부실천계획 수립

o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및 활용

- '12년 시범조림지 내 식재된 이태리포플러 수확(2ha)

- 수확 장비/예산(국비) : 바이오매스 전용 하베스트(속성수용) / 4억원

  * 수확장비는 국립산림과학원 생산기술연구소와 협의 후 구입

- 수확 산물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용(목재칩, 목재펠릿 등)으로 활용

  * 목재펠릿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국립산림과학원)

o 바이오매스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삽목묘 대절 시범 실시

- 대절시기 : 12월 ~ 다음해 2월 말

- 대절방법 : 지표부에서 5~10㎝ 높이에서 단간 처리

6)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조성

o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2016년(4년간)

- 대 상 지 : 고산자연휴양림 및 인근 마을

- 총사업비 : 95억원(국비 48.7억원, 지방비 46.3억원) * '13년은 설계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 산림청, 전라북도(완주군)

o 사업 내용

- 산림바이오매스 전시·홍보·체험관 조성
- 열병합발전시설(난방·온수·전기공급) 및 민간시설 열공급, 우드칩 가공시설
-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2차 년도 사업 추진
- 추진일정 및 진행사항 점검을 강화하여 예산 이월 방지

7)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대책 마련

o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수급 및 발전방안 마련

- (적용) 4개년, (내용) 목재펠릿 제조시설 확충(내륙권 4개소, 항만권 4개소)

o REC[13] 가중치, KVER[14], RHO[15] 등 변화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동향

o 목재펠릿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해외시장 동향 반영

라. 추진일정

o 2015년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대상업체 선정 : 2015. 1월

o 목재펠릿 제조업체·산림조합 간담회 : 2015. 1월

o 목재에너지림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 2015. 1~2월

o 목재에너지림 조성 담당자 워크숍 : 2015. 2월

o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중간 평가 및 기술 심포지엄 개최 : 2015. 2월

o 목재에너지림 조성 : 2015. 2~6월, 10~11월

o 목재펠릿 비축사업 추진 : 2014. 6~9월

o 2016년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 공모 : 2015. 11월

o 2016년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공모 : 2015. 12월

---

13)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

14) "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란 국내 자발적인 온실감축사업으로, 중소기업장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따른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감축된 이산화탄소 성과를 정부가 매입함으로써 중소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

15) "RHO(Renewable Heat Obligation)"란 기준면적 이상의 신축건물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 2016년부터 적용

18. 임업기계화 촉진

목 표

◇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의 개발·보급으로 임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생산성 증대

o 임업기계장비 보급 : 99대(지방청 34, 지자체 47, 산조중앙회 18)

가. 정책여건

o 본격적인 목재생산 시기가 도래되고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이용은 점차 확대될 전망

o 대경재 생산량이 증가되는 등 벌채목 대경화에 따른 고성능 장비 보급 필요

o 농촌 인력의 감소로 임업노동력의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임업생산성 저하

나. 기본방향

o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개발

o 권역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사후관리 철저

o 임업기계장비 실연회 및 기계화 사업 확대 추진으로 임업기계장비 활성화

다. 추진계획

1)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장비 개발

o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개발로 임업기계화 체제 확립

- 고가인 임업기계장비는 산림과학원에서 개발·시범사업 추진 및 현장 실연 후 장비 보급

※ 2014년 국내 최초 도입·개량된 “다목적 목재 파쇄기”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남부지방산림청과 MOU 체결 후 재선충 피해임지 시범사업 추진

- 단순 개조 및 저가의 장비 개발은 “임업기계장비 제작비”(5개 지방청별 50백만원)를 활용하여 추진

※ 집행절차

아이디어 공모	⇒	평가	⇒	집행	⇒	특허등록	⇒	실연 및 전시
지방청		심의 위원회 구성		지방청		제작된 기계는 특허등록		자체 실연 및 전시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사후관리

o 국유림 및 지자체는 벌채목 대경화에 따른 적합한 임업기계 집중 보급
- 중·소경목 집재장비에서 고성능 장비로 보급기종 전환

o 임업기계장비는 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구입 기종 선정(1월중)
- 기계장비는 지역실정, 사업량, 장비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선정

o 임업기계장비는 상반기 중 구입완료 될 수 있도록 조달계약 등 조기발주
- 자체개발 장비는 제작기간, 성능검증 등을 고려하여 납품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생산업체와 사전에 조율

o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장비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기관별 보유 장비에 대하여는 일제 점검 후 내용연수 경과 장비 등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불용처리

3) 임업기계장비 실연회 및 기계화 시범사업 확대 추진

o 지방청은 임업기계화 시범단지 및 숲가꾸기 모델 숲 등에서 임업기계장비 실연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기계화 촉진
- 임업기계장비 전시 실연 통한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작업시스템 습득
  ※ 사업기간 : 2015년～계속, 실행주체 : 지방청(시범사업 추진 후 사유림 확대)

o 지자체별 기계화 산물수집 사업 확대 추진
- 숲가꾸기 사업량, 임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도별 5개단씩 기계화 영림단을 양성하여 시범운영(특・광역시, 제주도 제외)

o 임업기능인경진대회는 임업기능인의 기술발전 및 사기진작, 임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실연회와 연계하여 추진
- 산지에서 임목생산 장비 등을 활용한 기능경연이 될 수 있도록 계획

4)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o 임업기계지원센터의 기계장비는 사용자 니즈(needs, 임대 및 대여·교육훈련·상설교육장 등)에 적합한 임업기계 집중 보급

- 장비구입 시 원목생산업자 및 산림사업법인 등 주 사용주체 의견수렴

o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로 지역의 기계화 중심점으로 육성

- 장비운영 전문성 확보 및 임업기계 전담인력 양성
-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 및 일반산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산림지, 전문지, 등) 실시

5) 영세율 적용 기계장비 구입 및 면세유 공급 등 임업인 지원 확대

o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o「산림사업 종합자금」의 홍보 강화로 임업기계화 촉진

< 산림사업 종합자금 >

- 지원자격 :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지원조건
  - · 임업기계장비 구입 : 금리 3%, 융자비율 70%, 융자한도 60백만원
  - · 임업기계장비 생산 : 금리 4%, 융자비율 70%, 융자한도 200백만원
  - ※ 2015년도 종합자금 신청 : 2015. 1. 20일까지 지역 산림조합
- 자금용도
  - · 임업기계장비 구입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 임업기계장비 생산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장비 생산에 필요한 자금
  - ※「생산」관련 대상 장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에서 정한 임업기계장비(15종)

o 산림조합중앙회는 면세유류의 공정한 공급 관리를 위해 전년도 기종별 면세유 사용량을 종합 분석하여 산주 및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

o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연 2회 이상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면세유류가 타용도 등으로 부정사용 되지 않도록 지속적 지도·감독 철저

라. 추진일정

o 임업기계장비 구입 : 2015. 6월까지

o 임업기계장비 운영실태 점검 : 상반기

o 임업기계장비 자체 실연회 및 토론회 : 수시

o 임업기계장비 구입상황 보고(지방청, 지자체)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임목생산 실적보고(지방청)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보유 및 운영현황 보고(지방청, 지자체, 중앙회) : 2015. 12. 31

o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고(지자체) : 반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2014년도 임업용 면세유류 한도량 신청(중앙회) : 2015. 1. 18

o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 보고(중앙회) : 익월 15일까지

o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중앙회)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면세유류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 보고(중앙회) : 2015. 12. 31일까지

19. 전문 산림기술자 양성

목 표
◇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임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림기술자 양성

가. 정책여건

o 산림사업법인, 기술자 및 기능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부재

o 원목생산과 목재산업 분야의 노동력 감소로 생산성 약화

o 대경재 생산에 따른 숙달된 임업전문 기능인력 부족

나. 기본방향

o 산림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강화

o 산림사업의 확대 및 기계화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 및 기능인영림단 조직·운영의 활성화 도모

o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 및 산림기술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화 추진

o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의 투명한 관리

-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의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으로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투명한 관리

o 체계적인 산림기술자 육성을 통한 산림기술인 자질 향상 및 실질적인 취업기회 확대,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술자격 통합 관리로 부실 산림사업 실행 방지 필요

- 「산림기술진흥법」 제정 또는 「산림자원법」 개정 추진
  · (용역업 등록) 용역업자 의무 및 등록취소 등 기술용역업 등록
  · (자격관리)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자격증 발급, 자격취소 등
  · (실적관리 등) 산림사업 실적 및 부실측정, 안전관리 강화
  · (법정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및 공제조합 설립

2) 기능인영림단 조직 및 운영

o 국유림·민유림 기능인 영림단 운영
- 영림단원의 안정적인 소득지원 방안 적극 추진
- 산림사업은 기능인영림단을 적극 활용하되, 기계화영림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계화 촉진을 유도
- 소득이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사업물량 책정

o 기계화 영림단 운영
- 현재의 '기능인 영림단'을 '기계화 영림단'으로 단계적 전환 육성
- (국유림) 기술축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점진적 임목생산 사업의 범위 확대 등 차별화 지원
- (민유림) 기계화 시범사업 시·군과 연계하여 도별 1개단을 양성
  ※ ('10) 8 → ('11) 16 → ('13) 32 → ('15) 48개 시·군

3) 임업기능인 교육

o 기능인영림단·기계화영림단·윈치시스템기계수 과정 등 32개 교육과정 추진

o 현장위주의 체험식 임업전문 교육훈련 실시
- 이론교육보다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 및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현장 교육 강화

4)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o 산림분야 인력양성 기관 확대로 현장 전문인력 양성
-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청주농고 산림환경자원학과」, 300백만원/년

o 임업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임업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산학겸임교원" 또는 "외부강사" 등으로 위촉하여 최신 현장기술 교육 지원

o (산림정책과) 산림특성화고 운영성과 중간평가 및 육성·지원계획 수립

라. 추진일정

o ’15년도 임업기능인훈련 교육훈련계획 보고 : 2014. 12. 31.

o 산림사업 실행 주체별 산림사업 추진실적 보고 : 2015. 2. 20.

o 기능인영림단 운영실태 점검 : 상반기

o 임업훈련원 운영실태 점검 : 하반기

o 임업훈련원 교육실적 보고(반기보) : 반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15년도 영림단(국・민유림) 운영실적 보고(연보) : 2015. 12. 31.

20.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 표

◇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로 산림사업의 재해율 최소화

가. 정책여건

o 산림사업은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므로 다른 업종의 작업보다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광업, 건설업, 임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함

o '13년 산림사업 재해율 분석결과 전체 업종 산업재해율 평균(0.59%)보다 4.5배, 건설업 등에 비하여 약 3배 더 높은 추세임

- 광업 7.91% > 임업 2.64% > 건설업 0.92% > 제조업 0.78%

o 산림사업 재해율 증가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림 사업 추진 시 산재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09) 6.2% → ('10) 6.6% → ('11) 6.5% → ('12) 7.2% → ('13) 8.0% → ('14) 8.7%

나. 기본방향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관리제 추진

- 산림사업 사업시행 기관별로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안전사고 예방목표의식을 높이고 산림사업 재해율 저감

※ '13년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표관리 재해율 2.1% 이하 설정

o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협력체계 강화

- 산업안전전문기관과의 실질적 공동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협의회 활성화
- 산림사업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행

o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현장에서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

- 안전사고 다발기관에 대한 산업안전문기관과의 합동 특별 점검으로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
- 사업 착수와 동시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현장 확인 지도·감독 강화

o 산림사업 재해 통계자료 구축 및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보급

- 기관별 재해발생현황 매월 분석 및 취약사업장 집중 관리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사업 안전관리 예방 목표관리제 설정

o 기관별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치를 설정함으로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 의식을 높이고 산림사업 재해율을 낮추는 계기 마련

o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 설정
- 목표치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사업 상시인원 대비 재해자 2.1% 미만
- 기관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지표 제시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유공 표창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확대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사고 활동으로 산림사업의 재해자 및 재해율을 최소화한 공적이 있는 자 대상
  · 훈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점), 산림청장(3점)

2)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 및 안전사고 교육 강화

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 협약사항에 대한 실질적 공동사업 추진
- 산림사업분야 안전사고 예방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 공동 실행
- 산림분야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합동 점검 등 공동 실시

o 원목생산업 및 산림사업법인 참여자의 안전교육 강화
- 원목생산업 및 산림사업법인 등 안전사각 지대인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140백만원, 900명/년)

o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목 재편 및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방법으로 내용을 개편
- 응급처치 위주의 교재내용을 산림사업별 안전작업 요령으로 재편

3)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

가) 산림사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o 사업시행자는 위험한 산림사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보호구 의무착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제32조

o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는 참여제한 조치 등 행정적 제재 조치
- 연속 3회 이상 적발된 근로자는 산림사업 퇴출 조치 시행

나) 작업장 5대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수칙 낭독

①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②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③ 안전작업 요령을 숙지한다. ④ 산림작업 시 작업에만 집중한다. ⑤ 작업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o 기계톱 등 위험장비 사용시 안전한 사용법 반복 교육 실시

o 작업현장에 안전수칙, 안전교육일지 등을 비치 및 기록 관리

다)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 강화 및 사고 유형별 예방대책 추진

o 작업 착수 전 작업반장은 반원의 안전장구 착용 및 건강유무 확인

o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는 작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일지에 기록·관리

o 사망사고 유형별 및 산림사업별 예방대책 마련
- (넘어짐) 5년간 임업 사망재해의 32% 점유
- (날아와 맞음) 5년간 임업 사망재해의 11% 점유
- (떨어짐) 5년간 임업 사망재해의 9% 점유

4)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및 산림사업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보급

o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은 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
- 재해다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조사 분석
- 중대재해 발생지 등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안전예방관리 실태를 지도・점검 후 행정조치

o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휴대용 수첩, 리플렛, 교육용 PPT 등 교육・홍보자료 개발

라. 추진일정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 최초 사업 발대식 개최 시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
- 현장 예방교육 : 매일, 정기 안전교육 : 매월 1회 이상

o 기관별 산림사업 재해 통계자료 구축 : 2015. 3. 31까지

o 안전사고 다발기관 및 재해발생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 상・하반기

21.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목 표

◇ 목재생산과 임업기계 활성화를 위한 임도시설과 기존 임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재해안전성 강화

o 사업량(km) : 신설 808.5(간선 480, 작업 328.5), 구조개량 306, 보수 4,324

o 사업비(백만원) : 187,974(국비 148,664, 지방비 26,207, 자부담 13,103)

가. 정책여건

o 인공조림지 성림화 등 본격적 목재생산에 대비한 임도 필요성 증가

o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 요구

o 임도를 이용한 여가·휴양·레포츠 등 다양한 기능의 국민적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임업기계화 목재생산 확대를 고려한「임도설치 5개년 계획」수립

o 임도신설은 경제림육성단지에 집중하여 산림사업 및 임도활용성 증진

o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에 안전한 견고한 임도 설치

o 임도피해예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강화

o 휴양·여가·산악레포츠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병행 활용

다. 세부추진계획

1) 제4차 임도설치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강화

o 임업기계화를 통한 본격적 목재생산 확대, 농산촌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제4차 임도설치계획('16～'20) 수립

- 대면적 생산임지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유림 연계성 강화, 산림휴양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고려한 노망 계획

- 일정 : 관계자교육(2월) → 설치계획 작성 및 수립(7월) → 제출(8월)
  ※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칙 제5조 제4항

o 임도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 「임도시설 재해예방 대응요령」,「임도피해 예방·대응 행동매뉴얼」등 관련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 대응 및 조치
- 임도유역 민가, 주요시설물 등에 대한 DB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정비

o 임도품셈개발 연구용역 계속 추진으로 안전성 강화 기반 마련
- '14년 연구성과로 마련한 표준품셈(안) 및 표준시방서(안)의 현장적용·개선
- 공종조사 완료, 품셈(안), 표준시방서(안) 검토 시 적극 참여

o 임도유지관리를 위한「스마트 시스템」도입·운영
- GPS를 이용한 임도 보수·관리 장소 파악 및 임도망도 정비
- 임도 관리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으로 활용성 및 안전성 강화

2) 임도설계·시공 시 다른 시책과 시너지 효과 제고

o 운재로를 활용한 저비용 임도 확충
- 임도화 가능 노선은 구조개량 후 임도 전환
- 운재로 설치 시 임도화를 고려하여 가능한 등고선 방향으로 노선 배치
  ※ 벌채 예정지는 임도를 우선 설치하고, 벌채 및 운재로 계획

o 임도신설·구조개량 사업 추진 시 국산목재 적극 활용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절·성토면 안정구조물 등 설계 반영
- 안내입간판, 이정표(국가지점번호) 등 설치시 의무적으로 국산목재 활용

o 목재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계화 작업공간 설치
- 목재생산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계화 작업공간 설치 모델 제시
- 목재운송 최적화를 위한 집재 공간 및 운송체계를 고려한 구조개량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14년 임도시설 워크숍 발표자료), 시공사례 활용

o 임도시공 현장관리 역량강화 및 중앙기술자문단 운영
- 공사감독관 현장관리 및 업무추진 매뉴얼 마련·보급
- 임도설계 및 시설기준 등 제도정비, 대학교수 등 현장자문단 운영

3) 임도신설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간선임도		작업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808.5	118,336	480	83,156	328.5	35,180
민유임도	562.2	72,720	336	51,348	226.2	21,372
국유임도	246.3	45,616	144	31,808	102.3	13,808

가) 노선선정

o 간선임도는 제3차 “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예정노선 중 경제림육성단지의 경영계획이 수립되었고 타당성 평가 결과 적합한 개소에 설치

- 지역(산)별로 국·사유림간 및 자치단체간의 연계성과 기존도로(임도로 활용가능한 산림내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활용성이 높게 선정
-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산림에 대해 우선적으로 임도노선을 선정하고 노선 완결하여 임도 이용도 증진('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작업임도는 인공조림지, 경제림육성단지 등 목재생산이 집중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

- 작업임도 노선은 반출계통을 같이하는 유역단위로 선정(가급적 3km 이내)
- 노선은 등고선 방향으로 산복임도로 선정하고, 계곡·능선임도는 지양
- 기존의 임도, 또는 다른 도로에 연결하여 시범림·특수림 등 산림관리, 재해예방, 테마임도 조성 등을 위한 순환임도 조성이 필요한 지역

※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임업기계 수집이 가능한 작업장(약300㎡내외) 설치

o 임도신설 대상지를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용산지 위주로 사업추진 확대

- 경제림육성단지 내 기반시설 확대추진 계획

구 분	경제림단지		임도시설 확대비율(%)				비 고
	개소	면적(천ha)	2012	2013	2014	2015	
민유임도	345	2,339	47	50	55	60	* '16년 이후는 실행현황 검토 후 “임도설치계획('16~'20)”에 반영하여 추진
국유임도	105	580	85	85	85	85	

※ 각 도 및 지방산림청 별 총괄 사업량을 기준으로 확대 추진

나) 설계 및 사업 준비

o 사전설계비를 이용 설계한 후 4월말까지 시공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개소별 추진 공정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

- “임도사업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임도신설 실시설계 비용 산출 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선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 3항”(실시설계 요율의 1.3배 적용)을 준수하여 실행
- 노선 설계시 지형여건과 산림자원량을 고려한 기계화 작업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설계실명제 준수

o 임도신설은 예산물량을 감안하여 현지 지형여건에 부합되게 설계·시공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개설(기준단비 150% 초과지 유보)

o 민유임도 사업의 경우 산주 부담금(사업비의 10%)은 예산부족에 따른 부실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예산편성 및 지원

- 임도시설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산주부담금은 지방비로 전환 노력

o ’16년에 시설할 신설예정 임도의 타당성 평가는 ’15. 10월말까지 완료하고, 타당성평가시 사유림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와 병행 실시

- 실시설계 완료 후 산주부동의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동의 완료 후 설계 등 사업추진

※ 산주 동의서는 임도관리대장과 같이 영구문서로 관리

다) 사업추진

o 임도시설기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견실하고 활용도 높게 시공

- 임도노선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종단기울기와 최소 곡선반지름은 규정을 준수하고, 구조물 등은 야생동물 이동 등 환경성을 고려하여 시공
- 임도신설 사업비를 구조개량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없도록 목적별 계획대로 집행하되, 계약잔액을 이용하여 추가시설 할 것
- 민유임도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재해위험시설(소형사방댐, 골막이 등) 보완 및 유지관리 등 임도사업에 집행(’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재해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성토사면 층따기 기준에 따라 설계·시공

< 성토사면 층따기 기준 >

1. 목적

산지사면의 표토층 부분을 제거하고 계단상으로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와 원지반과의 접합을 도모하여 지반 변형과 활동을 방지

2. 대상지

가. 산지사면의 경사가 1:1.5보다 급하고, 사면높이가 5m이상으로 축조되는 성토사면

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철도 등의 주요시설과 민가, 농경지 등이 위치하여 임도 성토사면이 붕괴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다. 가・나 대상지 중 성토사면의 붕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옹벽 등 구조물 설치 또는 운반 사토할 경우 생략 가능. 다만, 붕괴 위험 여부는 토질 또는 산사태 분야 전문가의 판단에 따름

3. 실행방법

가. 기초지반의 종류에 따른 층따기의 표준치수는 다음과 같음

<기초지반 종류에 따른 층따기의 표준치수>

구 분	기초지반이 토사인 경우	기초지반이 암반층인 경우
최소 높이	50cm이상	40cm 이상
폭	1 ~ 3m	

※ 현지 여건에 맞게 높이와 폭 조정

나. 층따기 면은 시공 중 배수를 위하여 3~5% 경사도를 유지

다. 기초지반에 용출수가 있는 경우에는 원지반에 접한 흙쌓기 부분에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배수층을 설치

라. 비탈 끝에는 흙쌓기가 붕괴되지 않도록 가급적 사면안정구조물 설치

마. 기초지반과 성토체가 접하는 경계부는 기초지반과 성토체의 밀착을 도모하고 균일한 시공을 위하여 암버럭 쌓기는 지양

바. 층따기 부는 노상과 같은 재료로 높이 20~30cm층으로 되메우면서 충분하게 다짐 실시

o 임도의 시공품질 향상과 재해안전성 강화를 위해 감리 철저
-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은 반드시 감리 추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o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및 대국민 위치안내서비스 제공 등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점 번호 적극 설치
- 임도거리표주(석)와 병행 설치하여 효율성 제고 및 설치비 절감
- 세부사항은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 5933(13.10.29)「국가지점번호 제도 추진계획」등 관련 계획 참조

4) 구조개량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306	180	126
사업비	16,786	8,392	8,394

o 기존임도의 구조개량은 노선완결 원칙으로 시공하되, 집중호우 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 실행
- 임도 피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지, 일반주민 이용률이 높은 임도
- 전간재 반출이 어려운 구간은 선형개량, 작업공간 확보 등 병행 추진
- 기존 구조개량을 실시하였거나, 최근 시설한 임도(하자보수기간 만료)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시 추가 실시(필요성 및 사업실행 근거 명문화)

o 산림 내 타용도 도로를 임도로 전환한 노선 중 산림사업이 시급한 지역, 재해발행 위험이 높은 지역,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 등
- 사설임도도 국·공설임도로 전환 필요한 지역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 편입 추진
- 편입된 사설임도 및 타용도 도로는 구조개량 사업을 통해 재해안전성 강화

o 각종 구조물 시공은 필요성・시급성을 고려하여 시공하되, 시공편의 중심으로 필요성이 낮은 공종 및 과다시공 지양
- 임도하단부에 주택 등 피해예방을 위한 구간은 재해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타 지역은 산림사업과 임업기계화에 필요한 공종위주 검토
- 구조개량 사업시 노면포장위주의 시설지양('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휴양림주변, 도시근교, 특히 경치가 좋은 노선 등 일반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임도는 기능 다양화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 만족도 제고
- 테마임도는 임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하되,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
- 특정 단체가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 유도

o 산림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의 사전 통보 및 임도주변의 산원주민 의견 반영 등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조치 필요
- 임도의 타당성평가시 지역주민의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 청취
- 다수민원 및 유사민원 반복 등으로 임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선은 변경 실시

5) 보수 및 유지관리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4,324	2,124	2,200
사업비	11,934	9,385	2,549

o 보수사업 대상지는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임도이며, 해빙과 동시에 사업 착수하여 1차 보수는 6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
-「임도유지·보수 매뉴얼」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보수 실시
- 집중호우 등으로 임도피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
- 임도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율보수 조건 등을 검토 후 통행허용

o 해빙 후와 우기 중에 임도관리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상시관리 체계 강화
- 임도관리원은 해빙기 후부터 바로 임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기 중에 집중적으로 활용
- 지역별로 임도시설 거리. 관리의 난이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배치 인원 및 예산단가를 현지 실정에 맞게 자체 조정시행
※ 타 사업으로 집행하고 임도보수를 소홀히 할 경우 패널티 부여
- 국유임도의 경우, 민간위탁 사업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배치·활용
- 지역실정에 맞게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연계 활용하여 임도망도 현행화 및 작업자 안전관리 실시

o 국유임도의 일부구간(2,200km)은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되, 기타 노선은 자체장비 및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 실시

- '15. 2월 중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우기 전에 사업 완료
- 민간위탁 1차 보수는 6월 초순까지 완료, 2차 보수는 9월말까지 완료

o 임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안전성 및 활용도 제고

- 안내입간판, 갈림길 이정표, 핸드폰 통화가능지역 표시 등 정비와 보수, 추가 설치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안전성 강화

  ※ 국가지점번호 등과 연계하여 정비 및 설치

6) 간선임도 사전설계 실시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175	137	38
사업비	1,608	1,226	382

※ 간선임도 사전설계비 단비 : 12,782천원/km(220,000천원 × 5.81%)

o 사전설계비는 다음년도 사업대상지를 고려하여 시·군 및 관리소별 조정하되 아래 대상지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임도시설 시범단지 등 집약적이며 연속적인 임도신설 지역
- 동절기 적설량이 많아 3월말까지 현지측량이 어려운 지역
- 측량·설계업무가 상반기에 편중되어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
- 기타 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판단하여 전년도 사전설계가 필요한 지역

o 사전설계는 2014년에 2015년 사업지를 설계하였으므로 금년 사업비로 2016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설계 추진

※ 설계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비 관리 철저

- '14년 사전설계로 사업비가 남는 '15년도 설계비는 '16년도 사전설계비로 집행
- 적설기 측량·설계로 현지여건과 불부합하는 등의 부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철저(사전설계 측량은 11월말까지 완료)

7) 임도시설 시범단지 운영

o 산림의 집약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지정된「임도시설 시범단지」의 임도는 시설목적과 기본원칙을 준수한 노선선정·시공으로 재해에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설로 상시학습장으로 활용

- 기관별 1회 이상 현장토론 실시하고 결과 제출

  ※ 시범단지 : 10개소(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개 지방산림청)

o 노선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연차별 사업 추진

- 산림자원량을 고려한 간선·작업임도의 노선 및 기계화 작업공간 배치
- 연차별('15~'17) 노선별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와 산림사업 추진
- 시범구역내 편입된 사유림은 기본설계시 산주동의 완료

라. 기타 사항

o 정부 재정집행 정책에 따른 예산 실집행률 제고 및 부진기관 중점관리

- '14년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선금, 기성금, 노무비 등 고의로 미청구하는 등 재정집행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와는 수의계약 지양
- 경쟁입찰 사업자에 대하여도 선금, 기성금 등 적기 청구하여 재정집행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도·독려하여 실집행률 제고
- 지방청, 시·도에서 소속기관에 대한 재정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

  ※ 임도사업 조기 발주요망(상반기 전 개소 착공으로 실집행률 제고)

o 임도관련 법령, 규정 준수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산지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이행 철저

o 연구결과에 대한 현장 적용으로 성과 제고

- 「임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국립산림과학원, 2012)」를 활용하여 임도건설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자료로 활용
- 「산림토목 사업의 설계·감리 기준 품셈 개발에 관한 연구(산림청, 2011)」 결과를 지방청·도 별 1노선 이상 시범적용한 후 성과 분석 자료 제출
- 「임도망 계획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2014)」을 적극 활용하여 노망계획 수립

  ※ 산림청 목재생산과-6831(2014.11.20.)호로 보급

마. 추진일정

o 2014년 임도시설 추진실적 제출 : 2015. 1.10까지
  ※ 추진실적, 예산집행상황, 활용실적, 임도전산관리대장, 임도망도(수치지도)

o 2015년 임도시설 추진계획 제출 : 2015. 1.31까지

o 임도사업 추진상황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o 제4차 임도설치계획('16～'20) 수립 : 2015. 3월～7월
  ※ 세부계획 2월 중 별도 시달

o 주요 설계 및 시공 대상자 교육 : 2015. 2월

o 임도담당자 정책·기술 교육 실시 : 2015. 3월

o 도 및 지방산림청 별「임도시설 시범단지」사업 추진
  - 임도시설 시범단지 설계에 대한 현장자문 실시 : 2015. 3～4월
  - '15년도 임도시설 시범단지 실시설계 및 시공추진 : 2015. 4～11월

o 임도(간선・작업)신설사업
  - 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 : 2015. 1～3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5. 5～11월
  - 익년도 신설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산주동의 : 2015. 10월
  - '16년도 임도 사전설계 : 2015. 7～11월

o 산·학·연으로 구성된 중앙기술자문단 현장방문 지도 : 연중
  - 주요대상 : 시범단지 내 설계·시공, 구조개량 등에 대한 요청 시

o 구조개량사업
  - 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 : 2015. 2～4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5. 4～10월

o 임도보수 및 민간위탁사업
  -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 2015. 2～3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5. 4～6월

o 임도시설 호우피해 예방사업 및 점검
  - 임도하단부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 추가 조사완료 : 2015. 3～6월
  - 집중호우 대비 임도노선 일제점검 및 재해위험 예방조치 : 2015. 5～6월

o 임도사업 성과평가
  - 지자체 자체평가(민유임도) : 2015. 3월, 11월
  - '15년도 국유임도 사업평가(지방산림청 등) : 2015. 11월

o 임도시설 우수사례 평가 : 2015. 10월～11월

o 임도시설 워크숍 개최 : 2015. 10월 또는 11월

22. 도시숲 조성·관리

목 표

◇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내 녹색공간 확충 및 사후관리 철저

o 녹색쌈지숲 조성 : 138개소(78ha) 13,604백만원

o 산림공원 조성 : 22개소(131ha) 6,421백만원

o 생활환경숲 조성 : 64개소(76ha) 10,041백만원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가. 정책여건

o 국민 1인당 생활권내 도시숲 면적이 국제 권고기준에 미달하고, 국민들도 도시숲 면적이 부족하다고 인식[16)]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내 도시숲 면적(8.3㎡)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9㎡)에 미달하고, 국민들도 도시숲 면적이 부족하다고 응답(71.2%)

o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시간 활용 등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권내 녹색공간 확충에 대한 수요와 참여 욕구 급증

※ 도시숲 월 1회 이상 방문 71.3%,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참여의사 표시 76%[17)]

※ 도시숲을 통해 국민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는 조사결과[18)]

나. 기본방향

o 도시숲이 체험 및 교육의 장소가 되도록 나무와 꽃 등으로 자연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정자·분수 등 시설물은 최대한 지양

o 도시숲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행정 추진

o 도시녹화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 구축 확대

---

16), 17) 도시숲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3. 8월, 한국갤럽)

18)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조사(2014. 9월. ㈜리서치랩)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내 도시숲을 확충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가) 녹색쌈지숲 · 생활환경숲 조성

① 대상지

o 녹색쌈지숲 : 시민들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건물사이의 자투리땅 등에 조성

o 생활환경숲 : 공단, 주요병원, 요양소 등의 건축물(옥상·벽면녹화)과 그 주변지역, 폐기물 및 쓰레기 매립지, 하천·제방부지 등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해 조성이 필요한 지역

② 조성방법

o 대상지의 규모, 인접 지역의 생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계

- 동·읍 또는 시·군·구내의 기존 도시숲 배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녹색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계

o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 공원형, 경관형 등은 생태환경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 주민 이용도와 숲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시설 도입
- 숲의 기능과 함께 지속적인 산림문화(이야기) 공간을 조성

o 시설물 위주의 인위적 사업을 지양하고 자연 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조성

- 잔디밭 조성이나 관상수 식재 중심의 인위적 조성방식 지양
- 시설물은 이용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
- 편의시설, 기반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 도시숲 조성사업비 외의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시설

o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 추진

- 토양이 척박한 경우 토양개량 등 먼저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계획단계부터 대책마련 후 조성 추진

o 교목 중심으로 숲을 조성하되 관목 · 자생 초화류 보완식재

- 고가 위주의 제한된 수종보다는 면적, 위치 등을 감안 다양한 식생 도입
- 주변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한 적정수종을 선정하고, 관목류 및 자생 초화류를 섞어 심어 심미적 경관 창출

o 식재규격 등 엄정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실명제 도입

- 식재목의 규격검사 외에도 건강성・수목 활력 등을 점검
- 조성기간, 시공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관 등 도시숲 조성 실명제 도입

o 독립적인 비오톱(Biotop)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

o 도시 녹색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 거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

- 인공지반녹화, 벽면녹화 등 다양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나) 산림공원 조성

① 대상지

o 도시지역의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도시내 국·공유지의 산림

- 면지역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 다른 법에 의한 제약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이미 취한 지역

o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용도가 높은 산림공원 확대 조성

- 산림서비스림을 산림공원으로 조성할 지자체는 국유림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이행
- 산림서비스림의 매수 취지를 살려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예산확보

o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소관 사업은 이용도가 높은 도심의 산림과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사업 예정지를 이용하여 추진하되 다른 법에 의한 제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 도시숲 조성·관리의 국가정책의 실효성 및 장기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

② 조성방법

o 자연적·사회적 및 인문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하되 경관적 요소를 반영하여 조성

- 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은 공원형 및 방풍·방음형으로 조성
- 도심 속에 고립되어 방치된 경우에는 생태형으로 조성

o 사업은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성

- 조망점 중심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경관 숲가꾸기 실시
- 보완식재가 필요할 경우 경관조림사업 실시

o 시설물은 이용도 및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설치

-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입지여건과 이용도 사후관리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주변 숲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o 자연재해의 안전성을 고려한 수목식재 및 이용시설물 설치

-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 과다한 이용으로 훼손된 산림공원은 복구사업 반영 등 재해안전성 확보

다) 국유지 도시숲 조성

① 국유지 도시숲 조성·관리

o 신규 조성지는 유아숲체험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o 기 조성된 도시숲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 수시 보완

② 산림서비스림 매수지 사후관리 철저 및 도시숲 조성방안 강구

o 산림서비스림 매수지는 당초의 매수 목적에 부합토록 재산관리에 철저

- 산림서비스림을 도시숲 등으로 조성하도록 지자체와 협의추진
- 지자체가 산림서비스림을 도시숲 등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산림사업” 또는 “국유림의 대부 등”의 방법으로 적극 지원

라) 지자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o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철저

- 지방자치단체 수립 여부를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등에 반영
- 각 시・도별 도시림조성관리계획 수립실적 제출(상・하반기)

마)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o 도시숲 조성시 안내표지판 및 나무이름표(QR코드) 의무적으로 부착

-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19] 안내표지판 및 수목표찰 배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에 따라 신규 조성지 부터 설치 의무

• 사업완료 후 도시숲 조성 안내판을 설치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
  ※ 산림청 명칭 및 로고를 포함하여 설치(별첨 참고)

• QR코드를 반영한 수종별 나무이름표를 조성하는 도시숲 내 설치
  ※ 단풍나무 외 178종(숲해설가의 수목에 대한 해설 첨부) 제공(별첨 참고)

o 조성된 도시숲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지관리 강화

-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입간판, 수목표찰 등 시설물 수시 보완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 및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신규 조성시 적극 반영

바)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및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

① 제9회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시상

o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등이 우수한 모범 사례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사례를 전파

o 사업개요

- 공모대상 : '06년도 이후 신규로 조성한 도시숲 및 가로수
- 신청방법 : 각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신청
- 추진절차 : 계획 통보 및 접수(8월) → 심사(9월) → 시상(10월)

※ 시상은 도시숲 담당자 워크숍 시 병행 추진

- 시상내용 : 6개 기관(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 최우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및 상금), 우수·장려(산림청장상 및 상금)

o 사례집 발간 : 녹색도시 우수사례집 제작 및 홍보

② 제7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

o 도시숲 조성시 인위적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산림형에 가까운 숲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유도

- 기존 공원과는 차별화된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계획·설계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함

19)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2014. ㈜리서치랩)

o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도시숲 설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대학생
- 추진절차 : 사전접수(6월) → 작품제출(8월) → 작품심사(9월) → 시상(10월)
- 시상내용 : 11개 작품(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입선 5)

※ 최우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및 상금), 우수, 장려 및 입선(산림청장상 및 상금)

o 사례집 발간 및 홍보 : 도시숲 설계 공모·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및 홍보

※ 수상작품 전시 및 홍보

사)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유 및 소통강화

① 도시숲 정책담당자 교육실시

o 교육목적 : 도시숲 정책 방향 공유 및 관련 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배양

o 교육대상 : 지자체 도시숲 담당자

o 교육인원 : 200명(기당 100명)

o 교육기간 : 3월중(2일간 × 2회)

② 도시숲 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o 도시숲 정책사업의 발전방향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지자체 상호간 정보 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

o 개최시기 및 장소 : 10월, '15년 녹색도시 최우수기관(지역)

아)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o 담당업무 : 도시숲 자원조사,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 방제 등 도시녹지 사후관리

o 사업규모 : 201명(지자체 164명, 제주 30명, 지방산림청 7명)

o 사업예산 : 2,857백만원(국비 1,563백만원, 지방비 1,294백만원)

o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직접사업 100%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특회계 예산이며 국비 70%임

o 선발기준 우선순위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 임업·조경 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15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참조**

o 도시녹지관리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에서 3월중, 100명 교육

2)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도시녹화운동 확산

가) 금호강 생활 숲(대구시민의 숲)조성 사업

o 쓰레기 매립장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형 도시숲 조성

o 사업내용 : 천년의 숲, 국제교류의 숲, 테마 숲, 생태탐방로 등

o 사업규모 : 10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사업기간 '15~'17년, 국비 50%)

o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토지보상, 인·허가 등 행정절차 미흡으로 사업추진 지연사례 방지
- 사업설명회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
- 사업시행중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시민참여로 민·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나) 다양한 형태의 도시녹화운동 캠페인 실시

o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 실시

- 시기별, 대상별, 테마별 도시녹화운동 전개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실시

※ 산림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도시愛숲 온라인 사이트**, 홍보동영상,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실시

- 도시숲 조성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 시·도별 릴레이식 홍보 추진

※ '14년도 녹색도시 우수사례 수상기관부터 기고문 형식으로 각 시도별로 언론매체에 홍보(2월부터 계속)

o 기업참여 도시숲 조성 활성화 추진

- 기업대상 홍보 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숲 조성에 적극 참여 유도
- 기존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공헌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 및 포상 실시

o 도시숲 조성・관리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기반 구축
- 지자체별로 “도시숲 트러스트”를 구성하여 도시녹화운동 참여 활성화
※ 세부 운영요령은 2014년 도시녹화운동 활성화 방안 참고

다) 도시녹화운동 전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o 도시녹화운동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9월말까지 추진실적(조성・관리・참여) 기준으로 우수사례 선정

o 사례집 발간 : 도시녹화 우수사례집 제작 및 홍보

3) 도시숲 조성 예산 확대 및 집행관리 감독 강화

가) 생활권내 도시숲 면적 확대를 위한 설명회 개최

o 생활권 주변 도시숲조성을 위한 예산확대 및 지자체장 관심도 제고를 위한 권역별 사업 설명회 개최(3월)

※ 신규사업 및 개선보완사항 등 아이디어 발굴 병행 실시

나) 도시숲 조성 사업 집행관리 감독 강화

o 사업 실행시 현장책임관을 지정·배치하여 품질향상 제고
- 일정규모(5억원) 이상 사업장은 시・도에서 특별관리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 현장책임관의 임무 강화 : 분기별 점검사항을 제출

o 사고이월 방지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타당성 심사 강화
- 각 시・도에서는 ’16년도 지특회계 사업신청 이전에 각 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심사 검토서 작성 제출(3월까지)
※ 심사항목 : 부지여건,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지방비 확보여부 등

o 도시숲 조성시 지방비 부담금을 녹색자금 등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철저

o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이월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사업시행 전 보험가입 여부 확인, 추진상황 수시 지도점검 실시

라. 추진일정

o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계획 통보 : 2014. 12월

o 도시숲 정책 담당자 실무교육 : 2015. 3월

o 도시녹지관리원 교육 : 2015. 3월

o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 : 2015. 3월

o 도시숲 조성사업 타당성 심사결과 제출 : 2015. 3월

o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여부 조사 : 2015. 5월

o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 : 2015. 6～10월

o 도시숲 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5. 10월

o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 지도・점검 : 2015년 분기별

o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 2015. 8～10월

o 도시숲 조성사업 실적 제출 : 2015. 12월

23. 명상숲 조성 · 관리

목 표

◇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이 녹색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자연적으로 조성

o 명상숲 조성 : 106개소, 3,22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의식 배양 등을 위한 명상숲 수요 증가

- 명상숲이 갖는 환경개선 효과와 이를 활용한 자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o 명상숲은 생활권 녹지확보를 위한 최적의 공간

- 생활권내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업대상지를 학교 주변까지 포함하자는 요구 증가

나. 기본방향

o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

o 학교 여건 및 주변 환경을 최대한 반영한 다양한 유형별 명상숲을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1) 명상숲 조성사업

o 사업규모 : ('14) 70개교, 2,100백만원 → ('15) 106개소, 3,220백만원

o 지원형태 : 개소당 6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o 사업기간 : 1년

o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 자연성 확보
  - · 자연스러운 숲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그 주변지역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
  - · 자연성을 떨어뜨리는 조형적이고,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지양

- 기능성 실현
  · 명상숲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 소음방지, 기후조절, 정서함양 등 숲이 갖는 기능을 강화
- 교육성 강화
  · 명상숲 조성사업에 교육적 활용방안을 반영하여 조성
  · 명상숲 내에 자연체험, 생태학습, 도시농업 체험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
    * 단, 도시농업 체험공간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배치
  · 수목 선정시 나라꽃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무궁화 식재를 적극 확대

o 품질향상을 위한「명상숲 조성 설계 심의회」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여 명상숲의 품질향상 제고
  * 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의 질 향상 제고

o 명상숲조성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개
- 교육부·교육청을 대상으로 많은 학교에서 명상숲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 발송
- 명상숲의 기대효과(청소년의 정서함양 도모 및 학교폭력 절감) 홍보 전개

o 명상숲 사후관리 강화 및 활용도 제고
- 명상숲 조성학교와 기초자치단체간 조성협약서를 체결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상숲 조성 유지·보전
  * 학교 내 시설물 설치로 인해 명상숲 생장공간이 축소되는 경우, 축소면적을 확보하여 나무 옮겨심기 등을 통해 당초 조성 면적으로 유지·관리
- 시·도별 명상숲 조성분야, 활용 및 사후관리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관리
- 교사 등에 의한 '명상숲 활용 프로그램' 운용 및 '명상숲 가이드북' 등을 통해 교육적 활용도 제고

2) '기업-정부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참여 학교숲 확대

o 기업(삼성화재)참여 학교숲 조성 계획 : ('12~'14) 14개교 → ('15) 8개교

o 기업참여 확대를 위해 기업-정부간 실무협의회 개최 및 지역 연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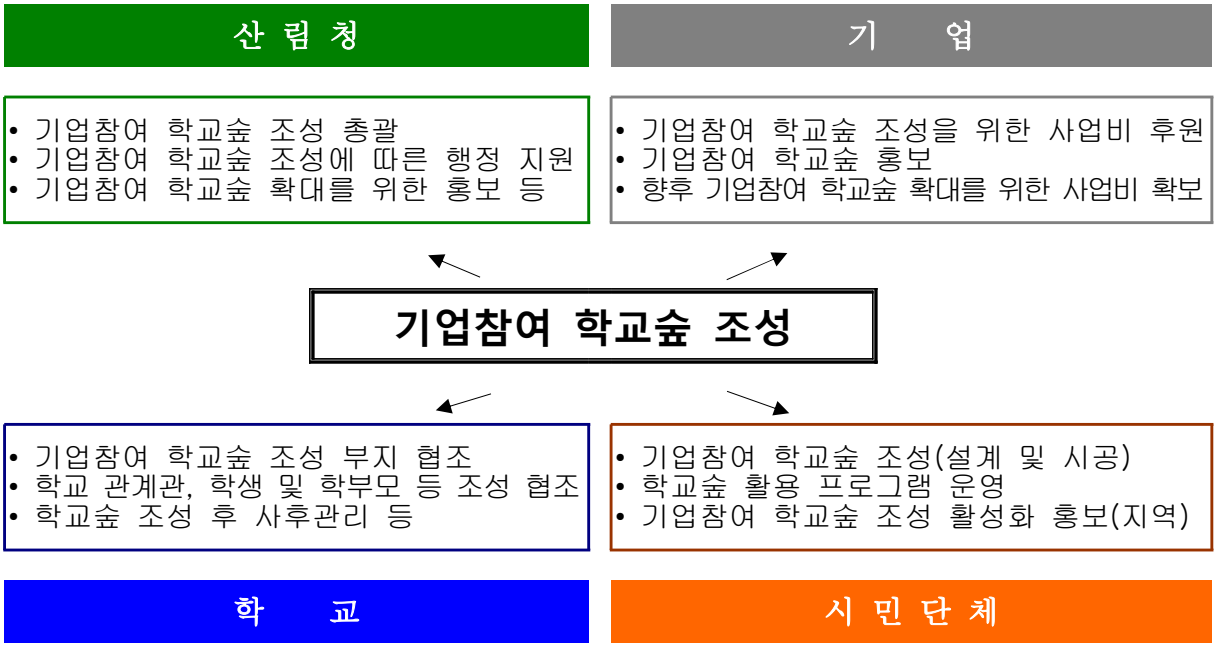

3)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

o 사업개요

- 운영인원 : 49명
- 소요예산 : 700백만원(국비 350백만원/지방비 350백만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o 주요업무

- 명상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식재 및 사후 관리지원
  - ·수종 선정 등 식재계획 수립시 컨설팅 지원
  - ·주요 수종별 특성 및 식재·관리 요령 자문
- 명상숲의 교육적 활용 지원 및 지역커뮤니티 형성 자문
  - ·명상숲 활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모니터링
  - ·학교구성원,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형성방법 안내
- 명상숲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업무(현장지원 포함)
  - ·명상숲 자원 조사 및 DB구축,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 기타 선발권자가 명상숲의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라. 추진일정

o 명상숲 조성사업

- 2015년 명상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 2015. 1~3월
- 시·도별 '명상숲 조성 설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2015. 1~12월
- 2015년 명상숲 및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 2015. 3~12월
- 2015년 명상숲 조성사업 현장 점검 : 2015년 분기별
- 명상숲 우수사례 선정 : 2015. 9월
- 2015년 명상숲 조성사업 완료보고 : 2016. 1월
- 2016년 명상숲 조성사업 수요조사 : 2015. 4월
- 2016년 명상숲 조성학교 공고 및 선정 : 2015. 9~11월

o 명상숲코디네이터

- 2015년 명상숲코디네이터 채용공고 및 선발 : 2015. 1월
- 2015년 명상숲코디네이터 채용 결과보고 : 2015. 1월
- 2015년 명상숲코디네이터 교육훈련 : 2015. 2월
- 2015년 명상숲코디네이터 운영 결과보고 : 2016. 1월

24. 전통마을 숲 복원

목 표

◇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생태·환경적 기능을 회복시켜 산림문화자산으로 육성

o 전통마을숲 복원 : 8개소, 415백만원

가. 정책여건

o 농·산촌 주민 고령화로 관리부실 및 도로개설 등 개발로 인한 전통마을숲의 훼손·단절이 우려

o 전통마을숲은 역사·풍수·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호하고 관리하여 산림문화 자산으로 육성할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o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복원하여 산림경관자원으로 육성

o 토착신앙, 역사·전설·구전 등 마을숲의 문화자산을 계승하며 마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속문화 공간으로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전통마을숲 복원

o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추진
- ('14년) 2개소 250백만원 → ('15년) 8개소 415백만원

o 복원방향
- 전통마을숲의 유래, 역사·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마을의 특색 있는 산림문화자산으로 조성
- 전통마을숲이 지닌 경관/풍수, 환경조절, 문화/종교, 휴양/관광, 자연/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마을숲으로 조성
- 마을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산림문화와 역사를 잇고 마을숲을 교육 및 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성화

o 전통마을숲 선정기준

- 전통마을숲의 역사・문화적, 경관・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
-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주민참여 의사가 분명한 곳
- 전통마을숲 복원을 통해서 농산어촌의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곳
- 마을숲의 복원 및 후계림 조성 등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계획된 곳
- 사료에 파악되고 있는 전통마을숲 중 훼손되었거나 소실된 곳 등

o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마을숲 복원시 인공적 시설물 최대한 지양
- 마을숲에서 이루어지던 당산제 등 지역 문화축제는 계승발전
- 마을숲이 이용객 등에 의한 답압으로 인해 수목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관목류, 야생화 식재 및 돌담 등을 설치
- 마을숲 내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생하는 지역은 활엽수로 인해 침엽수가 피압되지 않도록 수형 조절

o 전통마을숲 복원계획 수립 및 복원사례집 발간

- 기 조사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연차별 복원계획 수립 및 DB구축

* 전국 전통마을숲 1,335개소 중 66개소 복원 ('03～'14)

- 전통마을숲 복원 사례집을 발간하여 마을숲의 가치를 재조명

o 전통마을숲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육성

- 전통마을숲 중 역사・문화・전설・토착신앙 등의 가치가 있는 마을숲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정절차는 산림문화자산지정 및 실태조사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추진

라. 추진일정

o 2015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실시 설계 및 사업착수 : 2015. 1～3월

o 2015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시·도별 자문회의 개최 : 2015. 1～3월

o 2015년 전통마을숲 복원 : 2015. 3～12월

o 2015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현장 점검 : 2015. 분기별

o 전통마을숲 현황자료 보완 및 갱신 : 2015. 1～12월

o 2016년 전통마을숲 사업 수요조사 : 2015. 4월

o 2016년 전통마을숲 대상지 심사 및 선정 : 2015. 9～11월

o 2015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완료보고 : 2016. 1월

25. 산림경관 개선사업 추진

목 표

◇ 산림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o 백두대간 복합경관숲 조성 : 1개소, 1,000백만원

o 대관령 경관숲 조성 : 1개소, 20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국토 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산림경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o 새로운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분야 녹색인프라 중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o 산림경관의 지역별 다양성과 특이성을 바탕으로 산림경관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향 정립으로 경관·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

o 산림경관자원을 발굴하여 보전·관리할 수 있는 모델 제시

다. 세부추진계획

1) 복합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추진(2년차)

o 목　　적 : 경관 수요가 큰 산림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o 사업기간 : 2014 ~ 2016년(계속사업)

o 사업내용 : 조망점 발굴·정비, 경관수종 식재, 불량 임분 개선 등

o 사업규모 : 1개소, 10억원(총사업비 30억원), 국고 100%

o 사업시행 : 남부지방산림청

o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산림사업의 시행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 사업시행 시 복합경관숲 조성 사업 지침에 따라 추진하되, 본 지침에 없는 사업별 공종 등은 기존 산림사업에 대한 지침, 규정, 매뉴얼 등을 반영
- 코레일 및 봉화군과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o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복합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풀베기, 덩굴류 제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
- 시범사업 성과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

2) 대관령지역 경관숲 조성(1년차)

o 목　　적 : 대관령지역 소나무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숲으로 조성하여 자연학습 교육 및 산림생태관광지로 활용

o 사업기간 : 2015 ~ 2017년(3년)

o 사업내용 : 조망점 발굴·정비, 경관수종 식재, 불량 임분 개선 등

o 사업규모 : 1개소, 2억원(총사업비 10억원), 국고 100%

o 사업시행 : 동부지방산림청

o 사업추진시 고려사항

- 산림사업의 시행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
- 사업시행 시 복합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지침에 없는 사업별 공종 등은 기존 산림사업에 대한 지침, 규정, 매뉴얼 등을 반영

o 관리 및 모니터링

- 대관령지역 경관숲 조성사업 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풀베기, 덩굴류 제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참고

라. 추진일정

o 복합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2014. 12월

o 복합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 2015. 1월

o 복합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 2015. 1~4월

o 복합경관숲 조성 시범사업 시공 및 감리 : 2015. 4~12월

o 대관령지역 경관숲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 2014. 12월

o 대관령지역 경관숲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 2015. 1월

o 대관령지역 경관숲 조성사업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 2015. 1~4월

o 대관령지역 경관숲 조성사업 시공 및 감리 : 2015. 4~12월

26. 가로수 조성·관리

목 표

◇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 민간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가로수관리 도모
o 가로수 신규조성 : 441km, 13,829백만원
o 명품가로숲길 조성 : 190km, 6,185백만원

가. 정책여건

o 녹색 네트워크의 핵심요소로서 가로수 조성 확충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o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로수에 대한 재해 대응력 강화 필요성 대두
o 정부 3.0에 따른 국민과 쌍방향 소통하는 가로수 정책 요구

나. 기본방향

o 지역별 기후, 문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로수 조성·관리
o 전문가 및 주민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1) 신규 가로수 조성

o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로수 조성으로 합리적인 가로경관 확보
- 대로변 : 큰키나무 식재로 운전자 시계확보 및 보행자 녹음제공
- 상가 및 좁은지역 : 작은키나무, 초화류 식재로 간판가림 민원 해소
  *「가로수 유형별 조성·관리 모델」(2014) 적용

o 특이 수종 선정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체계화 도모
- (소 나 무) 「소나무 가로수 식재 및 관리방안」활용
- (무 궁 화) 「무궁화 가로수 수형관리」 등 관리지침 활용
- (은행나무) 「은행나무 성(性) 감별법」활용으로 수나무 식재 권장
  *「효율적인 가로수 열매 수거장치」시범 적용

2) 명품 가로숲길 조성

o 향토수종 식재, 수형관리 등을 통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
- 수종 선정 : 지역별 역사·문화·주민선호도 등 반영
- 수형 조절 : 수종별 생리, 주변 환경 특성 등 고려

o 가로수 생육환경, 관리시설물 개선 등을 통한 건강한 거리 조성
- 수목 생육 : 토양개량, 관수 등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 관리 시설 : 지주목, 수목보호덮개 교체 등 가로환경 질 제고

3) 가로수 건강성 증진

o 병충해 등 수목 피해 요인 예찰 및 대응
- 병충해 예찰 강화를 통한 조기진단 및 조치
- 염화칼슘, 기타 피해요인 대응(보호막 설치, 친환경제설제 사용)

o 생육 지장물 제거 및 개선
- 수목 식재 시, 분뜨기에 사용된 고무바, 철사 등 생육 저해 물질 제거
- 겨울철 가로수 장식전구 설치(제거) 및 관리 철저
- 수목 생육을 고려한 가로수 관리인식표 부착방법 개선

4) 가로수 안전 관리 강화

o 태풍 등 재해 예방 및 대응력 강화
-「가로수 재해예방 및 복구 매뉴얼」,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준수

o 가로수 수목 생장에 따른 안전시설물 가림 현상 조치
-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가림 대한 운전·보행자 시야 확보
- 지하부 뿌리생육에 따른 보도블럭 들림현상 등 보행 위험요인 제거

5) 민간참여를 통한 가로수관리 3.0 실현

o 전문적 가로수 관리로 수종별 맞춤형 관리 도모
- 가로수기술자 과정 등 관련 교육 수료자를 통한 전문 관리 추진
-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 등 전문자료를 활용한 수종별 가지치기 실시

o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 구축
- 그린오너제(나무돌보미), 봉사활동 등 활성화를 통한 관리예산 절감
- 병충해, 보호시설물 진단 및 신고를 통한 신속한 대처

6) 관계 기관 등 업무 협력체계 구축

o 도로 관계 부처 및 부서와의 공조체계 구축

o 한국전력공사, 주변 상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창구 마련

o 기타 민간기업 및 관련 학계 등의 가로수 및 조경분야 발전체계 구성

- 가로수 등 조경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2월)

라. 추진일정

o 가로수 시책 설명회 : 2015. 1월

o 가로수 기술자 교육과정 운영 : 2015. 1월

o 가로수 등 조경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5. 2월

o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실적('14년말) 보고 : 2015. 2월

o 2015년도 가로수 조성 사업지 현장점검 : 2015. 분기별

o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 시범 적용 : 2015. 10월

o 가로수조성 및 관리실적 보고 : 2015. 12월

o 관련 부처 간 가로수 업무 협의 및 법령·규정 개정 : 연중

27.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 및 보급 확대

목 표

◇ 생활권 내 무궁화 식재 공간 확충으로 보급 확대
◇ 대단위로 조성된 무궁화 식재지의 집중관리
◇ 국민 친화적인 무궁화 문화행사의 내실화 추진

가. 정책여건

o 언론 매체 등의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

o 일반국민의 무궁화에 대한 인지도와 접촉 빈도가 낮은 실정

o 무궁화 문화행사 및 교육에 대한 참여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생활권 주변 무궁화 보급 확대 및 체계적 관리

o 무궁화 문화행사 통합 내실화 및 교육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 주변 무궁화 보급 확대

o 유동인구가 많은 생활권역에 대규모 무궁화 식재 추진

- 무궁화동산 : ('14) 11개소 600백만원 → ('15) 11개소 600백만원
- 진출입로, 아파트단지,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조성

  * 무궁화동산 사업 : (규모) 0.5ha 이상, (사업비) 1억원/개소

o 무궁화 식재 희망학교 묘목 보급 확대 추진

- 학교 내 식재 : ('14) 158개교 → ('15) 318개교
- 국기 게양대 주변, 담장 가로수, 공한지 소규모 동산 조성 등

  * 교육부 협업과제 : ('14～'17) 1,109개교 공급, 172천본

2) 대단위 무궁화 식재지역 집중관리

o 기 조성된 생활권 주변 대규모 무궁화 식재지 집중관리
- 무궁화관리 : ('14) 20개소, 100백만원 → ('15) 21개소, 100백만원
-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비료주기 등 생육관리 철저
  * 「나라꽃 무궁화 식재 및 관리 지침(2014)」 활용

o 전국 무궁화 생육현황 조사 및 DB 구축
- 주요도로변, 사적관광지, 마을, 학교, 공원 등 무궁화 개체 조사

3) 무궁화 문화행사의 내실화

o 무궁화 전국축제(중앙행사)를 중심으로 부대행사 통합
- 우수작품 시상 : 무궁화우수분화 품평회, 무궁화 문학상·콘텐츠 공모
- 전시·부대체험 : 무궁화 품종, 사진, 공예품, 공모작품 전시 등
- 전문 지식전달 : 무궁화 바로알기 교육, 심포지엄 등
  * 지역행사 별도 추진 : 경기 수원, 강원 홍천, 전북 완주, 전남 무안

o 나라꽃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 홍보를 통한 관광자원화
- 제2회 나라꽃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 공모 추진
- 우수한 무궁화 가로수길 홍보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4) 수요자 중심의 무궁화 교육 강화

o 무궁화 교육 수요자별 표준 교재 마련
- 어린이, 성인, 공무원 등 대상별 교육교재 표준안 제작·보급

o 교과서 편찬에 활용 가능한 종합자료집 제작
- 교과서 편찬 집필진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설명회 개최

5) 관계 기관 등 업무협력체계 구축

o 국가상징 관련 부처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내실화

o 무궁화 양묘업계, 관련 단체 등과 무궁화 시장화 발전체계 구축
- 무궁화 신품종 개발 및 유통업계 상생방안 마련
  *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라. 추진일정

o 무궁화 문화행사 위탁사업 계약 추진 : 2015. 1～2월

o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실적('14년말) 보고 : 2015. 2월

o 2015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장 점검 : 2015. 분기별

o 나라꽃 무궁화동산 조성 매뉴얼 제작 : 2015. 2～10월

o 제25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 2015. 8월

o 무궁화 품종개발 및 생산업계 상생방안 마련 : 2015. 11월

o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실적 보고 : 2015. 12월

o 관련 부처 간 업무 협의 및 법령·규정 개정 : 연중

산림이용국 소관

1. 현장 체감형 산지규제 제도개선 추진

목 표

◇ 임업인 중심 산지규제 개선 및 생태적 산지이용기반 마련
◇ 제도개선 완료 과제의 현장정착을 통한 효과 극대화

가. 정책여건

o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지전용 면적은 10,109ha로 '09년 이후 경기침체 영향과 그간 지속적인 산지개발 수요의 해소 등으로 안정적 감소추세 진입
- 산지전용 면적(ha) : ('10) 11,851 → ('11) 8,026 → ('12) 7,753 → ('13) 7,432

o 다만, 범정부적으로 민간 투자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지 관리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역시 증가 추세
- VIP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 따른 입지규제 개선 지속 요구

o 반면, 산지 개발에 따른 훼손우려, 이용수요의 증가, 이해집단간 의견 상충 등이 증가하고 있어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대안 필요

o 아울러 '13년 수립된 「산지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지역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
- 산지관리 기본계획 외 하위계획인 지역계획 수립을 통해 보전산지 지정·해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지 내 산지편입 협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나. 기본방향

o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 산지관리 체계를 유지하되, 임업인 등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제도개선 추진
-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산지는 해당 입지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

o 효율적 제도개선을 위해 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의견수렴 체계 구축

o 완료된 제도개선 과제는 임업인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o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규제개혁신문고 등과 병행하여 임업 현장 방문을 통해 임업인의 제도개선 요구 적극 반영

- 임산물 재배를 위한 일시사용 신고 및 연접개발제한 폐지 등
- 임업인 단체 의견수렴, 지자체 산지 및 산림소득 담당자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 후 산지관리법령 개정 추진

o 기획재정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검토 반영

- 법령해석 및 불합리한 제도로 개선 권고한 규정에 대해 제도개선 추진
- 부담금 통합징수 방안과 연계한 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 추진

2) 타부처와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협조체제 강화

o 산지이용에 관하여 타부처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수요조사 및 법령개정 추진

-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선제적인 제도개선 실시

o 「산지관리법」과 관련한 타부처 법령의 제·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요구

- 부처간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산지관리법」과 관련된 타법률의 제·개정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

3) 산지의 이용 등과 관련한 주요 민원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

o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민원내용에 대하여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 반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해소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반영

o 자주 질의되는 민원에 대하여 Q&A 및 사례집을 통한 민원해소

- 산지이용과 관련한 Q&A 및 사례집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해소

4) 현장역량 강화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

o 기존의 사진 등 설명 자료에 의존하여 진행하였던 회의진행 방식을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현장심의 확대 운영

o 신규위촉위원 등 심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o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 세부 심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기반 마련

5)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교육실시 및 현장 점검

o 산지이용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홍보 강화 및 담당자 교육실시

-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 등에 대한 언론홍보 강화 및 담당자교육(1~2월)
- 산림교육원 산지관리자반 교육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교육(연 2회)

o 산지관리 워크숍(6월), 현장 담당자 합동세미나 등을 통한 산지관련 법령의 운영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공유

라. 추진일정

o 타부처 및 지자체 제도개선 수요조사 : 2015. 2월중

o 산지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임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 및 현장토론회 개최 : 2015. 3~4월중

o 지자체 산지 및 산림소득 담당자 합동토론회 개최 : 2015. 상・하반기 중

o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별 현장토론 및 합동 워크숍 개최 : 2015. 상・하반기 중

o 지자체・타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 2015. 4월중

o 산지분야 Q&A 및 사례집 제작・배부 : 2015. 상반기 중

o 산지관리워크숍 개최 : 2015. 6월중

o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2015. 하반기 중

o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 : 연중(월 2회)

2.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산지관리체계 구축

목 표

◇ 산지관리계획에 기반한 계획적·전략적 산지관리체계 구축
◇ 선제적 산지관리제도 관련 연구 및 산지 전문가 네트워크화 구축
◇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산지관리정보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o 전국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체계(기본-지역계획) 시행으로 합리적·계획적 산지관리체계 기반 구축

o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산지관련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가 인력풀 확보 등 산지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지관리기본·지역계획」에 따라 획일적 산지관리체계가 아닌 산림경관권역(27개) 및 산지유역유형(5개)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지역적 맞춤형 산지관리체계 구축·운영

o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위주의 기능개선으로 편의·접근성을 개선하고 내부 업무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여 시스템 활용도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산지이용실태조사 추진

o 전국산지 대상의 산지구분(10년 주기) 관련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시범사업 추진
- 산지구분 관련 관계부서(산림환경보호과)와 CBD 등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구역 지정 기준의 국내적용방안 검토와 산림보호구역 확대 등 관리계획에 따른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관련 협의, 산지관리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산지구분 검토 등

o 산지이용실태 인프라 구축 및 계획적 산지관리 지원을 위한 산지이용실태조사 추진

2) 「산지관리기본-지역계획」에 따라 합리적·전략적 산지관리체계 실현

o 획일적 산지관리체계가 아닌 산림경관권역(27개) 및 산지유역유형(5개)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산지관리체계 구축·운영

- 산지관리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마련 추진

o '산줄기연결망 체계 및 산줄기연결망 공간 DB 구축' 연구 실시를 통해 '통합적 산줄기연결망'관련 정책 마련

- 백두대간축 이외 정맥·기맥·지맥과 「산지관리법령」 상의 보전산지와의 법적·논리적 연관성을 확보

o 산지관리계획의 핵심인 '산지경관 관리' 및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심화연구 실시

- ('15년) 산지경관 관리 및 경관영향조사 체계 구축 방법론 개발
- ('15년) 백두대간-민북지역-보전산지의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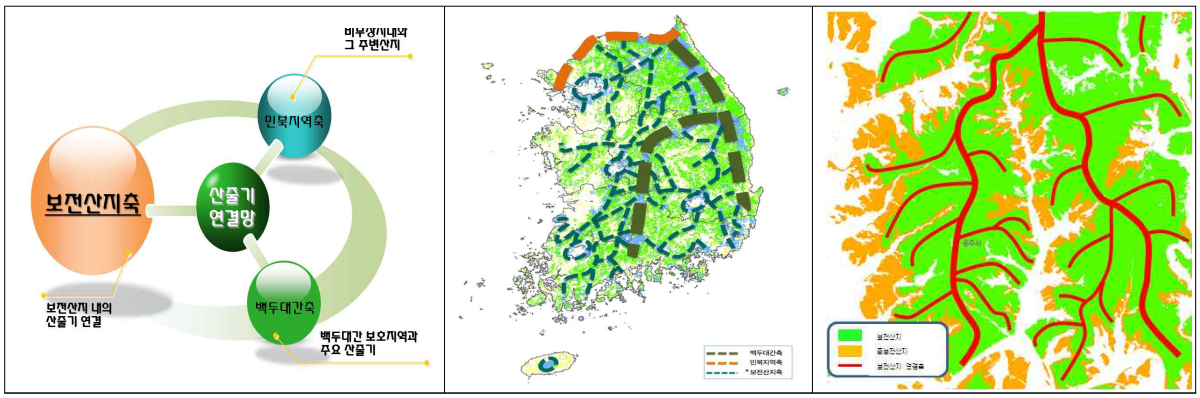

산줄기연결망 체계 및 개념도 공주시 인근' 보전산지축 발췌한 산지구분도

3)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현실화를 위한 실증 연구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방법론 모델은 마련되었으나, 실제적인 시행을 위한 '공익기능배율표 및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추가 연구('12~'15)를 한 후, 법령에 기반한 제도화 추진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 보고회·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운영하여 상시적 의견수렴 및 반영

4) 「산지山地포럼」 활성화를 통한 산지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강화

o 국내·외 정기심포지엄 및 학술 등 세미나를 상·하반기 각각 연 2회 개최

5)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국민맞춤형 산지관리정보체계 추진

o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등의 행정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산지구분 조정에 필수적인 지역·지구 변동사항 등 유관 DB모니터링 및 산지정보시스템 지원 고객지원센터 전담 운용(☎1588-3493)

o 산지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에 산지정보시스템 활용과정을 운영하여 현업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

o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지역 등의 신규지정, 해제, 변경 내역 등을 산지이용정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기능 개선 최적화

6) 산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위탁관리 추진

o 「산지관리법」 개정('12.8)으로 산지보전협회로 산지관리정보체계의 운영·관리 위탁

- 산림청과 산지보전협회간 위탁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 추진

  * '06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산지관리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그간 (주)SK C&C에 위탁·관리하였으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12.5)으로 공공정보화 사업의 유지·관리에 대기업 참여 제한

라. 추진일정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연구용역 추진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연구용역 추진 : 2015. 4월까지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수시

o 산줄기연결망 체계 제도화를 위한 연구 추진
-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 3차년도 연구용역 추진 : 2015. 7월
- 산줄기연결망 체계 구축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수시

o 「산지山地포럼」 개최
- 「산지山地포럼」 세미나 개최 : 2015. 상반기
- 「산지山地포럼」 정기 심포지엄 개최 (국내·국외) : 2015. 하반기

o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시범사업 추진 : 2015. 2월

o 산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2015. 3월

o 산지관리정보체계 운영 위탁관리 추진 : 2015. 2월

o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활용교육 실시 : 2015. 4월, 6월, 9월, 11월

o 산지관리정보체계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 관리 : 연중

3.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에 대한 전문적 관리체계 구축

목 표

◇ 민북지역의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한 민북지역산지관리팀 운영
◇ 민북지역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o 민북지역은 지난 50년간 민간인의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됨에 따라 독특한 산지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산림생태계의 보고
-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

o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및 전문조직 구성 필요

o 군사시설 밀집 등 정책 수립 및 추진 등에 제약사항이 많아 사전 협조 단계부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지역주민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나. 기본방향

o 민북지역 산지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

o 민북지역 산지모니터링을 통한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관리 방안 도출

o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민북지역산지관리팀' 설치 및 운영

o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이용,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점검・교육 전담

o 한국산지보전협회 내에 민북지역산지관리팀 설치·운영
- 협회정관개정('15. 1월) 및 조직 구성(팀장 1명 등 총 5명 내외)

o 민북지역 산지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실태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 민북지역 산지모니터링 : '15. 4월~12월(9개월)
- 민북지역 불법훼손산지 현지조사 및 이용실태 파악·통계자료 구축
-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 관리방안 등 제시

* 민북지역 산지모니터링 등을 위한 예산 5억원 반영('15년)

2) 민북지역 산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단체 거버넌스 구축

o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민간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설명회를 통한 상호 정책이해도 제고

o 민북지역관리팀 설치·구성시 군 출신자 임용으로 상호 협조체계 구축

라. 추진일정

o 민북지역 산지관리 정책설명회 : 2015. 1월

o 민북지역산지관리팀 설립 : 2015. 3월

o 민북지역 모니터링 용역 추진 : 2015. 3월~11월(9개월)

4. 토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도입 및 관리 강화

목 표

◇ 안정적 토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도입
◇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등 토석채취지 관리 강화
◇ 산지훼손지 실태조사를 통해 적기 복구 등 사후관리 강화

가. 정책여건

o 토석산업은 건설공사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나 토석채취 현장에는 재해위험이 상존 및 환경피해에 극히 취약

o 토석자원의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석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채취·가공산업 지원체계 마련 필요

o 산지전용 후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하여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지역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

나. 기본방향

o 토석자원의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석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채취·가공산업 지원체계 마련

o 자연친화적 채광·채석을 위한 관계자·공무원에 대한 산지관리법 및 채석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토석채취가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o 토석산업현장의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예방에 관한 복구 공종 및 공법별 적용모델의 개발 및 지원으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사업장 안전 확보

o 산지훼손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지도점검을 통해 적기 복구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o 석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채취·가공산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o 석재채취·가공단지 조성,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석재산업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 주도적인 진흥정책 추진

2) 자연친화적 토석채취를 위한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o 자연친화적 토석채취를 위한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도별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실시 : 연 8회

o 토석채취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토석채취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순회 교육 실시

3) 토석산업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예방 표준모델 개발

o 토석채취허가 복구지에 대한 복구공종 및 공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종 및 공법별로 환경피해 저감 및 재해예방 표준모델 개발

- 개소 : 토석채취허가 복구지 100개소

- 시기 : 연중

o 표준모델 개발 후 토석사업장에 대한 환경피해저감 및 재해예방 체계 구축

4) 채석단지 및 토석채취지 실태점검

o 채석단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 개소 : 2015년말 채석단지 지정된 20개소

- 조사시기 : 2015. 6~10월

- 조사방법 : 전문가와 합동 실시

- 조사내용 : 사업계획서, 심의조건 이행 여부 및 운영실태 조사

o 전국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실태 점검

- 도별 자체 조사 및 합동조사 실시(6~10월)

5)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o 산지전용・채광지・토석채취지에 대한 복구이행 실태 점검

- 허가기간이 종료된 사업지에 대한 복구이행 상황 점검
- 도별 자체 조사 및 공동조사(도별 3개소 이상) 실시
- 시기 : 2015년 상반기

o 산지복구공사 감리운영 실태 점검

- 개소 : 시・도별 5개소
- 조사시기 : 2015. 2~5월
- 조사방법 : 기술사 등 전문가와 합동 실시
- 조사내용 : 복구설계서대로 감리 여부 및 운영실태 조사
- 감리 실태 점검 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추진

o 불법전용지 관리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조사 실시

- 조사주체 : 한국산지보전협회(산지관리법 제44조의2)
- 조사시기 : 2015년 연중
- ('14) 대구・경상남도 조사 → ('15) 5개 시・도 조사
- 해당 자체단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복구명령 등 사후관리 조치

라. 추진일정

o 토석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추진 : 2015. 상반기

o 도별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실시 : 2015. 5월

o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복구이행 상황 점검 : 2015. 상반기

o 불법전용지 실태조사 : 연중

o 채석단지에 대한 실태점검 : 2015. 6~10월

o 산지복구공사 감리에 대한 실태점검 : 2015. 2~5월

o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실태점검 : 2015. 6~10월

5. 국유림경영·관리 정책 강화

목 표

◇ 국유림경영·관리 정책 방향 마련 및 운영 내실화 도모
◇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간소화 및 시스템 체계 이행 강화
o 산림조사 116천ha, 경영계획 작성 149천ha(사업비 1,439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산림의 6대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국유림경영·관리 정책 변화 대두
o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계획적인 국유림 경영·관리 필요
o 지자체·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국유림 이용 수요 증가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개선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 마련

나. 기본방향

o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반영된 국유림의 거버넌스 구축
o 국유림의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수요 충족과 현장여건에 부합한 경영계획 수립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의 운영 정상화로 국유림 경영사업의 효율적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지방청과의 국유림정책 강화 등 발전방안 도모

o 지방청과 관리소장 참여하는 국유림정책 토론회 개최(하반기)
- 전문가, 일선 기관장 등과 국유림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전방안 도모
- 국유림경영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정책 방향 공감대 형성

o 일선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국유림 정책추진 협의회 개최
- 분기별로 현장의 의견수렴 및 개선과제를 발굴 등 해결방안 마련
- 지방청과 관리소의 직급별 업무담당 협의회를 통해 국유림경영 활력 도모

o 국유림정책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 등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을 위한 협의회 구성
- 국유림경영·관리 정책 목표의 종합적인 재구상 등 연구용역 추진

2) 국유림경영·관리 사업의 성과 제고

o 일본 산림관리국과 지방산림청 간의 경영정책 및 정보교류 추진
  - 일본 임야청과 공동워크숍, 자매결연 체결 및 현장 교류 연수 추진(5월)

o 지방청별 국유림경영·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연찬회 개최(10월)
  - 기관별 우수사례 발굴 공유 및 사례발표를 통한 격려·시상

o 전문가(평가위원 등) 참여 상·하반기 국유림경영·관리 현장 점검(6, 11월)

o 산림조사·국유림경영계획 담당자 교육(산림교육원)

3) 국유림의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운영·평가 내실화

가)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산림조사

o '15년도 사업 현황

(단위 : ha)

구 분	계	%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계	12	개소	연천·기린	주천	안동·상주·김해	충주·보은·보령	정읍·나주·보성
	116,310	100	32,882	12,391	24,816	20,636	25,585
직 영	49,310	42.0	12,513	9,391	9,713	7,899	9,794
위탁(용역)	67,000	58.0	20,369	3,000	15,103	12,737	15,791

o 산림조사 일반
  - 산림조사는 직영 산림조사, 용역 산림조사로 구분 추진하고 용역사업은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 직영조사 및 위탁(용역) 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조사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조기 착수로 동절기 이전에 조사 완료
  - 산림조사 시 산림입지도, 적지적수도, 항공사진, 산림토양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한 조사가 되도록 추진
  - 산림조사의 표준지 조사 방법을 가급적 원형 조사로 정착하고, 직영 및 용역 단가 등 개선 추진
  - 모바일 야장을 통한 산림조사를 실시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o 직영 산림조사
  - 조사반별 월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조사 추진
  - 가급적 비녹음기에 산림조사를 추진하고 녹음기에는 전산 입력 등 내업 실시

o 용역 산림조사

- 세부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초 산림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
- 정밀한 조사를 위하여 항공사진, 적지적수도, 산림기능평가도, 산림토양도, 산림입지조사자료, 재산목록, 임야도, 국유림종합계획서 등 지원

o '16년도 산림조사 사업계획량 조사・보고

- 계획기간 만료 경영계획구, 신규매수지, 사권설정지 해제, 권리보전, 교환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산림조사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 경영계획 기간이 조기 도래하는 신규 매수대상지 등은 보수조사에서 보류 가능

나)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o '15년도 사업 현황

(단위 : ha)

구 분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계획구수	14개	화천·서석·화성	주문진	청송·칠곡·창원	괴산·청원·서산	순창·완주·해남·순천
면 적	149,286	53,027	14,531	24,685	17,576	39,467

o 국유림경영계획 일반

-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제5차 지역산림계획(변경), 제1차 국유림종합계획(변경)과 연계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운영
- 국립공원지역이 포함되는 경영계획구에 대하여는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사전 협의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계획 작성
- 산림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지와 부합되도록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영계획서 작성
-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경영계획이 되도록 작성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참고자료'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

- 운영요령 일부개정에 맞도록 참고자료 정비 및 현장 업무능률 향상 도모
- 시스템과 연계토록 산림조사 요령, 평가분야 등 내용 정비

다) 국유림경영계획 평가 실시

o '15년도 실행평가 대상 경영계획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연간실행 실적분석	103	27	18	21	18	19
중간평가	5	2 (횡성, 상남)	2 (양양, 영월)	1 (풍기)	-	-
예비평가	15	4 (안성, 광주, 인제, 양구)	1 (현북)	3 (포항, 평해, 밀양)	3 (영동, 천안, 아산)	4 (군산, 영암, 곡성, 거제)
최종평가	14	3개소 (화천, 서석, 화성)	1개소 (주문진)	3개소 (청송, 칠곡, 창원)	3개소 (괴산, 청원, 서산)	4개소 (순창, 완주, 해남, 순천)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연간실행실적분석·중간·예비·최종평가)는 경영계획구별로 실시
- 실행평가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 및 보고
- 연간실행실적분석은 중간평가에 활용토록 당해 연도 사업 특이사항, 사업계획 대비 실적의 증감을 자세히 기재

o 예비평가는 8년차 경영계획구 대상이며, 부득이 2년간은 예비·최종평가를 함께 추진하고 '17년부터는 예비평가만 실시
- 기관별로 최종평가를 상반기 실행 제출하고, 예비평가는 하반기 이행 완료

o 최종평가 등 분석결과는 차기 경영계획에 반영
- 미래지향적인 경영계획 운영 및 방향제시, 각종 사업계획 등 변경

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및 경영계획 변경절차 이행 철저

o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등 운영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 국유림경영계획 수립 및 변경을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행
- 산림자원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영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은 변경절차 사전 이행 등 관리 강화
  ·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임도·사방분야 등은 누락 없이 입력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3차 고도화사업 추진
- 국유림경영DB 및 임·소반도 현행화 완료 및 기능보완 등
- 국유림경영계획 자료를 미리 파악하여 DB구축에 차질 없도록 협력 강화
  · 실행평가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보완사항은 수시 의견 제출

※ '15년도 DB구축 대상 경영계획구(64개)별 업무담당자는 관련자료 준비·제공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 e-푸른샘(산림청지식포탈시스템)의 “행정정보시스템-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접속
- 지방청 및 관리소 팀장급을 책임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운영상황 점검
- 기관별 시스템 운영 평가 우수기관은 예산 및 포상 배려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실무회의 개최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교육(교육원, 2.9~10)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담당자 실무회의 개최(2회)
- 신규 업무 담당자 등 지방청 자체 사용자 교육 실시로 시스템 활성화 도모

4)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영계획 선도적 역할 수행

o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관리 규정,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등 연계성을 충분히 이해 한 후 사업추진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황 : 6개소 31,784ha>

구분	북부(홍천)	동부(평창)	남부(영주)	중부(보은)	서부(무주)	비고
개소	1	2	1	1	1	
경영계획구명	가리산	가리왕산, 봉평	장군봉	샘봉산	민주지산	
면적(ha)	6,564	4,026, 8,628	8,376	1,200	2,990	

o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시 새로운 산림경영·관리기술 개발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적 운영 추진은 가능
-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 수립은 경영전문관이 수행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예규 제627호) 참조

o 연도별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의 산림사업 계획 수립 및 실적 파악
- 계획은 경영정보시스템의 연간실행실적 분석을 통해 및 사업계획 예산으로 당년도 계획 수립

5) 타 부처 국유림경영대행 사업 추진

o 기존의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경영대행 협약체결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산림사업 이행

o ’15년도 타부처 국유림경영대행 사업 추진

- 국유림경영대행 협약체결 현황

지방청	관리소	대행면적(㎡)	산림소유자	대행기간	비고
계	**10건**	**62,548,160**			
북부청	소계	4,600,000			
	수원	1,730,000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13.10～’18.10.31 (05년)	
	서울	2,060,000	〃	’13.10～’18.10.31 (05년)	
		810,000	〃 (경기북부시설단)	’13.10～’18.10.31 (05년)	
남부청	영덕	5,028,533	국방부 (경상시설단)	’14.3.11～’24.3.10 (10년)	’14년 신규
중부청	소계	43,871,560			
	부여	2,000,977	국방부 (탄약지원사령부)	’11.10.20～’21.9.30 (10년)	
	〃	1,758,296	국가보훈처 (현충원)	’12.12.19～’22.12.18 (10년)	
	충주외3	39,612,972	국방부 (충청시설단)	’13.2.25～’23.2.24 (10년)	
	부여	499,315	교육부 (충남대학교)	’14.11.11～’23.10.31 (10년)	’14년 신규
서부청	소계	9,048,067			
	무주	8,460,919	국방부 (전라시설단)	’13.5.2～’22.5.1 (9년)	
	순천	587,148	국방부 (전라시설단)	’14.5.26～’23.5.25 (9년)	’14년 신규

o ’15년도 경영대행 산림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 418ha, 661백만원

  · 지방청별 사업계획 : 북부 2, 남부 99.5, 중부 170, 서부 146.5ha

  ※ 사업비는 숲가꾸기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림사업 추진

-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적극 추진

  · 경영대행 사업 가능임지의 협약체결 및 산림경영대행 사업 적극 추진

o 산림경영대행 계약체결 및 산림사업 시행 결과를 적기 보고

6)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운영

o 각 지방청별로 국유림경영관리 전반에 거쳐 연간 2회 이상 위원회의 개최
- 「국유림법」 제7조 및 『국유림경영관리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
※ 「국유림법」 제7조 일부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립수목원 등 1차 소속 기관에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이 가능하며, 별도 구성하지 않은 경우 관내 지방청에 의뢰하여 심의 등 조치 가능

o 구성위원으로는 산림의 경영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지역주민 등을 다양하게 위촉
-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
- 위원회 소집,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요 국유림사업 등을 자문

o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4조(자문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일정 면적의 구애 없이 주요사안(재산처분 등)이 있을시 포함하여 개최・심의 추진
- 국유림 처분에 관한 자문사항은 개정 법률에 따라 위원회 운영 강화

o 지방산림청별 예산배정 현황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비고
산림경영계획 작성	38,000	7,600	7,600	7,600	7,600	7,600	

※ 지방청 외 기타 소속 기관도 국유재산 취득·처분 요구 시의 위원회 운영 소요예산 지원

7) 국유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

o 국유림경영 정책 강화로 지역발전 도모 및 공・사유림 선도적 사업수행

o 지자체의 관심 사업에 대한 협력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

o 국유림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

8) 제주특별자치도 국유림경영·관리 지원 및 협조

o 국유림경영계획 운영 실태 파악 및 주기적인 산림사업 실적 관리
- 당년도 산림사업 실행 실적 결과를 제출 받아 경영정보시스템에 업로드

o '15년도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3차 고도화사업에 제주도경영계획구 반영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DB 구축 및 임・소반도 현행화 작업(용역사업)
-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자 교육 등 참여
・연도별로 산림사업 등 소관 국유림의 사업 실적 등록(서식 별도)
※ '15년도 DB구축 대상 경영계획구(64개)별 업무담당자는 관련자료 준비·제공

라. 추진일정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 사업 가능임지 사업계획 수립 : 2015. 상반기

o 국유림경영계획 연간실행실적분석(국유림관리소), 중간・예비평가(지방산림청) 실행 및 반영 : 2015. 4/4분기

- 최종평가(지방산림청) 실행 및 반영 : 2015. 2/4분기

o 정책강화를 위한 국유림관리소장 현장토론회 개최 : 2015. 하반기

o 국유림경영・관리 분야 상・하반기 현장 점검 : 2015. 6월, 11월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 사업 추진 : 연중

o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 연간 2회 이상

〈 보고사항(지방산림청 → 산림청) 〉

o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수시보고

o '16년도 산림조사(경영계획구별) 계획량 보고 : 2015. 1월

o '14년도 경영대행 사업 추진실적 보고 : 2015. 1월

o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완료보고 : 2015. 12월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현황 보고(총괄) 보고(경영정보시스템) : 2015. 1월

o 국유림경영계획 실행평가(연간・중간) 결과 보고 : 2015. 1월

o 국유림경영계획 실행평가(예비・최종) 결과 보고 : 2015. 6월, 12월

6. 산림경영임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목 표
◇ '30년까지 국유림률 32% 달성을 위한 공·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o '15년 사유림 매수 8,620ha(사업비 667억 원) ◇ 비예산 국유림 확대로 공익임지 및 산림경영임지 확보 o 사유림 매수 외 교환, 타부처 국유림 사용승인, 보존등기 등 ◇ 보존부적합 재산의 교환·매각을 통한 정리 및 국유림 확대

가. 정책여건

o 산림자원 보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등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국유림 지속적 확대」필요

o 공·사유림 등을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국가 산림경영임지의 안정적인 확보와 산림휴양·치유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체계적인 산림경영 및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대두

o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계 법령에 의한 법정 제한림 등의 매수로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가 동시에 필요

o 국유림 확대재원(세입 증대)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교환, 타부처 국유림 사용승인 등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비예산 국유림 확대가 절실

나. 기본방향

o 국유림 분포률이 낮은 지역에서 산림경영에 적합한 사유림을 집중 매수하되, 거점지역 확보보다는 지역별로 국유림이 고루 분포되도록 추진

o 산림으로 환원할 수 없고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은 경영 가능한 사유림 등과 교환취득으로 처리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제고

o 다른 법률과 공공목적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한 국유림은 매각보다는 공유림 등과 교환하여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

-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매각보다는 국유림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각 추진

o 공공기능과 활용가치가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유재산을 관리

o 관리되고 있지 않은 DMZ지역 산림 등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사용승인, 활성화를 통한 국가직영임지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유림 매수

가) 사업량 및 예산

(단위 : ha, 백만원)

기관별	계		산림경영임지		공익임지						광릉숲 완충지역	
					석공임야		소양강 탁수저감		제주 곶자왈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계	8,620.25	66,705	8,084	57,247	474	2,370	2	300	60	6,000	0.25	788
북부청	202	2,130	200	1,830	-	-	2	300	-	-	-	-
동부청	437	2,330	200	1,160	237	1,170	-	-	-	-	-	-
남부청	2,252	13,805	2,015	12,605	237	1,200	-	-	-	-	-	-
중부청	1,717	16,184	1,717	16,184	-	-	-	-	-	-	-	-
서부청	3,952	25,468	3,952	25,468	-	-	-	-	-	-	-	-
수목원	0.25	789	-	-	-	-	-	-	-	-	0.25	788
제 주	60	6,000.	-	-	-	-	-	-	60	6,000	-	-

→ 본 예산은 부대비(입목조사, 감정수수료 등)가 제외된 순수 토지매입비(목:410)임

※ **산림경영임지** 매수는 실거래 단가를 감안하여 지역별 사업량 및 단가를 조정하여 추진

- (계획) 11,306ha, 500만원/ha ⇒ **(조정) 8,084ha, 700만원/ha**

※ **'15년도 예산 확보(11,783ha, 66,705백만원→ 5.66백만원/ha당)**

- **경영임지 매수 : 11,247ha 56,235백만원**
- **공익임지 매수 : 62ha 7,312백만원**(곶자왈보전림 : 제주특별자치도)
- **대한석탄공사 : 474ha 2,370백만원**
- **수목원 완충지 : 0.25ha 788백만원**

나) 추진요령

① 공통사항

o 국유림 분포률이 높은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국가관리가 꼭 필요하고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지구·지정된 산림을 위주로 매수하고, 국유림 분포률이 낮은 지역은 산림경영에 유리한 사유림을 우선 매수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항에서 공유림 등 매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과 분산 소규모 또는 기존 국유림과 원거리로 이격된 재산(매수기준 불부합 재산)과 또는 재산가격이 고가인 재산은 매수 지양

o 매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연초에는 당해 연도의 목표 물량, 하반기에는 다음 해의 목표 물량 확보
- 매도 승낙된 공유림 등에 대한 정보를 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수 추진
-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과 연계하여 모든 정보가 공유되니 정보를 정확히 입력

o 홈페이지(지자체 포함),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현수막, 전단지, 반상회지, 스티커, 광고 전광판 등 모든 수단과 방법 등을 찾아 연중 활용 홍보 (특히 지역 CATV[케이블 TV], 교차로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추진)

o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매수 절차와 감정평가 자료 제공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행위를 공개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는 임야는 취득 제한 등 엄격 심사 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제외
- 감정평가법인에 자료제공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신뢰수준으로 공개

o 매수대상지내 입목조사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목가격이 재산가격 결정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목조사 실시
- 매수대상지가 30ha 이상인 경우는『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산림조합중앙회, 법인, 기술사사무소, 산림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조사 의뢰하여 현장조사

② 산림경영임지 및 보전림

o 기관별 국유림 분포률과 신청된 물량 및 지가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배정하되, ha당 단가는 집행기관별 차등하여 추진
- 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가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매수 계획량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o 국가 경영임지는 국유림 안 또는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집약적으로 경영・관리가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

o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위주로 매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

- 「산림보호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제외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며 국유림관리소별 계획대비 20%범위 내에서 매수 추진하되, 기관별 연간 매수계획 물량 확보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

o 산림경영임지에 개재·연접된 토지(전·답 등)는 현실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토지인 상태로는 매수를 엄격히 금지함. 다만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거나 현황 임야인 경우에는 현황대로 감정하기로 한 후 매도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ha당 매수 단가를 고려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매수 가능

③ 산림경영임지 매수사업 민간위탁

o 사유림 매수 사업량 일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지역본부장)에 위탁하여 추진(토지매입비 67억원)
- 지방산림청 실정에 맞게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지역을 지정하여 지방산림청의 직접 매수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산림소유자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
- 수탁자가 매수할 대상지역의 범위를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 단위로 지정하거나 지역 산림조합원의 소유 산림을 위주로 추진하되, 계획물량의 목표달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사업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o 산림조합중앙회장(지역본부장)과 지방산림청장이 사유림매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산림조합중앙회장(지역본부장)이 매도승낙서 접수, 현지조사, 매수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유림 매수업무 일체의 대리권을 행사
- 위탁수수료는 매수 실적에 따라 정산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성과분석, 문제 및 개선방안(건의사항 포함) 제출
- 수탁자와 국유림관리소간 매도신청접수 상황을 매월 2회이상 교환
- 수탁자가 전문 인력을 확보 후 사유림 매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
- 인근(유사)재산에 비하여 매수 단가가 높다거나 소유권 이동이 빈번하였던 재산 등은 여러 방면으로 확인 검토
- 현실적으로 매수 단가의 큰폭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므로 올해 조정된 단가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우선 매수하도록 조치
- 상반기 매수 실적을 파악 후 원활한 매수 계획달성을 위하여 사업량 조정

o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산림조합중앙회장(지역본부장)이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행위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

④ 대한석탄공사 산업비림 매수

o 대한석탄공사의 **"산업비림"**은 국가의 산림정책에 따라 사업자가 소유 관리하던 산림으로 그 목적의 달성이 완료된 산림은 산림청에서 매수 후 경영관리하는 것이 당초의 산업비림의 소유 취지를 살리는 것임

-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한석탄공사 소유 임야와 분수림 내 입목을 매수할 것을 요청

o 대한석탄공사 소유 임야 중 임목 생육상태·임목밀도 등 임상이 우량하고 접근로 등 지리적인 여건이 양호하여 장래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하여 경영계획 수립 경영

- 매수 계획량(474ha, 2,370백만원) : 동부지방청 237ha 1,170백만원,
  남부지방청 237ha 1,200백만원

<'산림비림' 등 참고자료>

◇ "산업비림"이란?

○ 구「산림법」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다음자에게 소유를 명하여 소유의무자가 산업용의 특정목적으로 소유하였던 산림임

- **"산업비림"**의 소유를 권장 받은 자 : 펄프제조업자, 탄광업자,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자.

→ 원목을 이용·가공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입목을 육성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벌채로 인한 황폐화 방지 및 필요시 사업자 소유의 원목을 신속히 공급하여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관련법

○ 산업비림의 소유 : 구「산림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법 제16조)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을 재료로 이용하는 기업자에게 산업비림으로 산림을 소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0조)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비림으로서 산림을 소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1. 펄프제조업, 2. 탄광업, 3. 연간 5,000㎥이상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 "분수림" 이란?

○ 산업용 원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국가 산림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묘목을 식재하는 등 입목을 가꾼 산림

◈ 대한석탄공사 산업비림 장기 매수 계획

o 위　　치 : 강원도, 경상북도, 전남, 전북, 충북

o 매수계획 : 805필지, 6,808ha('15년→'19년)

- **연간 1,360ha 규모로 5년간 매수**

o 소요예산 : 경영임지 매수 476억원(ha당 7백만원)

⑤ 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o 강원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소양강 상류인 양구군(해안지구), 홍천군(자운지구), 인제군(가아지구) 지역의 산림과 인접한 고랭지 밭 등을 매수

o 대상지 선정시에는 실제 토사유출방지 효과가 큰 곳을 위주로 매수하여 예산투자의 실효성을 높임

⑥ 제주 곶자왈보전림

o 희귀 산림생태 보전을 위한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단지화가 되도록 매수 추진

- 조천(선흘)·한경곶자왈 지역 위주 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수 추진
- 공유지분의 산림(토지 포함)은 면적 과반수 이상의 지분 소유자가 매도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

※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곶자왈 보전림 매수 대상지를 선정할 것

⑦ 광릉숲 생물보존권지역내 완충지역 보존

o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의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재산(8억원)매수

- 완충지역 지정 현황 : 1,845필지 572ha 4,402억원(남양주 216, 포천 356ha)

* 법적근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19조의3

o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 보존지역 완충지역 매수와 관련하여 재산의 활용도 등 매수 대상지 주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릉숲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매수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2) 교환 제도를 활용한 국유림 확대

o 다른 법률과 공공목적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한 국유림은 매각 또는 교환 취득으로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

- 인·허가 등 협의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 또는 교환을 조건으로 협의

o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써 연고매각 대상 국유림의 처분은 매각 또는 교환으로 추진

o 국유림과 교환취득·처분 때에는 반드시 입목조사 실시. 다만, 공유림 등의 소유자가 입목조사를 생략할 것을 원하면 생략할 수 있음
- 입목조사는 사유림 매수 시 입목조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 감정평가 수수료 및 입목조사 비용은 소유자가 각각 부담

3)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집행

o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연간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득하거나 처분(매각·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을 파악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계상
- 각 지방청은 '16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을 5월말까지 제출
-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에는 취득·처분, 행정재산 사용승인, 개발 및 사용허가·대부, 유가증권 등 국유재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반영

※ 201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산림분야) 국유림관리과-3692('14.10.7)호 참조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토보상 등도 협의단계에서 사전 파악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 후 집행
- 예산집행 전 디지털예산시스템에 일선관서 승인 또는 자체승인 형태로 입력

o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었더라도 환경부가 요청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저촉되거나, 당해 연도『국유재산 종합계획』 및『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처분지침』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말것
- 엄격한 실질심사 후 관련법령 및『국유재산 종합계획』,『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처분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집행
- 당해 연도『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

4) 국유재산 일반관리

o 「국유재산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인 후 제출하되, 청사, 관사, 양묘장, 임도(운재로 시설용 토지 포함), 자연휴양림, 시험포지 등 토지와 산림경영임야로 실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또는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예) 임도부지, 마을숲 조성계획, 저목장 또는 운재로 시설계획 등

o 국유림의 종류가 현실 이용현황 및 장래 활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유림 구분 기준에 따라 재 구분 조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제4호에 따라 대부되지 아니한 불요존국유림이 대부된 국유림과 서로 연접되어 그 합산 면적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

  · 특별시 · 광역시 : 2만㎡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동 지역만 해당)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 면지역은 제외) : 5만㎡ 이상

  · 그 밖의 지역 : 10만㎡ 이상

o 분할 · 합병 등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은 수시로 국유재산대장(카드대장, 전산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즉시 정리한 후 관리

o 각종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신축이 반영된 경우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청사수급관리계획 작성

5) 타부처 미활용 국유림 사용승인

o 기획재정부 · 국방부(DMZ지역) 등 타 부처 소관 국유림을 파악(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일반회계)하여 산림경영관리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경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총괄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o 공용 ·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림은 해당 관리청 소관의 다른 국유림과 교환 형식으로 상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제출

o 조달청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이관 대상으로 분류된 유휴 행정재산 중 우리 청에서 활용하고자 인계하지 않은 재산은 국유림 경영계획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등 개정

o 「국유림법」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을 위한 T/F팀 구성 · 운영

- 본청 및 지방청 관계관을 포함하여 T/F팀 운영

- 개정령안 입안에 필요한 자료 수집 후 토론회를 정례화

라. 추진일정

o 국유림 확대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운영 : '15. 1. 1부터

o 사유림매수

- '15년도 사유림매수 계획 공고 : '14. 12월
- '15년도 사유림매수 추진 상황 : 연중(상반기 : 주간, 하반기 : 월간·주간보고)
- '14년도 사유림매수 실적보고 : '14. 12월

o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등

- '1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 수립 : '15 1월
  ※ 기획재정부(총괄청)에 제출 : '15. 1월
- '1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제출(기획재정부) : '15. 6월
  ※ 각 지방청은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을 6월 1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o '14년도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제출 : '15. 1월

o '14년도 유휴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 '15. 1월

o '14년도 국유재산 매각·교환실적 결과보고 : '15. 12월

o 국유림의 종류구분 및 재구분 : 연중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사용승인 신청 : 연중

7.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등 사후관리 강화

목 표

◇ 국유림 대부등 규제완화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대부·무단점유지 사후관리 강화로 비정상의 정상화 도모

가. 정책여건

o 산촌생활의 편리성과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국유림 이용의 다양화 추세

o 신·재생에너지 등 산업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국유림 이용 요구 증가

o 산림경영 및 임업인을 위한 국유림 대부등 규제개선과 제도변경 요구 증가

o 국유림 대부료등 체납방지를 통한 안정적 국가세입 기여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o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국유림 대부등 업무처리로 대국민 편익 증진

o 투명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 운영으로 대부제도의 공정성 확보

o 국유림의 공공활용을 우선하고 장기대부를 억제하여 국유림의 사유화 방지

o 대면적 대부·사용허가를 최소화하여 국유림 경영임지 감소 방지

o 공용·공공용 사업 대상지는 관리환, 손실보상 또는 교환을 우선 추진

o 엄격한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실관리와 불법행위 근절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유림 대부조건 완화로 국민 편익 증진

o 대부 제한에 따른 생활불편 또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국민수요를 반영한 국유림 대부제도 개선 추진

- 개인재산 활용을 위해 이용 중인 국유림 내 현황 “도로” 및 타법 등에 의해 국유림 내 게재된 “시설물” 또는 “사유토지” 활용방안 마련
- 임업인의 경영지원과 현장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대부요율 검토

o 국유림과 인접·연접하는 사유림 내 산림사업실시 지원을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 제한 완화
- 공·사유림 내 산림사업 실시 지원 진·출입 운재로 시설 사용허가 완화로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성화 기여
- 공·사유림 내 산림사업을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 조건 완화 추진

* 「국유림법」 제21조 제1항 제8호(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국유림을 활용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및 시범사업 지원 확대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내 임간방목 허용 검토
- 산지생태축산 시범사업 실시(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른 대상지 선정·지원

o 긴급 재해복구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림 대부등 허가 간소화 추진
- 국유림 사용허가(25일) 절차에 따른 긴급 재해복구사업의 신속성 결여
- 산지전용과 국유림사용허가 병행 신청 및 조건부 허가로 긴급 재해복구 지원

행위발생 ----------> 30일		사업 승인 고시/허가서 교부		사업실시
산지전용·국유림사용허가 신청 병행신청/사전검토/조건부허가	▷	사업 협의·승인·고시 등	▷	국유림 사용허가서 교부
-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업실행기관-		-산림청(국유림관리소)-

2) 신규 대부등 신청사업 사전검토 강화

o 관련 또는 연계되는 법령의 검토강화로 국유림 대부제도의 신뢰 향상
- 목적사업을 위한 승인·허가·고시 등 관계법령의 이행사항 확인 철저
- 대부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 협의 시 명확한 의견 또는 조건 제시

o 불필요한 자료요구 방지 등 공정하고 투명한 국유림 대부제도 운영
- 추진사업 경제성 등 대부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자료요구 금지
-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한 대부제도 운영의 일관성 유지
- 공개대부 용도 및 대상지 발굴로 일반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

o 대면적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최소화를 위한 사전검토 강화
- 3만㎡ 이상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신청 및 관계법령에 의한 특정사업 협의 시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합동조사 실시
- 광업용, 스키장, 골프장, 신·재생에너지설비시설 등에 대한 지방청 승인 강화

o 2차 대부와 연계되는 선행 대부의 신중한 검토로 대부 면적 최소화
- 풍황계측기설치 사업에 따른 풍력발전 입지사업 연계 검토
- 다수 점유·민원 국유림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후 대부등 처리
- 공용 또는 공공용 대부 또는 손실보상 시 잔여지 활용계획 사전 검토 후 일괄 대부등의 처리 강화

3)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효율적 관리 시스템 마련

o 대부지 실태조사와 문제해결, 정보공유를 위한 대부지 컨설팅제도 운영
- 대부 용도별 현장토론회를 정례화(격월)하여 직원 역량 강화
- 대부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대부지 컨설팅의 날” 운영(5개 지방산림청 격월 순회 실시)
- 대부지 관리 또는 문제점에 대한 처리사례, 의견교환 등 정보공유로 효율적인 국유림 대부지 관리방안 모색

o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제도 운용 강화
- 명의변경, 양도양수, 기간갱신 시 실태조사 강화로 실수요자 확인 철저
- 지역제한 등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 등 제도개선 추진

o 무단점유 유형별 정기 실태조사와 우선 감시지역 감시원 운영
- 무단점유 감시원을 수요가 많은 수원, 서울, 양산 등에 집중 지원
- 무단감시원 패트롤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부서와 협의 예산 증액 추진

4) 지역사회와의 산림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o 지역사회 설명회 실시 등 공동산림사업 참여 확대
-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현장 설명회 개최
- 산림소득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시연 등 신규사업 발굴

o 공동산림사업 실태 점검으로 사업추진 효과 증진
- 실태 점검과 연계한 사업보고회 등으로 우수사례 공유 및 문제점 개선

5) 대부료등 체납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집행 강화

o 대부료등의 체납방지를 위한 계도실시와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실시
- 실태조사에 의한 대부취소 청문실시 및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행정집행
- 실제 이용자 확인 강화 등 주소불명으로 인한 불납결손 최소화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체납액 징수 확대
- 해당 기관·단체 방문 설명 등 적극적 징수 활동으로 징수 확대
- 보존 부적합한 장기 대부 재산에 대한 교환, 매각 추진

라. 추진일정

o 국유림 대부등 컨설팅 운용계획 수립 : 2015. 1월

o 국유림 대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계획 수립 통보 : 2015. 2월

o 국유림 대부 등「국유림법」개정 T/F 구성 운영 : 2015. 2월

o 국유림 경계표주설치 대상지 선정 및 설치계획 수립 : 2015. 3월

o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지 지도점검 : 2015. 8~10월

o 국유림 대부지 등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대책 마련 : 2015. 12월

o 국유림 대부 등 현장컨설팅 운영 : 격월

o 무단점유지 감시 및 정리 : 연중

8.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및 사후관리

목 표

◇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로 산림경영임지 확보

o '15년 계획 : (면적) 1,500ha, (수량) 188천㎥, (사업비) 3,88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산림활용의 다양화 등 등 수요증가에 따른 국가 경영임지 확대 필요성 증가

o 입목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경영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률이 미흡하고, 조림대부·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의 산림경영 포기로 방치 상태

o 소규모로 분산되거나 또는 입목생육이 부진한 대부·분수림에 대한 입목매수로 적극적인 산림경영이 부진

나. 기본방향

o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이 관리하는 대규모 조림대부·분수림의 입목매도승낙 유도 및 우선 매수로 국유경영임지 확보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시설물·타용도 점유, 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실시 여부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o 양도양수 또는 명의변경 심사 기준 강화로 불법 전매행위 차단 추진

o 벌기령 단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검토 강화로 수확벌채 후 반환 유도

다. 세부추진계획

1)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o 사업량 : 1,500ha, 188천㎥(3,380백만원)

(단위 : ha, 천㎥, 백만원)

구 분	총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제주도
면 적	1,500	250	500	250	260	200	40
수 량	188	30	65	30	33	25	5
예 산	3,380	540	1,166	540	594	450	90

o 매수안내

-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계획 공고로 사업추진 안내('15. 1월에 산림청·제주특별자치도·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 홈페이지)
- 조림용 수대부자 및 분수림 설정받은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입목매도 권유

o 매수대상지 선정

- 매도승낙된 임지는 입목수량·추정금액, 매수 우선기준 등 입목매수 예정지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관리

o 입목수량 조사

- 매수대상 면적에 따라 직접 또는 의뢰 조사를 실시하고 입목수량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제시하여 가격감정을 의뢰(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
- 입목조사 시 고사목·산불 및 병해충 피해목, 기타 용재 가치가 없는 입목과 국가소유의 입목은 반드시 제외하여 평가

o 예정가격 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평가된 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
- 평가법인의 입목수량 및 가격산출 근거와 설명서를 확인하여 검수

o 대상지 내 임도시설에 대한 조사·확인 강화로 시설보상 소송 방지

- 입목매도자의 자체 임도 등 시설 여부 확인과 사전 협의 강화
- 계약서 또는 감정평가 등에 분명한 사실관계 언급으로 보상소송 미연 방지

o 대부지(분수림) 소멸통지 및 국유림 종류 재구분 실시

- 입목대금 지급과 동시에 수대부자 등에게 서면으로 대부계약(분수림 설정)이 소멸 통지
- 조림대부·분수림의 지번 단위 매수로 일부 매수 및 반환에 따른 불요존 국유림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주의

2) 조림대부·분수림설정지 사후관리 강화

o 대부·분수림 내 시설물 일제조사 후 점유현황별 처리방안 수립

- 사업계획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 이외의 무단시설물 집중 단속
- 양도양수 또는 명의변경 심사 기준 강화로 불법 전매행위 차단

o 벌기령 단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검토 강화로 벌채 후 반환 유도
-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와 현저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조림대부 또는 분수림 경영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기존 입목에 대한 수확벌채 유도

o 입목매수 우선순위 기준 조정으로 관리양호 대상지 우선 매수
- 무단점유 방치 등 계약 위반행위 등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입목매수 우선순위 조정

o 입목매수 후 국유림 종류 재구분(불요존→요존국유림)과 산림조사 또는 경영계획 수립으로 적정 산림사업 적극 실시

라. 추진일정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사업계획 공고 : 2015. 1월

o 조림대부·분수림설정지 실태조사계획 수립 : 2015. 2월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추진 및 결과보고 : 연중

9. 국가소송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

목 표

◇ 국가소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유재산권 보전
◇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이행 철저로 소유권 확보

가. 정책여건

o 정보공개 등 사회여건 변화로 국가소송은 감소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국유화된 무주부동산 및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소송이 증가

o 일선 소속기관 국가소송 수행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대응능력 미흡

나. 기본방향

o 전문성이 부족한 국가소송 수행자의 실무능력 배양

o DMZ일원 지적복구 임야에 대한 산림청소관 국유화 추진

o 지적관련 공부정리 등 국가소유권 확보 조치철저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가재산 소유권 보전을 위한 국가소송의 적극 대응

o 전직세무공무원 불법매각재산 자진반납권유 및 소송제기 환수

- 원고 환수소송 진행 중 6필지 14ha
- 소송환수 준비 131필지 58ha(가처분 완료)

2) 국가소송 승소율 제고

o 산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이나 복잡한 유형의 고액소송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

- 골프장 대부료 관련 소송, 헌법소원 청구사건 등

o 공익법무관(6명),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 제고

3)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o 국 등기된 관리청 미지정 임야 관리청 지정신청

- 국 등기되고 관리청 미지정된 임야 2,733필지 167,093,981.5㎡ 현장조사 계획수립(2015. 1. 10.)
- 산림청 관리 가능재산은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관리청 지정신청 보고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 등기재산 조회)

o DMZ지역 지적복구 임야에 대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화 추진

- 강원도 양구군 DMZ지역 980필지 4,520ha 관리청 지정신청

o 토지(임야)대장·국유재산대장·등기부·지적도등 지적공부 확인철저

4) 국가소송수행 지휘체계 확립

o 국가소송의 소제기, 응소·판결 등 진행상황 보고 철저로 공동대응 강화

o 국가소송 수행자의 불변기간도과 등 소송해태사례 방지 철저

o 국가소송 사건 처리부 및 소송기록부 작성 비치

5) 국가소송 수행자의 소송대응 능력 배양

o 국가소송 전문교육 실시 및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 의무화

o 관할 검찰청의 국가소송 실무교육 이수

o 기 발간 배부한 국가소송관련 업무편람을 적극 활용 실무능력 향상

- 국가소송실무 및 사례집, 국가소송백서, 국유재산등기 실무편람

라. 추진일정

o 국가소송수행 결과분석 및 2015년 소송수행계획 수립

o 국가소송 수행자 전문교육 이수 : 연중 수시(산림교육원 교육 2월)

o 국가소송수행 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5일

o 국유재산 관리청 미지정 임야 현장조사계획 수립 : 2015. 1. 10.

o 국 등기 재산 관리청 지정 신청 : 매분기 익월 5일

10. 지방산림청 업무효율성 제고

목 표

◇ 국유림행정 일선 기관의 원활한 운영지원으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가. 정책여건

o 국유림행정 업무특성상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접근성 저하

o 현장중심의 업무로 자율과 창의적 활동이 요구

o 새로운 임업기술이나 선진화된 임업경영기법 등 각종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

나. 기본방향

o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o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 선진 임업기술과 행정시스템에 대한 체험위주의 국제적 안목배양과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o 산림수련관을 운영하여 산림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

o 산림관련기관·단체의 교육, 회의 등을 통한 산림경영의 역량강화 도모

o 산림수련관의 안전관리 철저 및 쾌적한 편의제공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1) 지방산림청 운영지원

o 국유림경영·관리분야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20백만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관리분야 공무원 선발 포상
- 지방청 :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

o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해외 정보교류를 위한 정책연수
- 국유림경영, 산림사업 등 실무교육 위주의 해외연수 추진 방침에 따라 일본과의 현장 교류와 연계한 연수 추진(5월)

o 산림사업 관학연구 개발비 지원(지방청 수요조사 결과) : 128백만원

o 지방청 및 관리소 관사 보증금 인상액 지원 : 20백만원
- 상반기 보증금 인상이 필요한 기관은 소요금액 등 제출

2) 산림수련관 운영・관리

o 수련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 기능저하 등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 조치
- 건물 등 시설물 주변 또는 진입로 주변의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산림수련관 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및 이용자 안전시설 관리 철저

o 수련관의 노후시설 분야는 연차적으로 보수공사 추진
- 노후시설은 지방산림청별 대 수선비를 우선 반영하여 보수 추진
※ 보수 규모가 큰 경우 지방청 기본경비 예산반영 시 별도 사업예산 요구

o 산림수련관 시설물 운영상태 등 현장 점검(상반기)

o 수련관 운영관리
-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낭비요인 수시확인 개선
- '15년도 운영예산 : 259,879천원

기 관 별	북 부 (설악산)	동 부 (양 양)	남 부 (포 항)	중 부 (신진도)	서 부 (변 산)
금액(천원)	26,249	41,966	52,165	79,128	60,371

※ 수련관 안내실에 지역특산 임산물 판매처 안내서 및 홍보물 비치

라. 추진일정

o 지방청 소속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 2015. 상반기

o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 2015. 11~12월

o 국유림경영・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분야 우수공무원 선발・포상 : 2015. 11월

o 산림수련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실태점검(지방산림청) : 연중

o '14년도 산림수련관 이용현황 등 실적 제출 : '15. 1월

11. 산림복지 정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정

목 표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하위법령 마련, 신규제도 도입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 등 산림복지 정책 추진

* 산림복지 수혜인원 : ('14.11월) 1,644 → ('15) 1,800 → ('17) 2,000만명

가. 정책여건

o 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문화, 휴양, 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

-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등 사회여건변화로 야외 휴양수요 급증

o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수요는 연간 1,270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함

o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휴양, 교육, 치유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o 하위법령 마련, 규제심사 등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o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반영, 연구용역 등 차질없는 사전준비

o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및 진흥원 설립

다. 세부추진계획

1)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o (출생기~유아기) 숲태교 프로그램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 산모 및 태아의 건강·감성 증진을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 체험·놀이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원 확대 조성(9개소) 및 운영

o (청소년기～청년기) 산림체험·교육 확대 및 등산・레저 활동 지원

- 산림교육센터 조성·운영, 방과후 숲교실 등 청소년 녹색체험교육 확대

  * 산림교육센터 조성(2개소, 장성, 청도), 설계(2개소, 청주, 완주)

- 전국 단위의 산악레포츠 대회 개최 등 산악레포츠 활성화

- 숲길 조성을 확대하고 옛길・임도 등과 연계한 전국 숲길 네트워크화

  * 숲길 네트워크 구축 : ('14까지) 2,021 → ('15) 200 → ('21까지) 7,614km

o (장년기～회년기) 산림휴양・치유서비스 및 산림 요양・장묘서비스 지원

- 지역별로 특색있고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조성 확대

  * 자연휴양림(12개소), 산림욕장(4개소), 치유의 숲(26개소) 등

-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 인프라 구축 및 인식 제고

2) 산림복지법 제정 및 제정에 따른 차질없는 후속조치

o 하위법령 마련, 규제심사, 관련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 대통령령 53조항 :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소외자, 기초조사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제, 생태적산지이용기준 등

- 농림축산식품부령 19조항 : 기초조사 방법, 산림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실시계획 신청 절차, 준공검사 절차, 수수료 납부 절차 등

-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o 산림복지 기초조사 실시 및「산림복지 진흥계획('16～'20)」수립

- 주요내용 : 목표, 추진방향,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산림복지전문가, 산림복지시설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확충 계획, 운영 평가 및 향후 개선

o 산림복지 정보체계 구축 및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산림청 차장) 부위원장(호선, 1명), 총 20～30명으로 구성

- 심의 내용 : 진흥계획의 수립·변경, 산림복지서비스의 인증, 산림복지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산림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1.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분야의 전문가 6인 이내
2.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3인 이상 6인 이내
3. 산림청의 산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1인
4. 농업・농촌・농지 및 식품 관련 전문가 1인
5. 중앙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전・현직 위원 중 각각 2인 이내
6. 농림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 및 안전처의 고공단 7인 이내
7. 민간단체 3인 이내

o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계획」수립(매년)

- 주요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발급계획, 발급기준 및 비용부담 등

3) 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신규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

o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도

- 기존 산림휴양 시설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바우처 가맹점) 등록
-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복권기금 중 공익배분 분야 등) 확보
- '산림복지카드(가칭)' 지급을 위한 대상자, 신청방법, 발급처, 지원금액,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 마련

o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 제도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취소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국립산림과학원)
- 산림복지전문업 관련 전문가, 단체 의견수렴 등

o 산림복지진흥부담금 제도

- 부담금 징수 체계, 부담금 세부운용계획 수립 등
- 부담금 징수에 따른 요금인상, 세입 등 관련 부처 협의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및 진흥원 설립

o 설립위원(7명 이내)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

- 법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문화·휴양 치유, 사회복지, 행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진흥원 설립 준비, 진흥원의 정관 마련 등

o 조직·인력, 사업 및 운영계획 수립, 운영비 등 예산 관련부처 협의

- 산림복지문화재단,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및 신규사업에 따른 조직 신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조직 및 주요사업>

【조직규모】

o (출범당시) 총원 118명(임원 8명, 직원 110명), 5부 19개 팀

※ 주요자산 :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영주·예천), 산림교육센터(횡성, 청도), 산림복지나눔숲(칠곡), 치유의 숲(횡성, 장성) 등

o (중·장기적) 산림복지단지,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산림교육센터, 수목장 등 신규조성에 따라 규모 확대

【주요사업】

o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사업

o 산림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

o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산림복지단지의 타당성조사

o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o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사업

o 국내외 산림복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o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산림복지시설 위탁운영,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 치유지도사 자격시험 등)

라. 추진일정

o 숲태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5. 3~10월

o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 상반기

o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 연중

o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연중

o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 추진 : 연중

o 하위법령 마련, 규제심사, 관련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 연중

12.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목 표

◇ 지역별 차별화된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외계층 배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서비스 질 제고

o 산림휴양 인프라 확대 : ('14.11월) 335 → ('15) 340 → ('17) 360개소

가. 정책여건

o 계층별, 지역별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서비스 요구 증대

*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 증가 : ('09) 969 → ('11) 1,069 → ('13) 1,253만명

o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은 부족하며, 정부 외에 민간의 참여는 저조함

* 사유 자연휴양림 평균 수지현황('13) : 총수입 260백만원, 총지출 294, 적자 33

o 국·공립의 경우 주중 운영활성화 제고 및 경영수지 개선이 문제점으로 지적

* 국립 자연휴양림 적자액 : ('10) 13 → ('11) 18 → ('12) 31 → ('13) 46억원

o 아울러, 교통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필요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부족 지적('13, 국정과제 평가), 교통약자 시설 부족('14 국정감사, 신정훈 의원)

나. 기본방향

o 다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하고, 급증하는 수요에 맞추어 숲속야영장 제도화

o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휴양시설 타당성조사, 인증제 도입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

o 국·공립 시설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고, 노후시설 보완, 경영개선 지원 등으로 사유자연휴양림 활성화

o 누구나 불편없이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배려한 산림휴양서비스 확대하고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캠페인

다. 세부추진계획

1) 다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으로 수요 충족

o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 ('14) 90개소, 351억원 ⇒ ('15) 100개소, 402억원

- 조성(11) : 국립 1, 공립 10(경기 2, 충북 2, 전북 1, 전남 2, 강원 1, 경북 2)
- 보완(89) : 국립 37, 지자체 52(대전 2, 경기 2, 강원 2, 충북 8, 충남 9, 전북 4, 전남 8, 경북 6, 경남 8, 제주 3)

o 산림욕장 : ('14) 8개소, 12억원 ⇒ ('15) 8개소, 14억원

- 조성(4) : 경기 1, 전북 1, 전남 1, 경북 1, 보완(4) : 강원 4

o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14) 10개소, 135억원 ⇒ ('15) 8개소, 118억원

- 조성(8) : 부산 1, 경기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경북 1, 경남 2

o 기타 산림휴양시설 : ('14) 2개소, 28억원 ⇒ ('15) 4개소, 38억원

- 계속(2) : 보은 산림바이오휴양밸리(3년차), 울진 백암숲 체험장(2년차)
- 신규(2) : 옥천 휴-포레스트, 영동 웰니스단지

  * 신규 2개소는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계획

2)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휴양법 개정)

o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대상지에 대한 조성 前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 타당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시설별 경관, 위치 등 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

  * 평가 기준 : 경관, 위치, 면적, 수계, 휴양유발, 개발여건 등

o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철저한 운영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

- 인증제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신뢰성 있는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

o 산림휴양시설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시 의제처리 확대

- 의제처리 범위 : (기존) 국유림 → (개선) 국·공·사유림
- 대상시설 : (기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 (개선) 기존 시설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추가
- 의제처리 내용 : (기존) 산지전용신고 → (개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하천점용 허가, 전용상수도 설치 인가, 임목벌채 허가·신고 등

3) 급증하는 수요에 맞추어 숲속야영장 모델 제시 및 제도화

o 도시근교 국유림에 국립숲속야영장 시범 조성(1개소, 총 20억원)

- 산림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숲속야영장 모델 제시('15, 설계)

o 휴양법 개정에 따라 숲속야영장 시설기준 마련(휴양법 하위법령)

- 연구용역('14, 휴양복지학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종류 및 설치기준 마련
- 현장에 맞는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아웃도어, 캠핑 협회 및 업체 의견수렴

4) 사유자연휴양림 활성화 등 민간의 투자 및 참여 확대

o 관련 전문가, 지자체, 협회 등으로 구성된 자연휴양림발전 협의회 운영

- 분기별 운영을 정례화 하여 경영개선, 안전관리 등 네트워크 강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해「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매뉴얼」제작·보급

o 사유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지침」개정 추진

- 기존 : 이율 3%, 조성만 가능 → 개선 : 이율 2%, 조성·운영 시로 확대

o 사유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휴양법 개정

- 설치 가능 시설에 소득시설 등 추가

o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의 이용료(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 등) 징수 근거 마련

- 이용료 원가계산, 고객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기재부 협의

5) 맞춤형 프로그램·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o 가족단위 체험형, 치유형, 교육형 등 특성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 획일화된 저가 체험프로그램은 지양하고 고품격 유료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역자원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숙박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 통고산(금강소나무 생태탐방), 용화산(에코힐링캠프), 청태산(가족캠프)

o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 자연휴양림 예약 체계 개선

- (현행) 성수기 추첨제 → (개선) 주말, 성수기 추첨제

6)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 숲체험 기회 확대

o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숲체험 기회 제공 확대

-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확대 및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휴양림별 지역 장애인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장애인 숲체험 행사 추진
  * 숲으로의 아름다운 동행, 장애인 숲체험 활성화를 위한 숲길 트레킹 등

o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ARS 예약제 확대 시행

- ARS 시스템 운영 장비도입 및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추진(상반기)

o 산림복지 시설의 계단, 문턱 등을 제거하는 숲체험 나눔사업 추진

-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보완사업 실시(국립, 4억원)

7)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 및 이용요금 현실화로 경영수지 개선

o 주중 가동률 제고를 위해 상품 개발, 단체연수 전문업체와의 MOU확대

- 휴양림을 플랫폼으로 한 '숲으로 떠나는 힐링열차', '기차로 떠나는 캠핑' 등 주중 상품 개발·운영 및 홍보강화로 브랜드화
- 국내 여행사와 공동으로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투어 상품 개발

o 언론,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강화

- 일간지 주말 섹션을 통한 기획보도,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의 광고판 활용
- 투어상품 홍보 블로그 운영,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o 펠릿보일러, 태양광 시설확대로 전기료, 난방비 등 운영경비 절감

- 산림문화휴양관 등 규모가 큰 시설부터 펠릿보일러 확대 설치
  * 펠릿 보일러 확대 : ('14) 34대 → ('15) 39대 → ('17) 49대, 테스트하우스 조성 : ('14) 1동 → ('15) 5동 → ('17) 13동
-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지열 등 에너지 절약시설 적극 도입

8) 자연휴양림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올바른 휴양문화 캠페인

o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문화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추진

- 웹드라마 제작·보급, 올바른 휴양문화 선포식, 기업과 연계한 캠페인 등
  *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 산림은 있는 **그대로** 지키고, 휴양은 **제대로** 즐기기

o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8가지 수칙 지키기, CI, 인포그래픽 보급

- 8가지 수칙 : 쓰레기 되가져오기, 산불조심, 기본 규칙 지키기, 타인 배려하기, 야생 존중하기, 지역문화 즐기기, 도시문명 최소화 등

라. 추진일정

o 자연휴양림 계속 및 보완사업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 : 2015. 2월

o 산림욕장 조성(보완)계획 수립 승인 및 공사 발주 : 2015. 2월

o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공사 발주 : 2015. 2월

o 사유자연휴양림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15. 2월

o 산림휴양시설 조성 추진상황 상반기 현장점검 : 2015. 6월

o 산림휴양시설 조성 추진상황 하반기 현장점검 : 2015. 10월

o 국립자연휴양림 ARS 예약제 시범운영 : 2015. 상반기

참고	2015년도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보완 현황

가. 자연휴양림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개소별
합 계	100	40,152	
설 계	3	1,290	강원(철원 500), 충북(단양 500, 제천 290)
조 성	8	8,992	
<1년차>	2	1,050	
전 남	1	250	구례(250)
경 북	1	800	청도(800)
<2년차>	3	1,340	
경 기	1	240	안성(240)
전 북	1	100	김제(100)
전 남	1	1,000	본청(1,000)
<3년차>	3	6,602	
경 기	1	364	연천(364)
전 남	1	3,238	진도(3,238)
경 북	1	3,000	본청(안동호반 3,000)
보 완	89	29,870	
국 유	37	12,802	국유자연휴양림(유명산 등 37개소 12,802)
공 유	52	17,068	
대 전	2	1,150	서구(장태산 400), 동구(만인산 750)
경 기	2	478	본청(200), 의왕(278)
강 원	2	400	본청(200), 양구(200)
충 북	8	3,400	본청(250), 옥천(100), 괴산(500), 영동(600), 청원(1,000), 단양(100), 충주(250), 증평(1,000)
충 남	9	2,220	본청(400), 천안(190), 보령(180), 아산(180), 논산(200), 청양(200), 홍성(190), 예산(500), 부여(180)
전 북	4	770	본청(300), 완주(150), 장수2(320)
전 남	8	2,650	여수(300), 구례(500), 고흥(250), 보성(400), 화순2(400), 장흥(200), 해남(600)
경 북	6	2,200	본청(팔공산 700), 문경(100), 영천(500), 의성(200), 경주(500), 포항(200)
경 남	8	3,100	본청(850), 거제(200), 양산(200),창녕(450), 하동(700), 산청(350), 함양(200), 합천(150)
제 주	3	700	본청(200), 제주(200), 서귀포(300)

나. 산림욕장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개 소 별
산림욕장	8	1,419	
<조성>	4	1,019	경기(안산 219), 전북(본청 400), 전남(담양 200), 경북(포항 200)
<보완>	4	400	강원(고성 100, 화천 100, 평창 100,. 양양 100)

다.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개 소 별
합 계	8	11,775	
조 성	8	11,775	
<1년차>	1	600	부산(사상 600)
<2년차>	2	3,000	경북(영천 1,000), 경남(함양 2,000)
<3년차>	1	2,000	경남(의령 2,000)
<4년차>	2	3,300	경기(가평 118), 전북(무주 2,765)
<5년차>	2	3,292	충북(증평 2,000), 충남(금산 1,292)

라. 산림휴양인프라 구축사업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개 소 별
2년차	1	1,000	제주(서귀포 1,000)

마. 산림휴양시설(일반회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개 소 별
합 계	16	4,770	
제주위탁자연휴양림 지원	2	400	제주(절물 200, 서귀포 200)
사립자연휴양림 지원	10	500	10개 사립자연휴양림(각 50백만원)
산림바이오 휴양밸리 조성	1	2,500	보은(2,500)
휴-포레스트 조성	1	500	옥천(500)
웰니스단지 조성	1	500	영동(500)
백암 숲체험교육장 조성	1	300	울진(300)

13.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강화

목 표

◇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가. 정책여건

o '98년 이전 개장 자연휴양림이 전체 자연휴양림의 39%를 차지하며 시설물 기능 저하, 이용객 휴양수요 충족 미흡, 안전사고 우려 원인

* 조성된 지 15년 이상 휴양림 : 61개소(국립 19, 공립 33, 사립 9)

o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은 산림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있고 입지적 특성상 초동대처가 어려운 상황

-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운영 시 자연재해, 인공재해, 안전사고 등 각종 복합재해에 대한 진단 및 대응시스템이 없는 실정

o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대비 체계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필요

나. 기본방향

o 안전점검, 모의훈련 정례화 등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o 자연휴양림 시설물 정밀진단, 보완사업으로 노후시설 정비

o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에 따른 차질없는 후속조치

다. 세부추진계획

1) 안전점검, 모의훈련 정례화 등으로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o 안전점검 관리자를 지정하고,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4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재난·안전점검을 실시

- 4단계 : 매일점검, 월별점검, 반기점검, 특별점검

<안전점검 정례화(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지침)>

• 매일점검 :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가 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매일 실시 • 월별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전반적인 시설물 등 안전점검 • 반기점검 : 중앙점검반과 함께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 •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o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모의훈련을 의무화하여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의 유사시 대응 능력을 강화(연 2회 이상)

- 모의훈련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미흡·개선점은 다음 모의훈련 시 반영
  * 사립의 경우 인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역팀 훈련시 참여토록 함

o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자연휴양림내 안전한 먹는 물 제공

- 음용수는 연 4회(분기별), 물놀이장 등의 생활용수는 연 2회(반기별) 실시
-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객실 등에 신속히 공지 및 수질 개선조치

2) 자연휴양림 시설물 정밀진단, 보완사업으로 노후시설 정비

o (국립)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보완사업 추진

- 시설물의 노후상태, 성능저하, 구조성능 평가 등 안전점검 추진
  * 대상 : 10년 이상이 경과한 숙박시설(257동)
- 조성된 지 15년 이상 된 자연휴양림을 우선으로 노후시설 보완
  * 대상 : 숲속수련장(12), 숲속의집(103), 산림문화휴양관(10) 등

o (공·사립) 예산확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밀진단, 보완사업 추진

- 지자체별 위험, 노후화정도에 따라 '15년 공립(16개소), 사립(2개소) 우선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16년부터 보완사업 추진
  * 정밀진단 신규예산('15) : 1,530 백만원(개소당 85백만원)
- 정밀실태조사('15) : 위험지 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 → 유지관리('16 이후) : 보수·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3)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o 자연휴양림 안전관련 시설기준(재난경보시설, 비상대피시설 등) 마련(휴양법 하위법령 개정)

- (공립) 지자체별로 현황 파악,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에 따라 시설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
- (사립)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사업에 이미지개선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

o 재난안전관리 기본원칙, 상시/정기 안전점검, 보험가입 의무화 등「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제정

- 권역별로 나누어 국·공·사유 자연휴양림 담당자 워크숍 개최(상반기) 및 자체 교육 실시

  * 자체 교육 : 국·사유-국립 지역 팀에서 실시, 공유-해당 시·도에서 실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주요내용>

- 전국 산림휴양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의무화
- 자연휴양림의 여건에 맞는 안전점검 계획 수립,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운영·관리자의 사고조치 및 보고
- 각종 재난에 맞는 매뉴얼, 안전수칙 제작 및 관련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산사태, 산불, 해빙기 집중 재난안전 관리기간 설정・운영

라. 추진일정

o 산림휴양시설 정밀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 2015. 2월

o 안전관리 지침 권역별 워크숍 : 2015. 4월

o 산림휴양시설 정밀실태조사 조성사업 추진 : 2015. 4~12월

o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예산조정 및 확보 : 2015. 6~12월

o 산림휴양시설 모의훈련 실시 : 상/하반기 1회씩

14.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활성화

목 표

◇ 산림치유 공간 조성,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통한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 제공

o 치유의 숲 조성·운영 : ('14) 29개소 → ('15) 36개소

o 산림치유 서비스 수혜인원 : ('14) 110만명 → ('15) 130만명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 ('14) 170명 → ('15) 300명

가. 정책여건

o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o 최근 산림치유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산림치유 효과규명을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o 국·공립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 공간 확대, 양성기관 확대 지정 등으로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나. 기본방향

o 국·공립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관리 강화

o 민간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o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홍보강화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계속

o 제도개선을 통한 산림치유 활성화 유도

o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 조성

o 치유의 숲을 확대 조성하여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대응

- ('14) 총 29개소(4개소 운영, 2개소 시범운영, 23개소 조성) → ('15) 총 36개소(8개소 운영, 28개소 조성)

※ 국립 치유의 숲 조성(7개소) : 계속조성 3개소(양평, 울주, 강릉), 신규설계 4개소(예산, 제천, 김천, 곡성)

※ 수시배정 사업인 '산촌연계형 치유의 숲(곡성)' 조성사업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기재부와 조속히 협의('15년도 1분기 중 예산배정 추진)

o 중・장기 체류가 가능한 산림치유단지 신규 조성 기반 마련

-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예산확보 및 운영주체 결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기재부・전북도 등) 협의 추진

o 연 2회(상·하반기) 국·공립 치유의 숲 조성·운영 현황점검을 실시하여 차질 없는 사업진행 도모

- 2016년 지특회계의 경우 예산심의회를 거쳐 신청토록 유도('15. 3월)
- 조성사업시 기본계획 단계에서 치유환경 조사 및 프로그램개발과 향후 운영방안(산림치유지도사 배치 및 운영인력 반영)을 고려하도록 심사

2) 민간 산림치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o 임업인 등 사립 치유의 숲 조성 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한 지원 추진(지특회계 보조금 제도 활용)
- 일반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표준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작·보급
- 녹색자금('15년 146백만원)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o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유도

- 전문인력이 상시고용된 사회적기업·협동조합과 위탁사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전문일자리로 전환 유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산림복지 전문업 도입 준비 및 민간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가칭 '산림치유지도사 협회' 설립 지원

3)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홍보강화

o 치유의 숲 통합 BI 개발 및 산림치유지도사 역량강화 교육실시

- 국립 치유의 숲을 기본으로 하여 공·사립 치유의 숲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여 보급
- 2015년 국·공·사립에 배치되는 산림치유지도사를 대상으로 산림치유 정책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

o 산림치유 프로그램 표준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 각 치유의 숲별 특화 프로그램 시행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추진(산림치유 관련 연구와 연계하여 치유효과 측정 계속)

o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 및 사례 공유를 위한 홍보 확대
- 대중적인 산림치유 관심사 및 주요이슈, 전문가 칼럼 등을 적극 발굴하는 등 구성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산림치유 전문지(에코힐링) 발간 추진
- 산림치유 수기공모전 실시 및 공모작 발간
- 주요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산림치유의 과학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

4)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o 산림치유지도사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하여서는 연1회 지도점검 실시
- 산림 및 보건・의학 교육기능이 있는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기관・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추진
  ※ 양성기관(9개) : 가톨릭대('12.8월), 순천대, 한림성심대, 광주보건대('13.7월), 충북대, 전북대, 전남대, 동양대, 대구한의대('14.5월)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이수평가 시험을 통한 양성계속
- 평가관련 업무를 산림복지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이수자격 평가시험(연 1회) 추진
  ※ 산림치유지도사 : ('14.11월) 170명(1급 34명, 2급 136명) -> ('15년) 300명

5) 제도개선을 통한 산림치유 활성화 유도

< '15년도 제도개선 사항(법령개정 추진) >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치유의 숲 조성 시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에 대하여 안전기준, 시설규모 등에 대한 인증제 도입
- 치유의 숲 이용료(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 징수근거 마련

< '15년부터 달라지는 사항(법령개정 완료) >

o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 및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기준 마련
- 활동범위 확대 : (당초) 치유의 숲 + (변경)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
- 배치기준 마련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및 2급 1명 이상

o 특·광역시 및 도서지역의 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준 완화
- 특·광역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0ha→25ha 이상으로 완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 30ha→15ha 이상으로 완화
- 도서지역 :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ha이상(신설)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취소 규정 마련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및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양성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o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증(기술사 및 기사 등)을 추가로 인정하여 자격취득 요건 완화

6) 민·관 협력을 통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o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요보호아동(복지부, 정몽구재단), 다문화가정(복지부), 북한이탈주민(통일부), 학교폭력피해자(교육부), 보호관찰청소년(법무부) 등

o 스트레스 직군을 대상으로 PTSD[20] 완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AI방역공무원(안행부, 지자체), 소방공무원(지자체), 경찰공무원(경찰청), 사회복지공무원(지자체) 등

o 건강상태에 따른 면역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고혈압·당뇨환자(보건소), 재가 암환자, 도시거주자(서울시) 등

o 태아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 치유의 숲을 활용한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숲태교 수혜인원 : ('14년) 832명 -> ('15년) 1,000명

라. 추진일정

o 국립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 2015. 2월
o 공립 치유의 숲 예산심의회(신규 및 계속사업) : 2015. 3월
o 산림치유지도사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 2015. 3월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이수자격 평가시험 : 2015. 8월
o 권역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현황 점검 : 연 1회
o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 연중
o 치유의 숲 운영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2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

참고 2015년도 치유의 숲 조성 및 보완현황

(단위 : 천원)

사업 구분		2015년(국비)	비 고
계		19,400,000	
국립 (조성 7)	소 계	5,830,000	7개소(신규 4, 계속 3)
	북부청(양평)	1,750,000	조성2년차
	동부청(강릉)	2,650,000	조성2년차
	남부청(울주)	-	조성1년차
	남부청(김천)	243,400	설계
	중부청(제천)	243,300	설계
	중부청(예산)	243,300	설계
	서부청(곡성)	700,000	설계
공립 (조성 21, 보완 1)	소 계	13,570,000	22개소(설계 6, 조성 15, 보완 1)
	부산	1,500,000	조성1년차
	대구 달성	150,000	설계
	대전	1,000,000	설계
	경기 가평(본청)	300,000	조성3년차
	경기 포천	321,000	조성2년차
	경기 양평	300,000	조성1년차
	강원 영월	200,000	조성2년차
	충북 진천	100,000	설계
	충북 충주	1,700,000	조성2년차
	전북 순창	100,000	보완
	전남 나주(본청)	400,000	조성2년차
	전남 화순	1,849,000	조성4년차
	전남 광양	450,000	조성3년차
	전남 고흥	2,400,000	조성2년차
	전남 강진	-	설계
	전남 해남	-	설계
	전남 완도	-	설계
	경북 포항	600,000	조성1년차
	경남 합천	300,000	조성3년차
	경남 창원	800,000	조성2년차
	경남 함양	600,000	조성2년차
	경남 거창	500,000	조성1년차

15.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 인프라 확대

목 표

◇ 친환경적인 수목장림 홍보강화로 수목장림 인식 전환 및 수목장림 인프라 확충

o 국・공립 수목장림 조성・운영 : ('14) 3개소 → ('15) 5개소

가. 정책여건

o 전국 묘지면적은 국토의 1%에 해당하는 약 10만ha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900ha 묘지 발생

o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편리성 선호,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치공간은 부족한 실정

o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수목장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 수목장림 조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

나. 기본방향

o 국·공·사립 수목장림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수목장림 수요 충족

o 친환경적인 자연장인 수목장림의 홍보강화로 대국민 인식 전환

o 범국민 수목장림 실천운동 및 '작은 장례' 운동 전개

다. 세부추진계획

1) 수목장림 조성 확대

o (국립) 중부권에 제2의 국립 수목장림 조성 계획 수립 및 지방산림청별 모델 수목장림 조성지 발굴

- ('15년) 중부권 국립 수목장림 조성 계획 수립
- 지방청별 모델 수목장림 조성을 위해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실시

o (공립) 광역시·도별 모델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고(지특회계)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참여 유도

- 공립 수목장림 1개소(충남 보령) 조성 추진 중(계속)

o (사립) 사립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제도지원 정리 및 확대
- 공동산림사업 모델 개발 및 수목장림 조성 사업에 대한 장기·저리 정부 융자지원으로 활성화 도모
-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등 산림사업 우선 지원 및 안내

2) '작은 장례' 문화 확산과 수목장림의 건전한 운영·관리

o 수목장림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등 추진
- 공립 수목장림 조성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확대 노력
- 사립 수목장림 조성·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제도 마련

o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노력
- 일반 국민이 수목장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TV, 신문, 기획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강화(산림청·유명인사 참여운동 전개 등)
-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 안내 리플릿 배부로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o 불법 수목장림 특별단속 정례화로 산림훼손 및 유가족 피해 사전 예방
- 산림사법특별대책과 연계하여 산림청·지자체 합동점검으로 관련 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추진
- 수목장림 조성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 및 불법 산림훼손 행위 단속

라. 추진일정

o 중부권 국립 수목장림 조성 기본계획 수립(신규) : 연중

o 지방산림청별 국립 모델 수목장림 조성 대상지 선정 : 연중

o 광역시·도별 공립 모델 수목장림 조성 대상지 선정 : 연중

o 수목장림 제도 이해를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 연중

o 불법 수목장림 합동점검 및 위반행위 단속 : 연중 1회

참고	수목장림 조성기준

구 분	국・공유	사 유			
		개인・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 인
조성권자	산림청장, 지자체장 등	개인, 가족	종중, 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 재단법인
허가권자	-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
조성절차	고시	신고	신고	허가	허가
조성면적	-	100㎡ 미만	2천㎡ 이하	3만㎡ 이하	5만㎡ 이상
공통사항	■ **설치제한지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22조 - 상수원보호구역(가족, 종중 20㎡ 이하 가능), 문화재보호구역, 채종림, 산림보호구역, 사방지, 특별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 **조성방법 :**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깊이로 매장(유품 등 매장 금지) - 용기의 크기는 30㎝ 이내, 재질은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천연소재 - 표지(150㎠ 이하)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 급경사지 및 붕괴・침수 우려지 등에는 조성 금지 -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 안에서는 보행로, 안내표지판만 설치 가능 -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주차장, 공동분향단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 밖에 설치 가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6. 6차 산업 활성화 및 산촌역량강화 사업

목 표

◇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 6차산업 활성화 및 산촌생태마을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가. 정책여건

o ’95년～’13년까지 전국적으로 312개의 산촌생태마을 조성

o ’09년 4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10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이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

o 산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및 각종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점

나. 기본방향

o 전국산촌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산촌진흥계획(’17～’28) 수립 준비

o 산촌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현장컨설팅, 공모사업 등 지원 사업 추진

o 산촌 마을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2015년 6차 산업 활성화 공모 등 사업계획 총괄

[단위: 건, 백만원]

사 업 명	2014		2015		비고
	지원대상	예산	지원대상	예산	
계	18	380	40	840	
산촌생태마을 6차 산업 활성화 공모	4	100	20	600	위탁
산촌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8	160	12	120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현장학교	2	40	4	40	〃
귀산촌 정착을 위한 산촌미리살아보기 캠프	4	80	4	80	〃

※ 예산 및 규모는 추진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 산촌생태마을 6차 산업 활성화 공모사업

o 2014년 추진현황(활성화 공모사업)

- 4개 마을, 100백만원 지원

· 경기 연천(고대산산촌마을, 체험프로그램), 강원 인제(월하산촌마을, 산채 건조·가공)
충북 제천(꽃단지마을, 힐링파크 조성사업), 전북 장수(중상산촌마을, Red food 축제)

o 2015년 추진개요(활성화 공모사업 + 6차 산업)

- 규모 : 20개 마을을 1년간 지원(평가결과 우수마을은 1년간 연장지원)
  ※ '14년 실행마을 중 평가 우수마을은 연장 지원
- 대상 : 산촌생태마을
- 공모 : 2015. 2. 2 ~ 3. 3(30일간)
  ※ 사업신청서는 시·군과 도를 거쳐 진흥원에서 접수 처리
- 방법 : 신규 공모를 통해 확대 지원('14년 4개마을 → '15년 20개 마을)
- 예산 : 총 600백만원(마을당 30백만원)

o 선정절차 및 일정

2014. 2		2014. 3		2014. 3		2014. 4~		2014. 11
계획수립 및 접수(시군→도→진흥원)	⇒	1·2차 서류 및 현장심사	⇒	전문가평가 (최종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지원	⇒	성과평가 및 환류

o 평가기준

구 분	항목	평가기준	비고
1차 서류평가	계획 평가	사업의 필요성, 문제 해결능력, 자주성, 협의내용 등	
	효과 평가	자립성, 기여도, 목표의 명확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2차 현장평가	지역 여건	사회·경제·환경적 여건, 조직 구성, 의지력, 준비성,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공감여부 등	
3차 발표평가	계획 평가	사업 이해도, 사업목표성, 리더십과 의지, 창의성, 차별성 파급효과, 지속성, 지역 기여도, 수익배분, 환원방식 등	
	효과 평가	지속적인 기대효과, 발전가능성	
	전문가 평가	평가심의위원 평가결과	

3) 산촌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o 2014년 추진현황

- 4개 단체(단체별 2개 마을), 160백만원(마을별 20백만원) 지원
  · 강원대학교(강원 화천, 강원 인제), (사)생태산촌(경기 파주, 충남 청양)
    ㈜마을디자인(충북 충주, 경기 포천), 한국임업진흥원(전남 담양, 전북 무주)

o 2015년 추진개요

- 규모 : 12개 마을 지원
- 대상 : 활성화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마을 중 컨설팅이 필요한 마을 및 ‘14년도 컨설팅마을 중 지속 지원이 필요한 마을 선정
- 방법 : 임업진흥원이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직접 실행(분야별 전문가 연계)
- 예산 : 총 120백만원(마을당 10백만원 컨설팅 운영비 등 지원)

o 추진절차 및 내용

- 추진절차

2014. 1~3.		2014. 4		2014. 5		2014. 5~		2014. 11
계획수립 및 후보지 접수 (지자체 추천)	⇒	현지조사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대상지선정 (컨설팅단체 결정)	⇒	계약체결 및 사업지원	⇒	성과평가 및 환류

- 현지조사 내용
  ① 생태산촌마을의 일반사항 : 대상마을별 유형 등
  ② 마을구성가구 현황, 마을 구성원 현황, 토지이용현황 및 기반시설 정비수준, 복지시설 현황 및 임상 구성현황, 산림자원활용 현황, 마을 공통체 수익현황, 공공시설 관리·운영상태, 관리운영 주체 및 비용부담 현황 등
  ③ 마을 이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의식조사 등
- 컨설팅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선정(필수 지표 포함 2개 이상)

4)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현장학교’ 개설

o 2014년 추진현황

- 2개 마을, 40백만원 지원(마을 당 20백만원)
  · 강원 춘천(물안산촌생태마을, 마을주도형), 전북 장수(섶밭들생태마을, (사)생태산촌)

o 2015년 추진개요

- 규모 : 4개 마을, 주민현장학교 4개소 개설(지자체 추천)
- 대상 : 산촌생태마을 중 교육공간 및 교육생 숙식이 가능한 마을
- 방법 : 마을 주도로 추진(산촌생태마을 협의체가 구성된 지자체 우선 선정)
- 예산 : 총 40백만원(현장학교 1개소 당 10백만원 지원)

o 추진절차 및 내용

- 추진절차

2015. 1.		2015. 2		2015. 2.		2015. 3~		2015. 11
계획수립	⇒	후보지선정 (지자체 추천)	⇒	계약 체결	⇒	교육 실시	⇒	성과평가 및 환류

- 교육내용

· 지역의 가치와 비젼 · 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 마을사업 개발 및 구상 · 마을CEO 역량강화	· 마을살이 사례 · 마을답사 기본교육 및 방법 · 우수리더 성공사례 · 도농교류 의의

5) 귀산촌 정착을 위한 '산촌 미리 살아보기' 캠프 실시

o 2014년 추진현황

- 4개 마을, 80백만원 지원

· 강원 화천(파로호느릅마을, 강원대학교), 충북 단양(한드미산촌생태마을, 건국대학교) 경남 함양(창원산촌생태마을, 경상대학교), 전남 곡성(임업인 신종연, 임업진흥원)

o 2015년 추진개요

- 목적 : 귀산촌인(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지원 및 산림자원활용에 대한 인식 증대
- 대상 : 귀산촌 예정자, 귀산촌에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나
- 주체 : 권역별 거점 대학 각 1개교(4개소)
- 방법 : 귀산촌 희망자를 모집하여 귀산촌에 필요한 교육 및 캠프 운영
- 예산 : 총 80백만원(1마을 당 20백만원 지원)

※ 교육생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작 및 사후관리프로그램 운영

o 추진절차 및 내용

- 추진절차

2015. 1.		2015. 2		2015. 3.		2015. 4.		2015. 5~		2015. 11
계획수립	⇒	관련기관 사전협의	⇒	계약 체결	⇒	교육생 모집	⇒	교육 실시	⇒	성과평가 및 환류

- 교육내용

· 교육생모집 : 자체 홍보에 의함

· 교육인원 : 각 권역별 80명(40명/회) 총 240명

· 교육기간 : 이론교육(1박 2일), 체험교육(2박 3일)

· 교육횟수 : 각 권역별 2회씩 진행

· 예　　산 : 총 80백만원

6)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용역사업 추진

o 전국적으로 산촌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산촌진흥지역 기초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지표 개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3·24조 : 산림청장은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수립에 앞서 필요한 기초조사를 해야 함

※ '07년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14년 전국산촌기초조사 실시(466개 읍면)

7) 산촌생태마을 관리 지침 마련(별첨)

o 산촌생태마을의 중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 마련

라. 추진일정

o 산촌활성화 사업 공모 : 2015. 1월

o 산촌생태마을 컨설팅 실시 : 연중

o 산촌 미리 살아보기 캠프 운영 : 연중

o 우수산촌마을 주민현장학교 개설 : 연중

17.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목 표

◇ 산림교육을 통한 국민의 정서함양과 산림가치 인식제고

가. 정책여건

o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참여·주도형 교육으로 교육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자연 중심의 산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

o 유아·청소년의 창의성 및 인성함량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산림교육이 그 대안으로 자리매김함

* 산림교육 참여 현황 : ('11) 136만명 → ('12) 153만명 → ('13) 170만명

나. 기본방향

o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공간 확충

o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인증 및 보급

o 산림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o 수요, 접근성, 자연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다수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유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 국유 신규조성 9개소(전수조사 → 대상지 확인 → 대상지 확정)
- 공유 신규조성 25개소(서울 4, 대구 2, 광주 5, 경기 10, 충북 1, 경북 3)

o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 중 등록이 가능한 유아숲체험원은 등록

- 법령 개정을 통해 규모(2ha→1ha), 차량접근 거리(300m→1km) 완화, 인접 유아숲체험원 등록제한 규정 삭제 등 등록기준 변경 완료

o 국유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 지원 강화

o 유아숲체험원 내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보험가입 추진
-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보험 가입 여부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별도의 유아숲체험원 보험도 가입하여 이중 장치 마련

o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방식 시범사업 추진
- 국가 직접 운영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 가능성 검토를 위해 1~2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o 지방청·지자체의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운영의 정보 공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현장 워크숍과 해외 선진사례 견학 실시
- 보급된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매뉴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o 민간분야의 유아숲체험원 등록 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추진

2)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위한 산림교육센터 조성·운영

o 국가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전남 장성('13~'15) 2차 조성사업, 경북 청도('14~'16) 1차 조성사업 추진

o 지자체 산림교육센터 사업은 현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특색있게 설계 추진
- 충북 청주(미동산수목원), 전북 완주(고산자연휴양림)

o 연구용역* 사업과 연계하여 산림교육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 '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매뉴얼' 연구용역('14~'16, 3년)

o 지역별 교육수요 및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목원, 산림환경연구소 등을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도록 유도

3) 타 부처 및 관련 지역기관·단체와의 협업 강화

o 교육부와 협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산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 '15 연구·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전문가 및 프로그램 등 지원

o 법무부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 시범사업 및 업무협약 체결 추진 등 전국 확대 기반 마련

o 여가부 '방과 후 아카데미'와 연계한 숲 교육, 교육부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숲 교육 등 부처간 협업사업 추진

o 군 생활 부적응자,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산림교육 협업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4) 학교 내 산림교육 기반 강화

o 산림교육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추진되도록 기반 마련

- 전북교육청(숲꿈학교*)과 협업으로 산림교육과 정규교육과의 융합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

* 학교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숲과 더불어 배워가는 활동중심의 통합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자연친화적 수업을 통해 자연에서 배움과 힐링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운영하는 학교('16년에 전북 학교전체로 확대할 계획)

o 초·중·고등 과목과의 연계・통합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추가 개발・보급

- '14년 개발된 교과(초등, 중・고등, 특수) 연계 산림교육프로그램 적극 활용

o 학교장, 교사 등 교원의 산림교육 역량 강화

-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원, 산림환경연수원, 민간단체 등을 교원의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추진
- 교원이 선호하는 과목, 현장체험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원 대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

5) 「산림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o 산림교육과 관련된 인프라, 전문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산림교육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1사분기중 오픈)

- 온라인 상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탑제 예정

o 산림교육정보시스템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운영

- 일반 국민은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산림교육전문가는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
- 산림교육 뿐만 아니라 산불・산사태・기후변화・백두대간 등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교육자료를 연계

6) '녹색체험교실' 사업 내실화

o 지방청, 휴양림관리소에 지원되는 녹색체험교실 예산을 계속사업과 전략사업으로 구분하여,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재 설계(2월말까지 확정)

- 계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전략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o 자유학기제 연계,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숲교육, 전북 숲꿈학교 연계를 위해 필요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편성

7) 산림교육 분야 제도 개선 추진

o 산림교육전문가 교육과정 재편, 교육프로그램 인증 통합(산림교육+목재교육)

o 유아숲체험원 등록 주체의 변경(지자체 조성 시 지방산림청에 등록 → 시장・군수에게 등록), 산림교육 목적 행위 특례 신설 등

o 산림청과 시・도지사의 연차별 산림교육 계획 수립 제도 폐지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유효기간 연장 규정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 추진

8)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활성화 및 개발 프로그램 보급

o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자문단 운영 및 인증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인증 확대
- 인증자문단 직무교육 실시 및 우수 인증프로그램 선정·지원

o '14년 개발된 각종 산림교육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프로그램 개발교육 자료로 활용 등 추진
- 청소년 대상, 특히 위기 청소년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위기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프로그램'(국립산림과학원 개발)
- 학교 교과서 내용과 산림교육을 연계한 '교과(초등, 중・고등, 특수) 연계 산림교육프로그램(국립수목원 개발)'
- 우리나라 전통놀이 및 전통문화와 연계한 "전통문화 연계형 산림교육 프로그램(국립수목원 개발)

9) 숲사랑소년단 육성

o 지역단위 조직 보강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체험활동 활성화
- 조직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지역회를 확대
- 숲체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캠프형 체험활동 활성화

o 부처간 협업 및 전략사업과 숲사랑소년단 사업 연계 방안 마련

o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숲사랑소년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o 전국대회, 교원연수 등의 자체 계획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10) '숲교육 어울림' 등 숲으로 가자 캠페인 추진

o 일반국민에게 산림교육을 알리고, 산림교육전문가 상호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제2회 숲교육 어울림 개최(6월 개최 예정)

o 청소년박람회, 자유학기제박람회, 교육기부박람회, 산림박람회 등에 홍보 부스 운영 및 각종 홍보 이벤트 개최 등 숲으로 가자 캠페인 홍보 강화

11) 산림교육 만족도 조사 표준화 및 산림교육 통계 관리

o 각 기관별, 지자체별 실시하는 산림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형태를 정형화하기 위해 표준 조사 설문지와 작성 지침을 보급하고 작성된 조사지는 일괄 분석 추진

o 체계적으로 산림교육 관련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해, 통계 보고를 강화하고 분기별·기관별 분석 실시

라. 추진일정

o 유아숲체험원 대상지 현장 실사 : 2015. 1월

o 산림교육정책 시책회의 : 2015. 2월

o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자문단 워크숍 : 2015. 4월

o 제2회 숲교육 어울림 개최 : 2015. 6월

o 산림교육 교원직무연수 : 2015. 7~8월

o 숲사랑소년단 전국대회 : 2015. 8월

o 우수 산림교육인증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 : 2015. 11월

o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 분기별

o 산림교육센터 조성·운영 : 연중

o 범국민적으로 '숲으로 가자!' 운동 추진 : 연중

18.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 운영

목 표

◇ 수준높은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

가. 정책여건

o 산림교육 기대수준 향상 등 산림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양성기관 양성목표 재검토, 산림교육전문가 역량강화, 양성기관 운영시스템 개선 필요

- 양성목표 재검토, 전문역량강화, 양성기관 운영시스템 개선 등

o 산림교육전문가가 국가·지자체 고용으로 단기일자리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민간 창업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은 10개월 고용, 46,000원/일의 임금으로 전문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

나. 기본방향

o 산림교육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및 관리

o 내실있고 합리적인 교육과정 운영

o 산림교육전문가 사후 관리체계 확립

o 민간시장 창출, 산업화를 위한 산림교육서비스 유료화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수급을 고려한 양성기관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o 지역균형 수급을 고려한 양성목표 재검토 및 양성기관 적정 수 산정 등 장기적인 인력양성 계획 수립

- 지역별 인구현황, 숲교육 수혜인원, 산림교육전문가 활동현황 및 양성기관 지정현황 등 산림교육 수요조사 실시

o 교수요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교수요원 양성과정 개설 및 교수요원 지원체계 구축

- 교수요원 양성과정 개발 및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15)

o 프로그램 개발·구현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산림교육전문가 역량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시스템 도입

- 산림교육원에「산림교육전문가 커뮤니케이션능력 향상과정」개설(6·8·10월) 추진

o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등급제 도입 검토

- 등급별 역할, 교육내용·방법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법제화 등 등급제 도입을 추진

2) 내실있고 합리적인 교육과정 운영

o 양성기관별 교육내용의 통일성 확보 및 교육생 부담 경감 등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통교육과정 마련 및 표준교과서 보급 추진

- 공통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표준교재 시범운영

o 교육실습 운영내실화과 양성기관 관리감독 강화

- 교육실습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운영장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련단체 담당자 교육 실시 등 추진

- 전문가 양성기관 관리·감독을 강화(상·하반기 1회씩 점검)

3) 산림교육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와 활동영역 확대

o 산림교육전문가 및 양성기관의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 양성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워크숍,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정보 교류 및 정책제안의 장 마련

o 민간시장 창출, 자원봉사 지원 등 산림교육전문가 활동영역 확대

- 산림교육전문가가 자생적으로 비즈니스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

- 숲해설가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산림교육 활동 인력을 보강하고 숲해설가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

o 산림교육전문가 처우개선

- 최저임금 수준의 숲해설가 단가를 유아숲지도사 수준으로 상향(60천원)

라. 추진일정

o 산림교육수요조사 및 장기인력 수급 계획수립 : 2015. 1～5월

o 교수요원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 2015. 3～12월

o 숲해설가 직무교육(3월) 및 보수교육 : 2015. 6·8·10월

o 산림교육전문가 분야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15. 3～12월

o 산림교육전문가 공통교육과정 시범운영 : 2015. 연중

o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현장지도 및 점검 : 2015. 5월, 9월

o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워크숍 : 2015. 4월, 11월

o 제9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 : 2015. 6월

o 산림교육프로그램 비즈니스 공모사업 : 2015. 3～12월

o 숲해설가 자원봉사 제도 운영 : 2015. 3～11월

19.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목 표

◇ 산림서비스도우미 고용을 통해 숲을 찾는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산림일자리 창출

o 고용인원 : 1,103명, 예산액 : 106억원

가. 정책여건

o '12~'17년간 고용률 70%·248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필요

o 휴양림, 도시숲, 숲길 등 산림인프라가 늘어나고 웰빙, 주5일근무제 확산으로 산림을 찾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산림휴양·교육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산림서비스분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제공

o 휴양림, 숲길 등에 산림서비스도우미를 고용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o 전문지식 및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일자리부터 전문화된 장기일자리로 발전시켜 안정적 일자리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15년 예산 및 고용계획

세부사업명		고용계획(명)	예산(백만원)	고용기간
산림서비스 도우미	계	1,103	10,598	
	숲해설가	405	4,585	10월
	숲생태관리인	133	1,453	〃
	숲길체험지도사	182	1,642	〃
	산촌마을운영매니저	88	627	〃
	도시녹지관리원	171	1,272	〃
	학교숲코디네이터	49	349	〃
	수목원코디네이터	70	530	〃
	일자리DB요원	5	140	〃

2)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지속적 일자리 제공

o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장년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등을 준수하여 선발·운영

o 여성가족부의『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양성 평등한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발하고 여성 참여비율을 준수하여 선발·운영

* 해당 고용비율 및 참여비율은 '15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참고

3) 국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산림서비스 제공

o 수준 높은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별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인원선발

-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o 산림서비스분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 산림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별 만족도 조사 실시

o 사업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4) 참여자 노무관리 및 중앙점검 실시

o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한 참여자 노무관리 철저

-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www.ilmoa.go.kr)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참여자에 대한 모집공고, 신청·선발현황, 참여자 등록, 지원금 관리 등을 매월 정확하게 입력하여 철저히 관리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참여자에 대하여 **수시로 중복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자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

o 산림서비스분야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상·하반기 각 1회)

o 세부사업별 선발기준, 근로계약, 사업추진 요령 등은 별도 시달하는 **「201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추진

라. 추진일정

o 산림서비스도우미 모집공고 및 선발 : '14. 12월 ~ '15. 1월초

o 산림서비스도우미 착수(예산배정 즉시) : '15. 1월초

o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훈련 실시 : '15. 2~4월

o 산림서비스도우미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상·하반기 각 1회

o 산림서비스분야 모니터링 실시 : 연중

20. 다양한 산림문화 활동을 통한 산림문화융성

목 표

◇ 산림문화, 산림레포츠 활성화 국민행복 산림문화융성
◇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문화서비스 저변 확대

가. 정책여건

o 삶의 질과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문화활동 욕구도 다양화되는 경향

o 산림을 이용한 레포츠 활동이 여러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 촉진하는 시스템 부족

나. 기본방향

o 산림문화자산 발굴·지정 확대로 산림문화자산의 보존과 이용 확대

o 산림레포츠 시설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고 각종 대회 개최로 산림레포츠 활성화

o 국민의 숲과 숲사랑 체험관 운영을 내실화 하여 산림문화 저변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문화자산 발굴 및 지정 확대

o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여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도록 컨설팅 강화
- 산림문화자산 지정 : ('14) 9 → ('15) 9개 이상
- 소속기관 및 시·도 업무담당자 산림문화자산 관리 교육 실시

o 산림문화자산의 보전 및 새로운 가치 창출
- 전문가 의견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관련 규정 정비
-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 등과 협조
- 이야기가 있는 산림문화 자산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집 발간

※ 홍릉 숲, 화천황장금표 등 이미 지정된 것과 '15년도에 지정되는 것

o 산림문화전집 발간(숲과 문화 연구회, 80백만원)

2) 산림레포츠활성화로 체험형 산림문화 저변 확대

o 산림레포츠시설 제도적 근거 마련
- 시설 정의, 시설 사용료, 타당성 평가 및 인증제도 등 도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o 산림레포츠 종목별 대회 개최
- 대상 : 오리엔티어링,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스키, 행/패러글라이딩 등 5종목
- 역할을 분담하여 내실있게 추진(산림청 : 후원, 민간단체 : 주최, 주관 등)
  ※ 북부청 주관 숲길달리기 대회는 북부청장배로 조정하여 운영

3) 산림문화 관련 기념행사 운영의 합리화

o '산의 날' 기념식과 '산림박람회'를 통합하여 운영 효과 극대화
- 산림청 주관으로 10. 18. '산의 날'을 전후하여 실시

o 녹색자금 지원이 중단된 문화행사는 예산사업으로 지속 추진
- 산림문화작품 공모전(산조 중앙회), 녹색문학상(한국산림문학회), 산림문화전집 발간(숲과문화 연구회)

o 열린음악회, 숲속음악회, 꽃누르미협회전 등의 행사는 지속 추진

4) 국민의 숲 제도 운영의 내실화

o 국민의 숲 제도 운영
- '숲에 on'에 포함된 국민의 숲 안내자료 재정비 추진
- 산림치유, 교육, 문화행사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발굴

o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개소는 폐지하는 등 국민의숲 운영 내실화

5) 숲사랑체험관 운영 활성화

o 지역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하여 이용자 확대
- 생태공예 체험 등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확대

o 지방청 청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숲사랑 체험관 조성 추진
- 산림에 관한 정보와 소중함을 알리는 정보제공의 장소로 활용
- '15년 권역별로 대상기관 선정 및 추진('16년 예산확보 후)
  ※ '01~'13년 정부대전청사 숲사랑체험관 방문객 32만명

라. 추진일정

o 산림문화행사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15. 2월

o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지정 : 2014. 3～11월

o 제14회 산의 날 기념식 및 산림박람회 : 2015. 10월

o 산림문화 및 활동 : 연중

o 산림문화 행사 및 산악레포츠 대회 : 연중

o 숲사랑체험관 운영 및 국민의 숲 지정·정비 : 연중

21.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경영기반 구축

목 표

◇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전문 임업인 선발 및 지원 확대

o 전문임업인 : ('14까지) 5,875명 → ('15) 6,475명(증 500명)

◇ 산지은행제도 도입 추진 및 산림경영계획 제도 개선

o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면적 : ('14까지) 2,128천ha → ('15) 101천ha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휴양·치유 수요 증가 및 청정임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 부각

o **(대내여건)** 산주·임업인의 고령화 현상과 귀농·귀산촌 희망자 증가로 산림경영의 관심 증대 및 산지이용을 통한 소득증대의 필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o 전문임업인을 지속적으로 선발하여 사유림경영 주체로 육성

o 산지은행제도 도입 추진 및 산림경영계획 제도 개선으로 임업경쟁력 강화

o 산림경영 교육·훈련·컨설팅 확대 추진으로 산림경영 참여 유도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 육성 및 역량 강화

o 독림가·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산림경영주체의 확대 선발·육성

- 전문임업인 : ('14까지) 5,875명 → ('15까지) 6,475명(증 500명)

o 임업후계자 선정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확대 추진

- 산림교육원, 임업진흥원, 산림버섯연구센터, 산학협력기관(대학교) 등 12개 기관

o 전문임업인 임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 제공

- 임업단체의 경영모델학교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실시(105백만원)
- 산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위한 “임업인 만남” 행사 개최

o 전문임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 및 각종 행사 지원

- 독림가 하계연찬회 및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지원(56백만원)
- 식목일·산의날 등 각종 행사시 전문임업인에 대한 산림유공표창 실시
- 선진 임업국의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지원(40백만원)

o 전문 임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학대

- 전문임업인을 위한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

※ 지원기준 : 1인 1회 → 사업비 총액 1억한도내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 효율적인 산림경영·관리 위해 생산·운반시설 장비(모노레일) 지원 추가

※ 전문임업인의 산림경영 6차 산업화 유도를 위한 ‘체험시설’ 지원

2) 산림경영계획 제도개선 등 산림경영기반 구축으로 임업인 소득증대 도모

o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관련 제도 개선

-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재배 등 산림경영참여 유도를 위해 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산림경영계획 인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업실행을 산주이외의 임차인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o 전문임업인 및 일정규모 이상 산주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유도

-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용을 우선 지원(10만ha)
- 산림경영계획 편성지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의 우선 지원방안 마련

o 산주, 지자체 및 산림조합 직원의 산림경영계획 작성능력 배양

- 지자체 담당자교육(워크숍) 실시 및「산림경영계획 작성·인가」 매뉴얼 보급
- 산림경영계획 작성 우수기관에 대한 연말 표창(4개 기관) 및 포상금 지급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요령 보급

o 산주의 관심 제고를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혜택사항의 홍보 강화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상속세 감면 및 산림사업 실행에 대한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등 세제혜택을 적극 홍보

3)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지은행제도 도입 추진

o 소규모 소유구조 및 업업 경영여건의 개선, 영세한 임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산지은행(연금)제도 도입 추진

o 산지은행사업 시행을 위한 법률안('14.6.23발의, 김우남의원)의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

- 사업추진 매뉴얼 마련, 위탁기관 및 사업운영비에 대한 방향 정립 등 선제적 대응
- 산지은행 사업의 성공적인 도입과 당위성 부각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 등 대안 제시

o 산지은행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정책개발 연구

- 대리·협업경영 등 유사제도 실태조사 분석, 수익증대를 위한 산지활용계획 등

o 산주 및 전문임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

4)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금리 인하 추진

o 산림사업 종합자금 조정으로 집행률 제고 및 금리인하 추진

-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통합 또는 폐지
- 국고융자와 이차보전으로 분리 추진 중인 사업은 통합(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
- 임업인 부채경감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협의 추진

o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관리 강화를 위한 운용실태 점검(산림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자 선정, 대출금 집행, 대출금 사후관리 등의 점검(상・하반기 실시)
- 우수사례의 발굴 전파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o 종합자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한도 상향 및 임업인의 건의사항 수렴

- 목재 이용・가공시설 지원 : 1억원 이내 → 2억원 이내
- 임업기계장비 지원 : (구입) 5천만원 → 1억원, (생산) 1억원 → 2억원
- 해외조림지 매수 : 20억원 이내 → 28억원 이내

5)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및 컨설팅 강화

o 장기·안정적인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세제 개선을 지속 추진

-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조정 및 고정자산 인정범위의 확대 추진
- 국가에 양도시 15%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중인 산지를 추가
- 원활한 산림경영 승계(상속세·증여세)를 위해 감면혜택 확대 추진(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추가)

o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인콜센터('14.6월 개설)를 중심으로 산림경영컨설팅 활성화 추진

- 다양한 형태의 산림경영컨설팅 기법 개발 및 활성화

  ※ 전문가 현장컨설팅, 현장 임업기술교육의 확대 등

- 산림경영컨설팅 지원프로그램(적지적수, 경제성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라. 추진일정

o 2015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발간・배부 : 2015. 1월

o 산림경영모델학교(독림가, 임업후계자) 운영 : 2015. 3~11월

o 산림사업종합자금 담당자 교육 실시 : 2015. 4월

o 산림사업 유공자 포상 : 2015. 4월

o 임업인 만남(컨설팅) 행사 개최 : 2015. 6월

o 지자체 산림경영계획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5. 11월

o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사업 지도・점검 : 상・하반기

o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지도・점검 : 상・하반기

o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실태 점검 : 상・하반기

22. 산림조합 경쟁력 강화

목 표

◇ 산주·임업인의 맞춤형 산림경영지도 등 협동조직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여 건전한 산림조합 육성

가. 정책여건

o 산림사업법인 증가와 공개입찰 확대로 산림사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융여건 불안으로 상호금융 환경도 악화되어 조합운영이 어려운 실정

※ 산림조합중앙회 결산결과 2년 연속 적자 : ('12) △109억원 → ('13) △298억원

o 경영여건 악화, 고용세습 의혹보도, 검찰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회장 선출을 계기로 강력한 조직개혁 방안의 수립·시행 필요

o 베이비부머 은퇴로 귀산촌 인구 증가와 함께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기술지도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조합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산림경영지도 부실 우려

나. 기본방향

o 산림조합의 적자 해소 및 경영상태를 개선하여 건전한 산림조합으로 육성

o 조직 쇄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 및 임원 운영제도 개선 추진

- 신임 산림조합중앙회장('14.11.6.)과 협조하여 중앙회 개혁방안 추진

o 산림조합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o 기술지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업인·산주 맞춤형 산림경영지도 서비스 구현

o '15년 임업인종합연수원 개원과 함께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임업인 육성을 선도

다. 세부추진계획

1) 적자해소 및 경영상태 개선으로 건전한 산림조합 육성

o 산림조합중앙회 적자해소와 경영상태 개선 추진

- 신규채용 억제, 파견제도 활성화, 채용직급 조정, 전문인력 확충과 개방형 직위 공모제 확대 등으로 수익창출 도모 및 조직의 경쟁력 강화
- 경영성과 평가에 의한 인력관리 등 성과관리제 도입
- 에너지사업, 외식사업, 톱밥배지센터 등 사업 다각화
- 성과급 반납, 여비규정 개선 등 경상비 절감

o 부실 산림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구조 개선

- 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경영개선 지속 추진
  ·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경영개선사업 성과평가 등
- 부실평가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상태 점검 및 지도강화로 경영위험 사전예방
- 조합원 보호, 조합경영개선을 위해 자산규모별 외부감사제도 확대
  ※ ('13년) 1,000억원 이상 → ('14) 700억원 이상 → ('15) 500억원 이상

o 1조합 1특화사업 개발 및 수익창출·조기정착 지원

- 건전한 산림조합 육성과 자립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지속 추진
  ※ ('14까지) 33조합 → ('15년) 4조합
-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조합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
- 특화사업 지원 조합의 운영성과 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조기정착 도모

2) 조직쇄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 및 임원 운영제도 개선

o 산림청·산림조합 실무협의회를 통한 정책공조 강화

- 주요 정책현안 등을 중심으로 산림청 및 산림조합 간부간의 소통 강화

o 새롭게 선출된 중앙회장과 협조하여 임원제도 개선 추진

- 중앙회 사업전담 대표이사 제도 도입
  · 금융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2명의 사업전담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
- 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및 선출방법 등 개선
- 인사추천위원회 역할 강화와 공정성 확보
- 중앙회 및 회원조합 감사기능 강화

o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통해 조합원 가입 확대 추진

- 이용고배당, 출자배당, 장학사업 등을 통해 조합원 혜택 확대
- 대리경영을 통해 산주의 산림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
- 임업인 기술지도 확대,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적극 유도

o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 임업인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3) 산림조합장 전국동시선거 시행에 차질없이 대응

o 무자격자 투표방지를 위해 지역조합별 조합원 정리실태를 중앙회와 합동으로 현지점검 실시

- 지역본부별 1개 취약 조합을 선정・점검(2회)

o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한 우리 청 선거상황실 운영

- 구성 : 상황실장(국장), 산림경영소득과장 및 담당(2명)
- 기간 : '15. 1월 ~ 3. 11.

  * 중앙회는 '14.9월부터 선거관리지도본부를 운영 중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불법선거운동 지도・단속 활동을 지원

o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운동 신고센터 설치・운영

  * 우리청 및 중앙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설치

4) 산림조합직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o 정기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인력관리 체계화

- 일반직·기능직은 중앙회 주관 공개채용시험으로 시행

o 채용시험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규정의 명확화

- 관련 규정, 예규 등 채용시험 규정의 명확화
- 공개채용 시험의 외부위탁과 시험위원 외부배정 의무화 등

o 전산화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부정청탁 방지제도 도입

5) 임업인·산주 맞춤형 산림경영지도 서비스 구현

o 산림경영 지도체계 개선방안('14. 4)의 정착화 및 운영 내실화

- 산림경영지도의 날 운영, 단기임산물 전담지도원 선발·운영 등

o 전북 특화품목기술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개선방안 마련
- 운영비 증액(160백만원) 등 특화품목 전문지도 내실화 추진
- '14년 운영성과를 평가·분석하여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o 단기임산물 기술지도 수요에 부응할 전담지도원 지정 및 기술교육 강화
- 지역조합별 단기임산물 전담지도원을 대상으로 중점 기술교육 실시
- 특화품목지도원 주관으로 임업인 대상 기술교육 추진(연간 1,500명)
o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기주도 학습(지도) 계획과 실적을 평가에 반영

6) 임업인연수원을 통한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o 임업인연수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중앙회 훈련원, 임업진흥원과의 업무 중복성 해소 등을 고려한 역할 정립
- 다른 기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o '15년 개원과 함께 산주·임업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 교육기자재 구입 5억원, 산주·임업인 교육비 8억원

라. 추진일정

o 산림청·산림조합 실무협의회 : 매월
o 채용관련 제규정 정비 : 2015. 1월
o 2015년 산림조합 직원채용계획 수립 : 2015. 1~2월
o 산림조합중앙회 임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 2015. 3월
o 산림조합장 전국동시선거 : 2015. 3. 11.
o 산림경영지도사업 평가('14.7~'15.3) 및 인센티브 지급 : 2015. 4~6월
o 산림조합 구조개선사업 추진성과 평가 : 2015. 상반기
o 2016년 산림조합특화사업 지자체 공모선정 : 2014. 9~10월
o 산림경영지도 우수지도원 해외연수 : 2015. 10~11월
o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발표회 및 우수지도원 포상 : 2015. 11~12월
o 특화품목지도원 시군 순회 단기임산물 합동컨설팅 : 연중
o 산주 조합원 가입확대를 위한 3ha이상 산주명부 작성 : 연중
o 산림경영지도원 및 임직원 교육(기본, 전문) : 연중

23.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목 표

◇ 임산물 품목별 규모화·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
- o 산림작물생산단지 : ('14까지) 182개소 → ('15) 38개소, 130억원
- o 산림복합경영단지 : ('14까지) 66개소 → ('15) 22개소, 36억원

◇ FTA 확대 및 자연재해 증가 등에 따른 임산업 소득안전망 강화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o **(대내여건)** 생산규모 영세 및 시설 낙후, 생산지역 분산 등으로 경영여건 열악

나. 기본방향

o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대량생산 등 경쟁력 강화로 임가소득 증대 도모

o 임업인 개별 지원에서 생산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규모화 유도

o 안전하고 고품질의 임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재배 및 품질관리 강화

o FTA 대응대책 추진 및 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업인 소득안전망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물의 품목별 단지화·집단화·규모화 등 지원

o 품목별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의 규모화·집단화(38개소, 13,000백만원)

o 사업 지원대상

- 산나물류·수실류·수목 부산물류 등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비 지원
  * 관수 시설, 보호 울타리, 작업로 시설, 모노레일, 감시 시설,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표고자목 등
- 관상산림작물류 : 조직배양 및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 작업,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등

2) 임산물 생산 증대 및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o 수실류, 관상식물류 등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소득증대 도모(41억원)

- 밤나무 노령목관리, 병해충 방제장비, 친환경 방제(포충등, 성페르몬 등), 생산장비(굴삭기, 4륜 오토바이, 선별기, 밤수확망, 수확기 등), 관수시설, 작업로 등

o 노령화되어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고소득 대체작목(수실류, 산채류 등) 조성사업비 지원(18억원)

- 지자체별 사업량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및 탄력적 운영을 유도

o 연작으로 지력 약화 및 산성화된 임산물 재배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지원(27억원)

o 표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량종균 개발, 시설지원 및 기술지원 등

- 원목·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우량종균 공급 및 연중 재배시스템 구축(11억원)
- 표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연중「표고재배반」운영(초급반, 전문가 양성반)
- 남부권(함평) 톱밥배지센터 조성으로 톱밥배지 안정적 공급(20억원, '14~'15년)

3) 목재생산과 연계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o 숲가꾸기 사업지 등에 산나물 및 약초·약용류 등을 재배하여 숲을 가꾸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산림복합경영 확대(22개소, 36억원)

- 사업대상지 : 조림예정지, 숲가꾸기 사업지 등
- 지원내용 : 숲가꾸기와 관수시설, 생산기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등

o 현실 여건에 맞는 소득사업지 조성을 위한 사전설계 및 시공감리 추진

4) 산림소득사업지 점검·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맞춤형 지원

o 주요 임산물생산단지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산림작물생산단지('14년까지, 182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14년까지, 66개소)

o 잘된 사례와 미흡한 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조합 특화품목지도원을 활용하여 임업인 책임관리

5)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정착 및 관련제도 정비

o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생산과정확인제도' 정착 및 산양삼 재배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품질검사비용, 포장자재비 등 지원(744백만원)

- 종자·종묘, 재배, 생산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재배이력시스템 운영

- 생산과정 기록 의무화 및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 확인제도 정착
- 생산이력 과정 참여 재배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인센티브 강화
- 생산과정 이력 관리, 품질검사 강화 및 품질표시 의무화
- 산양삼 재배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품질검사 등 비용 지원
  * 총 744백만원(품질검사 240, 포장자재비 504)

o 산양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불법 유통단속 강화
- 산양삼·산약초 홍보교육관 조성(영주, 50억원) 사업의 조기 준공 및 운영계획 수립
- 임산물교육센터 운영으로 대국민 홍보 강화(3개소)
-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강화
-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및 시·군 공무원의 조사·단속업무 법적권한 부여
-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산양삼 바로 알리기 운동' 전개

o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품질관리, 유통단속 강화, 생산적합성조사, 제조업 신고·영업폐쇄 등

o 산양삼 고부가가치를 위한 표준규격 정립 등에 대한 연구 추진('14~'17)
  * 산양삼 품질규격·등급기준 등 정립, 신기능성 규명 및 효능 차별화 등

6) 표고 우량신품종 개발을 위한 '골든씨드 프로젝트' 수행('21년까지)

o 품종보호 및 수입대체용 표고 신품종을 개발·상용화하여 자급률 제고 (2021년까지 자급율 60%, 수출 100만불 달성)
  * 참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산조중앙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경상대, 단국대 등
  * 총 예 산 : 100억원('14~'21)

7) 임업인·생산자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 지원과 홍보 강화

o 청정임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확대
- 웰빙 임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임산물 지원 품목을 확대
  * 소득지원대상 품목('14) : 수실류·버섯류·산채류 등 79품목

o 임산물 수요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 행사 지원
- 한국분재대전, 대한민국난대전, 산양삼 홍보 전시회, 잔디세미나 등

o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다양화 및 지원 강화
- 식품 박람회 등 규모 있는 전시·박람회의 참가 지원

8) 한·중 FTA 대응 대책 추진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

o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및 지원제도 추진

- 부분감축 품목(건조 고사리, 냉동 송이버섯, 신선 도라지, 약용류 등)에 대한 품목별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 농림부가 추진하는 밭 직불금 확대,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품목 선정, 기계화 등 농어업인 등 지원 종합대책에 임업분야 포함 추진

  * 피해보전 제도 마련과정에 농업인 지원위원회 등에 임업전문가 적극 참여 및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여 임업분야 적극 반영

- 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생산·유통·연구분야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o 임산물 생산 규모화 등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

- 임산물 재배 규모화를 위한 작물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 확대 조성

-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시설·장비의 현대화 및 유통체계 개선

- 중장비 임차료 지원, 재배시설 리스제도 도입,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 산림소득분야 시설사업에 '체험시설'을 포함하여 6차 산업화 유도

o 주요 임산물의 주산지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및 예산확대에 활용

- '14년과 연계한 품목별 현장 간담회 추진(조경수, 복분자, 오미자, 고사리 등)

- 지자체 농업기술원, 임산물 연구소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이원화 품목의 고부가 산업 유도 및 소득증대 도모

- 버섯류, 감류, 약용식물 등에 대하여 농림부, 농진청 등과 협력시스템 구축

9) 임가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해복구 지원 및 보험제도

o 재해피해 임가 소득보전을 위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현실화

- '12년 신규 반영 또는 '14년에 인상되지 않은 12개 품목의 단가인상 추진

  * ('12년 신규) 은행·표고톱밥배지, ('14년 미인상) 표고자목·잔디·조경수·분재·호두·야생화·도라지·더덕·두릅·취나물

- 단가 현실화를 위한 시설비 시장가격 조사 및 관계부처와 협업 추진

  * 임산물·산림시설 단가 자료조사 및 대응자료 구축(2월까지), 국민안전처 협의 추진(3~6월)

o 임산물(임목) 재해보험 시범사업 예산 확보 및 임산물 보험 가입률 제고

- 임산물(임목) 재해보험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예산확보 추진(10억원)

· 시범사업 대상지역 : 26개 시·군 사유림(순보험료 3억원, 운영비 7억원)

· 이미 구축된 재해보험 전산장비 및 시스템(41억원, 산림조합중앙회)의 안정화 추진

* ('13년) 전산장비 등 도입 → ('14년) 서버 도입 → ('15년) 시스템 안정화 → ('16년) 임목재해보험 시범사업

- 농림부와 협의하여 보장비율 다양화, 보상단가 상향, 시범사업지역 확대 등을 통해 보험 가입률 제고

· 소득담당자 교육, 생산자 간담회, 각종 교육 추진 시 재해보험 교육 시간을 반영

라. 추진일정

o 일선 시·군 공무원 대상 산림소득분야 시책 교육 : 2015. 1월

o 자연재난 복구비용 조정단가 협의자료 작성 : 2015. 2월

o 한국새우란대전 및 대한민국난대전 개최 지원 : 2015. 1분기

o 자연재난 복구비용 조정단가 합동고시 : 2015. 7월

o 산양삼·산약초 홍보교육관(영주) 준공 : 2015. 7월

o 한국분재대전 개최 지원 : 2015. 4분기

o 산양삼 홍보 전시회 및 학술 세미나 개최 지원 : 상·하반기

o 표고재배기술 교육 : 연중

o 산양삼 품질검사 등 계도·단속 실시 : 연중

o 산림복합경영단지 및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 연중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연중

o 임산물 지원품목 확대 : 연중

o 남부권 톱밥배지센터(함평) 조성 : 연중

o 한·중 FTA 대응 대책 추진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 : 연중

참고 2015년 산림소득생산 기반조성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4 예산		'15 예산		형 태	지원율 (국:지:융:자)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계		36,206		37,459		
o 단기임산물생산기반조성【농특】		33,701		34,954		
- 표고종균생산연구지원	1종	1,100	1종	1,100	보조	100:-:-:-
-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12종	4,193	12종	4,193	보조+융자	20:20:20:40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207ha	1,000	523ha	2,748	보조	70:20:-:10
- 밤나무대체작목조성	650ha	1,820	650ha	1,820	보조	40:20:-:40
- 산림작물생산단지	12개소	12,000	13개소	13,000	보조	40:20:-:40
-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6개소	240	6개소	240	보조	40:60:-:-
- 산림복합경영단지	9개소	3,600	9개소	3,600	보조	40:40:-:20
- 임산물산업화단지(군위, 청도)	2개소	2,000	2개소	2,680	보조	50:40:-:10
- 임산버섯 클러스터 조성	-	-	1개소	300	보조	50:50:-:-
- 잔디경작지 모래 객토	-	-	1식	2,500	보조	50:40:-:10
- 청정임산물 6차산업화단지	-	-	1개소	300	보조	50:20:-:30
- 황칠 산업화단지	-	-	1개소	150	보조	50:20:-:30
- 산양삼 산업화단지	-	-	1개소	323	보조	50:50:-:-
- 남부권 톱밥배지센터	1개소	1,000	1개소	2,000	보조	50:20:-:30
- 토양개량 사업지원	316ha	1,748	-	-	보조	70:20:-:10
- 산양삼테마랜드	1개소	5,000	-	-	보조	100:-:-:-
o 산림재해복구지원【농특】		2,505		2,505	보조+융자	

24.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기반 구축

목 표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및 보조시설 관리 강화

o 유통센터 7개소 33억원, 가공산업활성화 2개소 20억원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임산물 브랜드화 추진

o 명품브랜드화 12개소 7억원, 상품화지원 382개소 21억원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한·중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 및 대형유통업계의 사업범위 확대로 임산물 유통여건 악화

o **(대내여건)** 단기임산물의 다품목·소규모 분산 생산, 다단계 유통경로로 인하여 유통비용 과다 및 경쟁력 약화

나. 기본방향

o 임산물의 수집·저장·건조·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시설 지원

o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및 명품 브랜드화 지원

o 임산물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확대를 위한 임산물 소비촉진 활동 강화

o 임산물 수급 안정 및 임가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유통종합정보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o 산지 임산물의 수집·저장·가공·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지원

- 임산물산지유통센터(신설) : ('14까지) 86개소 → ('15) 7개소, 3,250백만원
- 임산물산지유통센터(보완) : ('14) 5개소 250백만원 → ('15) 5개소 250백만원

o 임산물 생산 및 유통조직 개선, 출하 물량 조절을 위한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 155개소, 1,860백만원

o 청정임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송차량과 유통장비 지원

-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 냉동탑차 및 일반화물 차량, 파렛트 및 운반용 상자 등(168백만원)

o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 : 2개소, 2,000백만원

o 임산물 작업 능률향상을 위해 박피기, 탈삽제 등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 임산물 가공지원 : 53개소, 640백만원

o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유통센터별 유통경로·운영실태 파악 및 경영상태 분석

- 초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센터에 대한 원물구입 자금지원 강화(100억원)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등 국고보조시설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 미승인 근저당 해지촉구 및 근저당을 해지하지 않을 시 보조금 반환 추진

  · 지도·점검(연 3회 이상) 및 등기부 등본 열람(분기별 1회 이상) 강화

  · 신설 유통센터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채권보전 추진

2)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을 위한 상품화 및 브랜드화 지원

o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상품화 개발 지원

- 임산물 상품화(포장비, 디자인 개발)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8개소 500백만원, 일반품목 374개소 1,622백만원

o 지리적표시 및 친환경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지원

-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 12개소, 720백만원

  * 지리적표시품 등록단체에 한하여 총사업비 30%이내의 홍보·마케팅비용으로 활용 가능

o 지리적 특성을 가진 임산물을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관리하여 지역의 향토 브랜드화

- 지리적표시 등록품목 확대 : ('14까지) 51품목 → ('15까지) 52품목

- 지리적표시품 홍보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실시(농식품부 합동)

- 지리적표시 편법 운영 근절을 위한 등록단체 운영실태 수시 지도·관리
-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실태조사 추진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14년 총 51개소 중 22개소 조사('15년에 29개소 실시)

o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유도 및 유통효율 제고를 위한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
- 변경된 한국산업규격(KS) 체계에 맞추어 포장규격 코드 변경
- 두릅, 은행 등 임산물 등급규격 변경

3)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를 위한 임산물 소비촉진 활동 지원

o 'e-숲으로'와 '푸른장터'를 통합한「임산물 쇼핑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임산물 소비촉진 효과 제고(49백만원)

o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판매 및 전시·박람회 등 행사 지원(400백만원)
- 대도시 및 지역축제에서 임산물을 전시·판매하는 소비촉진 직거래 행사 추진
- 우리 임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회, 세미나, 식품박람회 등 행사참가 지원

o 설, 추석 등 명절 성수기 임산물의 수급안정대책 추진
- 성수품 공급기간 동안 임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특별대책반' 운영
- 산림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절 성수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산림마트, '푸른장터' 등을 통한 성수품 특별판매 행사 실시
- 성수품 공급기간 중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산림청·지자체·농관원 합동)

4)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임산물유통정보 제공

o 임산물 생산·출하량 조절을 위해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및 수출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임업관측 정보 제공(6억원)
- 임업관측 : 6품목(밤, 표고, 떫은감, 대추, 관상수, 산채류)

o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한 임산물 종합정보 제공(352백만원)
- 임산물 쇼핑몰, 직거래정보, 가격유통정보 등 서비스 제공

o 우수하고 안전한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임산물 표준재배지침 마련
- ('14까지) 58품목 → ('15) 1품목(산딸기-산림과학원)

o 산림소득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림소득운영지원시스템’ 운영

- 산림소득분야 DB의 지속적 관리 및 사업자 선정시 구축된 DB를 활용

o 임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밤” 군납 품목 추가 추진

- (사)한국밤재배자협회를 통해 국방부 군납품목 신청

o 유통정보 제공 및 직거래 촉진을 위한 ‘임산물유통종합정보센터’ 준공

- 판매장, 전시장, 체험장, 저장 및 가공시설 등(2,430백만원)

라. 추진일정

o 명절 성수기 임산물 수급안정대책 추진 : 2015. 2월, 10월

o ‘밤’ 군납품목 신청(한국밤재배자협회) : 2015. 6월까지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실태조사 및 경영분석 : 2015. 2분기

o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 : 2015. 2분기

o 임산물 지리적표시등록 관리실태 점검 : 2015. 2~3분기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지도점검 : 2015. 3~4분기

o 임산물지리적표시등록 추진 : 연중

o 산림소득사업 운영시스템 운영·관리 : 연중

참고 1 2015년 임산물유통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예산		2015예산안		형태	지원율 (국:지:융:자)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o 임산물유통지원【농특】		9,658		15,111		
- 임업관측	6품목	600	6품목	600	보조	100
- 임산물 유통정보화	1식	401	1식	401	보조	100
- 임산물소득소비촉진	1식	450	1식	400	보조	100
- 청정임산물홍보	-	-	1식	30	보조	100
- 임산물 가공·유통 평가(선정)	-	-	1식	40	보조	100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신규)7개소 (보완)5개소	3,250 250	(신규)7개소 (보완)5개소	3,250 250	보조	50:20:-:30
- 임산물유통기반지원(유통차량)	49대 (냉동 42) (일반 -)	168 (168) (-)	45대 (냉동 35) (일반 10)	168 (140) (28)	보조	20:20:20:40
- 임산물 상품화지원	161개소 (일반153) (특별 8)	1,233 (733) (500)	382개소 (일반374) (특별 8)	2,122 (1,622) (500)	보조+융자	20:20:20:40
- 임산물명품브랜드화	12개소	720	12개소	720	보조	40:20:-:40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55개소	1,860	155개소	1,860	보조+융자	20:20:20:40
- 임산물 가공지원	640대	640	53개소	640	보조+융자	20:20:20:40
-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	-	2개소	2,000	보조	50:20:-:30
- 묘목 유통단지 조성	-	-	1식	200	보조	50:50:-:-
- 임산물 유통종합정보센터	1개소	86	1개소	2,430	보조	50:-:-:50

참고 2	2016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예산 요구기준

<기존 사업 ⇒ 농특회계로 요구>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과 관련된 사업

- o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및 기반정비, 산림복합경영,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사업 등) 등
- o 생산 시설·장비, 방제장비, 창고, 관리사, 작업로·울타리·관수시설 등 부대시설

□ 단기소득임산물 유통·가공과 관련된 사업

- o 유통에 필요한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보완), 저장시설, 운반차량, 파렛트 및 운반용 상자 등
- o 임산물 가공 및 상품화에 필요한 기계장비, 가공·포장설비

□ 지원대상자

- o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조합 등 산림분야 종사자

<산업화사업 ⇒ 지특회계로 요구>

□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 o 단기소득임산물을 이용한 박물관, 전시관, 공원, 체험시설 등 시설물 조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
  - *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물 산업화와 연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지특회계(청정임산물 산업화단지 조성사업)로 요구

□ 임산물 생산·유통 보다는 전시·체험·관광을 위주로 하는 사업

- * 임업인이 임산물 제품생산시설, 체험시설, 전시·홍보시설 등은 지특회계(산림복합경영 산업화사업)로 요구

25.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목 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에 따라 역사와 문화가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

o 훼손 등산로 정비 : 1,082km, 17,847백만원

o 등산로 연결사업 : 3개소, 824백만원

o 트레킹길 조성사업 등 : 243km, 7,506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쾌적한 산행문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낙후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숲길조성 수요 증대

o 고령화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걷기와 등산에 대한 수요 증가

o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숲길이용 활성화 전망

o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보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림생태·문화·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숲길조성과 지속적인 관리 필요

나. 기본방향

o「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및「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

o 숲길 및 숲길 주변의 환경 보전과 숲길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숲길 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물 설치, 훼손등산로 정비 등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o 숲길의 노선선정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며, 향후 운영·관리방안 마련 추진

o 숲길 노선의 수평적 선형을 유도하여 보행활동에 제약을 가진 이용객도 산림휴양의 공익적 기능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o 5대 트레일 및 5개 둘레길, 백두대간·정맥 및 100대 명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전국 숲길 네트워크 구축·관리

- 숲길네트워크구축 : ('14까지) 2,021 → ('15) 188 → ('21까지) 7,614km
  * 국가트레킹길(53㎞) : 백두대간,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등
  * 지역트레킹길(135㎞) : 지역별 특색있는 트레킹길 조성

o 도시근교, 마을뒷산 등 생활권 중심으로 훼손등산로 정비

- 지역숲길 : ('14까지) 7,861 → ('15) 1,082 → ('21까지) 13,505km

o (조성 및 운영·관리)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운영관리

1) 훼손 등산로 정비

< 사업량 및 사업비 >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원형태
계	1,082	17,847	
국가등산로	47	1,496	직접
지역등산로	1,035	16,351	보조

< 대상지 선정 >

o 백두대간 및 정맥 등산로 구간 중 이용자 증가 등으로 훼손이 심화되어 정비가 시급한 곳과 민원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 우선 선정

o 100대 명산, 생활권 주변의 등산로 등 이용객이 집중되어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을 우선 선정
  * 지방산림청 소관 사업은 국유자연휴양림 구역과 연계된 등산로 정비 포함

< 사업 추진방향 >

o 대상지의 규모, 훼손 상태 및 주변 산림생태 환경을 고려한 설계 추진

- 동일 노선은 숲길관리청별로 설계 단계부터 협의하여 유역 완결 추진

o 산림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정비

- 가급적 친환경 소재와 주변 경관과 조화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과다한 구조물과 인위적 구조물은 최소화하여 설치

- 정비 구간은 노면정비, 훼손지 복원, 안내 및 편의 시설 등 주요 공종을 반영하여 등산객의 민원요구가 없도록 정비
- 등산로 주변 경관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병행 추진(숲가꾸기 등)

o 위험지역의 안전시설물 및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 재해 취약지 등 위험지역의 정비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편의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
- 급경사로 훼손이 반복되는 구간은 유실방지를 위한 공법 반영 및 재해 예방 시설의 집중 설치
- 산행사고 빈발 지역은 사고내용에 대한 안내판 및 간이 구급함 설치

o 등산객의 산행안전 지원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등산객의 조난 대비 신고처(좌표 등) 등을 표기한 위치 표지판 설치
- 정비, 보수 등을 위하여 표지판은 위치데이터(GPS)로 유지·관리
- 안내판, 표지판 등 설치 시에는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을 적극 활용
- 금년도 사업지는 안내판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설계반영 추진)
  * 기존 안내판은 스티커형 부착 가능하며, '16년도 설치대상 물량 파악

o 등산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이용도가 높은 등산로는 가급적 상반기에 정비 완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전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이행
- 관내의 등산로 현황과 관리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숲길 관리청별 노선거리 20㎞이상 등산로는 안내센터 설치·운영
-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 학계 등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 만족도 제고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시(설계, 시공) 현장심의회 구성·운영

2) 등산로 연결

< 사업량 및 사업비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원형태
등산로 연결	3	824	보조

< 대상지 선정 >

o 산림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및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 연결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 우선 필요한 대상지 선정

- 교량과 같은 녹지공간형과 보행가교형(소형, 대형)으로 구분

  * '15년도 신규 사업대상지는 사업계획 사전 협의·반영

< 사업 추진방향 >

o 녹지공간형은 산림식생복원 등 사업을 통해 경관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안정감과 개방감을 주도록 설계

o 보행가교형은 아치교량 형태의 케이블공법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며, 노폭이 좁은 등산로 연결과 산정의 단절된 암석 구간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전성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

o 규모가 큰 등산로 연결은 설계부터 반영하고 당해연도 행정절차 이행 추진

- 디자인 심의, 부지확보 등 민원사항 해소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완료
-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 방지
- 소요예산 확보 등 사업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철저

o 단절된 훼손지의 연결 등 녹지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안전성이 강화된 등산로의 네트워크 구축

-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시설 도입
- 주요자재는 이용객의 안전성, 편의성과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추진

o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품질향상 노력

-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 이용자 만족도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식사업 명칭과 산림청 지원사업 명시

3) 트레킹길 등 조성

< 사업량 및 사업비 >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원형태	비 고
계	243(1식)	7,506		
국가트레킹길	53.0	1,021	직접, 보조	직접 13, 보조 40
지역트레킹길	135.5	3,625	보조	
레저스포츠길	44.0	425	보조	
휴양·치유숲길	10.6	1,685	보조	
탐방로 조성	1식	750	보조	

< 국가트레킹길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연도	수립기관
o DMZ트레일 조성 기본구상	2010	동국대
o 낙동정맥트레일 기본노선 조사보고서 및 낙동정맥 CI 개발	2011	경북
o 백두대간트레일 기본계획	2012	(사)백두대간숲연구소
o 서부종단·남부횡단트레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2012	(사)한국문화관광연구소
o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 조성 기본설계	2012	케이지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경북)
o 평창올림픽트레일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2012	강원대
o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2013	숲산사 산림기술사사무소(전남)
o 속리산둘레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013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
o 팔공산둘레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15	대구(예정)

< 사업 추진방향 >

o 트레킹길 노선선정 기본원칙에 따라 노선을 선정하고, 기 조성된 트레킹길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o 국가트레킹길의 일관된 정보제공 및 연결을 위해 기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기본계획에 따라 노선 선정·조성 및 동일한 안내체계 적용

- DMZ펀치볼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울진금강소나무숲길, 한라산둘레길은 기본계획에 의한 노선을 기본으로 기 조성된 숲길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거점지역별 안내센터 설치, 고유 CI 및 안내체계 구축 등 운영·관리방안 마련 추진
- 팔공산둘레길 조성 기본계획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여 수립·완료하고, 차년도부터 해당 시·도에서 예산반영 사업 추진
- 속리산둘레길,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낙동강 풍경트레일 등은 노선이 통과하는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o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안내시설 설치

- 안내시설에는 사업명칭과 산림청 로고를 반드시 표시

o 조성 완료되거나 일부구간 완료되는 트레킹길은 개통식 및 걷기행사를 추진하여 숲길사업에 대한 홍보효과 극대화

o 기타 휴양·치유숲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조성 등은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성하고 자체 유지·관리 실시

o 타 부처 또는 각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걷는 길'과 중복 노선 배제

- 타 부처(지자체)에서 산림내를 통과하는 걷는 길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협의 등 의견 요청 시 숲길 노선을 반드시 확인

라. 추진일정

o 숲길사업계획 수립·배부 : 2015. 1월

o 숲길 실태조사 : 연중

o 숲길관리청별 특별현장책임관 지정 : 2015. 5월

o 숲길 걷기행사 : 2015. 상반기

o 숲길 현장모니터링 : 2015. 6월·11월

o 숲길 걷기행사 : 2015. 하반기

o 숲길 조성 완료 : 2015. 하반기

o 숲길 이용 만족도 조사 : 2015. 4분기

o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 수립·제출 : 2015. 11월까지

o 2015년도 숲길사업 추진결과 제출 : 2016. 1월

26.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목 표

◇ 청소년·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행문화 보급과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 확산 도모

o 등산·트레킹학교 및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운영

o 민간단체와 클린활동 등 협력강화를 통해 산행문화 개선

◇ 숲길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위한 서비스 증진으로 만족도 제고

o 숲길안내센터 및 산악구조대 운영, 숲길 안전대책 추진 등

o 숲길체험지도사(182명, 1,642백만원)를 통한 산행서비스 품질 향상

가. 정책여건

o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와 함께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체제형·체험형 중심의 다양한 산행수요 발생

o 산행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산행객들의 산악사고 지속증가

- 산악사고 구조건수: ('09) 7,096 → ('10) 7,718 → ('11) 7,825 → ('12) 8,602건 → ('13)10,882건

o 올바른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참여 기회제공 부족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악구조 활동 구축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나. 기본방향

o 올바른 산행 유도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등산관련 정보 및 양질의 산행 안내서비스 제공

o 숲길훼손 및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의식수준 제고

o 지속적인 숲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DB 구축

o 올바른 산행방법 등 건전한 등산문화의 체계적인 보급·지원

o 산악구조 활동의 민·관 공조체계 유지 및 교육훈련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등산・트레킹 학교 운영

o 교육기간 : 2015. 3 ~ 11월(9개월)

o 교육인원 : 1,500여명

o 교육과정 : 청소년과정, 백두대간・DMZ 생태탐방과정 등

o 사 업 비 : 280백만원

o「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산악구조대원 교육 강화

- 산림항공구조대는 하반기에 산악구조 교육 및 훈련(20명 계획)

  * 산불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시기 조정 가능

o 청소년 및 소외계층의 교육과정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정

  ・교육인원 : ('12)1,739명 → ('13)1,710명 → ('14년)1,620명 → ('15년 계획)1,520명

o 제15회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과정 운영

-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등산교육과 백두대간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산림생태계의 올바른 이해와 국토사랑 정신을 고취

- 대　　상 : 중·고등학생

- 기　　간 : 2015. 7월 말~ 8월 초

- 장　　소 : 백두대간(684㎞) 약 10개 권역

- 참가인원 : 약 300명

- 참여방법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msc.kr)를 통해 공고(6월 게시 예정)

  * 지원 협조사항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사업수행에 따른 업무 협조 및 인력, 차량, 야영장 등 협조·지원

o 교육의 성과제고,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위해 위탁사업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 별도 실시

- 전과정(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정 제외)

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운영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 사 업 비 : 702백만원(운영경비 175, 조사・홍보사업비 527)

o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산악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및 지원사업 추진

-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산・트레킹학교 운영
-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등 홍보 활동
- 숲길체험지도사 교육 및 국가숲길 운영・관리 위탁사업 실행

  * 관련단체 : 한국산악회, 한국트레킹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 (사)숲길 등

o 센터발전방안(2014)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 및 자립기반 구축

-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경쟁력 확보방안 모색
- 센터가 등산・트레킹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확대

o 숲길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전국 걷는 길 DB 구축 및 정보 공유화 추진

- 전국 걷는 길 네트워크 구축 및 숲길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 연차별 구축 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o 유관 기관 및 기업, 산악단체 등을 활용한 등산로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이용도가 높고 특색 있는 등산로는 민간단체를 이용한 사후관리 도모
- 지자체별 등산단체를 활용하고, 관내 등산로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 추진
- 숲길관리청별로 관내의 등산로를 선별하여 단체 등과 협약 체결

o 자생 산악단체에 주요 산행정보 공유 및 숲길관련 공모사업 추진

- 「숲에 On」 및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산행정보 공유 및 정책고객 운영 활성화 도모

  ・산악단체 사후관리를 통해 숲길정책 사업의 서포터로 활용
- 숲길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과 산사진 공모전 등 전국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숲길관련 공모사업 추진

o 청소년, 사회소외계층이 참여하거나 다수의 국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공익적 성격의 등산·트레킹문화사업 확대

o ’14년도 성과를 분석한 후 실적이 저조하거나 타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기하고 전체 국민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신규사업 발굴

o 산악회 등 등산·트레킹 관련 단체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 지속 수행

3) 숲길 안전대책 추진

o 숲길관리청별로 숲길 안전관리대책 마련·추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5항에 근거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 근거

o 숲길관리청 및 숲길안내센터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경찰서, 소방서 등 24시간 상황유지 유관기관 및 지역숲길 단체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보 공유
-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 강화
  - ·산림청 홈페이지 및 각 숲길 관련 사이트에 ‘산행 안전수칙’ 및 비상연락망 게재
  - ·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119상황실과 산림항공구조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산악사고 구조 활동 전개
  - ·주요 숲길 출입구에 산행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o 숲길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숲길관리청은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이용자 정보제공 및 안전조치 사항 기록 유지
- 숲길체험지도사(182명) 등을 활용하여 숲길별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 순찰
- 지역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산림보호협회 등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한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한 정기 순찰 실시
- 거점 마을별 자율방범조직 구성·운영
- 각종 이정표 및 안내판 등 보수·보완 및 추가 확충

o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의 효율적인 운영

-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휴식년제 및 휴식기간제 운영
- 산림재해 및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한 숲길의 일시적 이용 통제

o 국가지점번호 제도 도입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에 설치된 안내판, 이정표 등에 국가지점번호 부여 및 번호판 설치

4) 산악구조대 운영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공중, 산림항공본부) >

o 산림항공구조대(산림항공본부) 운영 및 교육 강화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구조대 운영계획 수립·제출
- 산림항공구조대원은 연1회 이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참여
  * 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산악구조대원반 교육 수행
- 등산객이 집중되는 봄·가을철 및 공휴일·주말 등 산악구조 대응 및 상황유지 철저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산악사고 대응

< 민간산악구조 활동의 협력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

o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민·관 합동 구조체계 구축

- (사)대한산악구조협회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정책방향 공유
  ·구조협회 : 1본부 16개 시·도 연맹소속 민간구조대 운영(17개대 600명)
- 해외(중·일) 산악구조대와의 합동훈련에 교류 참여(산림항공구조대)
-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 대처

o 제6회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개최(6월, 500명)

5) 숲길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숲길안내센터 운영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조성된 트레킹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추진

o 숲길관리청은 20km 이상의 숲길에 숲길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숲길 운영·관리 계획(예산 및 인력운영 계획 포함) 수립 추진

o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숲길안내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16개소)

- 기업의 사회공헌과 연계한 숲길안내센터의 민간분야 투자 시범 도입

o 주요 사업내역

주요내용	세부내역
숲길의 상시 점검 및 유지・보수	o 각종 재해 조사・보고 및 소규모 복구, 노면 배수로 정비, 숲길주변 풀베기, 안내판 정비, 안내판 설치, 기타 시설물 정비 등
숲길안내센터 운영・관리	o 숲길 이용정보 및 편의시설 등 제공 o 숲길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산행 및 안전교육 o 숲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추진 o 홈페이지 운영, 예약제 운영(필요시) o 각종 재해대비 숲길의 일시 이용중지 안내 o 숲길관련 협의체 운영(정기, 수시)
트레킹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o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교류 도모 o 청소년과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프로그램 상시 운영
트레킹길 모니터링	o 숲길 이용현황 파악 및 이용객 만족도 조사 o 숲길에 대한 이용자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o 지역주민・이용자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소 등 o 숲길 노면 및 주변환경, 불필요한 샛길 등의 분기, 시설물 노후화, 위험요소 등 정기・수시 점검

6) 숲길체험지도사 효율적 배치・운영 및 전문성 강화

o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올바른 산행문화 교육・홍보 등을 위해 숲길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배치・운영

- 운영 계획 : 182명(지방청 등 45명, 지자체 137명)

o 100대 명산과 기 개통・운영 중인 트레킹길의 숲길안내센터에 우선 배치

- 100대 명산 등 주요 산의 숲길에 대한 GPS 좌표 보완조사 및 현재까지 미 조사된 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DB 구축(「숲에 On」에 자료 제공)
- 기 개통・운영 중인 숲길안내센터 운영・관리 지원

o 숲길체험지도사 표준교재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능력배양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4년 용역사업 결과 보급

o 숲길체험지도사로서의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 실시

- 교육일정 : 2015. 2~4월중
- 교육인원 : 기당 40명(5회)
- 교육기관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7) 지역문화와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숲길이용 문화 정착

o 민・관 거버넌스 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 ‘우리 명산 클린 경진대회’ 등 지역 산악단체 참여 활성화

- ‘트랭글 숲길보안관’과 지속적인 클린활동・캠페인 전개

  * 과도한 산행열풍 및 과시를 위한 고가 아웃도어 열풍 자제

o 숲길 이용과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숲길 홍보를 위해 구간별 스토리텔링 개발 운영

- 지리산둘레길, DMZ펀치볼둘레길, 금강소나무숲길 시범 운영결과 분석활용

o 숲길체험지도사 등이 이용객과 함께 숲길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재미있게 안내하여 숲길 주변의 역사성 재조명

  * 예) 숲길별 구간명칭을 ‘남명 조식의 길’, ‘화해와 상생의 길’, ‘묵언의 길’ 등

라. 추진일정

o 트레킹길 운영・관리 위탁계약 체결 보고 : 계약체결 즉시

o 2015년도 등산・트레킹학교 운영계획 수립 : 2015. 1월

o 등산·트레킹학교 운영・위탁 계약 : 2015. 2월

o 숲길체험지도사 위탁교육 : 2015. 2~4월

o 등산・트레킹학교 운영 : 2015. 3~11월

o 등산・트레킹학교 만족도 조사 : 2015. 6월

o 제6회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개최 : 2015. 6월

o 트레킹길 운영・관리 상반기 실적보고 : 2015. 7. 15일까지

o 제15회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 2015. 7~8월

o 등산・트레킹학교 운영결과 제출 : 2015. 12월

o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업 추진 : 연중

o 2015년도 트레킹길 운영・관리 실적보고 : 2015. 1. 15일까지

27. 국립산악박물관 운영·관리

목 표

◇ 세계 산악강국으로서 위상제고 및 등산역사·문화와 관련된 전시·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국립산악박물관 운영·관리
◇ 국립등산학교 건립을 위한 설계 추진(사업비 20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세계 최고의 산악강국임에도 등산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유물 관리 미흡
o 산악단체 및 산악인들의 전시·교육·정보 제공 등 구심체 역할 필요
o 등산역사·문화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전시·홍보체계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o 우리나라 산악메카로 육성하여 등산역사·문화 거점으로서의 입지 구축
o 등산·트레킹 교육·체험·정보전달 등 복합 문화시설 기능 수행
o 관련 유물·유산의 체계적인 수집·기록·전시 등을 통해 산악강국의 면모 강화 및 전시 운영·관리 체계 구축
o 국가 차원의 등산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 및 국민의 건강 행복 증진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립산악박물관 운영·관리 기반 구축

o 국립산악박물관 등록을 위한 박물관 전시자료 확보 및 관리
- 소장품 대상으로 유물 심의 평가 후 박물관 자료 선정 및 등재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박물관 소장 자료 분류·등록 등 철저

o 국립산악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및 조직 구성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관리 규정」개정
  ·영상실, 기획전시실 등 시설물 대관료 산정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박물관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 및 관리 발전방안 도모

o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활성화 등 발전방안 마련

-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진흥계획 수립
- 속초시립박물관과의 연계동선을 확보하여 운영 활성화 도모
- 홍보물 제작, 관광투어 등 속초시와 협력 강화를 통해 이용객 볼거리 제공
- 홍보 강화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한 기획홍보 추진

2) 국립등산학교 건립 기반 구축

o 총사업비 : 5,200백만원(설계비 200, 시설비 5,000)

o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자료수집

-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조성을 위한 자료 수집
- 대한산악연맹 등 산악단체로부터 자료 수집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o 실시설계 추진

- 장 소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35-3번지 내
- 기 간 : 2015. 1~12월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시설 : 강의실, 사무실, 기숙사, 인공암벽장, 야영장 등

o 국립등산학교 건립 및 발전방안,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용역 추진

라. 추진일정

o 2015년도 국립산악박물관 운영계획 수립 : 2015. 1월

o 국립산악박물관 운영·위탁 계약 : 2015. 1월

o 국립등산학교 실시설계 추진 : 2015. 1~11월

o 국립등산학교 자료 수집 : 연중

o 국립등산학교 건립에 따른 용역 추진 : 2015. 1~3월

산림복지시설사업단 소관

1. 산림복지시설사업 조직·예산 확보 추진

목 표

◇ 산림복지시설(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의 '16년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한 조직 및 운영예산 확보

가. 정책여건

o 정부는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신설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입장

* 각 부처는 향후 5년 이내에 설치 예정인 문화시설·전시연구형 기관의 법인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함(2014 정부조직관리지침)

o 세수실적 부진 및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세입 확대가 어려워 '16년 개원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운영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전망

나. 기본방향

o '15년도 준공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차질 없는 법인 출범을 위해 법률 제정 및 조직 확보를 추진(법인은 전시·교육·백두대간 연구를 추진)

* 과학원, 품종센터 등의 업무와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내부 협의를 거쳐 Seed Vault관련 종자연구 기능은 국립수목원의 2차 기관으로 추진('16년 소요정원 요구)

o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의 '16년 차질 없는 위탁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보 추진

o 산림복지시설의 차질 없는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추진

* 개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중기재정 소요 요구시부터 적극 노력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2016년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보 추진

o 백두대간 산림생물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선도하는 아시아 최고의 수목원이라는 위상에 걸 맞는 조직 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전에 본청 및 소속기관 관련부서와 조직 및 정원(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하고 필요 논리 개발
- 백두대간수목원 법안 통과 후 수목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정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와 협의 추진

o 백두대간수목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원 및 직원 충원 추진

- 기획재정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원을 충원하되, 조직 안정화 및 수목원의 경영능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충원할 계획

o 종자연구기능(Seed Vault 관련)은 국가의 역할 및 국립수목원의 2차기관화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여 '16년 소요정원 요구 추진

2)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의 2016년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보 추진

o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를 산림복지산업육성 허브화를 통한 세계 최초·최대 산림치유단지 위상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전에 본청 및 소속기관 관련부서와 조직 및 정원(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조율

*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산림치유단지를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

o 법안 통과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정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와 협의 추진

- 예산 당국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원을 충원하되, 산림치유단지 경영능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충원할 계획

3) '16년도 산림복지시설 개원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o '16년 중기재정 심의 시 한국임업진흥원 등 유사사례 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등 '16년 운영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협의 추진

o 산림복지시설 소재 지역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운영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최대한 노력

o 법안 국회통과, 조직 및 인력 협의 지연시 시설관리 위주의 운영예산 확보를 위한 Plan B* 를 마련하는 등 최대한 노력

* 최소한 시설관리 운영비 확보는 추진하되, 운영 인력 T/F를 추진할 필요

라. 추진일정

o 산림치유단지 조직 및 정원(안)에 대한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 협의 완료 : 2015. 1월

o 산림복지시설 운영예산 중기재정심의(안) 작성 : 2015. 1월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직 및 정원(안)에 대한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 협의 완료 : 2015. 3월

o 종자연구 기능의 국가기관화 필요성 등 조직 및 인력 확보 논리 마련 : 2015. 3월

o 산림복지시설 운영예산 '16년도 정기 요구(안) 작성: 2015. 4월

o 종자연구 기능의 국립수목원 2차 기관화 관련 소요정원 요구(행자부) : 2015. 4월

o 수목원 설립위원회 지원단 구성·운영 : 2015. 8월

o 수목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안) 마련 : 2015. 10월

o 수목원 설립위원회 위촉 준비 : 2015. 10월

o 수목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2015. 10월

o 산림복지시설관련 법안(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후 조직 및 정원 확보 추진 : 수시

o 산림복지시설 운영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및 국회 대응 : 연중

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 추진

목 표

◇ 백두대간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활용을 선도하는 아시아 최고의 수목원 조성

◇ 16년도 개원을 위한 시설공사 차질 없이 마무리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의 감소로 인하여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 보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o '16년도 개원 예정인 수목원이 봉화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지역주민의 기대가 크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필요성 증대

나. 기본방향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완공을 위한 마무리(5차) 공사 차질 없이 추진

o 백두산호랑이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호랑이숲 확대 조성 추진

o 수목원 전시·보전 식물자원 식재마무리 및 원산지 정보 등 생산·관리 이력을 철저히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o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옥석산·문수산 일원)

o 면　　적 : 5,179ha(중점시설지구 206ha)

o 총사업비 : 2,201억원

o 사업기간 : 2009년~2015년(7년간)

o 주요시설 : Seed Vault 등 연구시설, 테마별 전시원 등 전시공간

o 연차별 추진사항

'09～'11	'12～'15	'16
《계획・설계단계》	《주요시설 공사 단계》	《개원준비 및 개원 단계》
◦ 예비타당성 조사 ◦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 토지보상 ◦ 식물 수급계획 수립 ◦ 인허가 및 건축 협의 등 ◦ 조성공사 계약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사업단 신설('11.1)	◦ 주요 시설공사 시행 - 건축,토목,전기,기계,조경, 전시원, 특수시설(Seed Vault) 등) ◦ 전시식물 및 자료 본격 수집 - 식물조사 및 자료 수집 - 국내외 식물 확보・식재 ◦ Seed Vault 완공·시험가동 ◦ 수목원 연계 산림사업 추진 ◦ 사후환경영향조사(계속) ◦ 준공 관련 제반 인허가 완료	◦ 완공시설 관리 - 완공시설 유지 관리 - 식재식물 생육 관리 및 증식 ◦ 개원준비 - 연구시설, 기자재 등 설치 - 연구 및 사무공간 구성 - 전시원 식재 보완 ◦ 수목원 연계 산림사업 마무리 ◦ 수목원 개원

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마무리(5차) 공사 추진 및 준공

o 건축・토목・조경 등 조성공사 차질 없이 추진(371억원) 및 준공

- 산림청, 조달청,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정기적 협의회 개최(분기)
- 인건비, 장비대 등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로 공사 현장 자금운용 활성화
- 지역민 민원 예방을 위해 이해관계자 상시 교류협력 체계 구축(분기)

o 공사 준공에 따른 각종 관리계획 변경 및 인허가 처리 추진

- 도시 및 하천 관리계획 변경,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사항 처리 등

o 기 완공 건축물, 전시원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추진

- 시설별 관리인력 배치(64명, 8억원), 하자점검 및 보수 등

3) 호랑이 숲 확대 조성 마무리

o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호랑이 숲 조성 추진(4.8ha)

- 주요시설 : 관리실, 사육장, 방사장, 안전시설(이중 휀스 등)

o 전문가(학계, 동물원)로 구성된 "호랑이 숲 조성자문위원회" 구성・운영

o 호랑이 종 보전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MOU 등을 통해 조성사업 협력 강화

4)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 및 보전 식물자원 확보

o (목표) 준공까지 4,000종 1,300천본 확보 및 식재 마무리

o 구입, 교류, 기증, 자체수집 등 도입경로 다양화로 식물자원 확보 효율성 제고

- 공·사립 수목원 보유식물 기증 및 구입, 야생채집, 국립수목원 MOU 기관 교류 등
- 백두대간 지역 자생식물 우선 확보로 현지 외 보전 목적 조기 달성

o 식물자원은 원산지 정보 및 생산·관리 이력을 철저히 기록 ⇒ DB 구축

라. 추진일정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 : 연중

o 수목원 조성 전시물 및 유용식물 확보 : 연중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5차) 계약 : 2015. 3월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식물 및 수목 이식사업(4차) 발주 : 2015. 3월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 산림사업 추진 : 2015. 4~11월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식물 및 수목 이식사업(4차) 준공 : 2015. 9월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5차) 준공 : 2015. 10월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준공 관련 제반 인허가 완료 : 2015. 12월

3. 백두대간수목원 개원을 위한 운영준비 철저

목 표

◇ 개원이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직의 운영계획 수립 및 세부 매뉴얼 작성을 통하여 운영 체계 확립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대내·외 홍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 정책여건

o 산림생물자원의 보전·전시기능 강화와 산림문화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의 생물자원 보전 및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필요

o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다양성 감소로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 및 식물자원 보전 필요성 대두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 생물종의 안정적 보전·관리로 국가·국제적 의무 이행 필요

나. 기본방향

o 2016년 개원에 대비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프로그램개발 등 사전준비

o 첨단 종자보존 Seed Vault 시설 운영 및 연구시스템 구축

o 지역사회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수목원 운영 개요

o 입장객 관리, 보안관리 등 운영시스템 도입, 신규자산취득, 수목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조직 운영

o 수목원 역할에 대한 국민의 사회·문화적 요구 증가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o 유전자원의 수요확대, 경제적 가치 증대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연구사업 개발 운영

o 연차별 추진사항

'09～'11	'12～'15	'16
《계획 및 설계단계》	《운영계획 수립 및 준공》	《개원준비 및 개원 단계》
◦ 예비타당성 조사 ◦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 환경영향 평가 및 문화재시굴 조사 ◦ 토지보상 ◦ 식물 수급계획 수립 ◦ 인허가 및 건축 협의 등 ◦ 조성공사 계약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사업단 신설('11.1)	◦ 수목원 운영 방향 제시 - 조직, 시설, 연구 분야 ◦ 수목원 운영 매뉴얼 개발 - 전시원 및 온실 - 식물수집 및 정보관리 - Seed Vault 운영 ◦ Seed Vault 운영 준비 - 저장시설 시험가동 및 점검 - 중장기 종자확보계획 수립 - 종자수탁을 위한 대내외 협력 - 운영 비품 및 기가재 구입 ◦ 대·내외 홍보 - 국제기구행사와 연계 홍보 - 팜플릿, 영상물 제작 홍보	◦ 백두대간수목원 연구과제 발굴 ◦ 단기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급별 운영기준 마련 및 채용 - 연구직, 관리직, 비정규직 등 ◦ 재원확보 및 수익창출 방안 마련 ◦ 시설 및 연구장비 확보 - 전산망구축, 비품, 장비 구입 ◦ 지역거점 관학협의회 구성 운영 - 일자리 창출 협조지원 등 - 초·중·고 현장학습 및 인턴쉽 과정 설치 등 ◦ 개원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 ◦ 수목원 개원 및 홍보

2) 백두대간수목원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3년차)

o 백두대간 생태탐방 프로그램 등 장단기 체험프로그램 개발

o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중장기 방문객 수요창출 전략 마련

o 마케팅, 홍보전략, 수목원 이용객 관리 전략 등 수립

- 지역(봉화, 영주, 울진, 영월, 태백) 관광자원과 연계한 이용객 유치 방안 등

o 집기비품배치, 장비, 설비 운영 및 안전관리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

3)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대내·외 지원조직 구성 운영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문위원단 구성 운영(2월)

- 수목원 운영을 위한 분야별 지역 단체장,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

- 수목원 경영, 기획·홍보, 전시, 교육, 연구 등 대경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o 준공 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설립위원회" 구성 운영(10월)

- 수목원 개원을 위한 조직, 예산, 운영규정 제정 등 의사 결정 수행

4) Seed Vault 운영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o 국내 소속기관 보유종자 입고추진 및 종자 정보관리

o 저장고 점검 및 관리, 입고종자 목록정리 및 전처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인력 확보 추진(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o Seed Vault 종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종자보존 협의체 구성 추진

- FAO, AFoCO, BGCI 등 시설 등록 및 MSB, SGSV 파트너쉽 구축 협의

o Seed Vault 운영 및 종자보존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추진(10월)

o 본격적인 Seed Vault 가동에 앞서 국내·외 홍보 적극적으로 추진

- 영문판 신문 또는 해외 일간지에 기사화, 팜플릿 제작 등

- Seed Vault 시설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5) 백두대간수목원 준공 및 운영 홍보

o 수목원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인지도 확보를 위한 홍보 추진

- 지역대학, 부처 관련기관, 시·군, 공사립수목원 등의 현장견학 및 설명회

o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해외 홍보 추진

- 생물다양성 및 식물원 관련 박람회, 학회 등 국제행사 참여 홍보

o 지역홍보 병행 추진

- 경상북도 지역 대중매체, 광고, 지역관광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홍보 전개

라. 추진일정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용역 발주 : 2015. 2월

o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중장기 방문객 수요창출 전략 용역 발주 : 2015. 2월

o 수목원 조성 및 운영 준비를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 2015. 4월, 10월

o Seed Vault 시설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2015. 9월

o 백두산 호랑이 종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15. 10월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준공 및 홍보 : 2015. 10월

o 소속기관 및 고려대학교 보유종자 입고추진 및 종자 정보관리 : 연중

4.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공사 마무리 추진

목 표

◇ 철저한 공정관리와 공종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최고의 산림휴양치유시설 품질 확보 추진

가. 정책여건

o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환경성 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의 증가로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o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실현의 구체화

o 산림치유의 기초연구, 교육, 체험, 체류 기능을 연계하는 세계 최초의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치유 활성화 기틀 마련

나. 기본방향

o 자연환경자원을 산림치유와 연계하면서 훼손 최소화와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치유단지를 조성

o 연구, 치유, 지원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

o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공헌형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백두대간 낙후지역의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롤 모델 제시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o 위　　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원
o 면　　적 : 2,889ha(중심시설지구 152ha)
o 총사업비 : 1,413억원(토지매입 372, 시설공사 951, 기타 90)
o 사업기간 : 2010～2015년(6년간)
o 주요시설 : 건강증진센터, 수치유센타, 산림치유연구센터, 치유마을 등

2) 시설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

o 건축·토목·기계·조경·산림·전기·통신·소방·폐기물 등 공종별 4차 공사 추진(279억원)

- 공정계획, 일정계획, 진도관리, 통제·조정 관리로 공사의 품질향상 제고
- 공기준수, 품질확보, 원가절감, 안전확보, 환경보전 등을 통해 공기 내 완료
- 주간공정회의(매주 1회) 개최

* 공정율 : ('12) 5% → ('13) 20% → ('14) 57% → ('15) 100%

o 지장물(과수목, 분묘 등) 철거를 통한 원만한 공사추진 도모

o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갈등해소

- 실무협의회 지속 운영(분기별 1회)

o 공사 완료 후 철저한 시운전을 통한 하자최소화 추진

3)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o 자문위원회 정례회의 개최(반기 1회)

o 견본시설 등 목조건축물, 황토블록 건물, 단지 내 숙박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 자문을 받아 품질관리 철저

4) 산림치유단지 시설 홍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o 산림치유단지 홍보 및 체험용 전시시설 콘텐츠 개발

o BI, 슬로건, 네이밍 등 단지 종합디자인 및 포지셔닝 계획 수립

라. 추진일정

o 산림치유단지 조성공사 주·월간 공정회의 : 주·월 1회

o 산림치유단지 자문위원회 개최 : 반기별 1회

o 산림치유단지 실무협의회 개최 : 분기별 1회

o 산림치유단지 차명상센터 설계 발주 : '15. 2월

o 산림치유단지 조성공사(4차) 계약 : '15. 3월

o 산림치유단지 건축물 준공 검사 : '15. 9~10월

o 산림치유단지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15. 9~10월

o 산림치유단지 준공에 따른 인·허가 절차 완료 : '15. 9~12월

5.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운영기반 구축

목 표

◇ ’16년 성공적 개원을 위한 법인화조직 및 운영기반 구축
◇ 산림치유단지 시설 홍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가. 정책여건

o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환경성 질환 및 생활습관성 질환의 증가로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o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실현의 구체화

o 산림치유의 기초연구, 교육, 체험, 체류 기능을 연계하는 세계 최초의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치유 활성화 기틀 마련

나. 기본방향

o 종합적인 산림치유 연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산림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 역할 수행

o 체계적인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

o 산림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낙후지역 발전모델 제시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운영·관리 기반 구축

o 업무 및 프로그램별 전문 인력을 확정하고 규모가 비슷한 유사기관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채용기준 마련

o ’16년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해 조성공사 완료 후 공무원 및 일반국민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산림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피드백

o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각종 운영 장비 구매

2)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o 산림치유단지 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산림치유단지 정관 및 제반 규정 마련, 조직 설립 완료

* 설립위원회 : 임업관련단체,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등의 7인 이내로 구성

o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운영 기반 완성도 제고

3) 산림치유단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및 전개

o 다양한 타깃에 맞춤화된 눈높이 홍보방안 마련

- 학생체험학습 , 관련기관 및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 일반인, 기업체, 전문가, 미디어, 관공서, 해외 등

-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진, 스토리텔링 등 공모전 개최

o 방송, 언론, 온라인, 오피니언리더 등 매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인쇄물(포스터, 브로슈어, 리플릿 등)제작, 동영상, 웹툰, 광고(온라인, 모바일, 신문・잡지, TV 등)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활동 전개

라. 추진일정

o 조직・인력 규모 내부안 확정 : 2015. 상반기

o 산림치유단지 준공 이후 시설운영・관리 계획 수립 : 2015. 상반기

o 산림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 : 2015. 하반기

o 단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장비 등 구입 : 2015. 하반기

o 산림치유단지 홍보 지속 추진 : 연중

6. 국립중앙수목원 공사추진을 위한 준비 철저

목 표

◇ 건설청·L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시설계 추진
◇ '16년 본격적인 공사착공을 위한 지반조성공사 추진

가. 정책여건

o 온대중부권역의 산림유전자원 보존·관리 필요성 대두

o 세종특별자치시 광역화에 따른 도시민들의 녹색공간 확충 요구 증대

o 건설청, 세종시민 등 중앙수목원의 조기개원에 대한 요구 여론 확산

나. 기본방향

o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

o 한국정원에 대한 전통과 창조, 미래지향적인 한국형·도심형 수목원 조성

o 온대중부지역의 산림유전자원 보존·증식 및 연구기반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o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내
o 면　　적 : 65ha(건축 연면적 2.2ha)
o 총사업비 : 1,374억원
o 사업기간 : 2012년～2020년(9년간)
o 주요시설 : 한국전통·문화정원, 희귀·특산식물원, 한국민속식물원, 사계절전시온실, 연구동, 방문자 센터 등

o 연차별 추진사항

'12～'14	'15～'20	'21
《계획・설계단계》	《주요시설 공사 단계》	《운영 및 개원 준비단계》
◦ 총사업비 관리사업 등록 ◦ 일괄대행서비스 약정체결 ◦ 조성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조성관련 국제심포지엄 ◦ 수목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 수목원 기본계획 관보고시 ◦ 대형공사 입찰방법 결정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 기본설계 수립	◦ 실시설계 수립 ◦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심의·입찰 ◦ 인·허가 및 건축 협의 등 ◦ 금개구리 보존 협의·반영 ◦ 조성공사 계약 ◦ 주요 시설공사 추진 ◦ 도입 가능식물 수집·확보 ◦ 인·허가 수행 및 관계기관 협의 ◦ 수목원 전시기법 개발 ◦ 수목원 운영·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전환경영향평가 등 실시 ◦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실시	◦ 시범운영 실시 - 시설・연구 기자재 구입 및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 전시식물 및 자료 관리 ◦ 연구시설, 기자재 등 설치 ◦ 연구・전시 및 교육・홍보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 구성 ◦ 정원문화 창달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운영·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조직・인력·규정 등 운영체계 완비 ◦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2)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심의

o '15년 상반기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반영

- 중앙수목원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15～'20)의 규격·성능에 관한 사항과 입찰·계약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 반영

  * 설계 및 공사 기준자료, 건축·토목·조경·전기·전기공사 지침 반영

- 중앙수목원 입찰제안 입찰과정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설계 기술제안서 양식 및 평가기준 반영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한 가·감점 제시

3)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실시설계 차질 없는 추진

o 국립수목원, 환경부, 건설청, LH공사, 조달청 및 협력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산림청, 국립수목원, 자문위원, 용역사 간 주기적 워크숍 개최

  * 도입가능 식물목록 보완, 주요시설 및 주제원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 산림청, 건설청, LH공사 등 관계기관 간 정기적 실무협의 추진

  * 토량반입, 유지용수 확보 및 금개구리 보존대책 등 협의

o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추진 중인 중앙공원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마련

- 주차장, 동선연결, 생태축, 수경축, 경관축 등 수목원과 중앙공원의 연계 추진

  * 중앙공원 : 2019년까지 LH공사에서 조성 예정

-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보존지역과 연접된 수목원 부지를 완충지역으로 조성

  * 수목원 금개구리 보존 완충지역 : 3.5ha(50m×700m)

o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공사 추진('15년도 : 75억원)

- 조달청, 감리단, 시공사와 협의하여 적정 시공물량 확정

4) 건설청·환경부 및 LH공사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기반조성공사 추진

o 중앙수목원 조성부지 내 부족토량 반입협의 및 성토 추진

- 필요토량 : 247만㎥(협의토량 130만㎥, 부족토량 117만㎥)

o 중앙수목원과 중앙공원에 필요한 펌프장 및 관입·배수관로 설계 단일화 추진

- 중앙수목원 필요 용수량 : 3,000톤/일(8시간)

5) 중앙수목원 도입가능 식물목록 작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

o 효율적인 식물유전자원의 확보를 위해 식물 이식(국립수목원, 산림과학원)

- 이식 가능 식물목록 작성(열대온실, 주제원, 광릉숲, 증식원 및 증식포지)

o 국내 공·사립·학교수목원 및 국유림관리사업소 제공가능 식물리스트 작성

- 구입, 교환 및 기증을 통한 도입가능 식물 검토·확보

라. 추진일정

o 국립중앙수목원 기본설계 완료 : 2014.12월

o 중앙수목원 조성 자문위원회(1차) 개최 : 2015. 1월

o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사업기간 등) : 2015. 1월

o 중앙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고시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5. 1월

o 중앙수목원 조성계획 수립 : 2015. 2월

o 중앙수목원 조성 CM(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 2015. 2월

o 중앙수목원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심의(조달청) : 2015. 2월

o 중앙수목원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 : 2015. 3월

o 중앙수목원 조성 CM(건설사업관리) 용역 낙찰자 선정 및 계약 : 2015. 3월

o 중앙수목원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현장설명회 개최 : 2015. 4월

o 중앙수목원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낙찰자 선정 및 계약 : 2015. 7월

o 실시설계 및 우선시공(성토 등 기반공사) 착수 : 2015. 8월

o 중앙수목원 실시설계 관련 전문가 워크숍(1차) 개최 : 2015. 8월

o 중앙수목원 조성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 2015. 8월

o 중앙수목원 실시설계 관련 전문가 워크숍(2차) 개최 : 2015. 9월

o 중앙수목원 실시설계 중간보고회(1차) 개최 : 2015. 10월

o 중앙수목원 실시설계 관련 전문가 워크숍(3차) 개최 : 2015. 10월

o 중앙수목원 실시설계 관련 전문가 워크숍(4차) 개최 : 2015. 11월

o 중앙수목원 실시설계 중간보고회(2차) 개최 : 2015. 12월

o 중앙수목원 조성 기반조성공사 실시 : 연중

o 중앙수목원 조성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연중

o 중앙수목원 조성 관련 인·허가 추진 : 연중

산림보호국 소관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목 표

◇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호·관리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o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3~'17)」의 체계적 추진

o 산림소생물권(biotope) 관리 및 산림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야생화 등 산림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체계 강화

가. 정책여건

o 인간의 환경 파괴에 기인한 생물종 감소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생물다양성 협약(CBD), 나고야 의정서(ABS)[21] 채택 등 전 지구적 차원의 대책 추진

o 우리나라도 국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전을 추진

o 산림생태계는 대부분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이용'의 핵심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예방, 현지 내·외 보전 등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

나. 기본방향

o 국가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한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3~'17)」의 체계적 추진

o 산림 내 주요 산림생물종 및 소생물권(Biotope)의 서식지(분포지) 조사·관리를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o 산림생태계의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추이를 예측하는 등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증진을 위한 산림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야생화 증식기술 개발 및 식재매뉴얼 보급으로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21)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자원제공국의 승인, 자원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 시 채택되어 제12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발효('14.10.12)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

o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13~2017)」 3차 년도 중점과제의 체계적 시행
- 평창 CBD 이행을 위한 DMZ, 백두대간, 대관령초지 등 산림생태계 복원 추진
- 자생식물(야생화 등)을 포함한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 기반 마련

o 특별산림보호대상종(53종) 자생지 보전사업 추진
- 산림사업 추진 시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선정기준 및 보전방안과 자원화 전략에 관한 연구(2013)」 결과를 반영한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변경 지정 및 자원화 추진

2) DMZ 일원 산림자원 보전·관리의 실효성 강화

o 양구 국립DMZ자생식물원('15개원)을 거점으로 DMZ의 식물조사·수집·보존·연구 수행 및 교육·체험·생태관광 등 실효적 관리 및 사업 자료 축척

o 국립DMZ자생식물원 내 산림생태관리센터 설치·운영
- DMZ 일원 핵심 지점인 DMZ자생식물원 내에 생태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예산절감 효과 및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로 시너지효과 제고

o 고성 향로봉 일원에 산림생태관리센터 신규 조성(570백만원)
- 기존 센터(화천 민북, 양구 DMZ, 인제 점봉산)와 고성(향로봉)을 핵심 벨트화 하여 DMZ 동·서 산림축 보전·관리 주도

3) 산림습원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Biotope) 관리를 위해 '15년 경남,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6.5억원)

* ('06~'08) 국유림 조사 → ('10~'14) 공·사유림 조사 → ('15~'19) 정밀조사·모니터링

o 산림습원조사지의 보전가치 평가 등급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

① 산림습원 중요식생, 희귀식물 등을 감안하여 완충지역 면적을 포함
② 산림습원 핵심구역 주변에 늪, 소택지 등이 연접된 경우 이를 단지화
③ 주변에 산림습원이 2개 이상으로 분산된 경우, 이를 유역화 하여 검토·지정

4)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 추진

가)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의 개화·개엽시기 모니터링 실시

o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100종)의 개화·개엽시기 모니터링 및 고산지역·풍혈지 등 특수지역의 취약 식물종 생육환경 조사·분석

- 예산액 및 시행주체 : 220백만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립수목원)

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유용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 추진

o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생육한계성 산림식물의 조사·증식·보존 및 현지(서식지) 내 복원·적응사업 실행

o 식생 권역별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림식물종의 보존·적응사업 추진

- 예산액 및 시행주체 : 730백만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립수목원)

다)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종 증식 및 복원 추진

o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복원을 위한 부처협력 추진

- 관계기관 실무위원회[22]를 주축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장기적 변화 예측 및 보전·복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o 난대아열대연구소를 중심으로 한라산 구상나무 현지내·외 보전을 추진

- (현지내 보전) 천연하종 유도 등 자연적인 복원방법 추진
- (현지외 보전) 전나무에 구상나무를 접하는 이종접목기술 및 대량 증식 기술 개발, 현지외 보전을 점진적으로 확대

5) 산림곤충산업 육성

o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 「2015년도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

o 산림곤충자원의 분포조사 및 유용곤충자원 사육기술 개발(국립수목원, 7억원)

- 기후변화 취약 곤충종의 고도별 조사 및 변화 모니터링
- 주요 곤충 서식실태 조사 및 사육기술 개발·보급

o 산림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산림교육원, 35시간)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민간인 및 공무원 대상)

---

22)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회('14.1.27) 구성, 실무위원회 회의 (1차: '14.3.6, 2차: '14.9.25) 및 워크숍('14.7.30) 개최

6) 「산림의 건강·활력도」 진단·평가 실시

o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는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국민에게 산림의 건강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책 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방법 : 전국 1,000개소 고정표본점(매년 200개소/5년)
- 조사 항목 : 4개부문(수목건강, 식생건강 등), 12개 지표(수관, 임분, 토양 물리성, 지의류 군락 등), 27개 항목(수관 활력도 등)
- 추진체계 : 산림청 총괄, 국립산림과학원 주관, 한국임업진흥원 수행

o '11년부터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11～'15)와 통합·시행

수목건강

지표	조사항목
수관	수관활력도
	수관급
	형질급
수간	줄기피해 (피해정도)
잎	잎 피해상태 (병해충 등)
생장	수고생장
	직경생장
고사목	부패정도

식생건강

지표	조사항목
상층	수종
	종다양성
	밀도
	피도
	외래식물침입
하층	초본층
	관목층
	치수
임상층	임상층 두께
고사율	생목대비 고사목 직경생장 비율

토양건강

지표	조사항목
이화학적 상태	토양산도(pH)
	전질소 함량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
	양이온 치환용량
물리적 상태	유효토심
	견밀도
	건습도

대기건강

지표	조사항목
지의류 군락	수도(종수)

산림건강성 지표 및 조사항목 (: 조사 및 채집 후 분석항목)

7) 우리 꽃 '야생화' 증식기술 개발 및 관광자원화 추진

o 우리 고유 야생화의 보급 확대와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 추진(산림청, 문체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 제2차 관광진흥대책회의에서 VIP께 보고('14.1.28)

o 야생화의 문화관광상품화 및 향유문화 확산(국립수목원, 2억원)

- 야생화 및 작품(꽃누르미 등) 전시회 개최로 국민 생활 속 향유문화 확산
- 세밀화 제작·보급을 통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 등 관광자원화 추진

o 고유종을 개량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국립수목원, 3억원)

- 야생화 대중화를 위한 재배매뉴얼 개발 및 환경적응성 연구 추진

o 전국의 수목원, 식물원, 휴양림, 생태숲,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등 녹색공간에 야생화 식재를 확대하여 관광인프라 확충

라. 추진일정

o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시행 : 2015. 1～12월

o「산림의 건강・활력도」진단・평가 실시 : 2015. 1～12월

o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5. 1월

o 산림습원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15. 1월

o 곤충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부처합동) : 2015. 1월

o DMZ 산림생태관리센터 개원 : 2015. 3월

o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복원 방안 마련 : 2015. 3월

o 우리 꽃 야생화 전시회 개최 : 2015. 5～6월

o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2015. 8월

o 국립DMZ자생식물원 개원 : 2015. 9월

o 산림습원 현장조사 완료 및 최종 보고회 : 2015. 11월

o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최종 평가회 : 2015. 11월

o 산림습원조사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 2015. 12월

2.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체계 확립

목 표

◇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적극적 보호·관리

o 산림보호구역 : 445,556ha(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149,432ha)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 1,575백만원(생육환경개선 등)
- 산림생태관리센터 조성 : 1개소, 570백만원 / 운영 : 7개소, 1,281백만원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 4개소(전남, 경북), 20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산림식물의 유전자·종 보존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필요성 증대

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적 기준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 필요

o 국토의 이용 및 개발 수요 확대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요구 증가

나. 추진방향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보호·관리 기반 확립

o 산림보호구역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효율적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효율적인 산림보호구역의 보전·관리

o 산림습원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 확대 추진

- ('12) 132천ha → ('13) 149천ha → ('14) 154천ha → ('15) 159천ha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관리계획 수립·시행

-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지역 관리계획에 의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 기준·방법 마련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능 증진 및 관리

가)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산림생태관리센터 신규조성 및 운영

- 신규조성 : 1개소 570백만원(고성 향로봉) / 운영 : 7개소, 1,281백만원

구 분	조성년도 (예정)	위 치	건축규모 (㎡)	사업비 (백만원)	관리기관
점봉산	2010.10.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218-1	107	235	인제관리소
계방산	2010.10.	홍천군 내면 자운리 12-16	59	121	홍천관리소
민북지역	2012.12.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45	504	1,112	춘천관리소
울진소광리	2013.05.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29	1,170	3,039	울진관리소
가리왕산	2013.12.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산153	486	1,338	평창관리소
도서지역	2013.12.	진도군 지산면 보전리 산146	594	954	영암관리소
DMZ	(2015.03.)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산43	7,495	-	양구관리소
향로봉	(2015.12.)	미정	-	570	양양관리소

* DMZ자생식물원(강원 양구) 내 산림생태관리센터 설치·운영('15.3월~)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및 생물다양성 기능증진 사업 계획 수립·실행

o 산림생태탐방객 관리 및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

o 지역주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센터를 지역 거점 기관으로 활용

나)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o 생태관리센터가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기능 유지·증진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내용 >

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유형별 특성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생태탐방 시설 정비(1,073백만원)
- 종 보존과 증식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생육환경개선 실시
- 산림유전자원의 인위적 피해 예방 시설 및 생태탐방로 설치

②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502백만원)

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추진

o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육환경개선 사업 실행

- 사업대상지 : 5ha이상(보전가치가 높을 경우 1ha 이상도 가능)

o 2014년 사업 : 4개소(나주, 장흥, 문경, 울진), 200백만원

소 재 지	지정유형	지정면적 (ha)	지원예산 (백만원)	주요 분포식물	소유자 (관리자)
합 계		2,594	200		
①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210 외2	유용식물	40	100	비자나무	사찰림(불회사)
②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산10-1	유용식물	3	30	비자나무	사찰림(보림사)
③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외1	희귀식물	2,290	42	고란초 등	사찰림(봉암사)
④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산30-1	원시림	261	28	소나무	사찰림(불영사)

o 보호·관리협약 추진 절차

- 보호·관리협약지침 시달(산림청) → 보호·관리협약 대상지 선정(지자체) → 보호·관리협약 체결·실행(지자체) → 모니터링 및 평가(산림청·지자체) → 평가 결과 환류(산림청·지자체)

4)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 정비

가) 산림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

o 산림보호구역 일제조사 실시

- 지자체 주관으로 전국의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실태 일제조사 실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전자도면 등록 사전 준비자료 작성

o 산림보호구역 지정 타당성에 대한 용역사업 추진

-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 달성, 유지관리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 산림보호구역 유형별 지정 타당성 기준 및 관리 지침 마련

나) 산림보호구역 관련법령 및 제도 정비

o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사전 협의 및 심의제도 추진(산림보호법 개정)

- 지정해제 시 산림청장 사전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o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완화 및 소득감소분 지원제도 도입

- 산림보호구역 해제 요건을 축소하고, 허가사항으로 전환
- 기준벌기령 이상의 산림에 대한 벌채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3) 평창 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보전·복원대책 추진

o 관계기관, 환경단체, 전문간 등으로 구성된 생태복원추진단(강원도 주관) 참여

- 추진단에 참여하여 훼손지역(78ha)에 대한 식생모니터링 및 가리왕산 보전·복원계획의 정적 이행여부를 검증

  * 산림환경보호과, 산지관리과, 산림생태복원팀, 산림과학원 공동 대응

o 생태복원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 설치 추진

- 산림청, 강원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운영
- 소요정원 반영 및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 안행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센터 설치를 심의·의결('13.5.8, 위원장: 국무총리)

o 가리왕산 훼손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추가 지정

- 대상지 :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 산153 외3(동부청 평창관리소 소관)
- 정밀한 사전 조사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지정 여부를 판단

  * 대체지정 요청 : IOC 권고('14.1.13) 및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건의('14.5.26)

5) 금강소나무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o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신청서 작성('14)」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진·삼척·봉화 지역 금강소나무 숲에 대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신청

- 주민들과의 공감대 유지 및 MAB한국위원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15년도 9.30일까지 MAB사무국(프랑스)에 신청서를 제출

<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및 지정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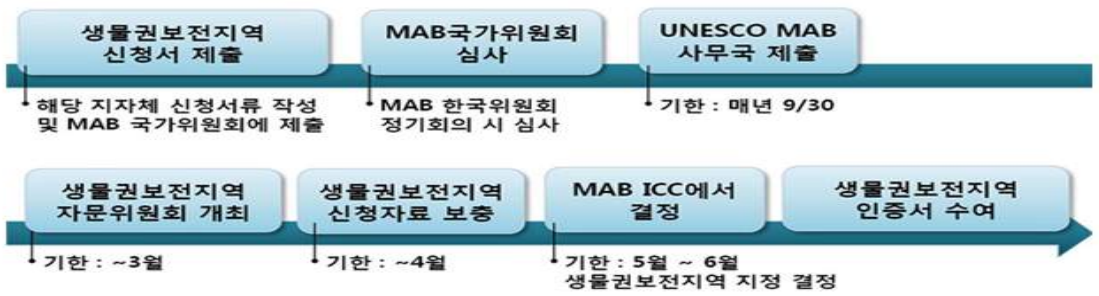

o 금강소나무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및 관리방안 마련

-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관계기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구성·운영

라. 추진일정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지침 시행(산림청) : 2015. 1월

o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 2015. 1～12월

o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 2015. 1～12월

o「산림보호법」개정안 마련 : 2015. 1월

o 향로봉 산림생태관리센터 신규조성 : 2015. 3～12월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 사업지 점검 : 2015. 5월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실태 점검 : 2015. 5월, 11월

o 금강송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신청서 제출(MAB사무국) : 2015. 9월

o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및 조성현황 점검 : 2015. 9월

3. 산림생물자원의 현지 내·외 보전기반 구축

목 표

◇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증식·연구 및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보전·관리기반 확충

- o 국가수목원 확충 : 2개소(새만금, 올림픽)
- o 지방수목원 조성 : 28개소(조성 11, 특성 13, 보완 4), 107억원
- o 산림박물관 건립 : 4개소(특성 3, 보완 1), 6억원
- o 지역생태숲 조성 : 10개소(조성 8, 보완 2), 43억원
- o 자생식물원 조성 : 10개소(설계 5, 조성 5), 20억원

가. 정책여건

- o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결이후 ABS(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인한 자생식물자원의 이용가치 증대로 국가 간 식물자원 확보경쟁 및 식물분야의 국제협약 이행 노력 강화
- o 지구온난화·사막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 위협에 놓인 고산 및 한계성 자생식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국가수목원 확충의 필요성 대두
- o 수목원·식물원에서의 다양한 교육·체험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산림생태관광자원의 하나로 문화 컨텐츠 생산에 크게 기여

나. 기본방향

- o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증식 및 연구기반 확충
- o 식물유전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체험 학습 등 국민서비스 강화
- o 국민 수요에 맞춘 수목원·식물원의 특성화·전문화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수목원의 진흥·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지속 추진

- o 「제3차 수목원진흥 기본계획(2014~2018)」 체계적 시행
  - 수목원을 산림생물자원을 활용한 복지·문화서비스의 핵심공간으로 전환
  - 수목원의 물적 기반 확충, 사립수목원 활성화 및 전문일자리 확충

2) 국가수목원 조성사업

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추진

o 국내·외 해안・도서식물자원 수집·증식을 통한 해안・도서식물의 보전 및 연구・교육・전시를 위해 차별화된 해안형 국립수목원 조성을 추진
- (총면적) 200ha, (총사업비) 5,874억원, (사업기간) '16～'25년(10년간)

o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작성·대응, 완료('15. 2월) 및 사업 착수

나) 국립올림픽수목원 조성 추진

o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대체 산림조성의 일환으로 고산형 산림자원의 보전 및 확충을 위한 국립수목원 조성을 추진
- (총면적) 480ha, (총사업비) 약 1,500억원 추정, (사업기간) '16～'21년(6년간)

o '14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획재정부 등에 설명·대응 및 심사('15.4월)

3) 국가생물자원 관리 강화를 위한「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지정・운영

o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세계식물보전전략(GSPC)에 대응하여 한반도 산림유전자원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 보전·관리 추진

o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은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특성검정・평가, 증식 및 보존, 다양성 확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수행

o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사립·학교 수목원 운영 확대

o '15년 사업추진 : 4개 기관, 4억원

4) 공·사립수목원 지원

가) 수목원전문가(가드너) 양성교육 추진

o 수목원 관련 전문지식 및 운영 관리 노하우를 갖춘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수목원의 조성· 운영 전문화 도모

o 수목원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초 종합 교육 및 현장 실습교육 비용 지원

o「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전문가 인증교육기관을 통하여 교육추진
* 인증교육기관 : 천리포수목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자굴산치유수목원

o '15년 사업추진 : 50명 교육(천리포 25, 협회 15, 자굴산 10), 6억원

o 수목원전문가(가드너) 교육과정 인증기관(제4호) 지정을 위한 접수 및 심사(11월)

나) 지방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특성화·전문화 추진

o 기후변화·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의무가 강화되어 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후대별 전문화된 수목원 필요

o 식물자원의 보전·증식·전시 및 연구시설(전시원, 온실, 관리·연구) 설치

o 사업규모

- 지방수목원 : 개소당 특성화사업비 5억원/년
- 산림박물관 : 개소당 특성화사업비 3억원/년

o '15년 사업추진

- 지방수목원 : 28개소(조성 11, 특성 13, 보완 4), 107억원
- 산림박물관 : 4개소(특성 3, 보완 1), 6억원

5) 생태숲 및 자생식물원 육성 강화

가) 생태숲 조성·관리

o 산림식물의 현지 내 보존기능을 강화하여 자연환경훼손의 위협으로부터 산림생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연학습·휴양공간으로 제공

- 지정근거 :「산림보호법」제18조 생태숲 지정제도 및 생태숲 지정관리지침

o 사업대상지

-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다양성이 높아 자연상태로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숲으로 30ha 이상인 공유지
- 자연휴양림·도시숲 등과 연접하여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숲으로 20ha 이상인 공유지

o 지정 절차

◆ 생태숲 지정 요청 및 사업계획 제출 (전년도 2월말까지) → ◆ 생태숲 사업계획 현장심사 (전년도 3월) → ◆ 생태숲 지정 타당성심사위원회 (전년도 4월중) → ◆ 생태숲 지정 및 예산반영 (전년도 5월 중)

-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입지여건 등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심사
- 타당성 심사 전에 관계공무원이 대상지 현지조사·확인

o '15년 사업추진 : 10개소(조성 8, 보완 2), 43억원

나) 자생식물원 조성・관리

o 우리 고유의 향토・자생식물 등 초본류・관목류의 체계적인 보전・육성으로 식물종다양성・자원화 연구의 활성화 촉진

- 사업대상지 : 3ha이상의 공유지
- 사업기간 : 3년(설계 1년, 조성 2년)
- 사 업 비 : 개소당 총사업비 15억원 이내

o 사업내용

- 지방고유의 향토・특산식물을 보존・전시할 수 있는 자생식물 전시원 조성
- 자생식물의 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한 전시관・체험관・산림생태관찰원・탐방로 등 설치・조성

o '15년 사업추진 : 10개소(설계 5, 조성 5), 20억원

* '15년 사업부터 자생식물원 신규조성사업은 지특회계로 변경

라. 추진일정

o '15년 수목원전문가(가드너) 교육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5. 1월

o「생태숲 지정·관리 지침」 개정 : 2015. 1~3월

o '15년 수목원·식물원 운영 발전방안 간담회 : 2015. 2월

o 수목원코디네이터 교육실시(산림교육원) : 2015. 3월

o「국립올림픽수목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심사 : 2015. 4월

o '16년 수목원・생태숲・자생식물원 사업대상지 사전심의 : 2015. 4월

o 우리생물 바로알기 추진 : 2015. 5월

o 국립수목원 발전방안 마련 : 2015. 6월

o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지 현장 지도・점검 : 2015. 6월

o 풍수해(태풍·호우) 대비 수목원・식물원 점검 : 2015. 7월

o 생태숲・자생식물원 추진상황 지도・점검 : 2015. 8월

o 수목원・박물관 조성사업지 현장점검 : 2015. 9월

o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지 현장지도·점검 : 2015. 10월

o '16년 수목원전문가(가드너) 교육과정 인증기관 지정(제4호) : 2015. 11월

o '16년 수목원·식물원 홍보계획 수립 : 2015. 12월

4.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추진

목 표

◇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정원산업 인프라 구축

o 코리아가든쇼, 게릴라가드닝 등 정원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5억원

o 정원산업지원센터 건립 : 1개소, 10억원

o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 : 3개소(직접 1, 보조 2)

가. 정책여건

o 최근 산림휴양·치유·힐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생활패턴의 변화는 정원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

o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큰 블루오션으로서의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추진 필요성이 증대

나. 기본방향

o 정원관련 법적 체계화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기반 조성

o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교육·정서함양 기능 등 정원과 정원가꾸기의 순기능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성

o 전문 상담소 운영을 통한 식물과 식물가꾸기 문화 확산

다. 세부추진계획

1) '정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o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14.12.29)을 통한 '정원'의 정의, 국가정원 지정제도, 정원박람회 개최 및 지원근거 등 법적 기반 마련

o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정비 추진

2) 정원문화 확산 정책 추진

o 정원활성화 프로그램은 생활공간에 자연을 느끼고 체감하는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홍보하고 우리 야생화의 활용·보급 확대, 새로운 정원모델 창출과 전문디자이너 발굴 육성 등 추진

가) 정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o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2015 코리아가든쇼' 개최

-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정원디자인 역량을 강화
- 정원 작가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공모전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정원작품을 발굴·홍보

o 게릴라정원, 야생화 전시 등 프로그램 추진으로 정원 산업 발전의 토대 마련

나)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

o 국립수목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물 클리닉 상담'을 '꽃과 나무 상담소'로 확대 운영

o 식물전문가 배치로 식재식물의 선택, 식재방법, 식물관리, 병해충, 정원관리 등 꽃과 나무의 재배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15년 운영계획 : 3개소(국립수목원, 대전 서구, 전남 순천)

3) 정원지원센터 건립 지원

o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정원식물 및 기자재 브랜드 개발, 정원관리기술교육 및 상담, 전문정원사 육성 등 사업 수행

o 정원지원센터 설립

- 사업목적 : 순천만정원의 인프라와 무형의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융합하여 신산업으로 창출
- 총사업비 : 70억원(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

  * 설계비 3억원, 공사비 58억원, 감리비·시설부대비 등 9억원
- 사업기간 : 2015년~2017년(3년간), 실행주체 : 지자체(전라남도 순천시)

라. 추진일정

o 수목원법 개정안 하위법령 개정 : 2015. 1~6월

o 정원지원센터 기본·실시 설계 용역 추진 : 2015. 3~10월

o 2015 코리아 가든쇼 운영 : 2015. 4월

o '꽃과 나무 상담소' 추진상황 지도・점검 : 2015. 6월

o 2015 정원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2015. 2~12월

5.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대책 추진

목 표

◇ 국민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확산을 통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 정상화과제 이행성과 달성 및 가시적 개선효과 창출

가. 정책여건

o 산행인구 및 산지개발수요의 증가로 산림오염 및 훼손 우려 상존

o 지속적인 산림불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 ('10) 2,493건 → ('11) 2,310건 → ('12) 2,337건 → ('13) 2,334건

o 산림면적 대비 산림 보호·단속에 필요한 현장 인력은 부족

- 1인 평균 산림특별사법경찰 관할면적 : 4,840ha(남산면적의 14배)

o 정상화과제 우리청 대표과제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 추진

나. 추진방향

o 수사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o 민관협력 및 홍보를 통한 정상화과제 지속 추진

o 청원산림보호직원 복무 강화 및 제도 내실화

다. 세부 추진계획

1) 특단의 산림사법 강화대책 추진 및 테마형 예방단속 실시

o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설정 및 「임시 산림사법지원단」 운영

-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상·하반기 설정하고 대책기간 내 특별사법경찰은 산림사법을 전담하도록 하여 사법업무 집중 및 수사 확대

  * 상반기(6월중), 하반기(9월중) 연2회 설정. 다만, 기관 여건 등을 감안 변동 가능

- 청원산림보호직 및 퇴직자 중 사법업무 전문가를 「임시 산림사법지원단」으로 구성하여 산림청 지휘하에 시·도, 지방청 사법업무 지원

  * 지방청 등 소속기관 청원산림보호직을 차출하여 지원단으로 구성

- 특별대책반 편성, 검·경 공조수사 확대 및 협업을 통한 산림사법 성과 제고

o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제적 예방단속 및 기획수사 등 확대실시

- 지자체·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및 책임단속

  * 산림피해 시기·유형별 중점 단속계획 : <붙임1, 2> 참고

- 사회적 이슈 또는 시급한 사안에 대한 검·경 합동으로 공조수사 실시

  * 인터넷 동호회 불법 행위, 임산물 불법판매 사이트 등 사이버 범죄수사

- 지자체는 표심, 온정주의로 인해 수사가 어려운 사안을 대상으로 실시

o 산지훼손 실태조사 후속조치 이행 등 산림 불법훼손지역 수사 강화

- '11~'13년 실태조사지역의 무허가 의심지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완료

  * 충남·북, 전북지역 내 조사대상 14,416건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법처리

- '14년 실태조사 지역(대구, 경남) 의심대상지 확정 및 지자체 조기 전파

2) 민관협력 및 홍보를 통한 정상화과제 지속 추진

o 민간단체, 기업과의 민관협의회 참여 확대 및 MOU 이행사항 지속 추진

- 민관협의회 참여단체 확대 : ('14년) 10개 기관 → ('15년) 15개 기관

  * '14년(10개 기관) : 산림조합,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생명의숲, 대한산악연맹, 한국조경수협회, 숲사랑연합, K2, 뮤토뮤지크

- 민관협의회 협약사항에 대한 신규과제 발굴 및 지속 추진

o '숲사랑' 연합단체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

- '숲사랑' 단체의 운영제도 개선 및 운용실태 점검(분기별 1회) 강화

- '산림훼손신고 앱' 연계한 숲사랑 프로그램 운영

o '임(林)자 사랑해' 대국민 캠페인 지속 추진

- '임자 선언' 서약운동 연중 추진 : ('14년) 5만명 → ('15년) 10만명

- 민관협의회 참여단체와 공동 행사 추진 : ('14년) 5회 → ('15년) 20회

o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캠페인 전개

-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허브사이트 운영

- 신문·방송 기획보도, 도심전광판 홍보 이벤트, 3인3색 토크콘서트 등

- KTX, 서울 지하철방송 활용 대국민 산림보호정책 영상물 제작 보급

3) 청원산림보호직원 복무 강화 및 제도 내실화

o 지역 간 전보, 산림보호분야로의 재배치 등 운영효율화 추진
- ‘산림보호인력 재배치 방침’에 따른 재배치 : (’14년) 24명 → (’15년) 15명
- 「청원산림보호직 배치법」의 개정을 통한 소속기관 간의 전보 근거 마련

o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및 제도 미비사항 개선
- 「국가공무원법」 준용으로 인한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규정 명정

o 배치권자 및 근속년수에 따른 직명제도 도입 및 보수기준 개선

o 2015년 청원산림보호직 증원 계획 : (’14년) 6명 → (’15년) 13명
- 산림보호 강화를 위한 지방청 우선 배치를 통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성과 제고

4) 산림사법업무 강화 및 관련법령 정비

o 산림청 소속의 ‘산림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신설 방안 추진
- ‘산림특별사법경찰 조직 확대 대책(’14.7)’에 따른 안행부 협의 추진

o 청원산림보호직 특사경 지명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법」 개정, 경범죄 해당분야 특사경 권한 부여

o ‘산림훼손신고 앱’ 운영 제고 및 활성화
- 지자체, 지방청 담당자 교육 및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상, 하반기)
- 스마트 앱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 및 개선
-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신고포상금 연계 추진

라. 추진일정

o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계획 통보 : 2015. 1월

o 불법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통보(산림청) : 2015. 2월

o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통보 : 2015. 3월

o ’14년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물 시달 : 2015. 3월

o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관 및 임시 지원단 운영계획 통보 : 2015. 4월

o 「청원산림보호직 배치법」 등 관련법령 정비 추진 : 2015. 4월

o 정상화과제 이행실적 결과보고 : 2015. 익월 5일까지

참고 산림피해 유형별 중점 단속계획

단속유형	단속 내용	단속지역	단속시기
불법산지전용 등	o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전국일원	연중 (분기별)
	o 수목장림 조성, 분묘 조성지 과다 훼손		
	o 건축물 증·개축 빙자 불법훼손		
	o 농지전용지 경계 침범 훼손 등		
불법임산물 굴·채취 및 유통	o 산나물·산약초, 약용수목 굴·채취	전국일원	연중
	o 관상·조경수목 굴·채취, 유통		
	o 산림내 자연석 밀반출		
	o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o 고로쇠 등 수액 무단채취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등에서의 불법행위	o 희귀수목(주목)·약용수목 굴·채취	백두대간·산림보호 구역	4~9월
	o 불법 산지전용		
	o 무속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o 국유림 불법점유 행위 등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o 쓰레기 무단투기	휴양림 관광지 주변	6~9월
	o 계곡 등 경관보전지역 훼손		
	o 안내·홍보시설물 파손		
기타 사업지 등 불법행위	o 입목 벌채지 잘못베기 - 수종갱신, 솎아베기 사업지 - 표고자목 생산 벌채지	사업지	연중
	o 사용허가지 경계 침범		
	o 채광·채석장 경계 침범 등		
	o 도로개설지 과다훼손 등		

6. 산불예방대책 추진

목 표

◇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가. 정책여건

o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불예방 자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필요

o 입산자 및 농·산촌 주민들의 산불방지 인식 개선을 위해 정책 다변화 필요

o 산불방지 기반시설의 적지적소 설치 및 운영·관리 내실화 필요

o 산림 내 보호대상물 주변의 산불 위험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 마련이 필요

o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차별화 된 홍보전략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기별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추진

o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산불감시로 산불위험요인 차단

o 입산객 관리 효율화 및 마을단위 소각산불 억제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o 산림 내 보호시설물의 산불예방 및 확산 억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o 산불예방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산불 위험도 실태조사 실시

o 지역・시기・원인・타깃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산불조심 홍보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감시로 산불위험요인 사전차단

o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가용인력을 집중고용하고 지역별 산불 발생 패턴을 고려해 근무 및 단속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감시 효율성 제고

- 감시원(12천명)은 고용과 동시에 GPS단말기를 지급하고, 이 외의 '산림재해모니터링', '공공근로' 등 관서별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 소각산불 예방 빅데이터 분석 결과('14.12월)에 따른 기관·지역별 근무시기 신축적 운영 및 집중 근무시간대 설정을 통한 단속 강화

* 집중근무 : (종전) 일괄 3~4월 → (개선) 1~4월/남부, 2~4월/중부, 3~4월/북부

o 산불감시 인력의 합리적 근무관리 및 취약지 집중배치로 감시 효과 극대화

-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 운용 중인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감시원 GPS 단말기 이동이력을 분석해 산불취약지 중심으로 근무동선을 조정·관리

- NFC 전자순찰함 제도 운영을 통한 산불 취약지 관리 강화(1,300개소)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10㎝ 이내 근거리 상호통신 체계로 단말기를 Tag에 대면 감시 시간, 위치정보를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

2) 입산객 관리 효율화 및 마을단위 소각산불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o 입산이 가능한 전국 등산로 구간 정보에 대한 대국민 웹서비스 지속 추진

- 네이버 지도에 산불방지 등산로 개방, 통제구간을 색깔로 구분 표식

-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 담당자 교육을 통해 기관별로 고시한 구간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연 2회)

  * 연중 개방이 가능한 트레킹길 등 숲길은 현지여건을 감안해 신축성 있게 운영

- 통제구간에 대한 감시 및 온라인 상 산악회 카페의 게시물 감독 강화

  * 포털업체와 공조로 위법행위물 등록사항 경고 및 반복될 경우 조치 요청

o 산불위험 요인 사전제거 사업으로 소각 산불 예방 강화

- 봄철 '소각 금지기간' 운영 이전까지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은 공동 소각이나 집중 제거 실시(2만1천ha)

-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 및 시간대에 마을별 공동소각 적극 추진 및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화물질 제거사업 투입

o 농·산촌지역의 자발적 소각근절 유도를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추진

-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개별 소각을 막기 위해 마을단위 서약 접수 추진(읍·면 단위)

- 소각 근절 및 자발적 산불예방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소각산불 없는 녹색 마을을 선정하고, 부락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현판 및 포상금 수여

  * '15년 계획 : 200개 마을, 150백만원(포상금 각 500천원 및 현판)

- 인센티브 정책과 별개로 무단소각은 엄격히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영농교육 등 강화

3) 산림 내 보호시설물의 산불예방 및 확산 억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

<산불무인감시카메라>

o 무속행위 다발지,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야영지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반복되는 산불예방을 위한 '밀착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 고해상도 카메라, 파손을 대비한 듀얼 저장장치, 자동 방송 및 문구 송출 기능 등 관할 여건에 맞는 최신 기능 탑재로 예방 효과 극대화

  * '15년 계획 : 19개소, 1,034백만원(지자체 16개소, 소속기관 3개소)

o 기존 조망형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HD급으로 교체를 지속 추진하여 신설 카메라 사각지대 등을 상호 보완하고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 영상 연계가 가능할 경우 인접기관 영상 확보 및 자체 상황관리에 활용

  * '15년 ┌교체계획 : 48개소, 1,152백만원(지자체 48개소)
  └유지보수 계획 : 1,017대, 994백만원(지자체 867대, 소속기관 150대)

o 설치·교체는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산불조심기간 중 미작동 또는 고장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 5에 따라 카메라 설치 및 교체장소에 규격에 적합한 국가지점번호판을 함께 설치

<산불소화시설>

o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내 문화재, 자연휴양림, 요양원 등 보호대상 시설물 주변에 산불소화시설 설치로 안전성 확보

- 시설물 품질 향상과 함께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시공 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심의회 의무화

- '15년 배정물량부터는 산불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원격 가동·정지 시스템을 도입(관련 단비 반영)

- 엔진, 펌프 등을 이용한 장비임을 감안해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관리

  · (건조기) 타워에서 물을 정기적으로 분사하여 시설물 주변 산불발생 위험도를 저감시키고, 주기적인 가동으로 고장 방지

  ·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송수관 배수 및 장비 보온 등 관리 철저

  * '15년 시설계획 : 18개소, 1,302백만원(지자체 16개소, 소속기관 2개소)

4) 산불예방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산불 위험도 실태조사 실시

o 주요 산림 및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산불취약 정도 등급화

<조사방법 및 적용인자(안)>

- (순서) 기본현황조사 → 현지조사 → 위험인자 반영 → 정리 → 등급화
- (인자) 보호 우선순위, 발화원인, 임상, 경사위치, 경사도, 풍속·풍향 등

<등급기준(안)>

-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1~4등급으로 구분해 관리

<추진일정(안)>

- 개정지침 시달(~2월까지) → 지역별 실태조사(6~9월) → 자료 정리 및 등급 확정(11월) → 다음년도 산불방지대책 수립 시 반영

o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지역을 산림지역과 인명·재산피해 우려지로 구분하여 유형별 관리 방안 마련 및 추진

- (행정적 관리) 입산통제, 화기물 소지금지, 인화물질 제거 등
- (임학적 관리) 내화 수림대 조성, 산불방지 숲가꾸기 추진 등
- (공학적 관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

  * '15년 계획 : 6개소, 152백만원(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북, 북부청)

5) 시기・원인・타깃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o 송출지역・시간대・타깃 등에 따른 차별화된 산불예방 홍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는 농·산촌 주민 주요 시청 시간대 송출
- TV, 신문, 지하철, 고속도로 전광판 등 매체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 추진
- 비즈링,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지자체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매체 활용

o 기상예보(방송사・기상청), 집배원(우정사업본부)을 활용한 산불조심 홍보

- 언론사 기상캐스터 간담회 개최, 집배원 이륜차 깃발 14천매 장착

o 오피니언 리더 등을 적극 활용해 산불예방 의식 고취

- 산불예방 정책에 대한 인포그래픽, 만화 제작・제공 등으로 관심 유도
- 산불방지 관련 언론홍보(기고・칼럼 등) 주체로 참여 유도

o 스마트폰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홍보

- 산불신고 앱에 대국민 산불예방 및 신고 요령 등 제공

라. 추진일정

o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2015. 2. 1.~5. 15, 11. 1.~12. 15.

o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2015. 3. 20.~4. 20.(잠정)

o 산불감시인력 배치 : 2015. 1~5월, 11~12월

o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 가능지역 웹서비스 : 2015. 2~5월, 11~12월

o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 운영 : 2015. 1~4월(권역별 탄력 운영)

o 산불예방 시설 운영·관리 상·하반기 현지지도·점검 : 2015. 1월, 10월

o 산불예방 유공 기상캐스터 간담회 및 포상 : 2015. 12월

7. 산불상황관리 및 지상진화

목 표

◇ 산불발생 시 일사불란한 산불현장통합지휘체계 유지
◇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가. 정책여건

o 동시다발 산불발생에 따른 선제적 산불진화 대응역량 강화가 요구

o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확대

o 유관기관 협업에 대한 정책여건 조성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공유 확대

o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한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의 지상진화 대응 역량의 체계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

o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산불조사·감식기술의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요구

나. 기본방향

o 산불위험지수 및 기상여건에 따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산불경보 발령

o 통합지휘본부장(지자체장, 국유림관리소장)의 산불현장 주도 역할 강화

o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 지상진화대 편성·운영 및 지상진화 역량 강화

o 산불조사·감식 기술의 과학화 및 산불현장 대응능력 평가·분석기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기상여건 등을 반영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산불경보 발령 추진

o 산불위험성 고조,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집중도 저하 대비 산불경보 발령·해제를 유연하게 대처하여 산불재난 위기 상황에 따른 역량 강화

* 산불경보 구분「산림보호법 시행령」제23조 [별표1]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o 지역산불관리기관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산불경보 발령을 능동적으로 실시

- 특히 영농준비시기, 강풍경보 발령 등 지역별 산불위험여건이 높을 때 산불경보를 상향 발령하여 대응역량을 집중
- 기상여건 완화 시는 일시적 해제도 적극 검토하여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업무경감 필요

o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시 지역산불관리기관 통보 및 산불예방에 총력 집중

- 주변 소나무 숲 간 최대 이격거리 2km 범위 내의 30ha이상 소나무 숲을 대상으로 실효습도 및 풍속 등 기상여건에 따라 발령(지역 담당자 문자전송)
- 주의보는 산불경보 '경계' 수준, 경보는 '심각' 수준의 대응조치 선제적 실시

<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기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

단계별	발령기준	조치사항
대형산불 주의보	실효습도 45%이하가 2일이상 계속, 초속 7m 이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6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3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주 2회 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대형산불 경보	실효습도 30%미만이 2일이상 계속, 초속 11m 이상	-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1/4이상 및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1/2이상 배치·대기 - 입산통제구역 입산금지 조치, 산불 유관기관의 산불예방활동 참여,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주 4회이상 순찰·단속활동 등

2) 자치단체장 등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임무 수행

o 산불발생 시 신속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산불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임무·역할 부여로 유관기관의 산불진화에 적극적인 참여(기관별 연락관 파견 및 대책회의 책임자 참여)

  * 소방(인명 및 시설보호)·군(진화지원)·경찰(교통통제) 등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전략 등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진화 추진

o 산불발생 초기부터 현장을 지휘, 산림부서장은 반드시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

-「산림보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현장 지휘

o 산불상황의 정확한 언론 정보제공을 위한「산불상황 보도요원」지정·운영
-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기관의 명칭(산림당국), 투입장비(산림헬기 등), 산불규모 등 사실관계에 맞는 보도용어 사용을 위해 취재기자·언론사 협조 요청
  * 산불현장 조망 및 언론사 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

3) 산불신고 단말기를 활용한 신속한 신고체계 운영 및 보고 철저

o 산불 발생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 현장에 최초 도착한 산불감시원은 반드시 산불신고 단말기로 신고

(절차) 산불신고 접수(신고 단말기, 스마트폰 앱) → 시·군(관리소), 시·도(지방청), 산림청(산불신고 동시 확인) →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 산불신고 단말기 오작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철저
- 산림 내 숲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 실시로 폐잔목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
- 풍속기를 사용, 현장기상(온도, 풍속)을 산불상황실 등으로 보고

o 산불보고 지연 및 진화를 소홀히 하여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 유의
- 임차헬기로 자체 진화하다 늦게 보고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산불신고 단말기를 활용한 산불신고를 담당공무원이 통제하지 않도록 주의

4)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 편성 및 운영

o 시·군·구 및 관리소별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 최소한 1개팀 운영
- 산불발생 시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 1개 팀은 반드시 산불현장에 상주
  · 산불현장에 펌프 등을 이용하여 산불현장까지 급수체계 구축
  ·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는 분산 배치하지 않고 한 개소에서 반드시 통합관리
- 1개 팀은 14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 빈도가 높은 10:00~21:00 신축적으로 근무
- 주 2회 이상 호스설치(600m이상), 분배기 연결, 수조 설치, 분사(20분 이상) 등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반복 훈련

o 광역적으로 지상진화를 지원하는 광역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6개대) 운영
- 평상시 관내 진화지원,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은 권역 외까지 지원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및 산불현장지원단(국장급)의 지원임무 수행
  · 펌프를 활용한 급수체계 구축으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활용 선도

- 지방산림청 6개대(강릉・홍천・영주・양산・함양관리소, 중부청) 배치 운영・대별 14명(공무원 등 2~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2명) 내・외로 구성

o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출동차량 지원 및 관리 철저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5개월) 동안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 국고지원・진화대원 12명당 출동차량 1대(승합) 임차비 및 유류비 배정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사적 운영 금지 등 관리에 철저

o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상진화 역량강화 유도
- 시・도, 지방청별 자체 경연대회 개최(5월, 10월), 세계산불총회 시범(10월)・호스 설치거리 600m이상, 저수조 설치 및 분배기 사용, 호스내경 13㎜(8.5㎜)
  * 경연대회는 운영방식 변경 : 소요시간 위주 평가 지양 등 세부방침 추후 통보

o 뒷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불정리를 철저히 이행
- 반드시 동력펌프・진화차, 분배기, 간이수조를 이용하여 지상진화 실시
- 산불현장에 간이수조를 설치하여 등짐펌프 운반거리를 최소화
- 잔불진화 후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 감시 인력을 반드시 현장에 배치하여 뒷불감시 철저

5)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내실화 및 산불조사·감식 전문가 양성

o 산불전문조사반 전문성 배양 및 활동 강화
- 산불발생 시 신속히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원인 규명 주력
  * 관련 매뉴얼에 따라 투입하고 산불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조사 완료 후 정정 보고

o 방화성 산불 등이 발생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여 방화성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
- 구성 : 반장(관할 경찰서 과장・산불담당 팀장), 반원(경찰, 산림공무원 합동)
- 임무 : 방화・대형 산불발생 시 전담수사
-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는 관할지역 경찰서에「산불방화범 검거팀」협조요청

o 산불가해자 검거 시 다양한 매체 활용, 적극적인 홍보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o 산불조사·감식과정 교육(심화과정) 실시(13일간 20명 내・외, 캐나다 등)
- 산불조사·감식교육 이수자 및 전문가 중 현장에서 조사·감식 활동을 우수하게 추진한 공무원
- 협회 전문가 및 교육원 강사로 활동할 민간 전문가(2명 이내)
  * 산림보호법 산불전문조사반 구성・운영에 근거하여 제한적(항공료, 교육비) 지원

6) 산불방지의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대응 능력 향상

o 대형·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불발생 시 대응과정 평가분석

* 산불발생 보고 지연, 현장지휘 미흡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선 조치

o 산불통계의 과학화로 통계 품질 제고

- 산불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확도 제고(정정보고 등 철저)
- 산불통계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산불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라. 추진일정

o 보고체계 구축 및 통합지휘본부장의 현장 직접 지휘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o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 지역(5월, 10월), 세계산불총회 진화시범(10월)

o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 산불지상진화대 편성 및 운영 :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o 산불전문조사반 및 방화범 검거팀 운영 : 산불조심기간 중

o 산불조사반 전문교육 실시 : 2015. 9~10월

8. 헬기 진화역량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

목 표
◇ 산불재난 '골든타임제' 준수를 통한 산불현장 출동체계 구축으로 진화역량 극대화
◇ 산림항공 안전관리대책 철저한 이행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ZERO화 실현

가. 정책 여건

o 강풍, 기후변화, 고온현상 등으로 동시다발 산불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 재선충병 방제 등 헬기 의존도 증가

o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유관기관(임차·소방헬기 등) 지원헬기 증가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중지휘 통제 등 협력체계 필요

o 항공기 사고에 대한 대내·외 관심 및 우려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항공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임무환경에 대한 규정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나. 기본 방향

o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를 위한 '골든타임제' 정착으로 신속한 출동체계 강화

o 재선충병 항공방제 확대에 따른 산림헬기 지원체계 확립

o 산불진화 시 지자체 임차 및 지원헬기 등의 공중지휘 협력체계 강화

o 헬기 운영기관 간 장비시설 공동 활용으로 상호협력 강화

o 산림헬기 임무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 감독

다. 세부 추진계획

1)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 및 출동체계 강화

o 산림헬기 '골든타임제' 운영으로 전국 30분 이내 산불현장 도착체계 확립

- 이동정비팀(2팀, 8명) 또는 야간·휴일정비팀 운영으로 산림헬기 가동률 제고
- 전국 11개 격납고에 산림헬기(45대) 분산배치 및 산불위험지역에 수시 이동 배치를 통한 공중진화 대응력 극대화

* 1본부·10개 관리소 ('14년 10월 울진격납고 개설)

* 건조일수 지속에 따라 감시·계도비행 시 곧바로 산불 진화에 투입

o 봄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대기 및 전진배치 이행 철저

- 비상대기 헬기의 선택과 집중운영을 통한 승무원 피로관리

- 주중 기본 1대 이상, 주말 2대 이상으로 증대 운영

  *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중보다 주말 공휴일 대기 강화

o 재선충병 항공방제 지원을 위한 방제헬기 사전준비 철저

- 재선충병 방제면적 등 물량에 대비 준비('15년 109만본)

o 동절 · 갈수기 대비 헬기 취수시설 확충 및 급수체계 확보

- 봄철 가뭄에 대비 하천 굴착 등을 통한 담수지(4,179개소) 정비 및 현행화

- 담수지 확보를 위해 북부지방청 관내 얼음깨기 및 담수훈련 추진

-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한 헬기 진화체계 구축

  * 헬기 취수장 관리 매뉴얼(참고 1)

2) 임차헬기 · 유관기관 지원헬기 등 협력체계 강화

o 군 · 소방 임차헬기(96대) 공조진화 실시

- 임차헬기는「지자체 상호간 임차헬기 지원 MOU」에 따라 인접 시·도, 시·군간 산불발생시 진화 지원

- 대형 산불발생시 유관기관 헬기(소방 26, 군 21) 조기 지원 추진

o 산불현장 투입 임차, 군, 소방헬기의 공중지휘 통제 등 헬기 공조체계 구축

-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자원운용 위해 다수(5대 이상)의 헬기투입 시 산림청 선임기장이 공중지휘기를 운항

  * 공동사용 주파수(주. 122.0MHz, 예비. 127.8MHz)

o 군부대, 지자체 등 산불진화 헬기 공조 투입 강화

- 전국동시산불 발생 시 군헬기의 신속동원 가능체계 구축

- 사격장 및 군사시설 지역 산불은 군 헬기로 책임 진화

  * 물탱크 7대, 물바켓 보급 68개(육군 48, 해군 5, 공군 15)

  ⇒ 군 진화헬기 출동 승인후 30분내 이륙 원칙(11.18 군관계관 회의시 협의)

o 산불진화헬기(임차헬기 포함) 안전교육 실시

- 시 · 도소방, 국방부 헬기 승무원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14년부터 계속)

  * 민·관·군 통합교육 실시 및 임차헬기 운영관리 애로사항 수렴

3) 헬기 운영기관 간 장비시설 공동 활용으로 상호협력 강화

o 산불현장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현장실황(동영상) 공유

- 영상전송시스템(25대 장착)을 통한 실시간 상황전파 및 진화 활용

o 헬기 운영기관(국방부, 산림청, 지자체 등) 항공안전교육 실시 및 모의비행 훈련장치, 격납고, 착륙장 공동 활용을 통한 부처 협업 강화

- 통신체계, 담수요령, 공역에서의 임무 및 역할 지정 등 기관 간 역할 정립
- 공동 정비 및 항공기 계류 등 상호 시설물 공동 사용 및 기술 공유

4) 산림헬기 임무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운영 감독

o 계류장 및 이·착륙장 안전성 확보

- 산불진화 등 일몰로 현장계류 시 시·군 사전 계류장 확보
- 전진배치지역, 항공방제현장 이·착륙장, 계류장 최우선 안전성 확보
- 산림헬기 계류시 보호휀스(폴리스라인) 및 지킴이 배치(헬기 손상사례 발생)

  * 대형헬기 대당 안전구역(33.5m× 33.5m) 이내 장애물 금지

o 산림항공기 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 안전운항정보시스템의 위험감지분야, 자동보고체계 개선
- 모의비행훈련장치 교육확대로 조종사 비상 대처 능력 강화
- 영상전송시스템 활용을 통한 현장상황 공유 및 효과적인 진화자원 배치 등 전략수립

o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현장위주의 점검 추진

- 산불진화, 항공방제, 산악구조, 산림자재 화물운송 등 4대 임무 중점 관리
- 위험환경에 필요한 생존지원장비 관리 및 활용현황 집중점검

5) 헬기 야간산불진화 대비 안전운항체계 사전 구축

o 산림헬기 야간산불진화 시범 운영을 위한 인력양성 및 사전준비

- 야간산불진화에 필요한 승무원 및 지상준비 인력의 교육 등 여건 마련

  * '16년 신규도입 헬기(1대)를 야간 진화장비(야간 투시경, 고정식 물탱크 등) 구비

6) 산불진화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진화첨가제 활용 강화

o 산림연접 주거지, 군사격장, 암석지, 숲가꾸기지역 등 신속한 진화가 필요하거나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진화첨가제 활용을 통한 진화효율 제고

- 리타던트 사용 활성화(강릉산림항공관리소)
- 포소화약제 규격마련, 젤, 리타던트 계획 수립
  * 군사격장 등 리타던트 시험장소 선정(국방부와 협의 중)

라. 추진일정

o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 산불조심기간

o 지화지연제 시험 살포(국방부 협조) : 산불조심기간 이전

o 산불진화헬기(임차헬기/시·도소방/국방부포함) 안전교육 : 2015. 1월

o 동절기 결빙저수지 급수원 확보 시범훈련 : 2015. 1월

o 산림헬기 임무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운영 평가 : 정기 · 수시

- 산불진화(수시), 항공방제(월별 정기), 산림자재 화물운송(수시)

9. 산불방지 기반구축

목 표

◇ 다양한 기반 구축으로 산불대응 역량 강화 및 국외 홍보

가. 정책여건

o 산불방지업무를 국가 전담 체제에서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지원

o 세계산불총회 개최국으로서 산불분야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 기대

나. 기본방향

o 교육·훈련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o 세계산불총회 개최 지원을 통해 산불관리의 선도국가로서 위상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지원

o 고용인력과 유관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훈련 실시

- (교육대상) 전담인력(23천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보조인력(35천명) : 영림단, 국립공원, 일선공무원, 민간인, 학생 등
- (교육기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교육방식) 강사 방문형 위탁교육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설립신청・등기 1월) 발족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

o 지자체, 국유림관리 기관에서 교육 위탁 관련 사항 세부 추진

2) 산불방지 전문가 양성 추진

o 산림교육원 산불방지 민간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지속적 추진(7월)

- 자격증 소지자, 학력・경력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산림교육원에서 2주간 '산불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민간전문가로 육성(1회, 30명)

o 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강사 평가제 및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협회)

- 강사평가제,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및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7월)

3) 2015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 및 후속조치를 위한 지원

o 총회 프로그램별 의제 대응 및 부대행사 개최 준비

- 각 주제별 의제 대응을 통한 총회 권고문 작성 준비 및 진화시범훈련 개최

o 산불관련 주요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총회 지지기반 공고화

- 산불관련 국제 공동 대응방안 마련 및 정보와 기술 교류 등 국제협력 추진

o 세계산불총회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중기 예산(안) 협의

- 아시아 산불트레이닝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예산(3억원) 확보

라. 추진일정

o 아시아산불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AFoCo 사무국과 협의 : 2015. 2월

o 산불총회 주요연사(Keynote Speaker) 확정을 위한 협의 : 2015. 3월

o 산불방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 2015. 7월

10. 산사태방지 추진기반 구축

목 표

◇ 국민안전에 역점을 둔 국정과제 추진으로 안심국토 실현
◇ 산사태방지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의 지역 간 편차 심화

o 산사태방지 현장 실무인력의 예방·대응여건 열악

o 정부의 안전정책 강화에 따른 국민의 산사태재해 안전 욕구 증대

o 산사태방지 담당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및 대국민 산사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사태방지 지원체계 정비 및 대응역량 강화

o 산사태방지 실무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o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o 산사태방지 국제교류협력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방지 지원체계 정비 및 대응역량 강화

o '15년 전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및 지역대책 수립·시행

- 전국단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산림청, 3월말까지)에 따른 지역 산사태방지대책 수립(지자체, 지방산림청, 4월말까지)
-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방지 대책 추진실적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3, 영 제32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

· 산림청장은 전국 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3.31까지 수립, 시·도지사, 지방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자체, 지방청(국유림관리소)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4.30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 지방청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12.31까지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o 산림보호법 및 사방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 위험표지판 설치 등 산림보호법령 정비

·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산림보호법 제45조의8)

- 사방댐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방사업법령 정비

· 산림청장은 사방댐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방댐의 시공연도, 규격 및 안전점검의 여부 등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사방사업법 제6조의2)

o 산사태방지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 사방사업 단비 현실화 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단비 현실화(해안방재림, 계류보전 등), 감리비 반영(계류보전 등)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체계 지원 등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확대

o 국정과제, 정상화과제, 정부3.0 협업과제 등 역점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산사태 재해안전망 구축

※ **국정과제 : (86-6) 홍수 · 산사태 등 재해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 산사태정보시스템 개선 등으로 현장관리 역량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 우선적 추진

· 산사태 발생 우려시 현장 중심의 대응활동 강화 등

-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10-51) 풍수해 대비한 산사태 예방 및 임도시설 안전강화**

· 인명피해 예방에 역점을 둔 재해우려지역 실태조사 확대 및 재해저감시설 확충

·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 부처간 협업을 통한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

> ※ 소관 부처별로 분산 · 대응하던 도로변 산사태에 대한 피해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 '14년 최초로 고속도로변 산사태우려지역(29개소)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 '15년 고속도로변 · 국도변 등 재해예방사업 실행 및 실태조사 지속 추진

2) 산사태 방지 실무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o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실무위주 담당자 교육 추진

- 산사태방지 담당자 위탁교육(산림교육원)
  · '15년 산사태방지 정책방향,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부처별 공동 재해예방 협업체계 등
  ·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교육 및 재난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 산사태현장예방단(88단, 352명) 직무교육(사방기술원)
  · 산사태취약지역 점검·정비, 거주민 대피 등 현장중심의 관리체계
- 산사태 피해조사·복구 담당자 실무교육(순회)
  ·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요령, NDMS 입력, 복구사업 추진체계 등
- 사방공학 전문가 과정(산림교육원, 사방기술원)
  · 사방사업 설계, 시공, 감리 등 고급 전문가 양성

o 산사태방지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 단체 관계관 회의

- 산사태방지 유관기관 간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등 상호협력 강화 방안 모색
  * (유관기관) 지자체 및 지방청,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o 산사태 예방·대응 연찬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 산사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방·대응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지자체 및 소속기관에 전파
  ·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사전예방·대응 체계 확립(대피체계, 상황전파, 실제대피로, 피해예방 사례 등)
  · 유역단위의 계통적 사방(산사태복구) 사업 및 자연친화적 시공 우수사례
  · 우기전 사방(산사태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 '15년도 산사태방지 대책 공유 및 제도개선 등 발전방안 발표·토론
  * 시·도, 지방청, 사방협회, 산림기술사협회, 산림공학회 등 참여

3)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o 산사태 예방·대응 및 조사·복구 단계별 맞춤형 홍보

- (예방단계) 취약지역 주민 및 일반국민에게 산사태 발생위험 단계별 행동요령, 피해발생시 대처요령 등 홍보
- (대응단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 기상상황전파, 피해발생 및 대응 상황 등 홍보
- (조사·복구단계)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원인조사 및 복구방향 등 홍보

o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일반국민 등 주요 타깃별 맞춤형 홍보

- TV,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한 기획홍보, 기고, 보도자료 등 배포
- 산사태방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케이블TV, 옥외전광판을 통한 '산사태대처요령', '사방사업 효과' 등 동영상 송출
- 산사태방지 포스터·리플릿 등 배부 및 주민센터 등 홍보물 비치
- 산사태 재해우려시 TV자막방송을 통한 산사태 예·경보 발령정보 전파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한 현장 교육 및 홍보물 배부

o 국정과제, 정상화과제 등 국민안전에 초점을 둔 정책홍보 강화

o 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 협업체계를 활용한 홍보 강화

- 고속도로 및 국도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국토부 협의)

o 산사태 재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컨텐츠 개발 연구 추진

- 계층별, 연령대별 등 교육·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o 제4회 산사태방지 사진 콘테스트 실시

- 우수사례 사진 공모를 통해 산사태방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교육·홍보 활용

4) 산사태방지 국제교류협력 추진

o 산사태방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정책연수 추진

-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속 대응체계 모니터링 등을 위한 해외 선진 정책·기술 연수

o 제11차 한·일 토사재해방지기술회의 개최

- 산사태방지정책, 신기술 사방공법, 자연친화적 도심형 사방기술 등에 대한 정보·기술교류 국제회의

* '02년부터 격년 단위로 양국을 교차 방문하여 정기회의를 개최('15년 한국)

라. 추진일정

o 산사태방지 담당자 위탁교육 : 2015. 3월

o ’15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 수립 : 2015. 3월

o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 : 2015. 5월

o 산사태 예방·대응 워크숍 : 2015. 5월

o 산사태방지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회의 : 2015. 6월

o 산사태예방 대국민 홍보 : 2015. 4～9월

o 사방공학 전문가 과정 교육 : 2015. 6～10월

o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광고・자막방송 : 2015. 5～10월

o 제11차 한・일 토사재해방지기술회의 : 2015. 10월

o 제4회 산사태방지 사진콘테스트 : 2015. 10월

o ’16년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수립 : 2015. 12월

o 제38회 전국 산사태방지 연찬회 : 2015. 12월

11.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의 현장 확산

목 표

◇ 산사태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의 빈도 증가

o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생활권지역의 산사태 발생 증가 추세

o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집중적인 현장 대응역량 제고 필요

o 산사태 재해저감 활동을 수행할 현장 대응인력 부족

나. 기본방향

o 산사태위기대응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o 산사태정보체계의 현장 활용도 증진 및 안정화

o 현장 중심의 산사태 예방·대응 전문인력 확충

o 산사태재난대응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위기대응 단계별 사전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o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에 앞서 해빙기 안전점검, 현장 대응체계 점검·정비 등을 위한 사전대비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5. 2. 1. ~ 5. 14.

  * 해빙기 안전관리 및 여름철 산림재해 사전대비 추진계획 별도 통보

o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구성·운영

- 운영기간 : '15. 5. 15. ~ 10. 15.

  * 본부장(산림청장), 부본부장(산림보호국장), 상황실장(산사태방지과장, 심각단계 산림보호국장)

-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지자체, 지방산림청 및 휴양림관리소 등)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통합관리체계 확립

- 풍수해・산사태(태풍・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지속적인 정비, 반복훈련(실제 대피훈련) 등 현장 대처능력 강화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사태 초기대응 역량 강화 및 실제 대피훈련 병행
  * 상황발생시 역할분담 등 지역유관기관(소방, 지대본 등)과 사전 공조체계 확립

※ 단계별 중점추진 사항
・(예방·대비) 연중을 대상으로 하며, 2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사전대비기간) 중점 * 산사태재해 예방체계 구축, 취약지역 관리 및 역량 강화, 해빙기 안전점검 등 ・(대응단계)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준비단계(관심),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로 구분 대응 *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현장점검, 피해 예방조치 및 신속대응 등 ・(복구단계) 산사태 발생 직후부터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점추진 * 산사태 피해조사, 복구재원 마련, 복구계획 수립 추진 등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o 신규 실태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대상 확대에 따른 지정절차 등 전문가 컨설팅 병행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DB 구축(3,500개소), 산림지반특성지도 제작을 위한 토질 분석(4,000개소), 지정절차 컨설팅 등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계획
・('14까지) 24,000개소 → ('15 추가) 3,500개소 → ('17까지) 36,000개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별도 통보)에 대하여는 우기전 적극적 지정 및 사전점검・정비와 주민대피체계 구축
  - 지정 대상지 현장 확인 후 대상지 공고, 이의신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등을 거쳐 지정고시 완료

※ 산사태취약지역 : ('13까지) 2,928개소 → ('14. 11월 현재) 9,811개소

  *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대상지 공고 등 지정절차 이행
  * 대상지 공고 시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병기
  * 자세한 사항은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 지침('14.9.2 개정) 참조

o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목적 달성 시 해제 조치(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7항)
  * 산사태취약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사방지 지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사방지 해제 가능(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재해 저감을 위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응급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자체 가용인력을 활용한 현장 점검·정비

o 산사태취약지역 하류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실시

* 유사시 주민 연락 방법 :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마을방송, 직접방문 등

o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실태조사 및 지정·관리사항 DB 입력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고시 및 점검·정비사항, 거주민 연락처, 대피장소 등 산사태취약지역 개소별 관리대장 DB 입력

3) 산사태정보체계의 현장 활용도 증진 및 안정화

<산사태정보시스템 현장 활용>

o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사태 예방·대응 적극 추진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 탱크모델 확인 등을 통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및 유사시 대피 등 조치

o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자체 실정에 맞는 산사태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 국소지역 산사태예측시스템, 주민 위험전파시스템 등

* 자체 시스템 구축시 산사태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산림청과 사전 협의

o 기관별 현지 실정을 고려한 산사태 예방·대응 현장 시나리오 재정비 추진

- 기 수립된 현장 시나리오에 실제 대피훈련 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재정비(4월말까지)

* 단계별 담당자 행동요령, 취약지역 주민대피요령 및 대피장소 지정·홍보 등

o 산사태관련 주제도의 3차원 지도 서비스 활용

- 3차원(브이월드와 연계)으로 구현된 산사태위험지도 등 주제도 활용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안정화>

o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팀' 운영

o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산림지반특성지도 알고리즘 개발

* 전국단위 실시간 산사태위험예측기술 개발을 위한 토양의 마찰력, 전단강도 등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지도 제작 추진('16년)

4) 현장 중심의 산사태 예방·대응 전문인력 확충

o 지자체 등의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산사태대응팀' 설치 추진

- 담당자 1인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산사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가 과중되어 신속한 산사태 예방·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조직·인력 필요
  * 전담조직 설치 지자체(2개) : 서울시 '산지방재과'('12.1.1), 관악구 '산지관리팀'('13.3.15)
- 지자체 등 조직담당 부서에 조직 개편 및 신설·확대 등 지속적 건의

o 산사태방지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확대 운영

- 운영기간 : 6개월(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15.4월말까지 현장예방단 선발 및 구성 완료
- 운영규모 : 전국 88개단(1개단 4명)
  * 서울 6, 부산 4, 대구·광주 각 2, 인천·대전·울산 각 3, 경기 14, 강원·전남 각 7, 충북·전북 각 6, 충남 5, 경북 10, 경남 8, 제주·세종 각 1개단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합)직무교육 실시(5월중)
- 산사태취약지역의 순찰·점검 및 응급조치, 주민대피 및 교육·홍보 등 지원

5) 산사태 재난대응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o 국토부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와 토석류 위험예측지도 및 국민안전처의 풍수해위험지구 자료를 연계구축(계속)

o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기능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유함으로써 자연재난분야 협업체계 효과성 제고
  * 국립공원관리공단 본부 등 27개 기관별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

o OPEN API를 활용한 산사태 예측정보 및 예보발령 정보 제공
  * 산사태 위험에 대해 누구든지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국민안전처, YTN, KBS 등)

라. 추진일정

o 해빙기 산사태 안전관리 추진대책 수립·시행 : 2015. 2월

o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3년차) : 2015. 3~12월

o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 2015. 3~12월

o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 2015. 5월, 6월

o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구성·운영 : 2015. 5~10월

12.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목 표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을 집중 시행하여 산사태(토석류)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o 사업량

- 산지사방 222ha
- 계류보전사업 584km
- 사방댐 895개소
- 사방댐관리 501개소
- 해안방재림 40ha
- 해안침식지복구 15km
- 산림유역관리 5개소 등

o 사업비 : 388,571백만원(국고 297,765, 지방비 90,806)

가. 정책여건

o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빈발화 추세

o 사방시설의 산사태재해 예방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사방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지속적 증가

o 생활권 및 공공시설 등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필요

o 산사태재해에 강하고 경관·환경성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방공종·공법 도입 필요

나. 기본방향

o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집중 추진

o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의 전문성 강화

o 산사태재해에 강하고 경관·환경성 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

o 사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o 사방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 실무역량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집중 추진

o 산사태취약지역을 사방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

- 산사태(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지역 우선 등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우선적 시행

- 임도 및 산지전용지 주변 등 재해우려가 있는 계곡부에는 토석류 차단을 위한 소형사방댐, 골막이 등을 조성

o 도로변 산사태 우려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지속 추진

- 국토부 등과 협업과제로 추진 중인 도로변(고속·국도) 사방사업 확대 시행

  ☞ 고속도로 30개소(중앙11, 동해5, 영동12, 호남2), 국도 6개소

  * '15년 계획된 도로변 사방사업은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전조치 후 사업 착수(안전관리 소요액 설계에 반영)

o 민북지역 군사시설 주변 재해우려지에 대한 사방사업 추진

- 민북지역 군사시설 주변 산사태(토석류)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조성

  * 사업추진 대상·절차 등은 국방부(육군본부)와 협의한 후 별도 통보

2)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의 전문성 강화

o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한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방시설의 종류·형식·규모 등 적정성 검토 및 최적의 대안 제시

o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의 전문성 강화

- 타당성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에 지역 환경단체·학계 등 참여 확대로 환경성 검토 강화

  * 사방협회의 타당성평가 위원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 실시

- 평가내용에 지역주민 의견, 환경영향분석, 주요 공작물의 형식과 경제성 등을 추가로 제시하여 평가의 내실화 도모

o 사방협회에 위탁 시행하는 타당성평가는 사업시행 전년도에 가급적 분산 발주

- 특정 시기에 타당성평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업품질 제고

3) 산사태재해에 강하고 경관·환경성 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

o 사방사업 설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설계심의회 구성·운영

- 설계도・서 검수(납품) 이전 자체기술진, 전문가(산림공학회, 산림기술사, 사방협회 등)가 참여하는 사전설계심의회 운영

  * 지역별 설계심의회 운영상황 모니터링 실시(설계심의회 참석, 자문단 운영 등)

o 사방공작물의 안전성 및 주변 경관·환경성을 고려한 재료·공법 적용

- 사방댐은 현지여건과 기능·목적에 부합되는 형식과 재료가 사용되도록 하고 획일적·정형화된 설계는 지양

- 생활권 및 도시공원지역 등은 환경성·주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

  * 도시지역 산지에 부합되고 환경성이 강화된 사방사업 조성 확대

- 사방댐 설치시 활엽수 임지 등의 낙엽 퇴적으로 수질오염·악취 등이 우려되는 곳은 반드시 투과형 사방댐으로 설계

  * 기존 사방댐에 낙엽퇴적·악취 등 민원지역은 투과형으로 구조개량 추진

o 상류 산지에서부터 하류까지의 주계류 및 지류(1·2·3차)를 아우르는 유역단위의 계통적 사업으로 재해예방 효과 제고

- 사방댐・계류보전사업은 주계류(主溪流) 뿐만 아니라 소계류(小溪流)까지 사방공작물을 계통적으로 반영하여 유역완결 시공

  * 특히 생활권 주변 산지의 소계류까지 토석류 피해방지시설 설치

o 단비 부족을 이유로 필요한 공작물이 누락·축소되거나 과다한 설계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단위(면적·개소·km)당 기준단비는 개소별 현지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

o 사방사업은 우기 전(6월말) 완료되도록 조기착수·적기완료로 사업효과 제고

- 사업실행 전년도부터 대상지 선정, 이해관계자 사전설명 등 시기별로 로드맵을 작성하여 계획적·체계적인 사업추진

o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과다한 시공, 안정된 계류 훼손, 적정하지 않은 장비 투입 등으로 주변 경관 등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

o '15년 사방사업 예산에는 익년도 사방댐 실시설계비가 50% 반영됨

- '16년 계류보전·사방댐설치 예정량의 70%이상 사전설계 추진

  ☞ 부족 예산은 계약 잔액 등 활용(지자체)

4) 사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o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조치는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점검결과 안전이 우려되는 개소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정밀 안전진단 및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o 노후·파손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사방댐은 안전조치는 물론 사방댐 상·하류 지역에 골막이·사방댐 등 필요한 공작물을 추가 조성

o 사방댐 안에 토석 등이 가득 쌓인 곳은 준설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여 우기전 필요한 조치

- 사방댐 준설이 불요한 곳은 미실행 사유를 명시한 표지판을 현장에 설치

o 사방댐의 시설관리 이력사항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11월까지)

* 사방시설의 관리·점검 및 안전진단·안전조치는「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인 유지관리 실시

o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 신규지정·해제사항에 대한 적기 행정절차 추진(토지정보시스템 등재 등)
- 5년 이상 경과지에 대한 적기 현지조사로 해제여부 검토 후 신속조치

o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 국가지점번호 설치대상지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중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방댐에 설치(지방청)
- 신규 사방댐 실시설계 시 국가지점번호 설치 소요액 반영
- 기 설치된 사방댐의 국가지점번호는 지적측량 부서(대한지적공사)에서 검증

5)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 실무역량 강화

o 사방사업 실무자 현장워크숍

- '15년 사방사업 중점 추진방향,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우기전 견실시공 및 환경성 강화 방안 등

o 사방사업 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 기술자문 지원(2~6월/월1회)

- 사방사업 실무공무원 및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등을 지도
- 사방사업의 설계·타당성평가서 검토, 주요공작물의 기능 및 위치선정, 견실 시공방법, 공사감독요령 등 자문

o 당해 연도 사방사업 실행지를 대상으로 품질 경진대회 추진

- (대상사업) 산지사방, 해안사방,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 각 시·도 및 지방청별 2개소이상 선정 제출

- (주요내용) 신기술·신공법 등을 적용한 재해저감 및 환경성 강화 사례

  * 공종·공법의 적정성, 자연친화적 자재사용, 주변 경관·환경성 등

o '사방기술원'을 사방실무 교육장으로 운영

- 지자체·지방청 사방실무자 위탁교육,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 등

※ 사방기술원 현황
· (위　　치) 경북 포항시 흥해읍 오도리 66번지(사방기념공원 내)
· (규　　모) 연건평 1,766㎡(약 534평)
· (주요시설) 강의실, 실습실, 사무실, 강당, 구내식당 등

o 사방기념공원('07년 조성)의 야외 사방시설 전시장 등 보완 조성('15년 사방사업 예산 활용)

o 사방사업의 품질향상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한 "사방사업 설계·감리 표준 품셈" 개발 추진

- 설계·감리 대가 산정방식을 공사비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방식으로 개선

o 사방기술교본('14년 정비) 및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발간·보급

o 자연과 조화로운 사방공법 사례집 개정·보급

o 역사적 가치가 높은 전통 사방시설 현장 발굴 및 사방사료 수집·보존 추진

6) 기타사항

o 사방사업 시범지역 보완 조성

- 시·도, 지방청별 기조성한 시범지역에 추가 공종 등을 보완하여 지역단위 사방사업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

o 사방사업 계약체결 시 공개경쟁비율 확대 시행('15년 30% 이상)

  * '15년 예산 조기집행계획 추진 시 예외 적용

o 개발제한구역 내 사방사업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조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12.11)

o 사방댐(부댐 포함) 안에 저수(貯水)가 되어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하절기에 수문(水門)을 열어 배수 조치하고, 안전휀스・경고판 등을 점검・정비

o 하천 등 임야 이외의 지목이 사방지에 편입될 경우 사업착수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 등 필요한 협의 이행

o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 사방사업 실행을 위한 현장진입로 등 설치시 과다한 산림훼손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라. 추진일정

o 사방사업 실무자 현장워크숍 : 2015. 2월

o 사방사업 설계·시공 추진상황 현장지도·점검 : 2015. 3~6월

o 사방사업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2015. 3~6월

o 사방사업 품질 경진대회 대상지 선정·제출 : 2015. 10월

o '16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및 설계 지도·점검 : 2015. 7~12월

13. 산사태발생지의 신속·정확한 조사 및 복구

목 표

◇ 신속·정확한 산사태 원인·피해조사 및 항구복구 추진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o 산기슭이나 계곡주변에 주택·펜션 시설 등으로 생활권 산사태 우려 증가

o 산사태복구의 획일적인 사업을 주변 경관·환경성 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다양한 공종·공법 개발 보급 필요

나. 기본방향

o '14년 산사태발생지의 우기전 항구복구

o 산사태발생시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체계 확립

o 산사태복구지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o 땅밀림 산사태발생지의 항구복구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14년 산사태발생지의 우기전 항구복구

o 산사태발생지의 계획적·체계적인 복구 추진으로 적기 완료

- 생활권 주변은 3월까지, 일반산지는 5월까지 복구 완료

  * 복구물량 70㏊, 복구비 145억원(국비 66, 지방비 등 79)

- 복구 추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등 현장 지도·점검 강화

o 복구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자문단" 구성·운영

- 산림공학회, 산림기술사, 사방협회 등으로 구성하여 현장 기술지원

2) 산사태 발생시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체계 확립

o 산사태 전문가로 “산사태 원인 전문조사단” 구성·운영
- 피해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원인조사·분석 및 복구방안 제시

o 피해조사시 누락·중복 또는 물량의 과대·과소치가 없도록 정확성 제고
- 대규모 피해지의 정밀조사를 위한 헬기 지원 및 국립산림과학원과 합동 조사

o 산사태 발생원인 및 피해유형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설계·복구
- 피해지역의 지형·지질별 붕괴유형 등에 맞는 복구공법 적용
- 생활권, 일반산지 등으로 설계를 차등화 하여 경제적·효율적인 복구

o 산림재해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및 신규 지원품목 지속 확대
- 공공시설(해안방재림 등), 사유시설(산림작물, 산림시설 등)

3) 산사태발생지의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o ’15년 예산에 재해대책비(300억원)가 신규 반영되어 산사태 발생시 신속한 복구추진 기반 마련

o 복구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전설계 심의제도” 운영
- 복구금액 5억원 이상인 개소는 자체 사전설계 심의

o 행정절차 사전이행 및 예산승인 시기 단축 등으로 조기복구체계 가동
-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통보시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 등 사전준비

o 산사태 복구지에 대한 안전점검 등 모니터링 실시
- 복구액 5억원 이상, 복구면적 1ha이상, 생활권 복구지역 등
  * 모니터링 대상 : 76건(’12년 43건, ’13년 28건, ’14년 5건)

o 일선담당자의 조사·복구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피해조사 및 재해대장 작성, NDMS입력, 복구계획 수립 요령 등

4) 땅밀림 산사태발생지의 항구복구 추진

o 땅밀림 산사태 미복구지에 대한 항구복구
- 땅밀림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및 사방복구사업 추진
- 복구사업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방사업 계약잔액 등 활용
  * 기초조사(전북 완주), 사방복구(충북 청원)

o 땅밀림 산사태 복구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기 복구지는 토량변화 추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라. 추진일정

o ’14년 산사태발생지 복구상황 지도·점검 : 2015. 2~5월

o 산사태복구현장자문단 운영 : 2015. 2~5월

o ’15년 산림분야 재해복구단가 산정기준 협의 : 2015. 3~5월

o 산사태 복구지 안전점검 등 모니터링 : 2015. 6월

o “산사태 원인 전문조사단” 구성·운영 : 2015. 5~10월

1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재 발생 최소화

목 표

◇ 선제적 예찰·방제체계 구축, 방제방법 개선, 방제품질 향상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재 발생 최소화

o 전수조사 및 맞춤형 방제전략으로 우화기 이전 고사목 전량 제거

o 현장관리 강화 및 성과평가 실시를 통한 방제품질 향상

가. 정책여건

o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 2005년「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범정부적 노력으로 감소하였으나 '13년에 급격히 확산 추세

- 피해고사목 : ('10) 26 → ('11) 49 → ('12) 48 → ('13) 218 → ('14.11월) 80만본

- '14.12월 현재 전국 14개 시·도, 74개 시·군·구에 재선충병 피해 진행 중

o 예산 부족으로 고사목 제거 우선순위 설정 및 압축방제 실행, 일부 지자체장 관심부족 등으로 우화기에 고사목이 미방제 상태로 방치되고, 소나무류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신규발생 지역 증가

- '14년 신규·재발생(14) : 서울(1), 부산(2), 대구(1), 경기(4), 강원(2), 충남(1), 전북(1), 경북(3)

o '13년 우화기에 고온과 가뭄 등 기후영향으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가 길어지고 증식에 유리한 환경 조성

나. 기본방향

o 피해고사목 전수조사 및 지역별 피해상황에 적합한 방제전략 수립

- 피해고사목 발생·방제시기에 맞춘 항공·지상예찰 및 항공촬영 조사방법 도입으로 피해지역 조기발견 및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

- 지역별 피해상황에 맞는 방제전략 수립 및 책임 방제·감리 도입

o 우화기 이전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및 피해유형별 차별화된 방제

- 방제 실무매뉴얼에 따른 방제방법 및 완료시기 준수로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 매개충 살충을 위한 항공·지상방제 확대와 페르몬 방제 시범 추진

- 문화재보호구역, 경관보존지역 등 중요지역 예방나무주사 실행

o 방제현장 관리 및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방제품질 향상

- 책임담당관(산림청), 방제전담팀(지자체), 특임관 운영으로 현장관리 강화
- 피해극심지역의 공동방제 및 책임방제를 통한 방제효과 제고
- 재선충병 방제성과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방제 책임감 제고
-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방제사업 모니터링 등 감시기능 강화

o 체계적 방제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부처별 협업방제 추진

- 재선충병을 재난관리법 상의 '재난'으로 포함시켜 긴급대응 근거 마련
- 각 부처별 협력 강화를 통해 협업방제 및 예산·인력 확보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고사목 전수조사 및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을 통한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o 피해고사목 발생·방제시기에 맞춘 항공·지상 정밀예찰 실시

- 항공예찰조사 : 연 2회 (2~3월, 9~10월)
- 지상예찰조사 : (항공예찰 후) 반경 2km까지 전수조사, (매월) 주기적 실시
- 신규발생지 및 선단지는 피해고사목 외곽지 반경 5km 정밀예찰조사
- 고사목 전수조사 실시(2~3월, 10월) : 항공예찰 후 피해고사목 외곽지역에서 2km

* GPS를 활용한 조사 후 고사목 위치를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o 무인항공기(UX5 등)를 이용한 항공촬영 신규 도입을 통해 피해발생 위치 및 정확한 피해량을 파악하여 기본조사 설계 등에 활용

* 400ha 기준 : (직접조사) 4인 10일 소요, (항공촬영) 1일 소요

o 예찰조사 적정성 모니터링 실시

- 시·도(산림환경연구소), 지방산림청은 매월 '산림병해충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시·군·구별 예찰조사의 적정성 검토
- 산림청은 전국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발생상황 분석 및 정책 반영

o 지역별(시·군·구) 피해상황에 적합한 방제전략 수립으로 재발생 최소화

- 피해고사목 발생 본수, 방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5단계(1급~5급) 구분
- 극심~경 지역은 연차적으로 피해 완화, 경미 지역은 완전방제
- 피해고사목 30% 내외 집단·반복 발생지역은 모두베기(수종갱신) 시범사업 추진
- 10월 고사목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재선충병 발생상황 및 방제이력」관리

o 시료채취 방법·기준을 개선하여 재선충병 감염목 선별의 정확성 확보
- 피해고사목에 대한 재선충병 감염률을 조사하여 피해 발생원인 분석
- 신규 발생지 또는 기존 발생지에서 500m ~ 2km 떨어진 고사목은 벌도 후 전량 시료채취, 기타 지역의 고사목은 가급적 벌도 후 표본 조사
- 시료채취·검경실명제(대장관리 : Excel)로 책임의식과 오류 사전 방지
- 신규 발생지 또는 기존 발생지와 5km 이상 떨어진 감염목은 연구기관의 최종 역학조사(발생원인, 피해고사목 조사) 후 발생여부 최종판단

2) 우화기 이전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및 피해유형별 차별화된 방제

o 방제 실무매뉴얼에 따른 방제 방법 및 완료시기 준수로 피해고사목 전량 제거
- 피해고사목 방제 완료시기 : 북방수염하늘소 3월말, 솔수염하늘소 4월말
- 피해목 제거사업을 반복실행하여 방제효과 및 책임방제 실현
  · (1월~우화기 이전) 2~3회 반복, (9월~12월) 1~2회 반복

o 책임방제로 방제품질 확보, 국·사유림 공동방제 및 부처별 협업방제 추진
- 피해극심지는 도급사업 발주로 책임방제를 실행하고, 책임감리를 도입하여 현장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방제품질을 확보
- 피해외곽지는 예찰·방제단, 재해모니터링 등을 통한 직영방제 추진
- 국·사유림에 혼재하여 발생한 지역은 소관에 관계없이 구역설정 후 공동방제
- 군사시설 및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은 부처별 협업방제로 역할 분담

o 피해고사목 방제는 수집 후 파쇄, 소각,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훈증처리는 피해고사목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추진
- 도로변 등 피해고사목 이동이 용이한 지역은 최대한 수집한 후 파쇄·소각하여 피해고사목의 인위적 이동에 따른 확산요인을 사전 차단
- 파쇄한 피해고사목은 난방연료, 칩 등의 산림자원으로 재활용
  * 도로변 50m 이내의 피해고사목은 전량 수집하여 파쇄 등 처리

o 재선충병 피해지역별 피해고사목 그루터기 처리 방법 차등 적용
- 선단지 및 신규발생지 : 훈증방제를 원칙으로 처리
- 기타지역 : 최대한 낮게 베기(예시 - 5cm이내) 후 수피제거

o 매개충 살충을 위한 지상·항공방제 확대 실시 및 페르몬 방제 시범 실시
- 매개충 우화기에 10일~2주 간격으로 5회 이상 실시(단면적 2만→3만ha)
- 항공방제가 어려운 지역은 지상방제를 최대한 실시하여 피해확산 억제
- 페르몬으로 매개충을 유인하여 포획·살충하는 방제를 주택가·유기농 경작지·해안도서지역 등 항공·지상방제 불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행(960ha)

o 문화재보호구역, 경관보존지역 등 중요지역에 예방나무주사 실시

- 군사시설 및 문화재보호구역, 사찰·공원지역, 천연기념물·보호수 등 보호가 필요한 소나무를 대상으로 추진
- 기타 산림지역 중 재선충병 피해 선단지는 예산 범위 내 실시

*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산림병해충 공동협력 방제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기관과 공동 방제 추진

3) 방제현장 관리 및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방제품질 향상

o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6단계 감시 체계 구축

- 우화기 이전까지 업체별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하여 방제품질에 대한 책임 부여
- 산림청·지방산림청 직원을 '책임담당관' 및 '지역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방제사업현장의 모니터링을 강화
- 퇴직공무원을 '현장특임관'으로 위촉하여 방제현장 기술지원 및 품질 관리
-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외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제품질 확보

o 소나무류 이동단속 및 피해고사목 이동의 철저한 통제로 인위적인 확산저지

- 소나무류 취급업소의 봄·가을철 전국「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192명)를 기동단속 위주로 전환하여 단속의 실효성 확보
- 피해고사목을 화목·목재로 불법 이용하는 시설 및 유통업체 등을 집중 관리
  - 관리대상 : 찜질방, 화목사용 농가, 조경업체 등 전국 40,146개소('14. 3월)

o 재선충병 방제성과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방제 책임감 제고

- 피해고사목 전량제거·방제품질(4~5월) 및 재발생률 평가(11월) 실시
- 방제성과 평가결과를 언론 등에 공개하고, 행자부 정부합동평가에 반영
- 평가결과는 반드시 페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방제성과를 환류

o 지자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순회교육(1월, 7월), 방제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토론회(수시), 시·도 광역권 점검회의(1~3월, 11~12월) 실시

o 체계적 방제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령 일부 개정으로 방제 효율성 제고
- 재선충병을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으로 포함시켜 긴급대응에 필요한 '수의계약' 등의 근거 마련

라. 추진일정

o 재선충병 예찰·방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광역권 점검회의 : 연중

o 소나무재선충병 담당자 및 예찰방제단 직무역량 강화 교육 : 2015. 1월

o 상반기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사업 실행 : 2015. 1~4월(북방 3월, 솔수염 4월)

o 소나무 예방나무주사 실행 : 2015. 1~2월, 12월

o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역 책임담당관 지정·운영 : 2015. 1~4월

o 항공 및 지상 정밀예찰조사 : 2015. 2~3월, 6월, 9~10월

o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대상지 선정 : 2015. 3. 31일까지

o 매개충 유인 페르몬 방제 시범사업 추진 : 2015. 3월(북방 3월, 솔수염 4월)~10월

o 소나무류 이동 전국일제 특별단속 실시 : 2015. 3~4월, 10~11월

o 매개충 우화상황 조사 : 2015. 4~9월

o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제거·방제품질 및 재발생률 평가 : 2015. 5월, 11월

o 매개충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실시 : 2015. 4~8월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관 연찬회 : 2015. 9월

o 하반기 피해고사목 전수조사 및 방제전략 수립 : 2015. 10~11월

o 하반기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사업 실행 : 2015. 10~12월

15.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 유지

목 표

◇ 임업적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송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1만ha이하로 피해 안정화 유지에 주력

o 사업량 : 나무주사 857ha, 해송림 종합방제 8개소

- 임업적방제(재해저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숲가꾸기와 병행 추진

가. 정책여건

o 솔껍질깍지벌레는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동·서해안을 따라 계속 북상

- 남방계 해충인 솔껍질깍지벌레는 기후변화로 인해 분포지역 확산

o '07년까지 확산되었으나, '08년부터 적극적인 방제로 연평균 19%가 감소

- 발생추이(ha) : ('07) 47,207 → ('09) 32,497 → ('11) 12,524 → ('12) 8,945 → ('13) 7,051 → ('14) 7,436

o 농·어촌 생활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안가 우량 해송림이 관리 소홀, 태풍 등 기상피해와 인위적 피해 등으로 쇠퇴하는 실정

- 해안방재림 1,229개소(1,479ha), 해수욕장 주변 해송림 351개소

나. 기본 방향

o 피해 병징이 뚜렷한 5월중 전국 실태조사 및 리·동별 특별관리체계 구축

o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재선충병 방제방법으로 처리하고, 미발생지역은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의 "재해저감사업"을 실시하여 소나무림 건강성을 확보

o 피해도 "중" 이상 지역 및 국립공원 등 주요지역은 임업적 방제(재해저감사업) 후 나무주사 실시

o 동·서해안 선단지에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활동 및 임업적 방제를 집중

o 해안가 우량 해송림 보전을 위한 종합방제 지속 추진

다. 세부추진 계획

1)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재선충병 방제방법으로 추진하고, 미발생지역은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의 임업적 방제(재해저감사업)를 통해 해송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

o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고사목 전량을 재선충병 방제방법에 따라 처리

o 재선충병 미발생지역은 선단지, 국립공원 등 주요지역부터 임업적방제(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깍지벌레의 밀도저하 및 서식처를 사전에 제거

- 소나무(해송)림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와 깍지벌레 북상(확산) 차단
- 국립공원 지역은 사전 지역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 추진(공문으로 협의)

o 임업적방제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산업용재로 공급하고, 산주에게는 산물 수집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지급

- 대상지선정 등 실행방법은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매뉴얼”에 따름

2) 나무주사는 사전에 임업적 방제 실행, 방제시기 확대 등으로 방제 효과 및 효율성 제고

o 사전에 임업적 방제(숲가꾸기사업 등)를 실행하여 적정 본수를 남긴 후에 나무주사 실행

o “나무주사”는 주요지역 등 우량 소나무림에 적기 실행하여 방제효과 제고

- 실행시기 확대 : 6~7월(정착약충기), 11~12월(후약충기)

3) “해안가 우량 소나무림 종합방제” 사업 확대 추진

o 농·어촌 생활권 경관보전, 재해방지 등에 핵심 지역인 해안가 우량 소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지속 추진

-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대상지 선정·기본설계 완료 개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사업 반영
- 주민설명회 등을 사전에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고, 국립공원 지역(변산, 한려해상 등)은 공원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실행
- 토양개량, 가지치기, 솎아베기, 나무주사, 인위적 피해 방지, 비료주기 등 현지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방제 추진(실시설계 반영)

o 2016년 우량소나무림 종합방제 대상지역은 사전 심의하여 대상지 확정

- 시·도, 지방청에서 2016년 대상지를 기본설계 후, 산림청에 신청(9월말)
- 현장 확인 등 사전심의를 통하여 대상지 확정(10월까지)

4) 리·동별(권역별) 발생 및 방제계획 등 특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피해 유형별 맞춤형 방제 전략 마련

o 서해안 선단지(충남 태안·당진) 솔껍질깍지벌레 특별방제대책 수립

- 국립산림과학원·충남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동조사를 통해 서해안 선단지 특별방제대책 수립(기본계획수립)
- 강도의 솎아베기 위주의 임업적 방제(9~10월), 나무주사 등 종합방제 실행

o 2014년 5월 조사·작성한 리·동별 발생조서에 2015년 임업적 방제, 나무주사 등 방제실적 이력관리 지속 추진

- 2015년 솔껍질깍지벌레 리·동별(권역별) 방제계획 수립
- 리·동별(권역별) 깍지벌레 발생·방제·효과 모니터링 체계구축

o 지역적 상이한 지황과 임분 특성을 고려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특성, 피해유형 등에 따른 방제 전략 마련

- 피해선단형, 피해초기형, 피해극심형, 피해회복형 등으로 구분·방제

라. 추진 일정

o 시·구·군의 리·동별(권역별) 방제계획 수립 : 2015. 1월

o 소나무림재해저감 대상지선정·실시설계·계약 추진 : 2015. 2월

o 서해안 선단지 특별대책 수립 : 2015. 2월

o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추진 : 2015. 6~11월 집중

o 2015년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실태조사 : 2015. 5월

o 2016년 해안가 종합방제 대상지 선정 및 기본설계 추진 : 2015. 8~9월

o 나무주사 대상지 사전 임업적 방제 실행 : 2015. 9~11월

o 나무주사 실행 : 2015. 6~7월, 11~12월

16.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저지

목 표

◇ 다양한 방법의 복합 방제를 추진하여 참나무시들음병의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o 사업량 : 448,373본(끈끈이 411,400, 피해목제거 29,233, 선택베기 7,740)

o 사업비 : 5,675백만원(국비 3,109, 지방비 2,566)

가. 정책여건

o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은 감소하였으나 피해발생지는 확대되어 매개충(광릉긴나무좀)의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음

- 발생지(시·군·구) : ('11) 82개 → ('12) 87개 → ('13) 94개 → ('14) 102개
- 피해목(천본) : ('11) 331 → ('12) 268 → ('13) 309 → ('14) 239(23%↓)

나. 기본방향

o 피해확산 저지를 위해 리· 동 단위 특별관리 체계 지속 추진

o 매개충의 생활사 및 현지 여건에 맞는 복합방제 방법을 실행

o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관부서와의 공동협력 방제 강화

o 친환경 방제 추진으로 경관 및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

다. 세부추진계획

1) 리·동 단위 특별관리체계 지속 추진

o 병해충에 대한 발생, 방제 계획수립, 방제 완료, 사후관리 등 세부 이력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한 자료를 지속 관리하고 분석하여 특별 관리

o 피해구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임상도 분석을 통한 집중 관리

2) 매개충의 생활사 및 현지 여건에 맞는 복합방제 실행

o 매개충 잠복시기(11월～이듬해 4월)

- 근원적 방제가 가능한 소구역선택베기를 우선 실행하고, 반출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사목은 신속히 벌채 처리

o 매개충 우화시기(5～10월)

- 매개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끈끈이롤트랩, 고사목 벌채·훈증, 대량포획 장치법, 약제줄기 분사법, 유인목 설치 등의 방법을 현지에 맞게 복합적으로 적용

3)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관 부서와의 공동협력 방제 강화

o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 방제를 지속 추진하여 국립공원 지역 피해 경감

o 현충원, 군부대 지역 등 국방부 소관 국유지에 대한 협력 및 방제 기술 지원

o 문화재청 소관(고궁, 왕릉 등) 피해지에 대한 방제 협력 확대 실행

4) 친환경방제 추진으로 경관 및 자연생태계 유지

o 주변 경관과 조화가 필요한 지역은 경관과 조화되도록 방제

o 야생 조류 및 익충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은 안쪽면 점착성 롤트랩 설치
- 다양한 생물이 포획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생물다양성 보존

라. 추진일정

o 2015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세부지침 시달 : 2014. 12월

o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담당자 실무교육 : 2015. 3월

o 2015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복합방제 추진 : 2015. 1～12월

o 수도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대책회의 : 2015. 4월, 8월, 10월

o 2015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조사 : 2015. 7～9월

o 2014년도 벌채·훈증목 처리상황 조사 : 2015. 10월

17. 솔잎혹파리 피해 안정화

목 표

◇ 내실있는 방제를 통해 솔잎혹파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정화 유지

o 사업량 : 8,004ha(사유림 6,403, 국유림 1,601)

o 사업비 : 7,216백만원(국비 5,344, 지방비 1,872)

가. 정책여건

o 솔잎혹파리의 전체 피해 발생량은 감소하였으나 경북 일부지역의 피해는 확대되는 상황으로 적기 방제를 못할 경우 피해 확산 우려가 있음

- 발생면적(천ha) : ('06) 196 → ('08) 183 → ('12) 68 → ('13) 59 → ('14) 57

나. 기본방향

o 솔잎혹파리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체계 지속 추진

o 적기에 나무주사 실행 및 방제하는 전면적 저독성 약제 사용

o 나무주사 실행지의 대외 신뢰성 확보 및 기술 향상을 위해 표준지 조사 세밀화 설계 지속 실행

다. 세부추진계획

1) 피해 발생지역의 특별관리체계 지속관리 및 책임방제 실시

o 리·동별 세부 방제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발생상황, 발생임지의 평균 경급, ha당 본수 등에 대한 이력을 연속적으로 작성하고 적기에 신속한 방제를 통한 종합관리

- 방제 실적 및 신규발생 및 확산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o 피해지의 리·동별 발생면적이 50ha이상 되는 지역은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발생 예찰 및 책임방제 실시

2) 솔잎혹파리 사전 방제를 통한 2018 동계올림픽 대비 경관 유지

o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도로 주변 및 가시권역 솔잎혹파리 집중방제 실시

- 고속도로(영동·중앙) 및 국도 주변 가시권 유역완결 방제 추진

o 저독성 농약사용을 통한 친환경방제 추진

- 나무주사 방제 대상지 전면적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

3) 적기에 나무주사를 실행하고 방제사업 안전관리 강화

o 1968년부터 축적되어 있는 솔잎혹파리 장기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우화시기 예측 모델을 근거로 우화상을 설치하지 않고 나무주사 실시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공하는 GIS 형태의 우화 최성기 지도를 활용

  * 제공된 우화 최성기 지도를 확인하고 고도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실시

o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방제 작업 실행전에 안전사고가 방지되도록 철저한 안전교육 실시

4) 나무주사 표준지의 세밀한 작성 지속 추진 및 관리

o 나무주사 설계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조사를 세밀히 하고 설계도 작성시 대상목의 경급 및 약제 주입량 등을 표시하여 나무주사 방제 기술 향상과 대국민 신뢰성 확보

라. 추진일정

o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세부지침 시달 : 2014. 12월

o 방제용 농약 조달을 위한 단가계약 체결 요청 : 2014. 12월

o 솔잎혹파리 담당공무원 실무(안전관리) 교육 : 2015. 5월

o 2015년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실행 : 2015. 6~7월

o 솔잎혹파리 발생 상황 및 효과조사 : 2015. 8~9월

18. 돌발·외래·일반 병해충 적기대응

목 표

◇ 돌발·외래병해충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조기발견·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o 사업량 : 31,547ha(사유림 24,781, 국유림 6,766)

o 사업비 : 6,106백만원(국비 3,810, 지방비 2,296)

가. 정책여건

o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산림과 농경지에 공통으로 피해를 주는 병해충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으며 피해 구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황다리독나방 등의 피해 증가

나. 기본방향

o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 체계 정착으로 피해 최소화

o 돌발 병해충이 발생되면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확산 조기 저지

o 지역별 방제여건에 따라 방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o 다른 부처와 관련된 병해충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효율적 대처

다. 세부추진계획

1) 돌발·외래·일반병해충의 적기방제

o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외래, 돌발해충의 예찰조사 철저

o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경관을 저해하는 해충은 정확한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발생초기 적극 방제하여 피해 최소화

o 돌발·외래병해충은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를 초기에 차단

2)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래 등 공동 협력 방제 강화

o 동절기 기주나무에 산란하는 알 덩어리에 대한 제거작업을 농업관련 부서와 공동협력방제 실시하여 효과 제고

- 농작물 재배지와 주변 산림을 같은 시기에 일괄적으로 공동방제

o 성충 시기는 발생 초기에 지상 약제 방제 실시

3) 항구주변 아시아매미나방(AGM)의 공동협력 방제

o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예찰·방제 철저

- 부산, 인천, 울산, 평택, 동해, 옥계, 군산, 목포, 광양, 여수, 포항, 마산, 당진, 온산, 영일만, 대산, 당진화력, 영흥화력, 하동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21개항)

o 항만주변(2km이내)의 녹지대 및 산림지역에 대한 예찰·방제 실시

4)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산림병해충 방제 적극 지원

o 도시의 주택가에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에 대하여 선제적 방제

o 지상방제가 어려운 돌발 병해충 발생지는 항공방제 적극 지원

라. 추진일정

o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지침 시달 : 2014. 12월

o 꽃매미 발생억제를 위한 알집 제거작업 실시 : 2014. 12~2015. 4월

o 아시아매미나방(AGM) 유충발생기 집중관리 : 2015. 5~6월

o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2015. 6~8월

o '16년 산림병해충 방제 약종선정 회의 개최 : 2015. 11월

19. 생활권 수목진료 추진

목 표

◇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관리강화 및 전문적 수목진료체계 구축

o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 4,000건, 1,024백만원(국비512, 지방비 512)

o 국・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 : 2,060백만원

- 국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 1,100백만원(국비 100%)

- 공립나무병원(12개소) : 960백만원(국비480, 지방비480)

가. 정책여건

o 도시 생활권에서 전문가에 의한 수목방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고독성농약 사용 등의 문제 발생

o 아파트 등 수목진료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나, 전문성 부족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나. 기본방향

o 생활권 수목진단 및 진료를 통한 건전한 수목관리

o 민간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o 수목진료 전문조직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o 수목진료 발전을 위한 산・학・관・연 협의체 구축·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운영

o 민간컨설팅은 민간(나무병원)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해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단·치료 체계구축

o 아파트 녹지, 학교숲, 도시숲, 도시공원,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민간 컨설팅 실시

- 민간컨설팅 : 4,000건, 1,024백만원(국비 512, 지방비 512), 건당 256천원

o 컨설팅 대상 선정 후 나무병원 등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업체 및 기관 : 나무병원, 산림조합,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나무병원 등 민간업체 : 컨설팅을 실시하고 처방전 발급
- 국립산림과학원 : 컨설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분석 실시

* 민간컨설팅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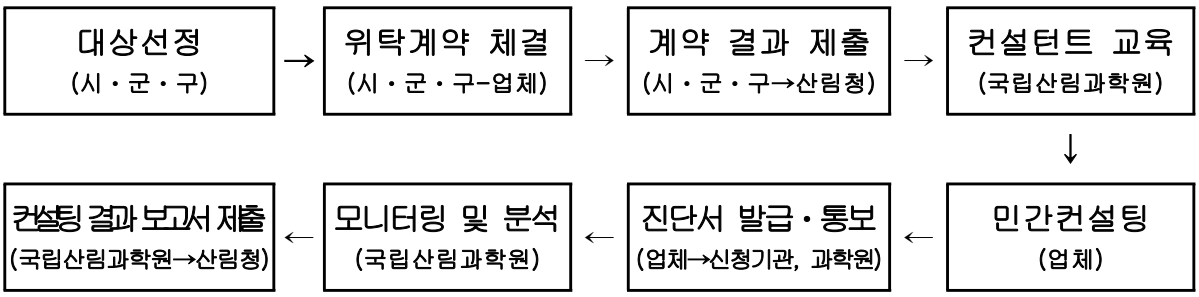

2) 국·공립나무병원의 내실화 및 지역거점 수목진료 체계 구축

o 생활권 수목진료의술 발전촉진 및 지역별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보급 등 수목진료체계를 구축

o 국립나무병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수목진단센터는 관련 대학을 지정·운영하며, 공립나무병원은 각 시·도에서 운영(20개소, 국비 1,580, 지방비 480)

- 국립나무병원 : ('15) 1개소, 400백만원(국비400)
- 수목진단센터 : ('15) 7개소, 700백만원(국비700, 개소별100)
- 공립나무병원 : ('15) 12개소, 960백만원(국비480, 지방비480)

o 생활권 수목진료 관련 실연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자 교육, 병충해 진단·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필요성 홍보 및 제도정착 유도

-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 실연연구 사업을 1과제 이상 수행
- 민원발생 병해충 진단 및 분석, 방제관계자・수목관리자 교육
-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필요성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수목진료체계 구축 및 수목진료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o 수목진료의 품질은 높이기 위해 민간나무병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는 운영결과에 대해 평가실시

- 민간 나무병원 운영자 교육 : 4월
-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결과 평가 : 11월말까지

< 수목진료 전문 기관별 역할·업무 >

구 분	연구실연과제	주된 역할	세부 업무
국립나무병원 (산림과학원)	방제농약 직권등록	생활권 민간컨설팅 모니터링 등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운영 총괄	◦생활권 병해충 컨설팅 모니터링, 컨설턴트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공립나무병원 운영 총괄, 보고서 작성
수목진단센터 (관련대학)	실태조사 등 기초과제 수행	방제관계자 교육 및 전문 인력양성, 수목진료 및 수목의술의 조사연구	◦학술회의, 강연회, 강습회 등 개최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개발
공립나무병원 (시·도)	시범사업 등 현안과제 수행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분석 공공부분 수목진료 및 홍보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진단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보급
나무병원 (사업법인)	-	민간부분 수목진료 및 홍보 (생활권 민간컨설팅)	◦아파트 녹지 등의 수목진단서비스 제공 ◦전문적 수목진료 필요성 등 홍보

3)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o 산림교육원에 개설된 수목보호기술 전문가과정 운영(5회, 150명) 및 국가공인 수목보호기술자 지속 양성(3회)

o 대학 등과 수목진료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연계교육 추진

- 대학, 단체 등 산・학・연과 연계한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실시

4) 제도개선 및 수목진료 발전 협의체 운영 등 발전방안 모색

o 수목진료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 추진을 위해 매뉴얼 등 개발·보급

o 수목진료발전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

- 구성 : 업계, 학계, 지자체, 산림청, 연구기관, 협회 등

라. 추진일정

o 수목진료 매뉴얼 개발 : 2015. 3~4월

o 민간컨설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선정 : 2015. 2월(시・군・구)

o 민간컨설팅 위탁용역 계약체결 및 계약결과 제출 : 2015. 3월(시・도)

o 민간컨설팅 컨설턴트 교육 : 2015. 4월

o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 2015. 5월, 11월

o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 2015. 11월(국립산림과학원)

o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결과 평가 : 2015. 11월

20. 훼손·단절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

목 표

◇ 백두대간 등 훼손지 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o 사업량

- 산림생태복원 47.6ha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3개소
- 대규모 산림복원 6개소 - 백두대간 생태보전·관리사업(3차년)

o 사업비 : 13,777백만원(국비 11,054, 지방비 2,723)

가. 정책여건

o 자연재해 빈발, 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복원대상 훼손지가 확대되는 추세

* 자연적·인위적 훼손규모 : ('80년대) 8,221ha/연 → ('00년대) 13,717ha/연

o 통일을 위한 한반도 생태계 연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백두대간, DMZ 등 생태축을 중심으로 복원 필요성 대두('14.8월, VIP 광복절 경축사)

o 생태축으로서의 백두대간 인식과 훼손지 복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

* 백두대간 중요가치 1위는 '생태축', 최우선과제는 '훼손지 복원'('13. 한국갤럽)

o 최근 기후변화협약[23], 생물다양성협약[24] 등 국제회의에서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산림복원이 이슈화

나. 기본방향

o 산림생태복원 대상의 지속적 확대 및 중·장기 추진기반 강화

- 도서지역, 대규모 훼손지 등 복원대상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

o 산림생태복원 사업지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사후 환류체계 정립

- 주변 생태계 등 사전조사 강화를 위해 산림생태복원 타당성 평가 도입
- 복원사업지에 대한 식생변화 등 생태계 회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착

o 산림생태복원 기술 확산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우수 복원사례 공유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3) 훼손된 산림복구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축이 주요이슈 중 하나(REDD+)
24) 훼손 생태계 면적의 15% 복원 권고(제10차 당사국총회, '10.10월)

다. 세부추진계획

1) 한반도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 등 산림훼손지 복원

o 백두대간과 연계하여 정맥, 지맥까지 확대하여 훼손 및 단절지 복원

- 장기간 이용 후 국유림 대부 소멸된 백두대간 바람재 복원(4.5ha)
- 개발 등으로 인해 훼손된 낙동정맥 및 지맥 훼손지 복원(9.0ha)
- 도로 개설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복원(시공2, 설계1)

  * 시공 : 남원 정령치(서부청), 단양 저수령(충북) / 설계 : 구례 밤재(전남)

o DMZ 일원 전술도로 주변 산사태 피해지, 폐군사시설 등 복원(20.1ha)

- 사업대상지 발굴, 출입문제 개선 등을 위해 일선 군부대와 적극 협력
- 기관별 역할 등에 대해 사전에 일선 군부대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

o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서지역 산림생태계복원 및 사후관리

- 독도 산림생태계복원 완료('11~'14)에 따른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등 전문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추진

- 울릉도, 거제도, 진도 등 주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복원 확대

o 산림습원, 종(種) 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 복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관령 산림습원 내 황폐지 복원(5.0ha)
- 백두대간 생태계교란 외래종 제거 및 자생종 복원(생태보전·관리사업)
- 생활권 등 대규모 훼손지에 대한 연차별 산림복원 추진(시공 6개소)

  * 포항, 익산 미륵산, 울산 영남알프스, 거제도, 진도 가사도, 영동 폐채석장

2) 산림생태복원 사전 조사 및 환류를 통한 사업관리 강화

o 산림생태복원 설계 이전에 주변 생태계 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 추진

  *「사방사업법」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

o 사업성과 평가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복원 후 식생 생존율, 주변식생 이입 등 산림생태계 안정화 과정 및 하자 발생 여부 등 지속 점검(5~10월 중점추진, 10.31까지 결과 제출)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의 경우, 사업지 내 CCTV를 활용하여 야생동물 이동까지 포함하여 지속 관찰(매분기 말일까지 제출)

o 기관별 복원사업지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우수사례 발굴 등 환류 실적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사업량(예산) 배정에 적극 반영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 체계>

모니터링 결과	⇨	우 수 보완필요 실 패	⇨	원인분석	⇨	사례 공유 보완사업 지시 재설계/종료

3) 산림생태복원 정착을 위한 협업 확대 및 담당자 역량 제고

o 관계기관과 협업을 기반으로 복원성과 제고 및 중장기 추진기반 강화

- 백두대간 등 산림생태복원 관련 협의체 운영(환경부, 국토부 등)
  * 관계부처 합동 '한반도 핵심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 수립('13.8월)
- 육군본부와 민북지역 산림복원 관련 협업 확대방안 등 논의(3월)
- 전국 산림 내 폐군사시설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8월)
  * '14년 민북지역 산림복원 관계기관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16년 본격 확대)

o 다양한 산림생태복원 기술 발굴·확산 및 담당자 교육과정 개설

- 산림생태복원 워크숍(9월), 세미나(반기) 등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
- 산림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산림생태복원 담당자 과정' 내실화 도모
- 생태복원대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격년(짝수해) 개최방식으로 변경

라. 추진일정

o 전국 산림 내 미사용 폐군사시설 실태조사 : 2015. 2월

o 민북지역 산림복원 관계기관 협의회 : 2015. 3월

o 산림생태복원 담당자 교육 : 2015. 5월

o 산림생태복원 사업지 모니터링 실시 : 2015. 5~10월

o 산림청·육군본부간 협업 확대방안 실무 회의 : 2015. 6월, 10월

o 미사용 폐군사시설에 대한 산림복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2015. 8월

o 산림생태복원 담당자 워크숍 : 2015. 9월

o 산림생태복원 사업지 지도·점검 : 2015. 6월(상반기), 11월(하반기)

o 산림생태복원 세미나 : 상·하반기

21. 백두대간 보호·관리체계 강화

목 표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보호·관리기반 강화 및 국제적 보호지역으로의 등재 추진

o 사업비 : 1,320백만원(국비)

가. 정책여건

o 백두대간의 생태적인 보호·관리에 대한 정책 추진을 요구

* 백두대간 중요가치 1위는 '생태축', 우선적 추진정책은 '생태적 관리'(13. 한국갤럽)

o 국제적으로 연계 보호·관리(connectivity conservation)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

o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16~'25) 수립

나. 기본방향

o 백두대간을 명실상부한 한반도 생태축으로 보호·관리

o 백두대간을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적 보호지역으로의 등재 추진

o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

o 적극적인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대한 대내외 홍보·교육 강화 및 다양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o 국·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한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

-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TF팀 구성·운영
- 백두대간 전문가, NGO, 지자체 등이 참여한 세미나 추진

o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등 실시

- 2014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2015년 시행계획 수립
- 백두대간 연접 사유지 매수를 통해 보호지역 확대지정 기반 마련

2) 백두대간 및 정맥 자원실태조사 등 보호·관리

o 백두대간 지리산 권역(2차기 5년차) 자원실태변화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동·식물상 등 산림자원실태 변화상 모니터링
- 백두대간의 토지이용 및 훼손현황, 산림문화·경관 등 실태조사

o 낙동정맥(2차기 1년차) 자원실태변화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남한지역 정맥의 동·식물상 등 산림자원실태 변화상 모니터링
- 정맥의 토지이용 및 훼손현황, 인문・사회환경 등 실태조사

3) 백두대간을 국제적 보호지역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반 마련

o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의 등재 추진
- '15년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MAB 한국위원회 신청서 제출, 심사 등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로드맵('15) >

o **(1～5월)**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의견 수렴
o **(5～6월)** 생물권보전지역 사전설명 및 신청서 제출(MAB 한국위원회)
o **(7～8월)** 신청서 검토・보완(MAB 한국위원회 심사)
o **(9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제출(유네스코 MAB 사무국)

o 세계유산 등재('19년 목표)을 위한 잠정목록 제출
- 세계유산 신청('18년)을 위한 잠정목록 작성 및 진정・완전성 평가
  * '14년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확인・분석함

o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교류 확대
- 생태계와 문화의 연결축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 보호구역 연계 추진

4) 백두대간에 대한 홍보활동 확대 및 다양화

o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참여형 홍보사업 추진
- 외래종 제거, 산림정화 등 민·관·지역주민 합동 '백두대간 사랑운동' 실시
- 산림청 직원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생태탐방 행사 추진

o 백두대간 안내표지판 설치 장소 및 내용 작성을 위한 용역 추진
- 무분별한 설치 및 훼손·방치된 안내표지판 정비로 백두대간 이미지 제고
- 지역적 상징성, 탐방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연차적으로 실시

라. 추진일정

o ’15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 2015. 1월

o ’14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2015. 1～5월

o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조사 및 정맥 자원실태조사 : 2015. 1～12월

o 백두대간보호지역 국제적 보호지역 등재연구 추진 : 2015. 1～12월

o 백두대간 보호 담당자 교육 : 2015. 5월

o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16～2025) 관련 T/F팀 운영 : 2015. 3～11월

o 백두대간 안내표지판 일제정비 용역 추진 : 2015. 3～10월

o 백두대간 동영상, 브로셔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 연중

o 백두대간 사랑운동 전개 : 연중(1회 이상)

o 백두대간 생태탐방 행사 추진 : 연중(1회 이상)

22.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목 표

◇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 창출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보호 주체로 육성

o 사업비 : 14,602백만원(국비 8,522, 지방비 6,080)
- 주 민 지 원 사 업 : 5,934백만원(국비 4,154, 지방비 1,780)
- 소득감소분 지원 : 68백만원(국비)
- 생태교육장(구례·거창) : 8,600백만원(국비 4,300, 지방비 4,300)

o 사업대상지 : 백두대간 지역 32개 시·군

가. 정책여건

o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나 공동체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05~)

* 지역주민 만족도 : 3.91점, 지원사업으로 소득수준 향상 : 51.5%('13. 한국갤럽)

o 최근 백두대간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도시민에 의한 청정임산물 및 휴양에 대한 수요 증가

*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13, 6개도 합동)에 고부가가치 식품·약초 클러스터, 자연유산·문화와 결합한 관광지대 구축 등의 내용 반영

o 백두대간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지속되는 한편, 최근 귀농·귀촌인 증가

* 인구비율 : ('90) 5.1%→ ('10) 3.0%, 고령화율 : 25.3%로 전국평균보다 2배 이상

나. 기본방향

o 백두대간 지역별 브랜드 창출 및 고부가가치 임산물 선정·육성 추진을 통한 가치 창출형 마을 지원 사업으로 확대

o 백두대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및 역량 강화로 자발적 보호 주체로 육성

o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 지역별 생태체험·홍보·교육 인프라 확충

다. 세부추진계획

1) 백두대간 지역 활성화 및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o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개선으로 임산물 생산 및 소득 증대
- 기존의 시설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가치 창출형 지원 사업으로 확대
  * 백두대간 수급 조정 및 브랜드관리 구축 지원 추진
- 보호활동 시범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사업지침 변경

< 주요 변경내용 >

o **(시범사업)** '백두대간 지킴이' 시범사업 : 6개도별 1개 읍·면·동 지정 추진
o **(사업종류)** 임산물 재배의향, 재배면적, 작황 등 모니터링 지원 추가
o **(공동사업 신청자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업 신청은 신청자 공동명의의 사업부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함

o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해 소득감소분 지원
- 산림소유자의 벌채 예상수익금 상당액의 1년 이자액을 매년 지급
  * 보호지역 지정당시(2005.9월) 공익용 산지, 벌채 제한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벌기령 및 원목등급 개정에 따른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2)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자발적 보호참여 등을 위한 역량 강화

o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백두대간 보호 주체로의 육성
- 주민지원사업 관련 우수마을, 작목반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백두대간 사랑운동, 지침 개정 시 주민 의견수렴 등 참여 기회를 확대

o 지역공동체의 보호관리 우수사례지에 대한 벤치마킹 등 역량 강화 지원
- 마을리더, 지역 담당자의 생물권보전지역 선진지 등 방문 지원
  * '14년 : 일본 아야정(생물권보전지역)・야쿠시마(세계유산) 방문, 17명(주민 4명 포함)
- 백두대간보호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한 정보 교류 확대

3)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규 조성 및 운영 활성화

o 백두대간이 지나는 각 도별(6개) 생태체험·홍보·교육 인프라 구축
- '15년 조성 대상지 : 구례, 거창('13~'15), 남원('10~'15)
  * 조성 중 : 3개소(남원, 구례, 거창), 완료 : 3개소(괴산, 상주, 양양)
- 남원 등 조성현장의 사업 진도 및 재정 집행에 대한 관리 철저

o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특색있는 운용 및 활용도 제고
- 백두대간 권역별로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 주민의 운영참여, 숲길 안내센터로의 활용 등 운영방식 다양화

라. 추진일정

o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 시・군별 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사업 선정・확정 : 2015. 1～3월
- 주민지원 사업지 지도・점검 : 2015. 5월, 10월
-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지자체 → 산림청) : 2015. 4월

o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 평균입목가액과 예금금리 확정 통보(산림청 → 지자체) : 2015. 3월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 지급(시・군) : 2015. 12월

o 해외 보호지역 선진사례 견학 : 2015. 4월

o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추진상황 점검 : 매분기

o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 : 2015. 12월